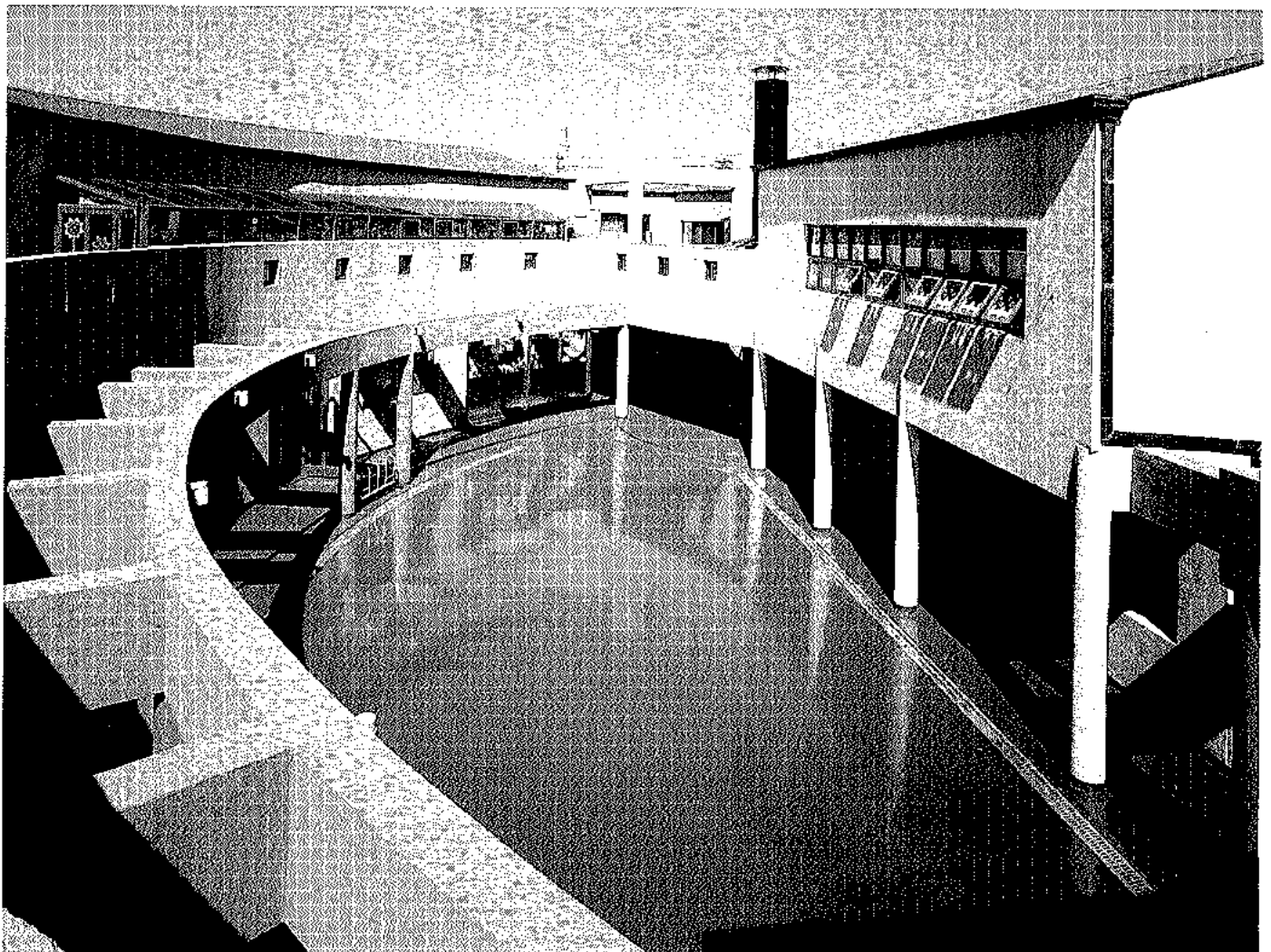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11월호 통권319호



월간 건축사 1995년 11월호 통권 319호(매월 5일 발행)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 12월31일 제3증우편물(나)급인가

November
1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최찬환

석유개발센터 / 정림건축
어린이집 / 김인철
자명당 / 김홍수
대검찰청사 / 김병년

작품비평(대검찰청사)
서초 법조타운의 완성과 대검찰청사의
건축적 의의 / 이범재
일하며 생각하며
가을의 길목에서 / 문숙경

작품노트
남태령마을의 돌집 / 조현군

건축기행
몽골건축을 찾아서(3) / 박서홍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김수근(3) / 정인하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7) / 박효순

현상설계경쟁
대구죽곡전용구장, 수원시립화장장, 경기도공무원수련원

법령
건축사법시행령 · 시행규칙중개정령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컨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컨캐드!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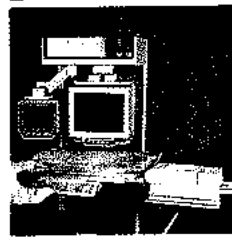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 6.0
- 건축설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진한글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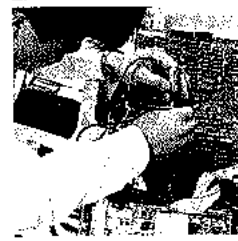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진상화 프로그램 영역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영역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오한 교육
- 체계적인 단계의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정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알선

애프터서비스



- 신뢰, 상설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작업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CAD전문회사
(주) 컨 캐 드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584-6480 팩스: (02)587-1803

(주)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15 (중문빌딩 5층)
대표전화: (02)598-1486 팩스: (02)598-1487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채안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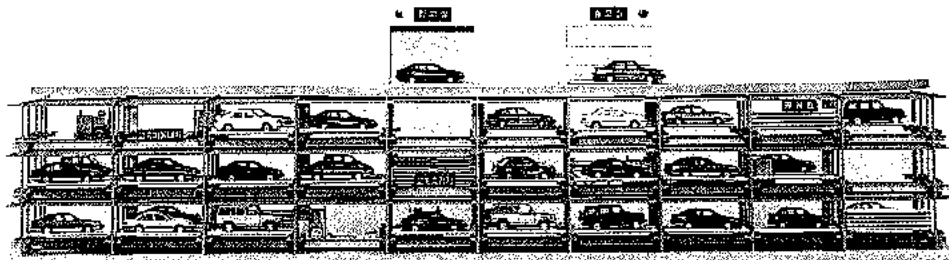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층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주)중앙창호

본 사 · 공 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목 재 사 업 부 (032)571-7771 Fax 575-6655
 건 가 구 사 업 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 스템 창 호 사 업 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 울 전 시 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 린 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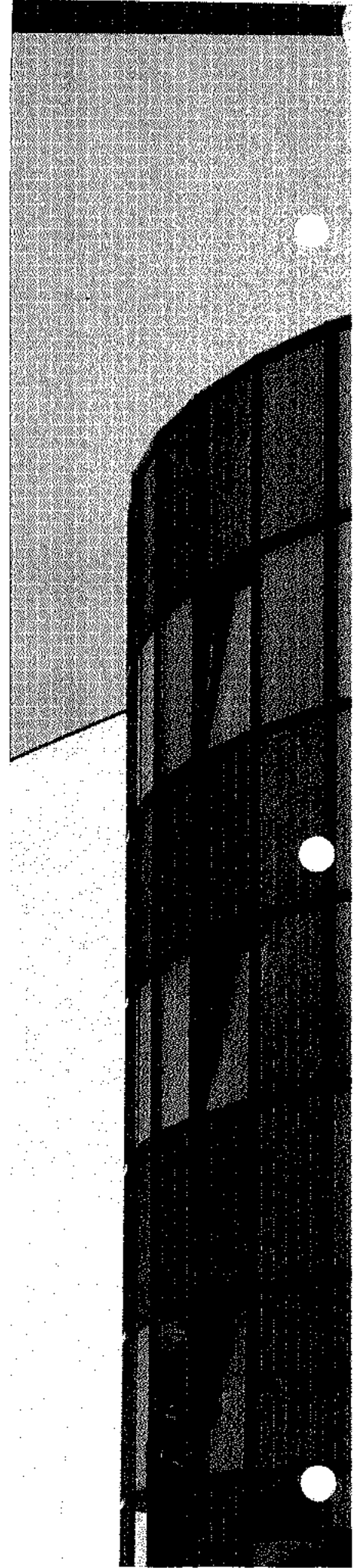
독일HARTMANN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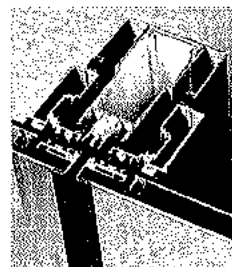
신감각

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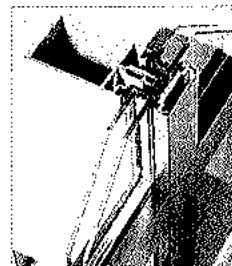
신미학

기술이 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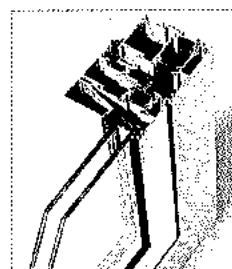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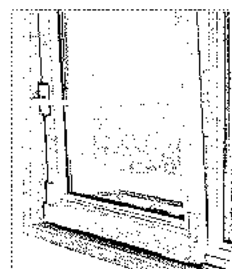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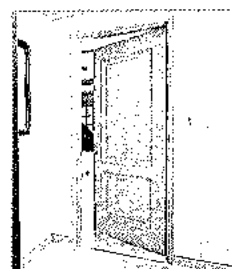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미늄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신합니다.

CIN CAD U.b

건축설계 자동화프로그램

주요 기능

■도면 초기화

DCL을 보면서 Center, 열, Number, Column을 편집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Boubble 및 치수를 필요한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AutoCAD R12, R13 DOS & Windows, AIX 4.1(R/S 6000)
플랫폼을 함께 지원하므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Lisp에서 ADS로의 전환

기존의 Lisp에서 ADS로 전환하여
속도의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향후 버전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을 모듈화 하였습니다.

■Wall, Door 기능의 향상

마감 동시 표현, 편집 기능이 보강되어
Drawing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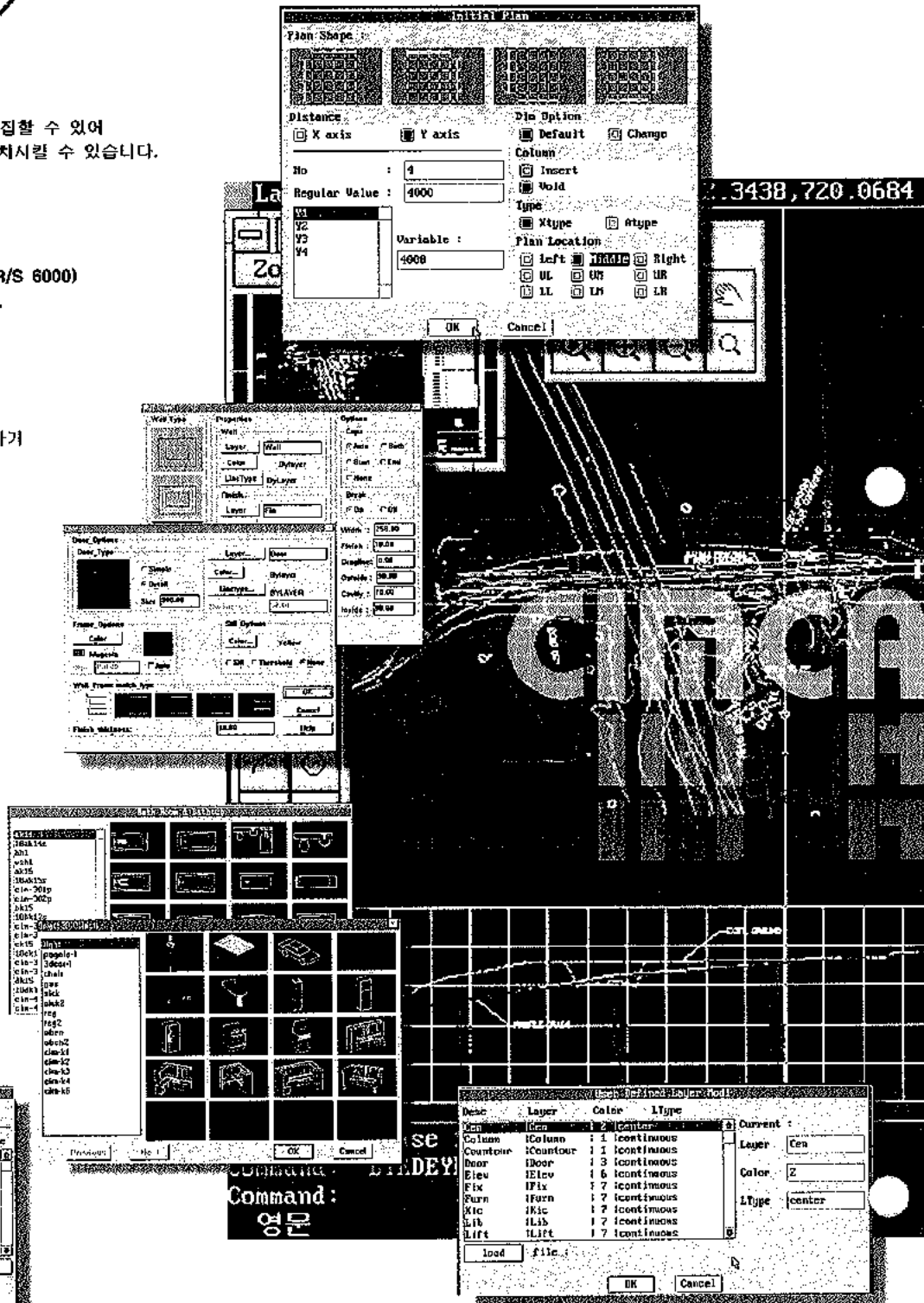
■건축 Symbol 150여개 추가

건축 관련 Symbol을 정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ICON화 하였으며 600여개의
Symbol 제공으로 건축 업무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동 치수 기입

축선의 선택만으로 자동 치수 기입이
완료됩니다.

Row	Col	Page No.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16
17	17	17
18	18	18
19	19	19
20	20	20
21	21	21
22	22	22
23	23	23
24	24	24
25	25	25
26	26	26
27	27	27
28	28	28
29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36	36	36
37	37	37
38	38	38
39	39	39
40	40	40
41	41	41
42	42	42
43	43	43
44	44	44
45	45	45
46	46	46
47	47	47
48	48	48
49	49	49
50	50	50
51	51	51
52	52	52
53	53	53
54	54	54
55	55	55
56	56	56
57	57	57
58	58	58
59	59	59
60	60	60
61	61	61
62	62	62
63	63	63
64	64	64
65	65	65
66	66	66
67	67	67
68	68	68
69	69	69
70	70	70
71	71	71
72	72	72
73	73	73
74	74	74
75	75	75
76	76	76
77	77	77
78	78	78
79	79	79
80	80	80
81	81	81
82	82	82
83	83	83
84	84	84
85	85	85
86	86	86
87	87	87
88	88	88
89	89	89
90	90	90
91	91	91
92	92	92
93	93	93
94	94	94
95	95	95
96	96	96
97	97	97
98	98	98
99	99	99
100	100	100



AutoCAD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설계자동화 프로그램 CIMCAD가 보다 나은 기능으로 Upgrade되어 여러분 앞에 선을 보입니다. 건축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렴, 대폭 보강하였고 건축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 직관적인 작업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프로젝트 관리 및 도면 검색, 관리 기능과 실질적인 건축설계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CIMCAD는 최적의 건축설계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CIM View AutoCAD Display Driver

- Bird's Eye View
원하는 부분을 신속히 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Spy Glass
도면을 확대하지 않고 커서의 움직임만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 Fast Zoom, In, Out, Fast Pan, Fast Redraw 기능
- 화면상의 Tablet Menu를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 Screen Capture기능
- 한글 Driver 제공으로 모든 Message의 한글 입출력 가능

View Master

도면 검색 프로그램

- DOS용과 ADS 버전을 함께 공급
 - DOS 용 : AutoCAD 없이도 도면 검색 가능
 - ADS 용 : 도면 검색 및 Insert, Xref 기능

CIM Drawing Manager

프로젝트 및 도면관리 프로그램

-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실무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모든 도면을 Data Base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 CIM View에서 한글 Driver를 설치했을 경우 한글로 Data Base 구축이 가능합니다.
- Slide Manager - Library 구축에 필요한 Slide 관리
- Block Manager - 작업 중에 발생하는 Block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 File Manager - 도면 File 및 모든 File을 복사, 삭제 등이 가능.

설계정보 프로그램

- 산출 내역
총 공사비 설계 감리비, 제안 용역비를 평가 하여 자동 산출해 준다.
- List의 Mouse만 클릭해 주면 건축물에 맞는 표준 평당 공사비가 입력, 계산

한국/사아아(주)
ARON (주) 아론 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 515-3167(내), FAX : 515-3169

이처럼 강력한 펜티엄 PC는 없다



업무 따로, 모임 따로, 취미 따로...

몸이 열이라도 부족한 바쁜 일상!

HP 벡트라 VL 3 PC시리즈는

단순히 일로써 컴퓨터를 접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입니다.

X 세대를 자처하는 나!

이제부터는 HP 벡트라 VL 3 PC시리즈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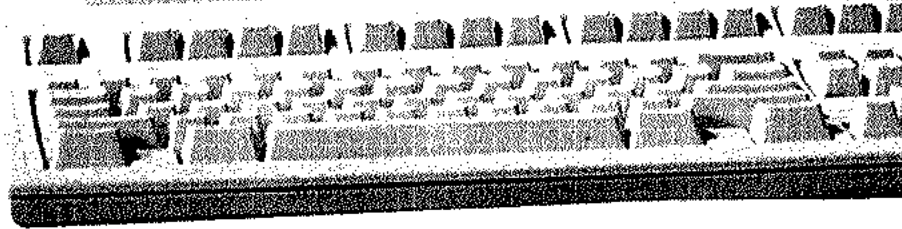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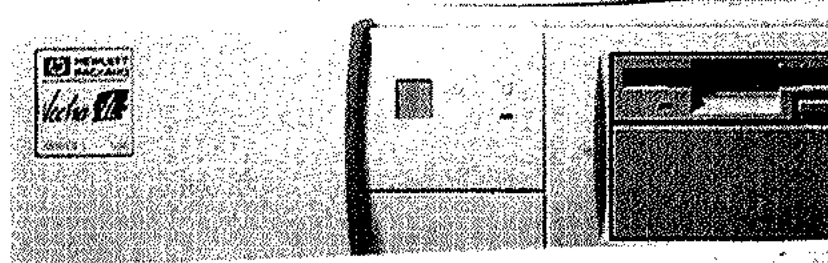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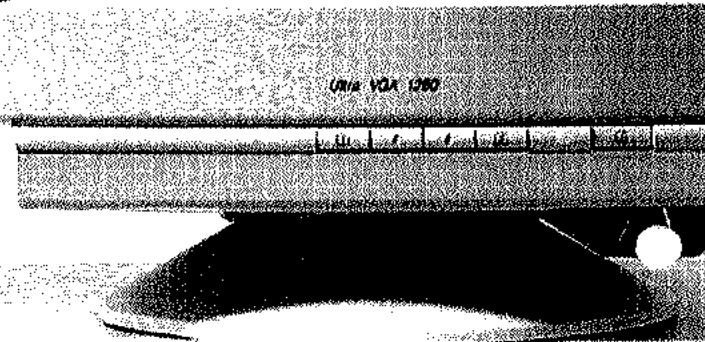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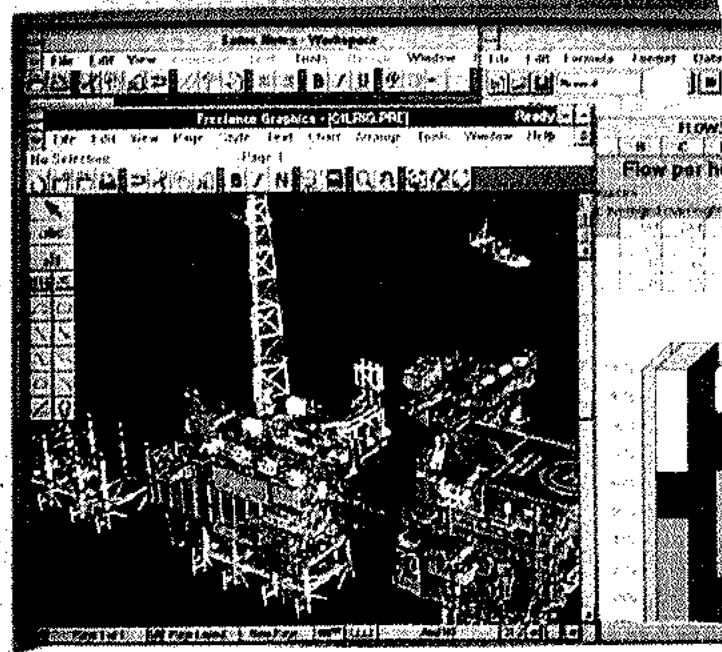


- Intel Pentium 프로세서의 완벽한 구현과
최적의 시스템 구조
- PCI 버스의 초고속 64비트 그래픽 가속기
- PCI 버스의 Enhanced IDE 컨트롤러
- 완벽한 Plug & Play 기능
- 완벽한 Windows 95 호환성
- 데스크탑 관리 인터페이스(DMI)의 철저한 준수
- HP User Tool을 이용한 손쉬운 설치
- 최신형 전원 관리를 갖춘 EPA Energy Star 인증
- HP의 품질과 신뢰성
- 3년간의 제품 보증



- ★ Energy Star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상표입니다.
- ★ Intel Pentium은 Intel Corporation의 미국상표입니다.
- ★ Windows 95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상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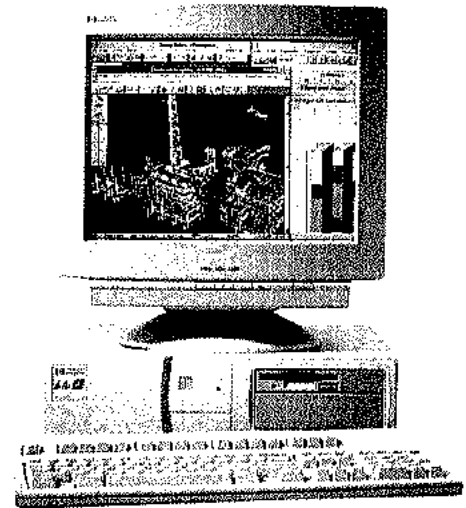
HEWLETT
PACKARD



PC시장의 새로운 방향 제시,

A/E/C, 멀티미디어, Network 관련 솔루션!
한국 씨.아이.엠(주)에서 찾으십시오.

- 국내 최초로 DOS와 Windows 환경을 지원하는 건축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CIMCAD V6 개발
- AutoCAD R12/13용 한글 유틸리티 참한글 1.0 개발
- 건축설계 사무소의 설계환경 개선을 위한 CAD 시스템 및 네트워킹 솔루션 제공
- 건축물의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에 이르는 멀티미디어 솔루션 제공
- HP 전 제품 취급



HP 벡트라 VL3 PC 구성과 모델

제 품 명	모 델	제품번호	메모리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견장소비자가격
HP Vectra VL3 5/75	M840	D3395	8MB	840MB/Enhanced-IDE	1,905,000
HP Vectra VL3 5/90	M840	D3398A	8MB	840MB/Enhanced-IDE	2,200,000

AD circle-7

최신대 설계문화의 동반자

CM 한국씨.아이.엠(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23층
TEL : (02)515-3167(대) FAX : (02)515-3169

HP 벡트라 VL 3 PC 시리즈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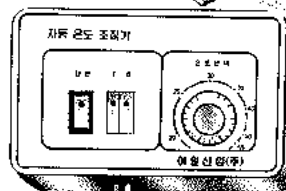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LP1			LP2
			LP4

공간형 형식승인 3-7-4527
실용신안공보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종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26kw
- 전기요금예상
 - 1.26kw × 10hr/일 × 0.7 × 59원/kwh = 520원/일
 - 520원 × 30일/월 = 15,600원/월
-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일
전기)당가 59원/kwh의 월간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일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048 제주 : (064)44-4520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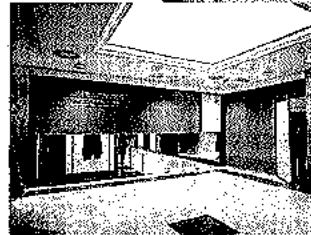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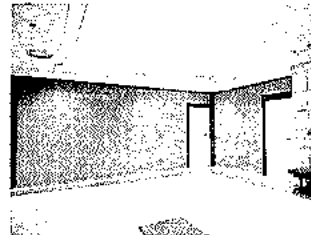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충족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안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힌호텔
- 숙초아남하이츠
- 세브린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모량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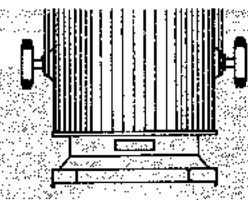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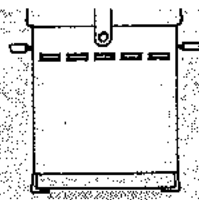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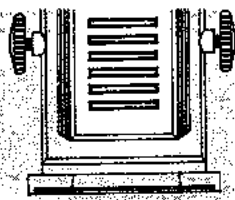
본사: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838 - 4545 (代)

FAX: 838 - 0474

공장: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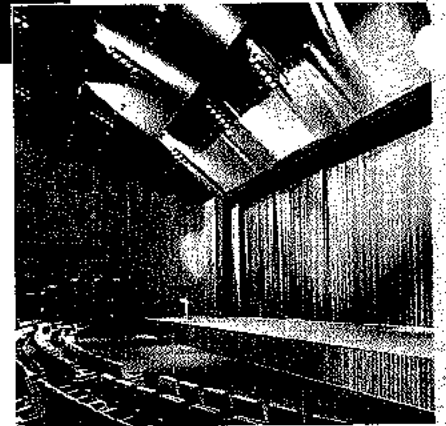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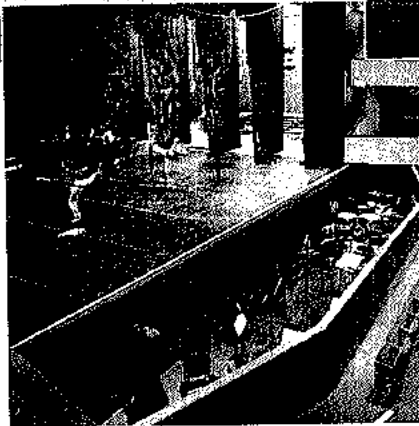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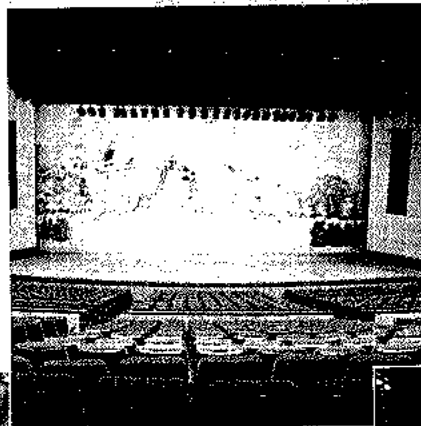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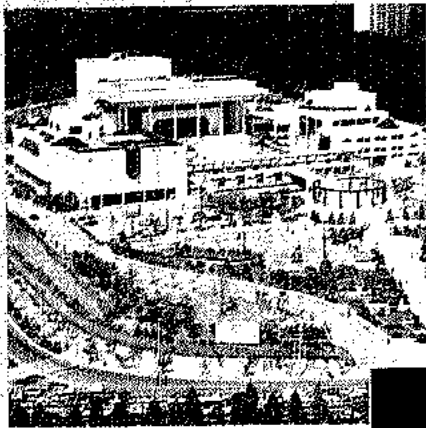
제조원: **아 주 셔 터 공 사**



무
대
기
계

무
대
조
명

영
상
설
비



기 획 · 설 계 · 시 공

SSE (주) 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시화공단2나 209)
TEL : (0345)499-8100~4, FAX : (0345)499-810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 | |
|------------|-----------------|---------------|
| ◎ 세종문화회관 | ◎ 유관순기념관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 국립극장 | ◎ 충현교회본당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 섀타론위커틀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계몽 센터 예술 극장 |
| ◎ 롯데호텔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육군박물관 |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대전시민회관 |
| ◎ 이화여대강당 |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 강원대학교 |
| ◎ 과천시민회관 |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 충북문화 예술회관 |

주요 생산품목

- | | |
|---------------------------|------------------------|
| ● STAGE & STUDIO | — CONFERENCE ROOM |
| — BASIC EQUIPMENT SYSTEMS | — SCHOOL STAGE |
| — THEATRE STAGE | ● DESIGN & ENGINEERING |
| — TELEVISION STUDIO | ● MANUFACTURE |
| — OPERA HOUSE | ● TURN-KEY PROJECTS |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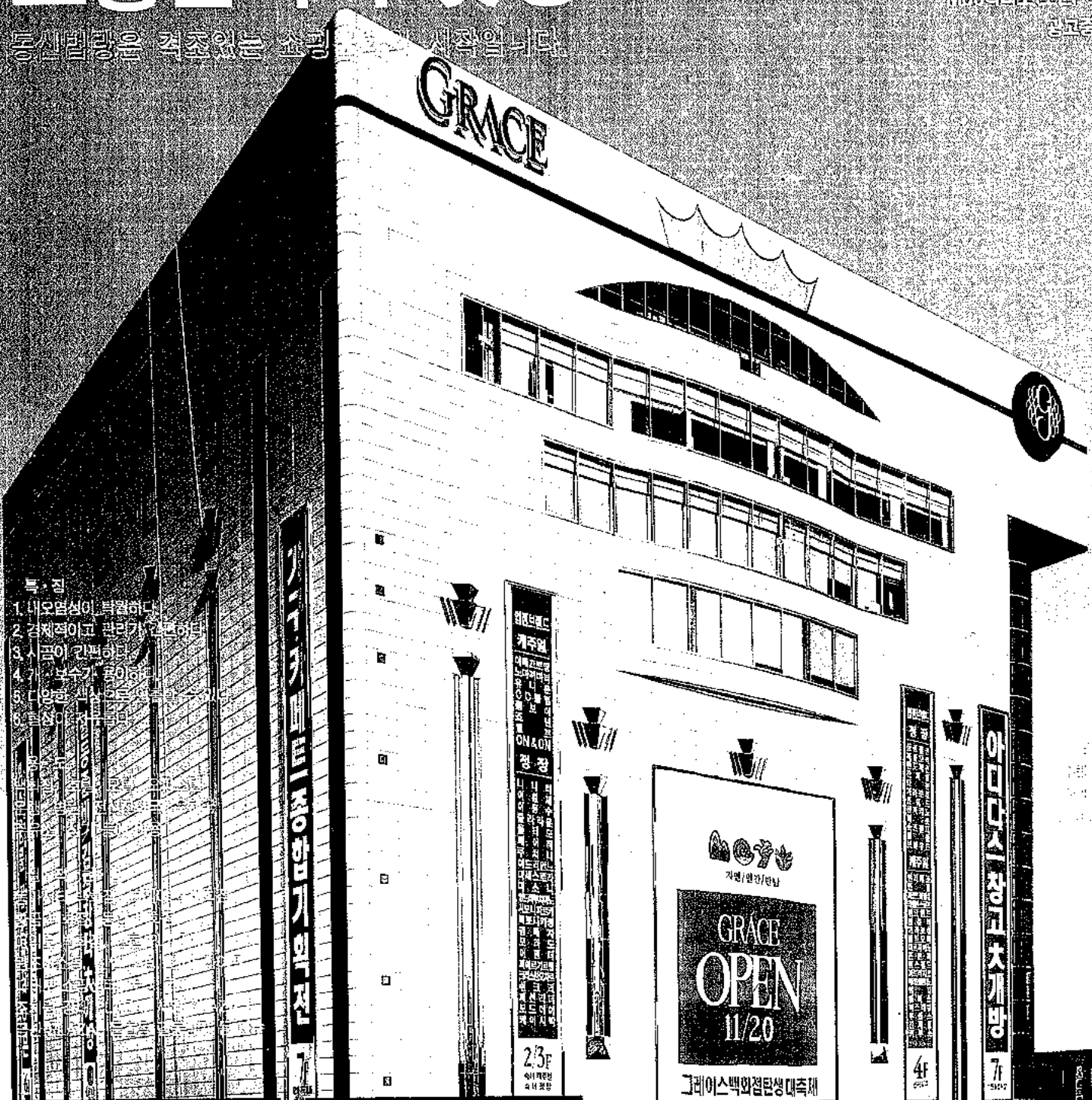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 209-1 松蔭里 山 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건축비·외장중·벽돌판넬
기원세라믹스 3 박화점판

쇼핑문화의 첫장

동신법랑을 격조있는 쇼핑문화로 재창조합니다.

동신법랑판넬은 현재
MBC라디오(오전·오후)에
광고중입니다.



특·점

1. 내오염성이 탁월하다.
2. 경제적이고 관리가 간편하다.
3. 시공이 간편하다.
4. 개·보수가 용이하다.
5. 다양한 색상·모양·패턴이 가능하다.
6. 화성이 우수하다.

동신법랑판넬은 현재 MBC라디오(오전·오후)에 광고중입니다.

기원세라믹스 종합기획전

기원세라믹스
캐주얼
이제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ON&ON
정장
이제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2/3F
세이브먼트
4바탕

GRACE
OPEN
11/20
그레이스백화점판넬대축제

4F
5102

아미다스 창고 대개방
7F
5102



동신오미야磁器株式會社
Dong Shin Omiya Porcelain Enamel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동 93-2 유암B/D 3층
TEL: (02) 512-0726 FAX: (02) 514-5397
공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상호리 60-1
TEL: (02) 236-1612 (0446) 76-8076 877-1788-9 FAX: (0446) 78-7592

무주 시공지점업체
서울: 반우크레딧 512-0003 유화호업 421-0471-3 (주)이음 859-3100-2
척기건영 516-6141-5 B.L.산업 563-4583 익진ENG 557-9043-4
부산: 송병강건 051-558-0451-3 대구/ (주)테남: (053) 422-7111
광주/ 덕진ENG 062-262-1574-5 대전/ (주)세진: (042) 824-0001-4

안산 라이프: 512-0003 / 서울: 라이프주거개발(주)
부곡동아: 512-0003 / 서울: 라이프주거개발(주)
서계: 고원건축/서울: 동아건설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가유,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산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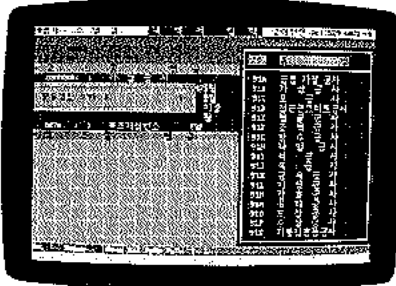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못쓰셨습니까?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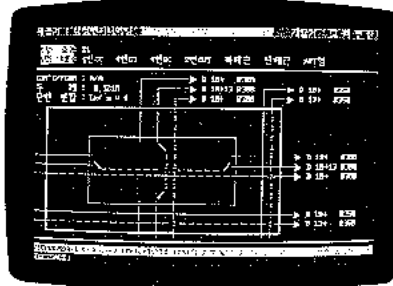
“이전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 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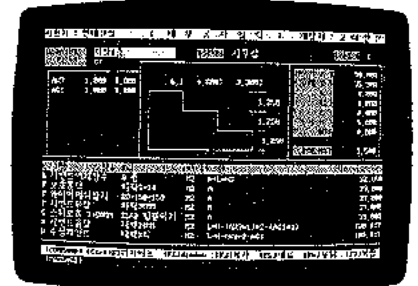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 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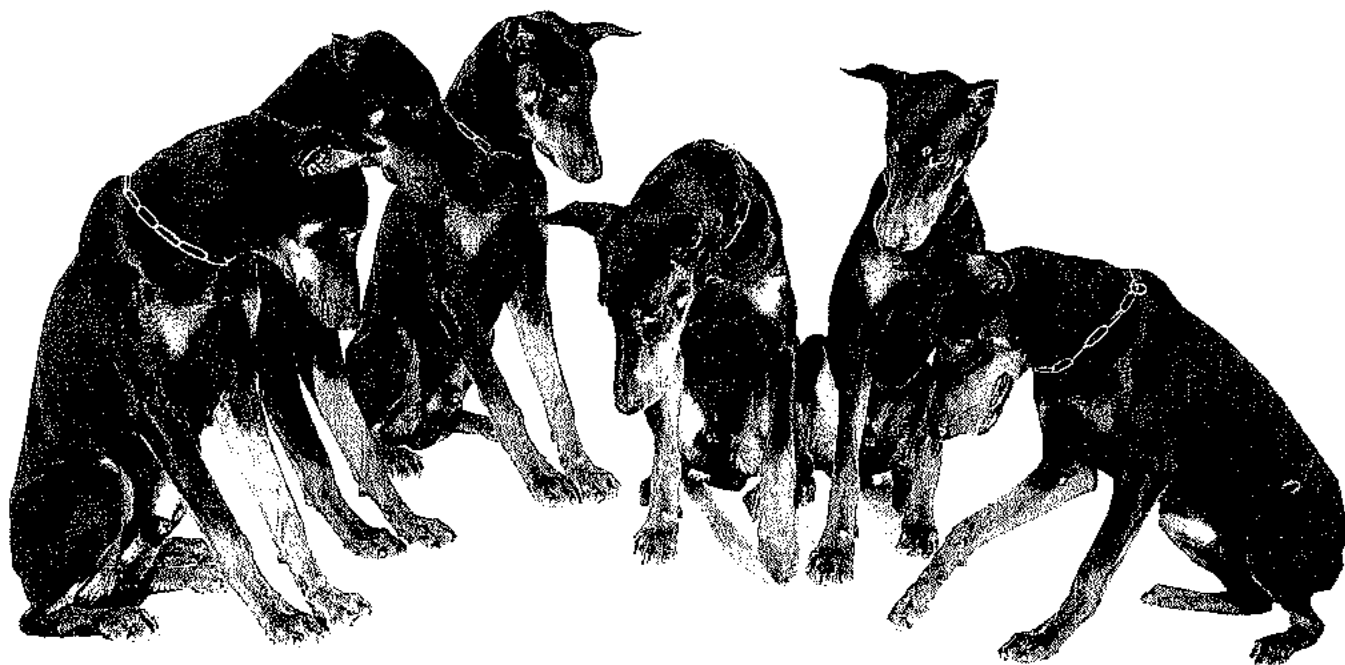
특 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S/W 목록

• EMS-I	내역관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목내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재관리 SYSTEM
• P.M.S	공사관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ARRIS

우리가 선택한 것!



정림건축의 기술력으로 만든
우리나라 실무 환경에 가장 적합한 CAD

정림 3RD PARTY!

- 정림 MAIN
- 정림 ARCHITECTURE
- 정림 STRUCTURE
- 정림 3D
- 정림 한글

* 가격 : 70만원(부가세 별도)

ARRIS 교육기관 안내

태백컴퓨터아카데미 TEL : 511-9400 / 토바디자인학원 TEL : 563-5666 / 캐드플러스 TEL : 564-4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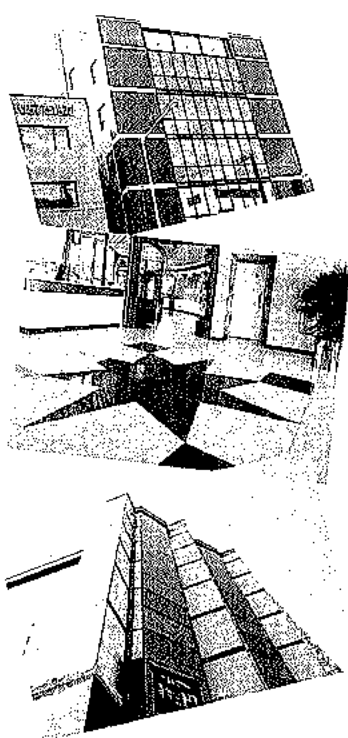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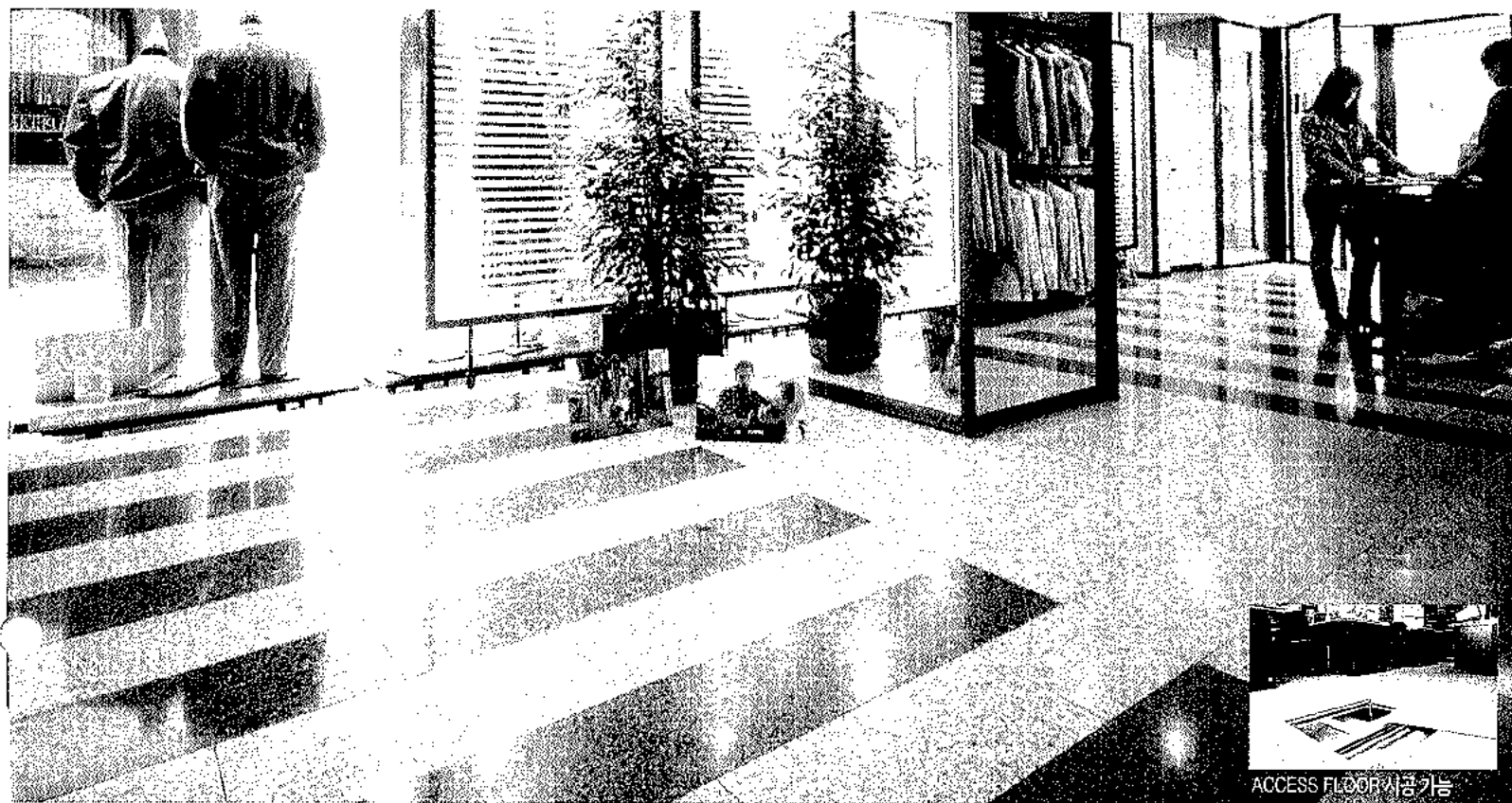
정림 3RD PARTY는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에서 공급합니다. 정림 3RD PARTY의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에게는 언제든지 방문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ARRIS 국내총판 / 정림 3RD PARTY 공급처

(주)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05-25
TEL 523-8871/3 FAX 523-8874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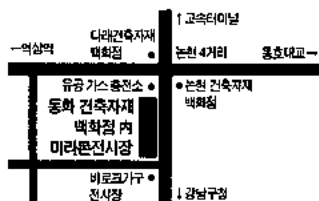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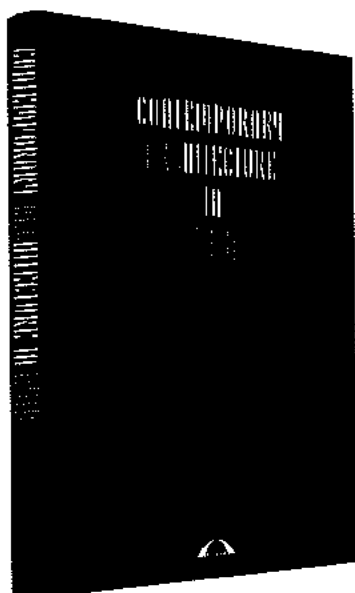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공극이 없는 미라톤은 흡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동결융해에 의한 "해"가 없습니다.
-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썸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발언에서 전세계 건축인들에게 아시아건축을 알린다.

- 영문본
- 대한건축사협회 지음
- Size : 235×310mm 양장본
- 아시아 15개국의 83개 작품 수록
- 풍부한 화보, 도면, 해설(비평)
- 전세계 출판사 및 서점망을 통해 배포
- 가격 : 35,000원

아시아 15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빼어난 걸작 83개 작품에 대한 사진, 도면과 비평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주로 아직 건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건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들 특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색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해설 또한 단순한 건물의 형상이나 디테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찌면 어찌기도 한 주제를 쉽게 서술한 점이 이책의 특징이다.

아시아 건축의 현재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건축의 질적 수준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필독서이다.

이책에는 한국건축으로 김종성, 김석철, 김원,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 ARCASIA
가격: 35,000원

Robbins

Premium Hardwood Flooring



원목바닥재의 명품 - 로빈스

새로운 목재문화의 창조

(제 1기) DIN 독일규격 합격)



올림픽이 증명한

최상급의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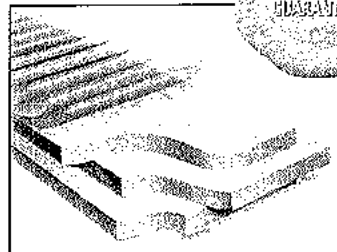
로빈스 우드프로링 /

1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88 서울올림픽,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실내경기장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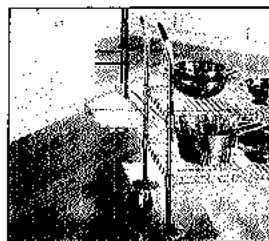
(5년간 품질보증 마크)



(도장의 극치)



(Permacushion
Maple system)



(Maple Natural)



(Oak Chablis)

규격 / 주거용 10/12mm X 57/76mm X 1219mm

상업용 19mm X 57/83mm X R/L

체육관용 20/27mm X 57mm X 2130mm

수종 : Oak, Maple 시공 : Glue down or Nail down



동양목재공업주식회사

본 사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45

TEL: 032-763-1321 ~ 4 FAX: 032-762-001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1 금정빌딩 6층

TEL: 546-8174 FAX: 546-8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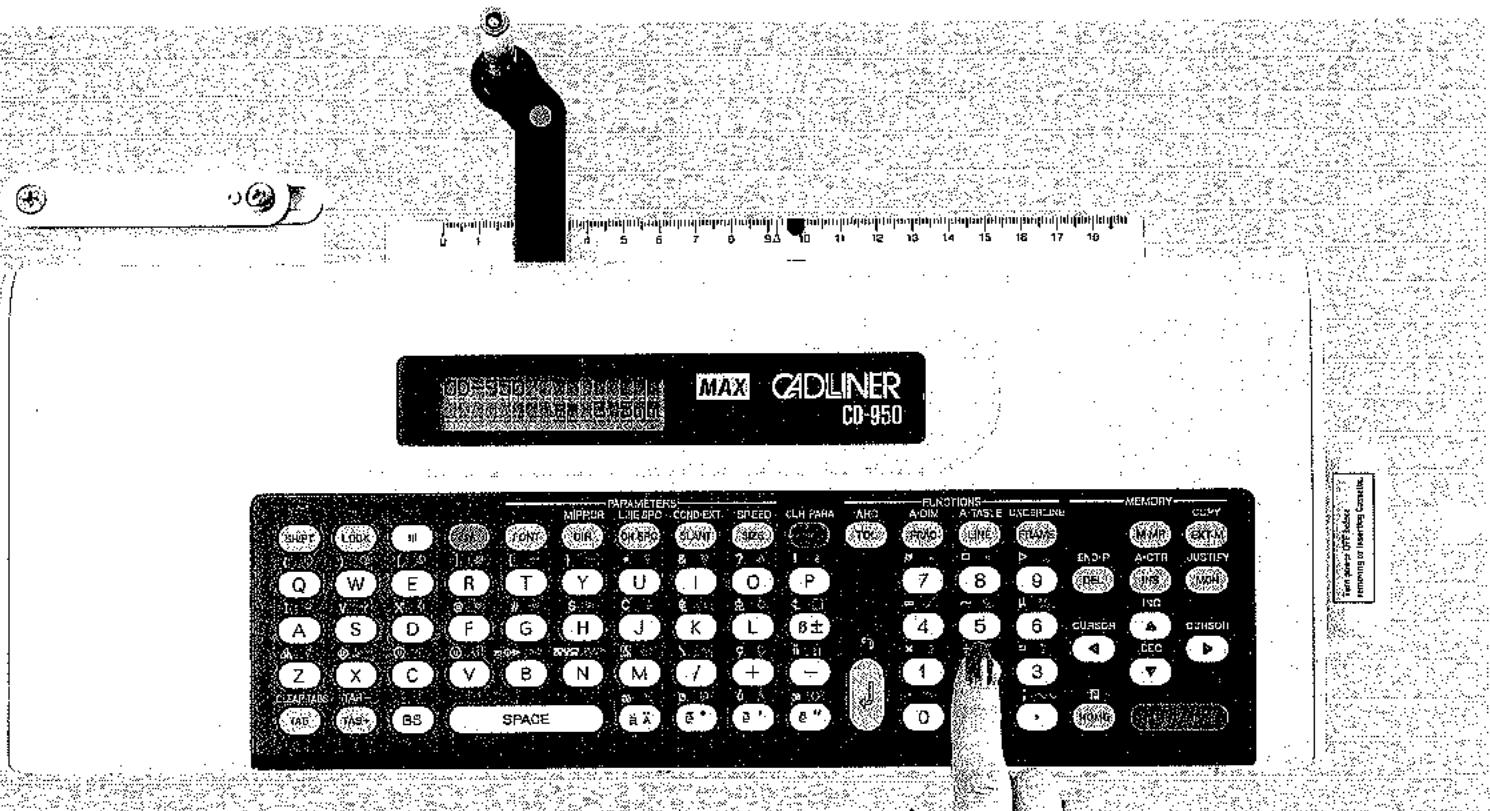
취급품목

건축마루재 / 고무바닥재 / PVC바닥재 / 세라믹타일 / 무늬목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콤퓨터식 보턴.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 미 교 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옥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 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풍부한 심볼 제공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편리한 작도와 편집기능
- 한글 변환
- 철저한 교육지원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물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QUE 3

입찰전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정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지닌

Dyna 486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587-5168/9

이태리 NEOLT사 제품입니다.

설계제도의 필수품 - 레터링 플로터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스크라이버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도면작업의 효율화를 이루고 설계도면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제도용 OA기기 -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등의 레터링은 물론 각종 도형을 프로그램하여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플로터가 복합된 첨단 레터링 플로터입니다. 또한 CAD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NED-316의 특징

- 한글, 영문 14가지 기본서체 내장
- 문자크기 최대 40mm, 메모리 8k로 확장
- 단축키 사용으로 간편한 조작

(주)삼아 테크시스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7 장흥빌딩
(02)515-3287 (代)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기존의 내화피복재에 비해
인체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전후 분진 발생을 제거함은 물론
인체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건축용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 가열시험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피복두께 (mm)		시험결과
		일반건축용	공업용	
보 기둥	1시간	20	15	적합
	2시간	30		
	3시간	40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삼 손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02)563-8181 FAX(02)538-2589
영 업 부 : TEL(02)552-8181 FAX(02)552-6224
부산지점 : TEL(051)512-8181 FAX(051)516-9343
광주지점 : TEL(062)268-8181 FAX(062)268-8186

100년을 위한 선택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이젠 시멘트도



한 방울의 물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쌍용 방수몰탈 (셈코트)

• 액체 방수의 문제점 (크랙, 들뜸 등)을 해결한 최신공법의 방수몰탈

강도 800 이상 발현

쌍용 고강도 시멘트

• Autoclave양생설비 불필요, 고강도용 시멘트 2차제품 생산용

빠르다. 그리고 견고하다

쌍용 초조강 · 초속경 시멘트

• 초조강 - 1일에 보통시멘트 7일강도 발현
• 초속경 - 3시간만에 보통시멘트 7일강도 발현

기타특수시멘트

• 쌍용 급결제(스피더)

탁월한 급결성, 초기강도 우수한 숏크리트용 급결제

• 쌍용 S/L제

스스로 정밀한 수평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몰탈

• 쌍용 비폭성파쇄제

무진동,무소음, 무공해의 혁신적 파쇄제

전문 취급점

• 서울지역 남양사(02)470-4188 나진물산(02)307-9691~4 쌍용기술훈(02)333-9045 부성건설(02)419-7357삼건개발(02)508-1012
• 경기지역 인성상사(032)431-9279 남유산업(032)420-1151 금용산업(0345)407-6500
• 대전지역 태영상사(042)253-9338 (주)세화유통산업(042)486-9561 • 대구지역 대도특수(053)958-4921한양양행(053)983-5577 이건설사(053)768-0540
• 광주지역 호광산업(062)675-4659 신흥상사(062)525-7489 (주)태창(062)941-2582

쌍용 첨단 특수시멘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완벽고정



수중공사



지반강화



어떠한 틈새도 허용치 않는다

쌍용 그라우트재(바스콘)

- 기계기초, 철골 및 철주기초, 교량 이음부, 양기볼트 접합 등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접합시켜 줌
- 우수축, 고강도, 고유동성의 간편한 프리믹스 타입

수중 공사의 완벽한 해결사

쌍용 수중콘크리트 혼합제(워터콘)

- 우수한 증점성, 고유동성에 의한 충전효과로 수중에서 재료분리가 없고 강도 발현이 우수한 수중 콘크리트용 혼합제
- 교량 및 수중, 해양 구조물의 기초콘크리트 제조, 방파제, 하천제방의 구축 및 보수용 콘크리트 제조

연약지반을 돌처럼 단단하게

쌍용 마이크로시멘트(마이셈)

- 연약지반 보강용 초미립자시멘트
- 지하철, 댐 축조현장 등 기초 그라우트

• 쌍용 토질안정제

연약지반 개량 및 안정화 처리제

• Pile-cutter

현장타설말뚝의 두부정리용 파쇄제



최고추구 · 세계기업

쌍용양회

제품문의 : (02)270-5432~7

• 경북지역 신성토건(0562)72-2400 웅미상사(0561)773-1211 쌍용상사(0562)73-4129 쌍용판매(0546)52-3033 동아상사(0582)34-4239
 신진개발(0562)74-4413 • 부산지역 도시발파(051)441-3251 신화건설(051)208-7144 부산시멘트(051)532-0016 • 강남지역 쌍용특수(0551)45-4547
 (주)경남(0522)66-6700 명보상사(0557)41-4571 • 전남지역 대양건설(0667)793-0207 대성산업(0631)78-3542 • 전북지역 대한건설(0652)243-0366
 • 강원지역 원성산업(0394)34-9591 혁신상사(0371)731-9951

왜

旺岩천연운모인가?

- 인간에게 유익한 풍부한 원적외선을 방출
- 다른 어떤 암석도 따라오지 못하는 뛰어난 열전도율
- 은빛 찬란한 순수한 운모농집의 결정체
- 다량의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는 왕암 게르마늄 운모



■ 원적외선이란?

태양광선중 비 가시광선인 적외선 중에서도 5.6μm~1.000μm 대의 파장을 말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빛 가운데 8~12μm의 원적외선을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8~12μm의 원적외선이 인체에 흡수되면 온열효과와 발한 효과가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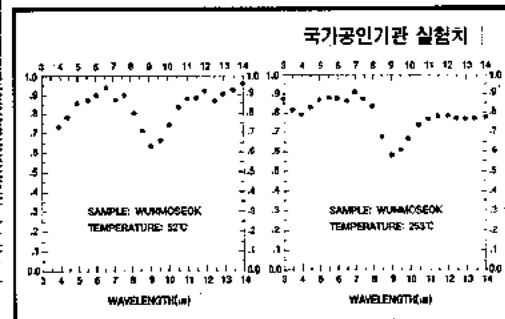
이 파장대의 원적외선은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몸속의 각종 노폐물을 몸밖으로 배출하여 인체의 각 세포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는 효과가 있어 자연의 빛이라고 합니다.

■ 旺岩천연운모의 원적외선 방사율

● 253℃의 상온에서 방사율 최고치 91.2%

● 52℃의 상온에서 방사율 최고치 94.6%

왕암천연운모의 원적외선은 국가공인기관 실험치이며 사우나, 찜질방 또는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도(52℃)에 접근하여 실험한 결과 (94.6%)의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을 인정 받았습니다. (실험재료는 서봉광업에서 생산하여 전회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원석으로 실험하였음)



생명존중, 무병장수 그것은 자연의 힘과 旺岩천연원적외선 방출, 旺岩운모로 이루어집니다.

난로 위에 놓여진 旺岩천연운모 원광석이 가열되면서 풍부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며 실내에 공기를 좋게하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파트, 주택, 빌라에도 다량의 게르마늄이 함유된 왕암 천연운모로 원적외선 찜질방을 만듭시다.

아파트, 주택에서도 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공비가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찜질방을 아파트는 물론 주택에도 설치하여 가정에서도 원적외선을 이용한 온 가족의 건강 찜질방으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인 원적외선 구들장(온돌)으로 건강한 생활과 저희 왕암천연운모로 탄력있고 아름다운 삶을 얻을수 있습니다.

저희 (주)서봉광업, 유통, 도시개발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시공해 드립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하여..

현대인들은 많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속에서 숨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유해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원적외선이 인체에 흡수되면 세포활동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증대됩니다.



아파트, 주택에서도 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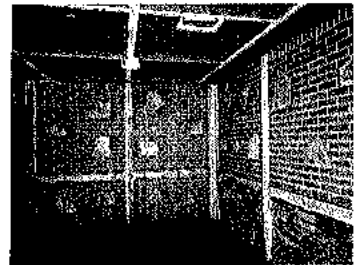
현대과학은 운모석에서 가장 많은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왕암운모석은 생활속에 여러가지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활력있는 삶을 보장합니다.

다량의 게르마늄을 함유한
왕암 천연운모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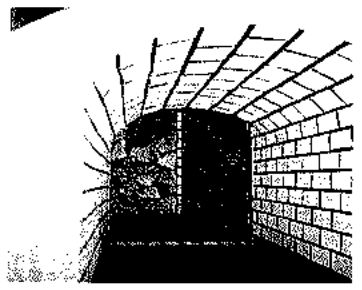


「대자연, 신인간, 초미래」라는 대명제 아래
저희 서봉광업이
원적외선 문화의 세계를



■찜질방에서 뛰어난 旺岩천연운모

기온 고온에서 방출된 원적외선 원속보다 52℃에서도 최고의 방출량을 인정받은 왕암천연운모는 최고의 찜질효과로 체내노폐물을 배출 스트레스 해소와 찜질방에 오신 고객들의 욕구를 최고로 충족시켜 줄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적외선이 인체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 기능의 활성화, 신진대사 촉진으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줍니다.

영업내용 및 제인점 상점은...

(02)565-8090/1, (02)568-6767,
(02)591-2000로 연락해 주십시오.

사업내용

●건설분야

신규 및 기존 주택, 아파트, 빌라, 원적외선 개인 찜질방 설치공사 (인테리어, 설비, 가리알제)

●찜질방 제인분야

신규 및 기존 찜질방 (왕암 천연운모석 사용 또는 교체 시설했어 풍부한 원적외선 방출을 위한 신규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사무나분야

호텔, 여관, 사우나, 안마사우나, 안마방, 병원 등 1천원 원적외선 왕암 운모를 이용

●실버분야

요양원, 양로원, 휴양소 등(원적외선 왕암 찜질방을 이용한 온돌 및 기타시설)

중판 및 대리점

●주요 대도시 연회(사, 공, 구)

●열린리 기기(난방공사 및 사우나 시설 공사업을 하시는 분 특별우대) 및 기타제

판매점을 운영중인 분

●건축분야 설계 및 열리기 설치공사업은 하시는 분

●건축업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시는 분

제인점, 취급점(의양지역)

신규 찜질방 개설 희망자, 기존 찜질방 개보수 희망자

특수판매점 운영

특수 판매조력이나 기존 영업조직 보유자(특별상장 운영)

책전

●왕암 천연 원적외선 운모 원석 및 부수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 인정

· 특허출원, 상표출원 제27907호

제27908호

제7188호

●왕암 천연 원적외선 운모 원석 및 부수제품 판매 대리점 인정

왕암 찜질방 강령을 강한 판매운명을 강한 경우 특별우대

●왕암 천연원적외선 운모 및 부수제품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왕암 천연원적외선 운모로 생산되는 '旺岩'도자기, 식품용기(온기, 찜아리)

·주방용기 취급 및 판매 대리점 우선 선정

광고 지원

●왕암 천연 원적외선 운모 원석 및 부수제품은 당사나 소속 경영하는 서봉광업소

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합니다.

旺岩천연운모석에 관한 상담은

(02)565-8090/1, (02)568-6767,
(02)591-2000로 연락해 주십시오.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11월호 통권 319호

發行人 : 金圭泰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俊憲
 委員 :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龍, 金宗植
 編輯·取材 : 弘報部/梁元錫, 鄭孝桓,
 趙漢國, 李善模, 尹泰日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0
 電話 :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 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 26(月刊)
 登 錄 : 1967년 3월 23일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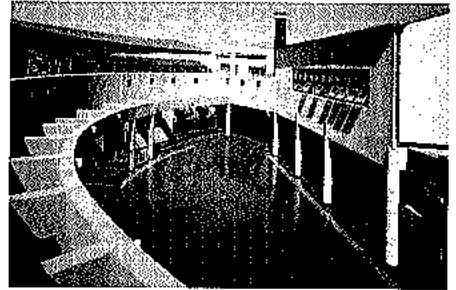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o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 581-5711, 581-5712~4
 Fax : (02) 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P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11월호 통권 319호

30회 정기총회	
개회사 / 金圭泰	30
치사 / 吳明	31
시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崔燦煥	32
회원작품	
석유개발센터 / 정림건축	36
어린이집 / 金仁喆	40
자명당 / 金興帥	44
대검찰청사 / 金秉年	48
작품비평(대검찰청사)	
서초 법조타운의 완성과 대검찰청사의 건축적 의의 / 李範幸	54
회원문예	
가을은 그렇게 부서져 내리며 오는가 / 朱秀一	59
계획작품	
언주빌딩 / 文聖雲	60
일하며 생각하며	
가을의 길목에서 / 文淑卿	62
작품노트	
남태령마을의 돌집 / 趙顯君	64
건축기행	
몽골건축을 찾아서(3) / 朴舒弘	6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3) / 鄭麟夏	74
기고	
온돌과 벽체의 구조개혁 공법에 대하여 / 朴成圭 + 池健相	87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오늘과 내일 / 李亨在	90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 尹汝郁	94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7) / 朴孝洵	96
현상설계경기	
대구축구전용구장	106
수원시립화장장	110
경기도공무원수련원	112
법령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14
통계	
1995년도 9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30
협회소식	132



표지사진 / 어린이집(실제: 김인철)

CONTENTS VOL 319. NOVEMBER 1995

THE 30th GENERAL MEETING	
Opening Address / Kim Gyu-Tae	30
Appreciation / Oh Myeong	31
FOCUS	
The Reform Bill of Architecture Law-Practice Ordinance / Choi Chan-Hwan	32
WORKS	
Petroieum Development Center / Junglim Architecture	36
House for Children / Kim In-Cheurl	40
Chamyeong-dang / Kim Heung-Soo	44
Supreme Public Procurator's Office Building / Kim Byung-Nyun	48
CRITICISM	
Completion of Seocho-dong Legal Town &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the Supreme Public Procurator's Office Building / Lee Peom-Chae	54
GALLERY	
In Autumn Flavor / Joo Soo-II	59
PROCESS WORK	
Eonju Building / Moon Seong-Un	60
ESSAY	
In Autumn / Moon Suk-Kyeong	62
WORK NOTE	
Stone House in Namtaeryeong / Cho Hyun-Goon	64
ARCHITECTURE TRAVEL	
In Research of the Mongolian Architecture (3) / Park Seh-Hong	68
SERIAL	
Korean Architect, Kim Swoo-Geun (3) / Jung In-Ha	74
FEATURE	
A New Construction Method / Park Seong-Kyu & Chi Keon-Sang	87
The Future of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 Lee Hyeong-Chae	90
What Problem? Whose Wrong? / Yoon Yeo-Wook	94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7) / Park Hyo-Soon	96
COMPETITION	
Taegu Soccer Stadium	106
Suwon Crematory	110
Kyeonggi Public Servant Trainning Center	112
LAWS & ORDINANCES	
114	
STATISTICS	
130	
KIRA NEWS	
13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68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마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853-2892 · 중랑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직할분회/(0331)43-6662 · 안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1)876-0458 · 송탄분회/(0333)6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아현분회/(0336)635-0545 · 광명분회/(02)684-5845 · 안산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8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59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82 · 제천분회/(0443)43-6253 · 옥천분회/(0475)33-8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 · 홍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천분회/(0452)34-3367 · 서산분회/(0455)64-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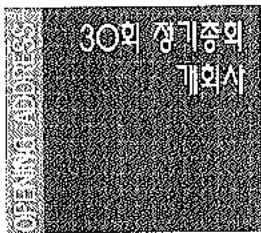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마리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3-3816 · 남원분회/(0671)32-5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2-5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 · 경주분회/(0561)77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안동분회/(0571)54-4832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580 · 점촌분회/(0581)53-6677 · 상주분회/(0582)32-5868 · 경신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36 · 영천분회/(0536)34-8258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진주분회/(0591)745-6403 · 송주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5-5632 · 밀양분회/(0527)355-4848 · 거창분회/(0568)43-609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

The Strength to Face and Future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역대회장님!

건설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주신 손학래 건축기획관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업무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본 협회 제30회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965년에 첫 출발을 시작한지 어제로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고해 볼 때, 협회는 격변하는 현대사의 가파른 격랑속에서 실로 많은 변화와 괄목할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외부세력의 거센도전에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회원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건축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협회로 성장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거, 건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건축사들은 험량한 이 땅에 풍요로운 인간 삶의 공간을 창조해 내기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아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자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요 자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30년동안 우리는 우리들 앞에 산적했던 여러 난관들을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앞에는 우리가 미처 예측조차 하지 못한 상황들이 새로운 난제로 닥쳐오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건축계의 현실은 세계각국의 경쟁자들에게 우리의 시장을 열어주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비 건축사가 자본을 앞세워 기업의 속성인 이윤추구를 위해 시장개방에 대한 대처 논리로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설계를 겸업케함으로써 세계와 경쟁하고 부실의 책임한계도 가릴 수 있다는 일부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주장은 토목설계는 모르되 건축설계만은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비건축인에게 위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일이라 하겠으며, 후세에 물려줄 건축문화 창출은 반드시 건축인들에 의해 이룩되어야만이 이 나라 건축이 생존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지난 임시총회에서 우리는 건축계의 재도약을 위해 협회를 정점으로 한 건축개혁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축개혁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건축계의 문제점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격변하는 변화의 시대에는 기존의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부적 합의와 결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축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건축인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변화와 변신을 애써 외면하려만 들고, 묵전의 이익에만 매달리려는 건축인들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얼마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말해주듯이 안이한 자세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등한시한 결과는 결국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며, 또 국민으로부터도 지탄과 외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몇몇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그같은 파고가 대다수 성실한 건축인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 지난날 피땀흘려 쌓아 온 공적과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뜨려 놓았는지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이같은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건실한 건축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이 땅에 건축문화 창달의 영구한 뿌리를 내리는 일에 우리 건축사가 나서서 주도적 역할을 성실히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해 나갑시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희생자가 죽들께도 하루속히 몸과 마음의 상처가 쾌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제 30성상의 나이를 맞은 우리 협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역사적 재도약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계에 내재된 모순과 가치의 혼란을 극복해 내는데 앞장섬은 물론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구심적 역할을 다해 낼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0주년에 즈음한 이 시간, 이 자리가 한국건축의 오늘을 지켜온 우리 건축사들에게 새로운 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코저 합니다.

1995. 10.24



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

Put Our Energies Into The Strengthening of Design Competence

吳 明 / 건설교통부 장관

by Oh Myeong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30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축문화 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오신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 건설관계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추방」을 표방하고, 온 건설업계가 새로운 도약과 결의를 나지는 가운데 발생한 크고 작은 부실사고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자책감을 지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인 발전을 소홀히 한 결과

오늘과 같은 부실시설물을 양산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라는 후진국적 병폐가 아직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건설정책의 책임자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개선과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설계와 성실한 감리, 그리고 건실한 시공을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장개방에 따라 무역전쟁, 정보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제경쟁력의 강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만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들도 더 이상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인으로서의 넓은 안목을 갖고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설계분야의 경쟁력강화는 우리 모든 건축사의 참여와 창의력 발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일층 분발을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선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지를 모르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5. 10. 24

1. 서론

지난 1995년 1월 5일 개정된 건축법이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현재는 시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공포를 위한 준비와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건축법 시행령시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한 몇가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The Reform Bill of Architecture Law-Practice
Ordinance

崔燦煥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2.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1)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면적 합계의 1/10이하의 설계변경은 사용검사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으며

2)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감리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공사감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3)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의 기준이 되는 용도를 현재까지는 32개 군으로 분류하였으나 유사한 용도를 통폐합하여 10개군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용도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4)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굴착이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공사를 감리하는 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토목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5)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효율을 제고한다.

3. 건축신고의 확대조치에 대하여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며 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건축허가는 허가신청시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허가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신고는 누구나 간단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가 없어도 되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설계도서의 작성과 절차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민원인은 이러한 절차를 기피하려는 성향

이 있다. 단순한 생각에서 보면 통제기능이 강한 건축허가 보다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건축신고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법규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큰차이는 없으나 건축사의 설계도서작성여부, 공사감리의무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정 규모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없이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설계비 및 감리비의 절감과 간편한 절차 등으로 이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형건축물이라해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일반국민이 설계와 공사감리, 시공 등을 임의로 할 수 있음으로써 건축물의 질적수준 저하와 함께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흔히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설계비와 공사감리비 등의 비용이 절약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게 된다. 설계비와 감리비 등은 용역비로서 전체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율도 낮을뿐 아니라 용역대가는 용역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에 불과하다. 즉, 설계와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줄여 더 큰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건축주가 전문성이 없고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물은 개인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내구성을 지닌 국가자산의 일부로서 개인은 물론 국가도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규제완화와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등의 목전의 이익만을 좇아 전문가의 참여 없이 설계되고 조잡시공을 하는 등 수준낮은 건축물을 양산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는 업무량에 비해 그 설계비가 적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국민의 설계에 대한 인식, 설계사무소의 기피, 행정수요의 절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실정에서 건축물의 질적수준 제고는 어렵게 되며 대형건물만이 아니라 소형건축물이 하나씩 모여 지역의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건축문화를 만든다고 볼 때 소형건축물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국가자원의 관리측면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행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

하되 설계비의 상당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표준설계도서 제도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지원책으로 볼 수 있지만 개별 특성을 가진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설계도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시에 설계기금으로 일정액을 받아 특별회계로 하고 이를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비지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와 질적수준의 제고, 규제가 아닌 자금지원에 의한 유인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가 개인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은 건축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의 형평성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의 기본역할과 기능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분배의 실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를 규제만에 의해 달성하고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가 아닌 장려와 육성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꼭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질의 보상은 정부가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지원 육성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이 정부의 기본역할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되 정책의 사각지대와 그늘진 곳은 없어야 하겠다. 현행제도에서 건축신고의 확대는 절차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는 동의 하지만 건축물의 질관리와 잘못된 관행의 타파라는 관점에서 별도의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의 보수요율도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특별히 낮게 책정하여 결코 용역비를 절감하겠다는 좁은 생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건축물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써 개인의 자산가치의 하락은 물론 국가 공익적 측면에서 공간관리와 국가 자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전문가의 전문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알뜰한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다중이용시설은 이번에 새로 제정한 용어로 “연면적 5,000㎡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 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

설, 관람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법제도의 개선에 공통적인 사항중의 하나는 대형사고 뒤에는 그 전에 인식하지 못했거나 덮어 두었던 새로운 큰 문제점이 있음을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바탕으로하여 그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법령이 개정되었다.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게 되었고 대형화재사건으로 방화구획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새로 도입된 용어의 개념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넷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쉽게 생각하면 다수의 사람(공중)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축물과 고층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명칭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가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므로써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서 주요 논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은 공공공사의 공사감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민간공사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점차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리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문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를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한 감리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중소설계사무소가 이와같은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한 감리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중소설계사무소가 이와같은 전문기술인력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설계자가 배제된 공사감리는 업무영역과 한계 등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효과적 감리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투입되는 것이지 고정인력을 배치하는 형식을 고집하게 되면 기술인력의 효율적 관리, 부족한 기술인력의 활용, 경제적 비용증감 등의 여러면에서 큰 불이익이 있게 마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책임감리된 종합감리도 설계자의 감리를 의무화하고 기술인력은 계약에 의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투입되어 실질적인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본다.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설계자가 배제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감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대상건축물, 감리방법, 기술인력 활용 등에는 개선할 점이 있다. 특히,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기존 건축사의 감리업무가 크게 줄어들게 되며 고급기술인력활용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대상건축물의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설계사무소에서 시행하여 오던 공사감리를 감리회사로 일시에 바꾸기 보다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의 수준으로 감리할 수 있다면 이를 당연히 허용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감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회사에서 하는 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인력을 활용하면서 공사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제재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갑자기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상 업무의 수행능력과 결과를 중시하여야 하며 형식에 얽매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업무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중시설의 감리업무를 강화하여 감리회사에 일임할 경우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건축사업계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신규 감리회사가 많이 설립하게 되어 난립될 우려가 있다.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기술인력을 분산시키게 되어 기술인력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5. 일조권규정에 관하여

건축물간의 공지확보를 목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 각부분까지의 수평거리에 따라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제86조) 처음에는 정남, 북향을 함께 규제하였는데 소규모 대지에서 정남북방향을 같이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배치, 옥외공간활동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정북방향만 규제하도록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접지의 일영과 공간확보를 고려하고 그 폐해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정북방향을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방향으로 된 간선도로변 등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물간에 틈새공간이 생기게 되어 가로경관이 연속성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일조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또

한 2층이하 높이 8m미만의 건축물에는 건축물높이의 1/4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와같은 사선규정으로 인하여 건축과정에서 건축물높이의 변경으로 인한 시정하기 어려운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던 바 이를 절대거리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2층이하 8m이하인 건축물은 절대거리로 하고 3층이상 또는 건축물높이가 8m를 넘는 건축물은 종전의 사선규제로 이원화하였다.

1층으로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2층으로서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2m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사실상 2층으로 높이 8m이하인 경우는 종전높이의 1/4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되어 법개정시 종전규정보다 완화한다는 당초의 건축이 내용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법규정에서 깊은 연구점토보다는 숫자의 단순성에 의해 결정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조권규정으로 인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규정의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하기 쉽고 일반국민이 갖는 정서적인 개념과 법규정의 차이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다는 점이다. 일조규정은 일조보다는 대지내 공지확보개념에 훨씬 가깝다고 여겨지므로 건축법시행령 제81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둘째, 정북방향의 획일적 적용으로 건축물의 향, 진·출입방향, 마당의 위치와 활용 등에 따른 여러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수평거리의 기준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기타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북방향으로 공공공지에 접한 대지일 경우 공공공지가 높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로 전용되는 셈이다. 실제로 공공용지를 북쪽에 접한 대지에서는 충분한 높이로 건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높이규제를 받게되어 주거단지에서도 도로와 공공공지 등의 위치에 따라 높이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기소유의 대지경계선을 기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공공용지를 사유지의 건축물높이 규제에 전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사유지 못지않게 공공용지

도 보호받아 마땅하며 공공복리증진과 공익우선이라는 법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유지에 우선하여 공공용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부가 공공용지를 잘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다수의 공중이라는 점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공공용지를 높이규제에서 포함시키는 것은 일조권규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선제한규정 등 건축물높이 규제에 적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예로서 공원에 접한 대지의 높이 규제를 불경우 공원이 자기의 소유대지와 같게 되는 엄청난 모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미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북방향으로 규제함으로써 남쪽공지를 줄이고 북쪽공지가 크게되는 부작용이 있으며 북향건물을 권장하는 결과가 될 뿐아니라 이웃과의 분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공지는 자기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타인의 북측공지를 건물의 전면공지로 인식하게 되면 이웃과의 분쟁은 한층 많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이와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주택지에 건물의 정면인 남측공지에 비해 후면의 북측공지가 크게 남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실증적 사례가 있다. 건축법시행령에 허가권자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개발지 등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정북방향의 규제기준을 계속함으로써 이격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행정청에서도 이법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하였던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상대적 피해의식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허가권자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정남방향 또는 건축물의 주방향(임의의 1개방향을 선택하여)으로 이와같은 거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되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건축물과 옥외공간과의 유기적 결합 등이 가능해질 것이며 빈발하는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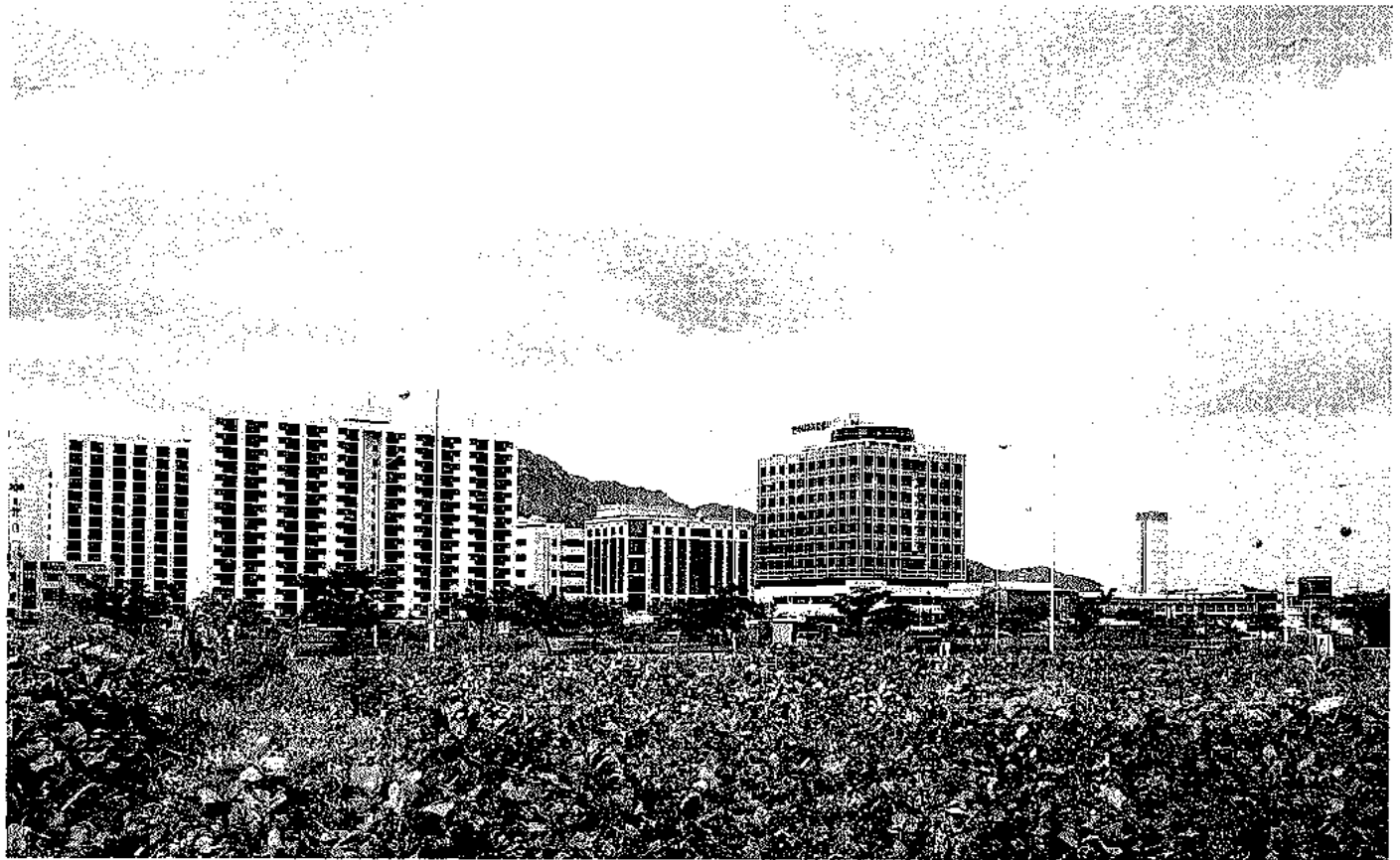
Petroleum Development Center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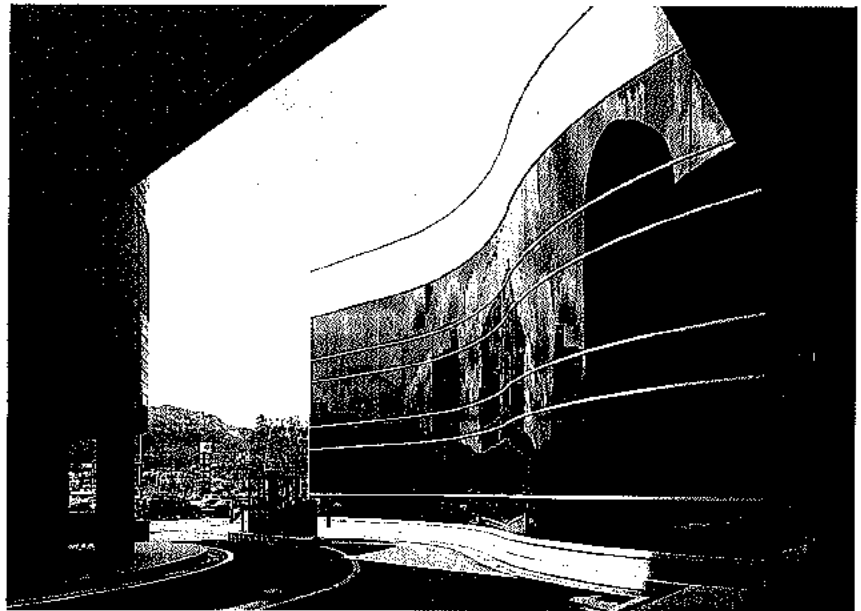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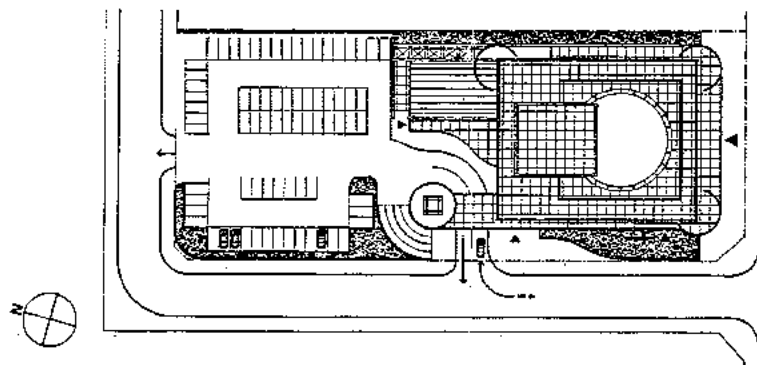
원경

위치 / 경기도 안양시 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28블럭 3,4,5호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6,318.7㎡
 건축면적 / 2,386.73㎡
 연면적 / 24,234.37㎡
 건폐율 / 37.77%
 용적률 / 249.78%
 규모 / 지하3층 지상1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THK 30 화강석바너구이, 물갈기, 알미늄커튼월
 구조설계 / 우림구조
 기계설비 / 미래설계
 전기설비 / 나래기술단
 시공 / 코오롱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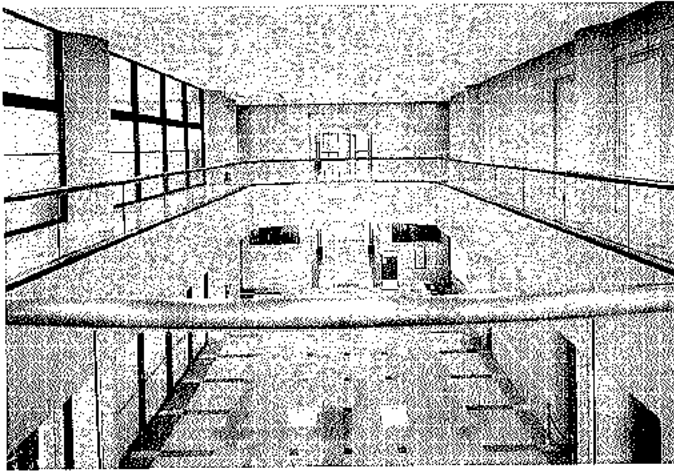
Location / 28-3,4,5, Pyeongchon-dong, Anyang-shi, Kyeonggi-do
 District / Commercial, Urban Design
 Site Area / 6,318.7㎡
 Bldg. Area / 2,386.73㎡
 Gross Floor Area / 24,234.37㎡
 Bldg. Coverage Ratio / 37.77%
 Gross Floor Ratio / 249.78%
 Bldg. Scale / 3 Stories Below Ground, 11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THK 30 Granite
 Structural Design / Uram
 Mechanical Services / Mirae Design
 Electric Installation / Nara Eng.
 Constructor / Korong Cons.



부출입구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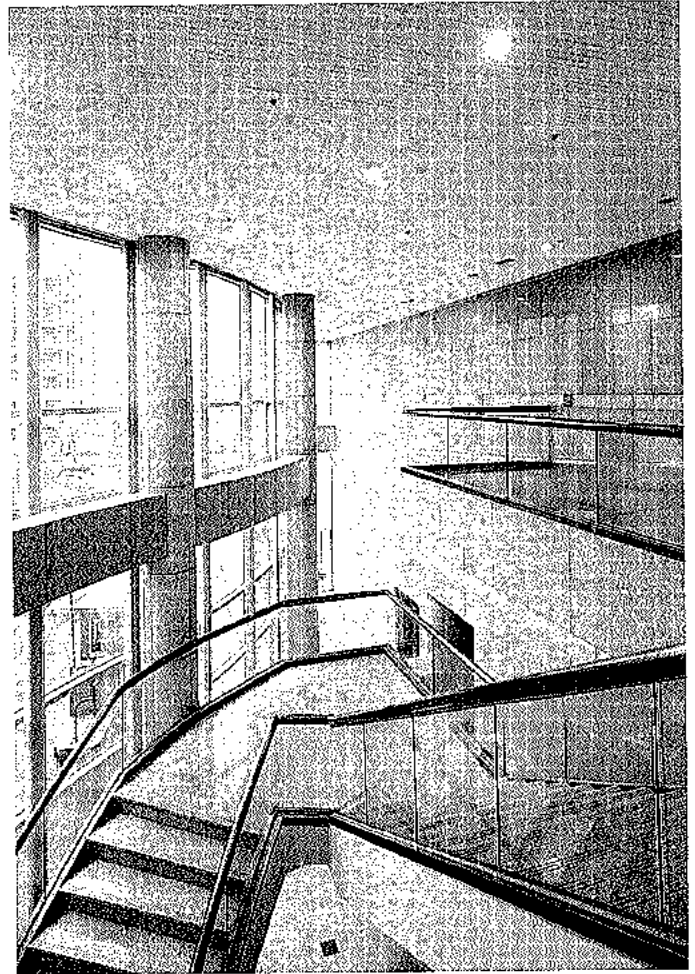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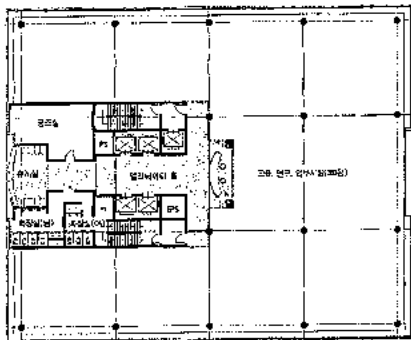
2층에서 본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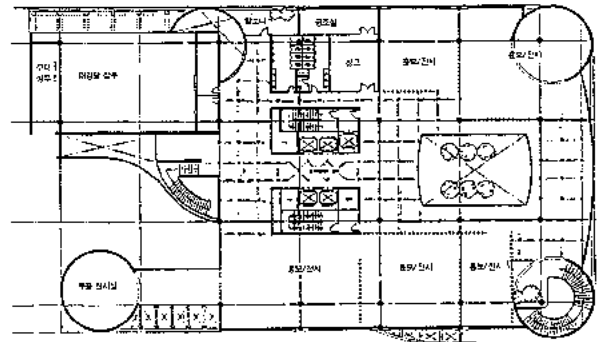
홍보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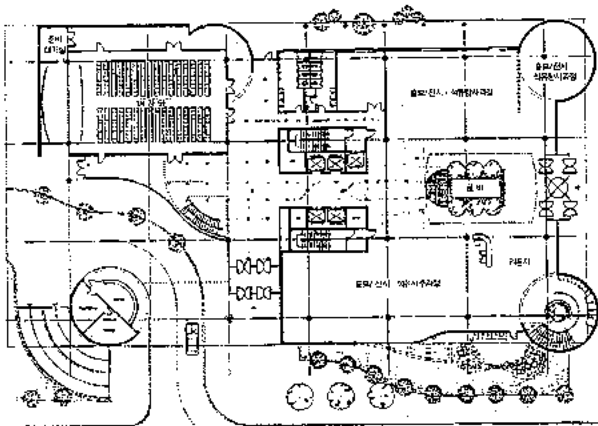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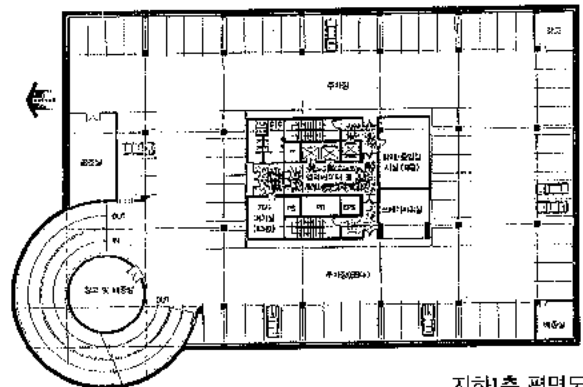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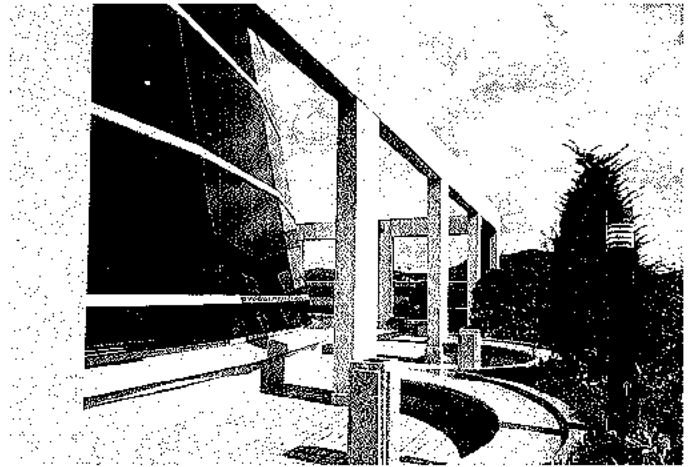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배면



옥상 정원



정면

91년 말에 설계경기를 통하여 진행되었던 석유개발센터는 석유개발공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중, 석유개발·비축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회관 기능과 국제석유시장 비축 및 석유개발정보의 조사 분석 관리를 위한 석유정보센터,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회의, 연구장소 및 수도권에 국내 최초의 석유개발 첨단 정보 및 기술센터빌딩의 역할에 충족되도록 설계되었다.

부지의 위치는 평촌 신도시였으며 현장답사 당시에는 아파트 골조 몇채외에는 도로공사조차 되지않은 황토벌판뿐이어서 도시적 문맥을 찾기 보다는 향후 주변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석유개발센터의 고유한 건축적 어휘를 찾기 위하여 '석유개발해상시추선'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형태구조에 초점을 둔 상징적 접근 방법으로 디자인을 접근하였다. 즉, 4개의 독립된 원형타워로 기반부를 구성하고 그 위에 절제된 2중격자로 완결된 하이테크한 유리박스를 올려놓음으로서 단순한 매스의 분절과 대비를 통하여 내부 기능과 외부 형태가 일관성을 갖도록

디자인 하였다. 석유개발센터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 표현

- 3단 구성에 의해 품위와 안정감 부여
- 대국민 친화감을 주는 형태, 재료사용
- 집회, 문화, 휴식공간 확보로 공공성 부여

—석유개발센터의 고유의 형태언어 제안

- 3단구성 : 공공성 표현
- 4개의 원통기단 : 해상 시추선 이미지, 공적 공간 수용
- 상부 GRID : 합리성과 고도의 정보, 업무 시설 표현

—효율적인 공간 배치

- 신도시의 공간 구조와 조화
- 성장, 변화에 대응하는 마스터 플랜
- 보차 분리의 동선체계

—시설물의 집중화, 체계화,

• 관련 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업무효율 증대

- 저층부 : 공적공간
- 상층부 : 업무공간

—정보화 시대의 건축

- 설비의 협조 연관체계 구축
- I.B.S 계획 수립
- 쾌적한 건축환경 계획

—조직적 합리적 기술계획 수립

- 토탈디자인 개념에 의한 접근 (I.B.S, 기계, 전기, 구조, 토목, 조경, 건축)
-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이상과 같은 몇가지 원칙 아래서 부분적으로 마흡함이 있긴하지만 초기 이미지들이 그대로 지켜지기까지는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막 준공된 석유개발센터는 평촌 신도시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건축으로서 승화되길 기대한다.



어린이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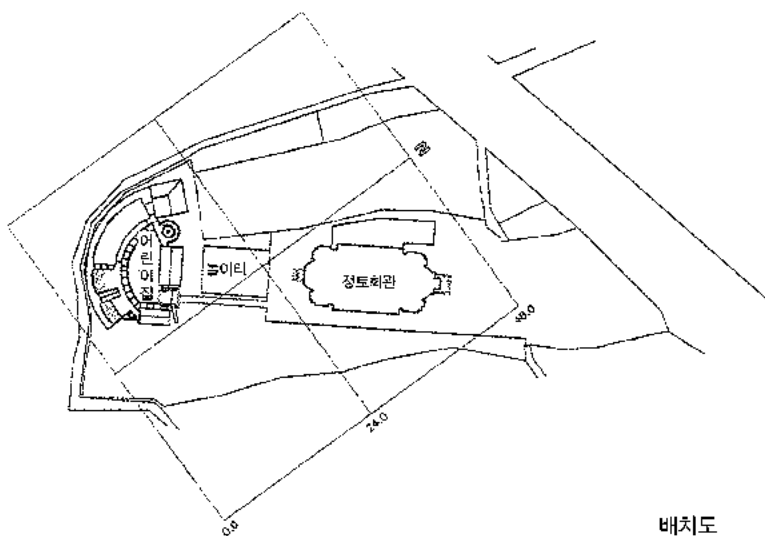
House for Children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Designed by Kim In-Cheurl



동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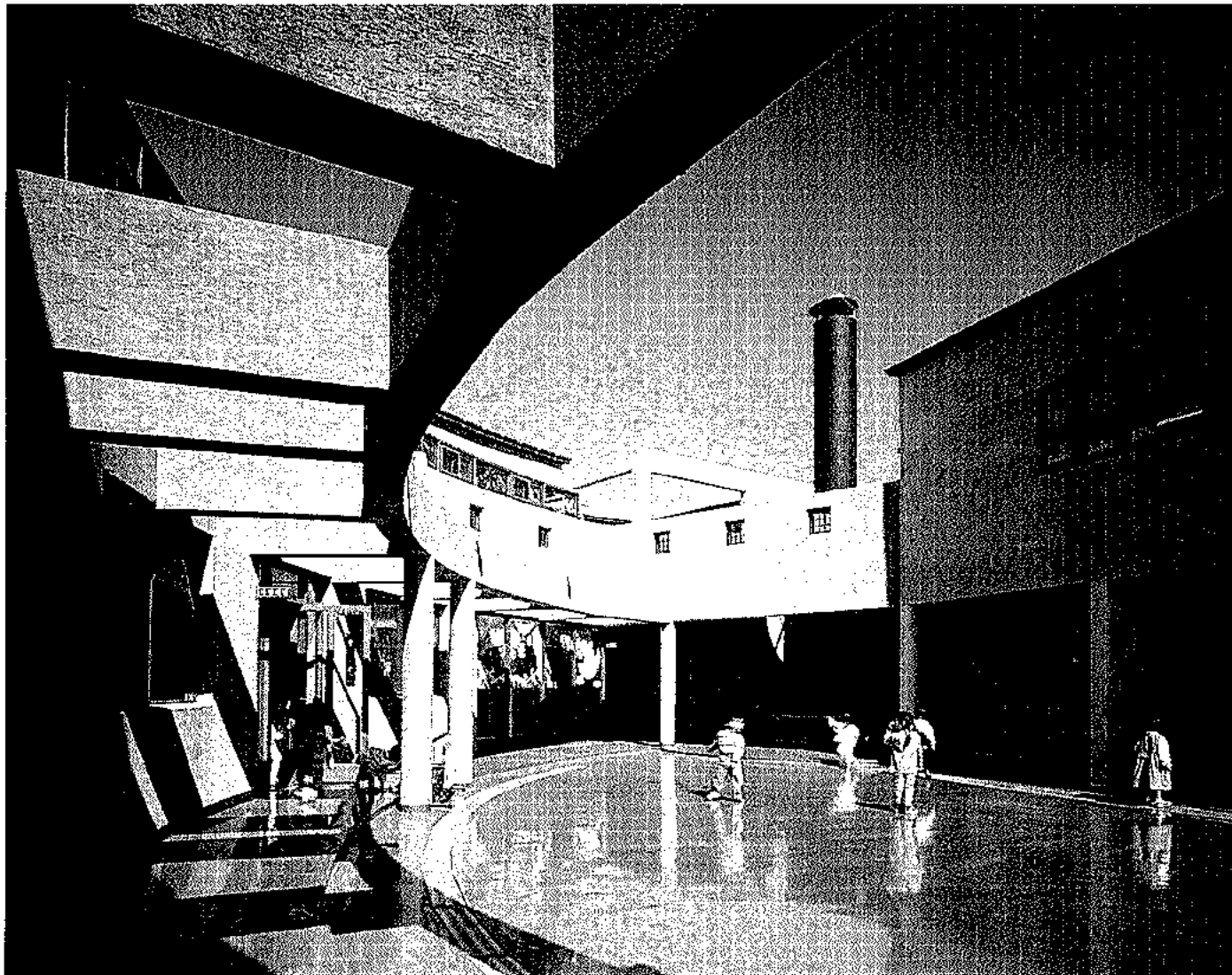
위치 / 전북 이리시 신동 485
대지면적 / 6,247㎡
건축면적 / 441.91㎡
연면적 / 793.06㎡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RC조
용도 / 보육시설
외부마감 / 벽-드라이버트
 지붕-아스팔트 상술
설계담당 / 정승권
건축주 / 원불교 정토회관
시공자 / 제일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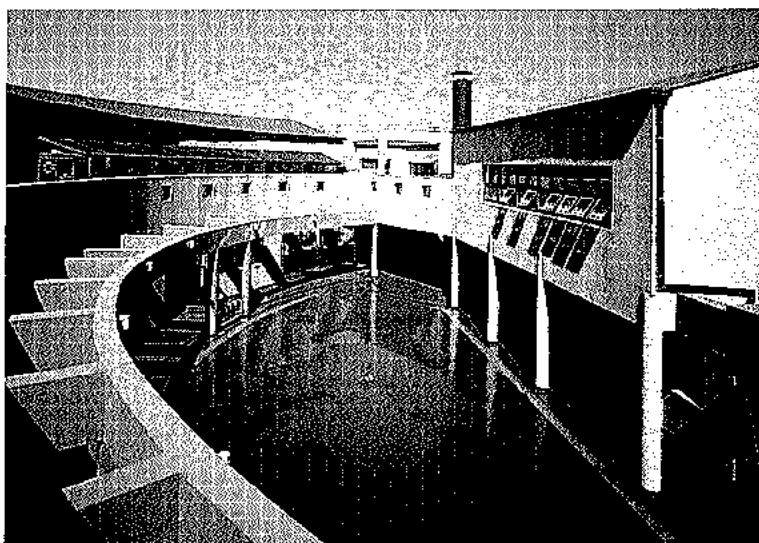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남측에서 본 마당



남측 2층에서 본 전경

Location / 485, Shin-dong, Iri-shi, Cheollabuk-do

Site Area / 6,247㎡

Bldg. Area / 441.91㎡

Gross Floor Area / 793.06%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Use /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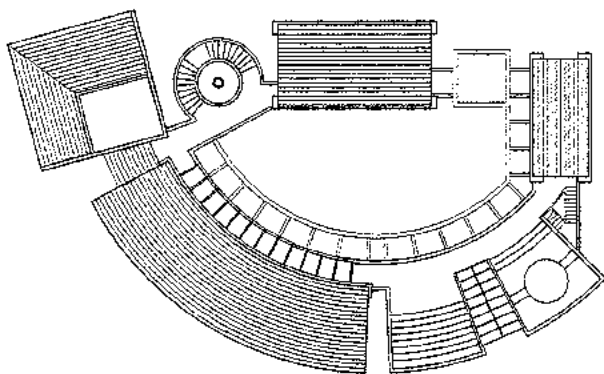
Exterior Finish / Wall-Drybite

Roof-Asphalt Si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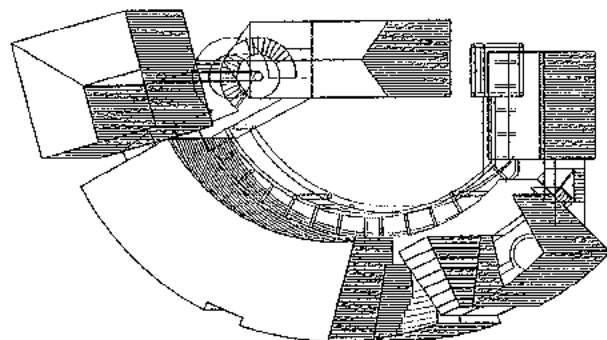
Designer / Cheong Seung-Kwon

Client / Wonbulk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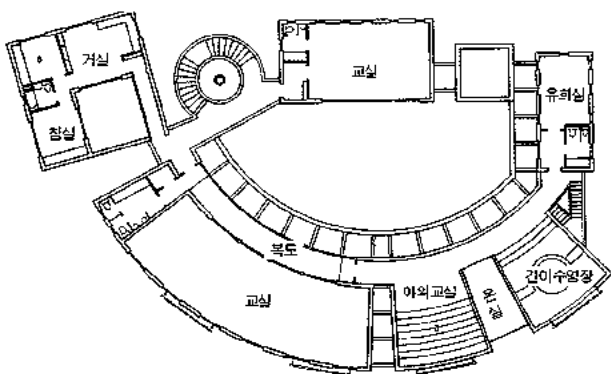
Constructor / Jeil C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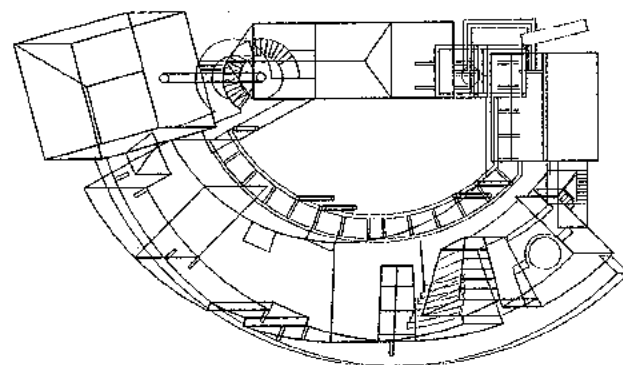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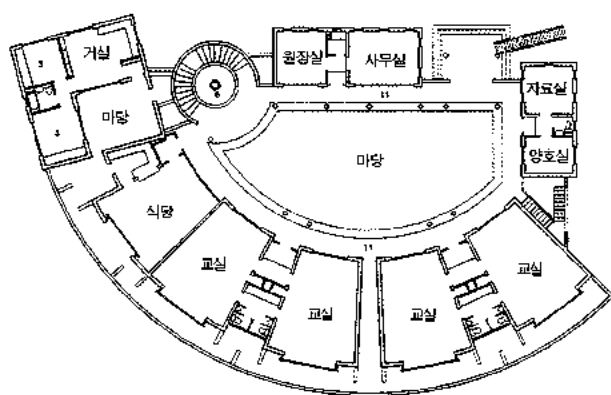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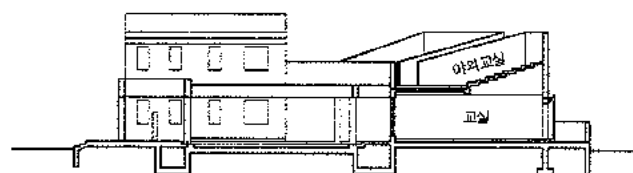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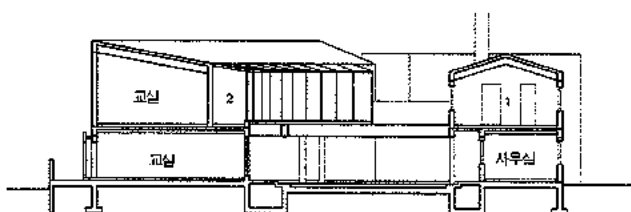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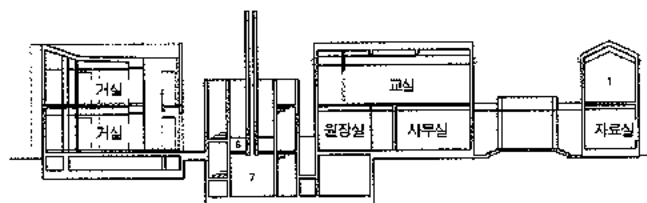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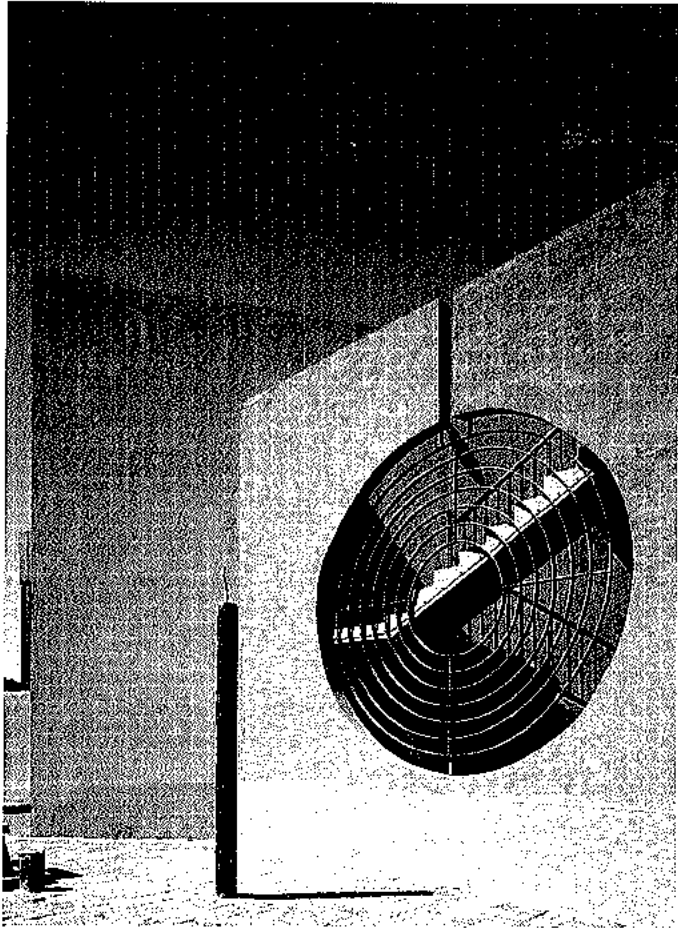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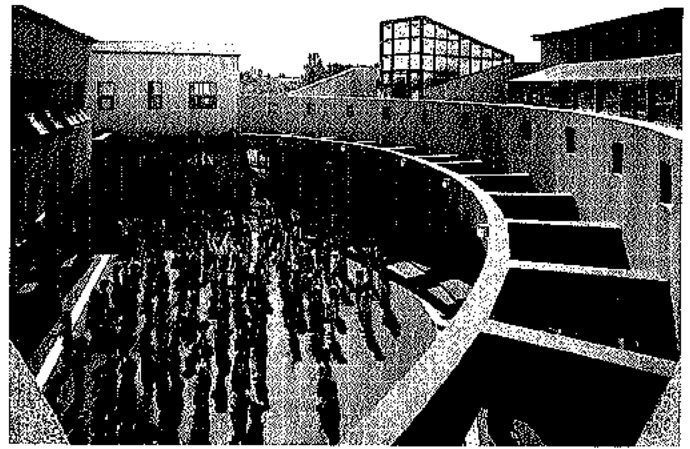
주단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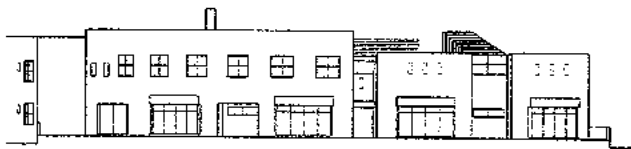
계단실 외벽



북쪽 2층에서 내려다 본 놀이공간



진입로에서 본 놀이터와 동측원경



우측면도



교실에서 본 창

어린이이라는 대상과 교육기능을 소화하는 방법론으로 잘게 나누어진 공간을 상상하였다. 하나로 집약될 수도 있는 공간을 분화시킨것은 대지의 여유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만 나누어진 공간요소에 의한 또하나의 공간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 공간구성에서 보이는 채나누기와 그것의 집합으로 다시 구성되는 전체의 구도로 주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방법론은 지금의 방법이 된다. 가구식 구조의 한계가 동일한 형태라고 한다면 전통 건축의 개념에서 형태요소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지 공간의 영역을 구획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개별적인 형태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각 공간은 관계의 설정이라는 의미에 의하여 존재한다. 마당이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나누어진 공간을 다시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간을 설정하는 틀이 만들어졌을 때 벽은 매우 가볍게 취급될 수 있다. 중력을 받지 않는 가변성은 따라서 투명한 존재로 추상화 될 수 있으

므로 채와 채의 관계를 결정하는 사이의 존재 또한 상징적인 건축요소가 된다. 채움과 비움의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에서 개별적인 요소는 전체성 또는 집합성을 위한 개체일 뿐이다. 집합적인 건축에서 형태는 실루엣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건축의 원경이 되며 접근하는 경과에 따라 공간화 된다. 또하나의 원경이 내부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어있는 마당으로 인하여 가능한 그것은 공간속에서 다시 건축을 경험하게 한다. 나누어진 각각의 채는 다시 각각의 건축을 갖는다. 공간의 내외에서 동시에 건축이 존재할 수 있는 복합성은 형태적 요소가 배제된 건축을 자연화시킨다. 연면적 240여평의 규모를 각각의 기능에 맞추어 나누고 마당을 중심으로 다시 모아놓았다. 비어있는 마당은 채와 연결되는 공간이 된다. 각각의 채는 단순한 형태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자리를 잡아 무리를 만든다.

채들이 갖고 있는 색은 의미라기보다 기호에

가깝다. 어린이의 집에 어울리는 색의 요구가 있었음을 숨길 필요가 없겠으나 색의 선택은 각각의 기능을 구분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이조 민화에서 읽을 수 있는 색의 느낌을 참조한 것으로 초록이 바탕이 되는 황, 적, 청의 조합이 되었다. 색에 의한 기호의 구성이 원초적이며 직설적인 감성 교감이므로 어린이의 공간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리라. 그것이 우리의 정서를 규정짓는 근원일수도 있을 것이다. 모노톤과 중간색의 세련된 조화보다 원시적이기까지한 원색의 대비에 망설여지지 않는다. 채취된 염료의 색이 직설적으로 사용된 민화의 감성을 지금에 어떻게 접속시켜야 할지는 아직 공부가 모자란다. 당집의 모호한 어둠속을 떠도는 원색의 신비로운 기억과 추억끝으로부터 지붕속 공간으로 확산되는 영롱한 색의 의미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무엇부터 시작할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자명당

Chamyeong-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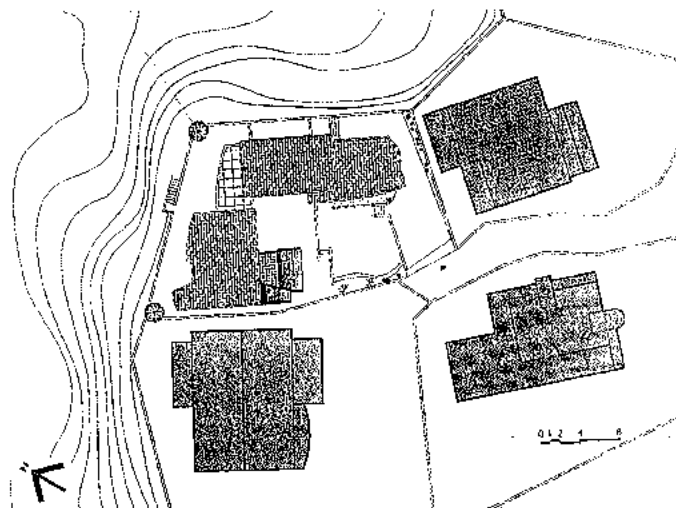
金興帥 / 중합건축사사무소 단우·므림

Designed by Kim Heu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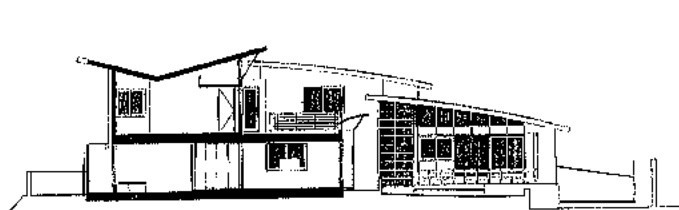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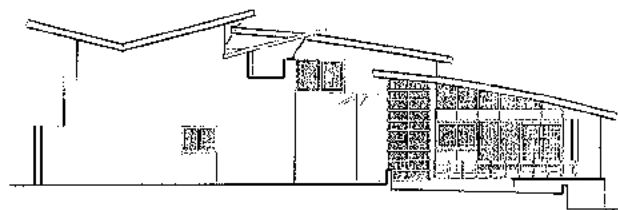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05-2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생배지구
 대지면적 / 450㎡
 건축면적 / 172.04㎡
 연면적 / 325.51㎡
 건폐율 / 38.23%
 용적률 / 54.19%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조적조 + 목구조



배치도



단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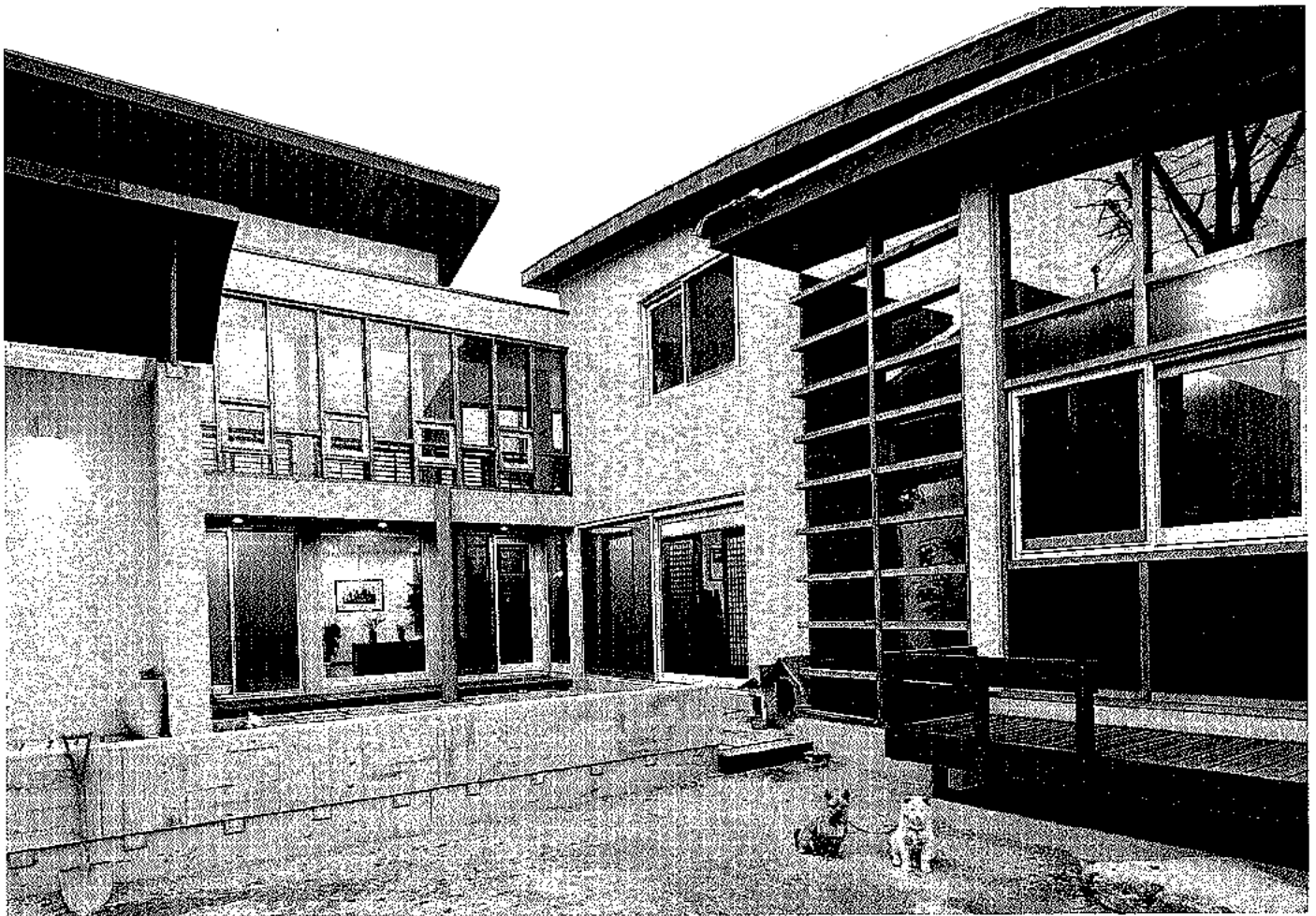


거실에서 바라본 앞마당



현관 진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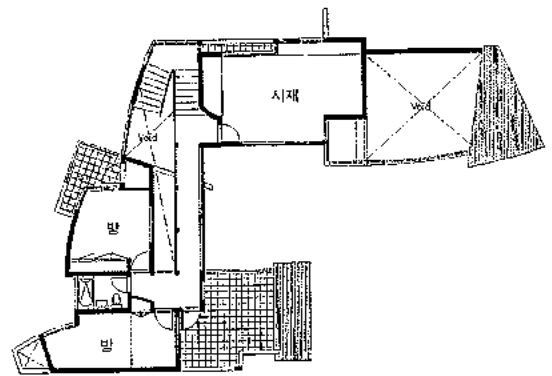
Location / 105-20, Shinyeong-dong, Chongno-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450㎡
 Bldg. Area / 172.04㎡
 Gross Floor Area / 325.51㎡
 Bldg. Coverage Ratio / 38.23%
 Gross Floor Ratio / 54.19%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d Brick + 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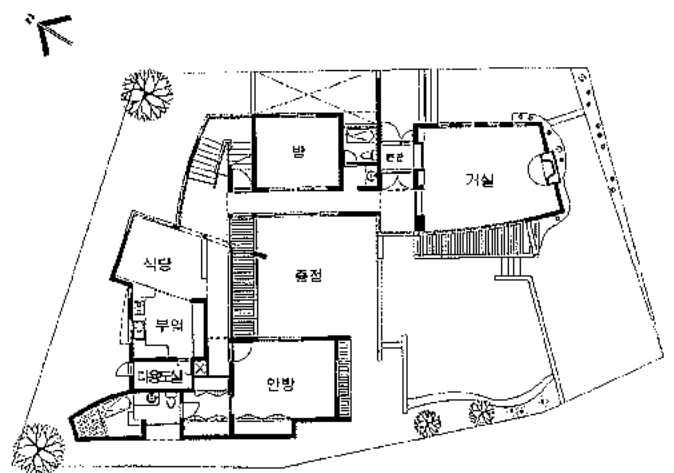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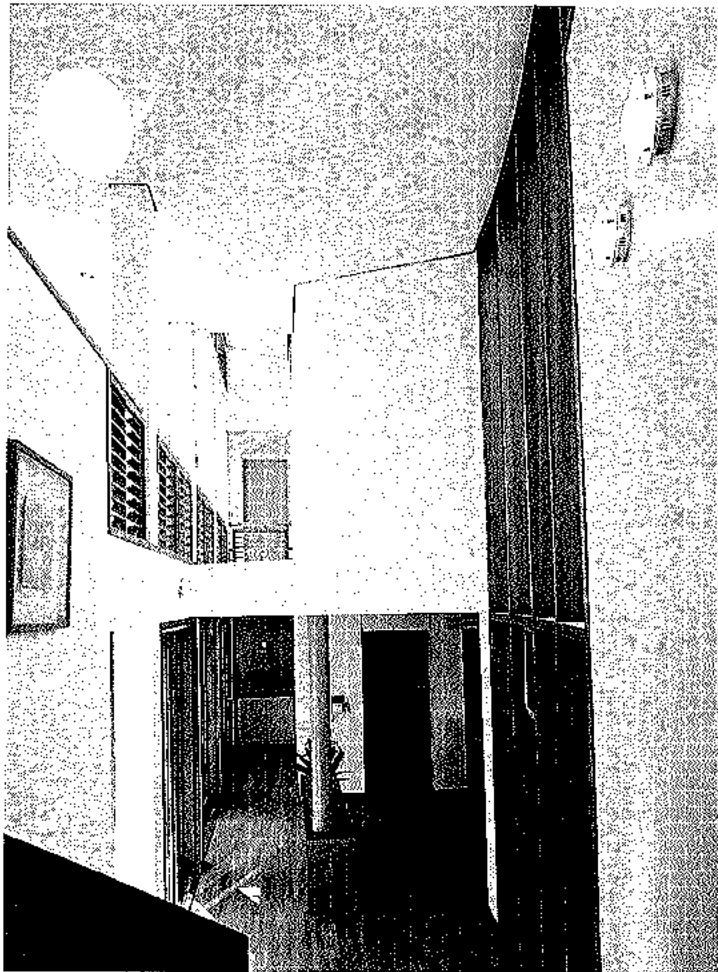
2층 복도와 계단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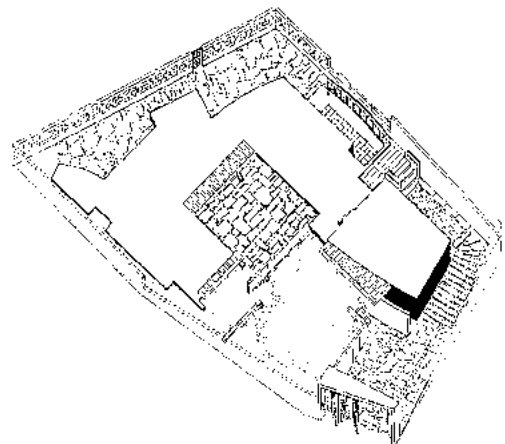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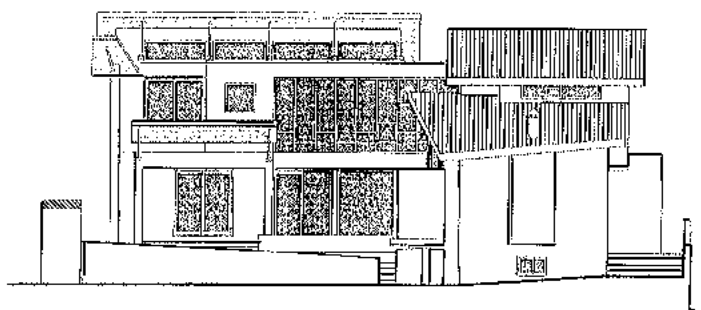
계단에서 본 1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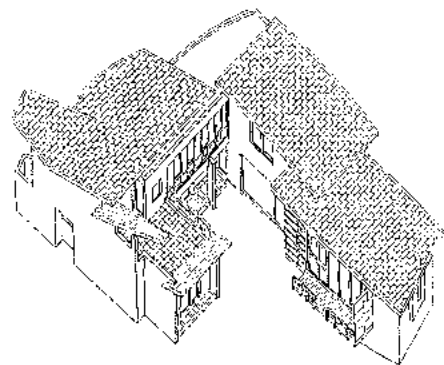
마당 진입부



아이소메트릭 1



정면도



아이소메트릭 2

북한산의 경관을 느끼는 자명당

대지는 건물의 정면 즉 마당을 면하고, 남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인근 주거들이 놓여있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심하고, 조망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도시형 주거의 원형인 중정을 도입하였고, 내부 동선은 중정을 가운데 두고 회유하도록 하여 중정을 최대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정면이 막혀져 있는 반면 뒷쪽으로 대지의 높이가 낮을 뿐 아니라 북한산이 펼쳐져 있어 아주 좋은 경관을 이룬다. 이 경관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현관을 뒤에 두어 대문에서 현관

으로 진입하면서 북한산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식당 부분, 이층의 침실들이 경관을 향하여 대응하도록 처리하였다.

좌우가 넓은 특이한 대지 형상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좌우 방향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시퀀스로서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 보이드를 두어 앞마당, 중정, 내부 보이드, 뒷마당으로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외부 공간은 이미 분절되어 있는 앞마당, 중정, 뒷마당에 현관과 대문을 잇는 진입마당, 서비스를 위한 부엌마당 등으로 분화되어 담과 건물사이의 남겨진 마당을 적극적인 마당 공간으로 바꾸며, 각각의 마당은 불규칙한 대지 형상과

맞물려 다양한 형상의 마당을 이룬다.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기능은 안방, 식당, 부엌, 할머니 방, 아이들 침실로 주거기능의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안체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중정(안마당)을 중심으로 놓여지며 진입 마당 쪽에는 사랑채에 해당하는 거실을 두어 진입 마당은 사랑마당으로의 역할을 한다.

거실, 서재 부분은 원형 요소의 형태로, 침실 부분은 경사 지붕을 이용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기본형이 대립하여 이 기본형은 여러개의 변주를 가지며 형태적인 대화를 하도록 고려하였다.



대검찰청사

Supreme Public Procurator's Office Bui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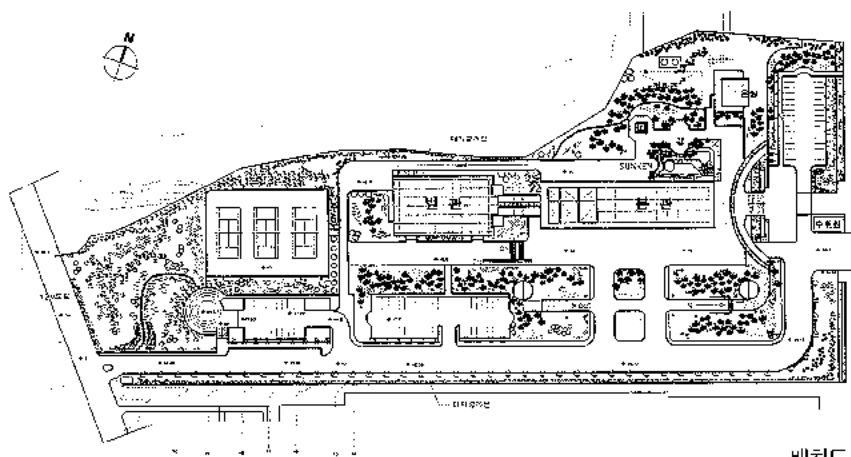
金秉年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Byung-N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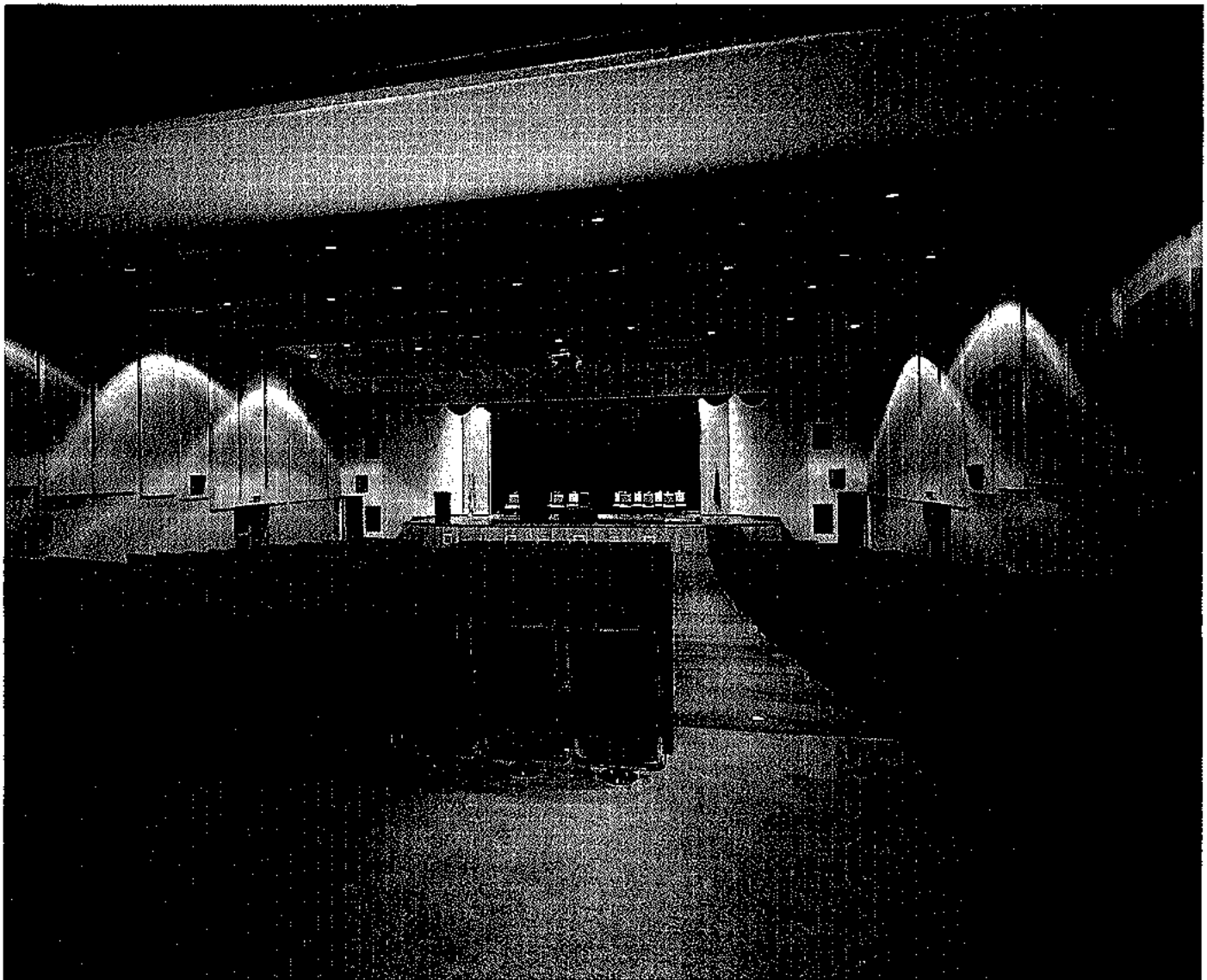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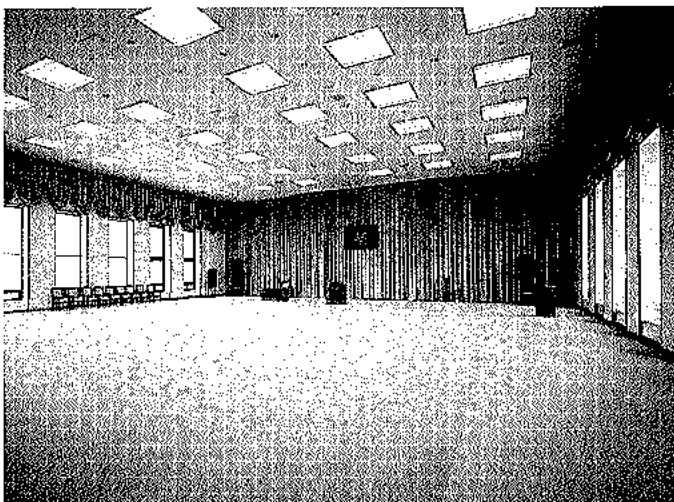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2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36,392㎡
 건축면적 / 4,176.35㎡
 연면적 / 45,517.76㎡
 건폐율 / 10.7%
 용적률 / 74.83%
 규모 / 지하 3층, 지상 15층, 옥탑 1층
 구조 / 본관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별관 -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설계 / (주)선진엔지니어링
 기계설비 / (주)선진엔지니어링
 전기설비 / (주)선진엔지니어링
 조경 / (주)선진엔지니어링



배치도



강당



회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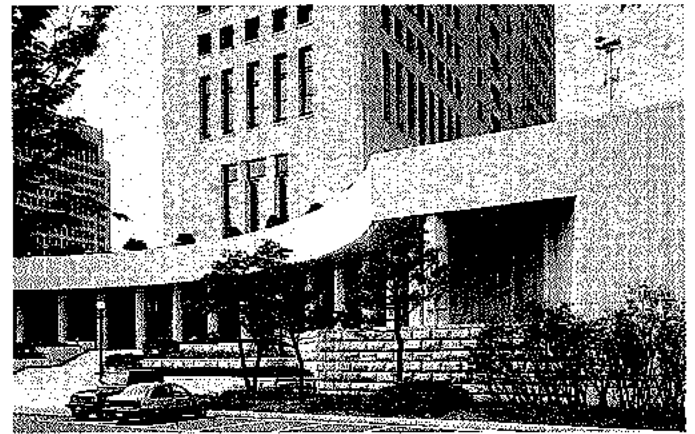
Location / 967-2, Seocho-dong, Seocho-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36,392㎡
 Bldg. Area / 4,176.35㎡
 Gross Floor Area / 45,517.76㎡
 Bldg. Coverage Ratio / 10.7%
 Gross Floor Ratio / 74.84%
 Bldg. Scale / 3 Stories Below Ground, 15 Stories Above Ground, 1 Story Penthouse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sign / Sun Jin Engineering Co.
 Mechanical Services / Sun Jin Engineering Co.
 Electric Installation / Sun Jin Engineering Co.
 Landscaping / Sun Jin Engineer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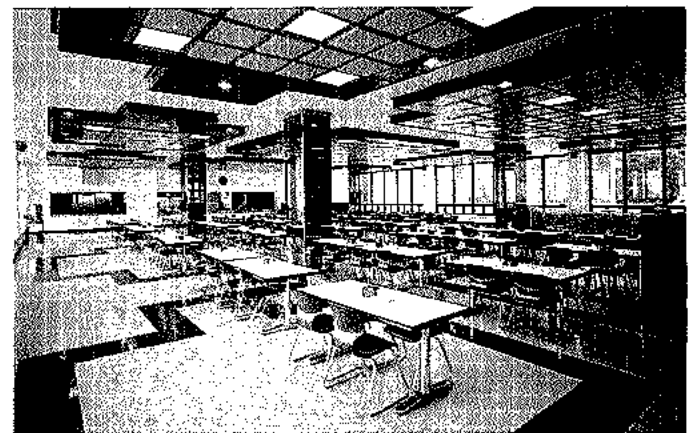
주출입구



동측 전경



원형 회랑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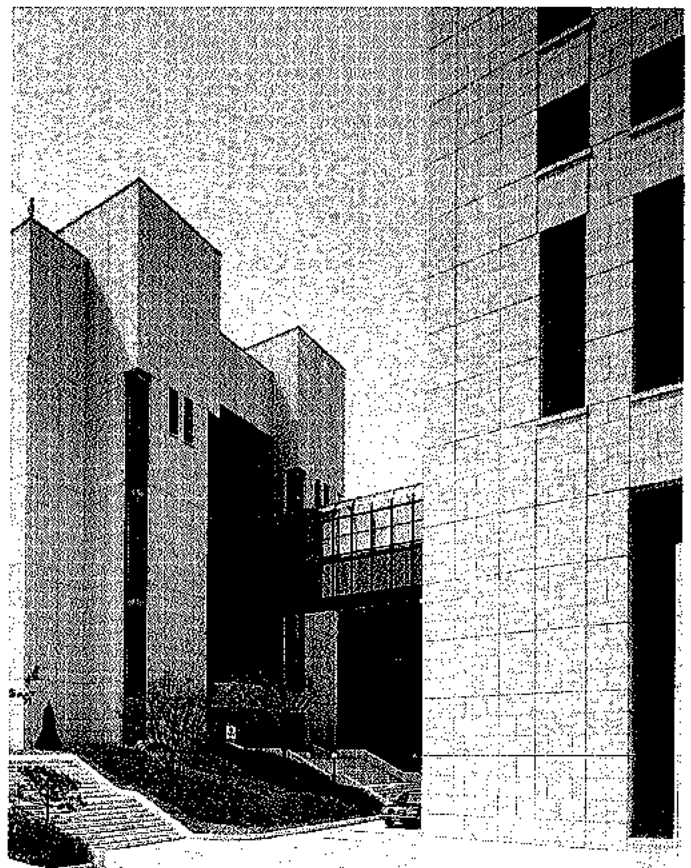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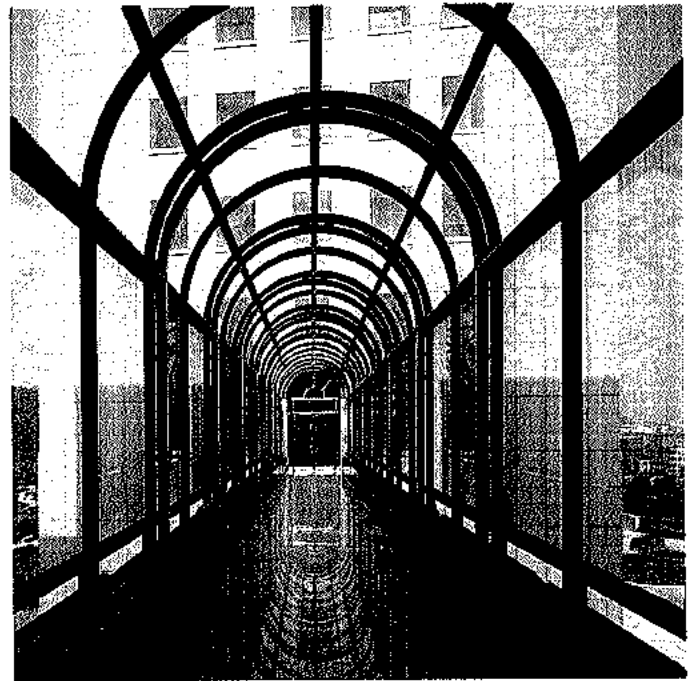
본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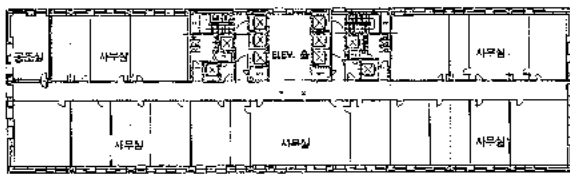
본관과 별관 연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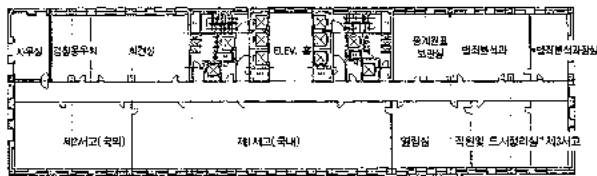
본관 민원실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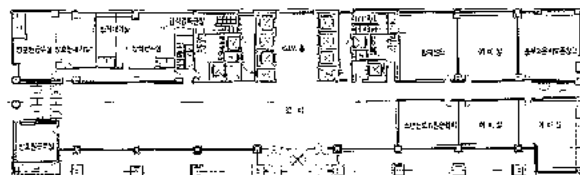
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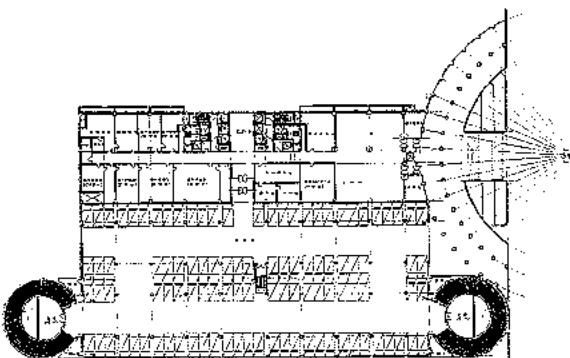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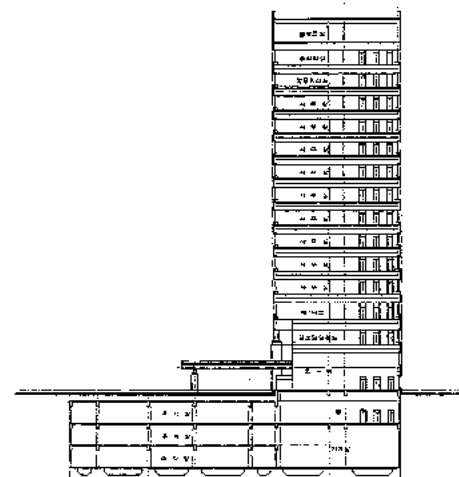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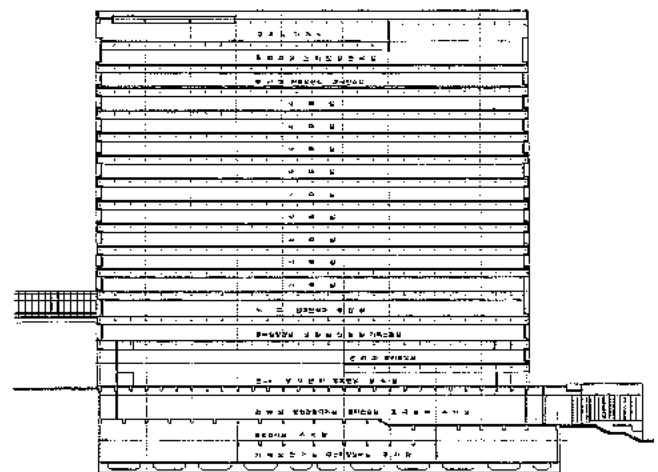
본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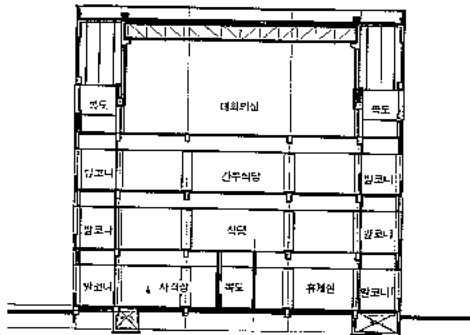
본관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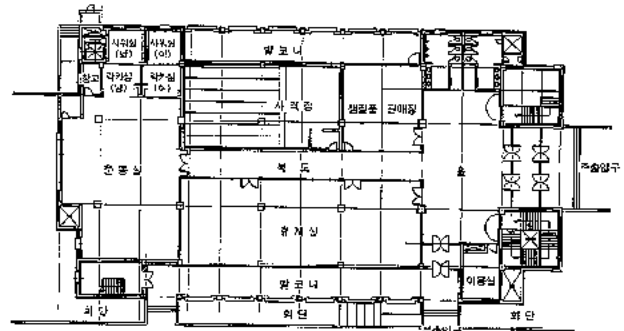
본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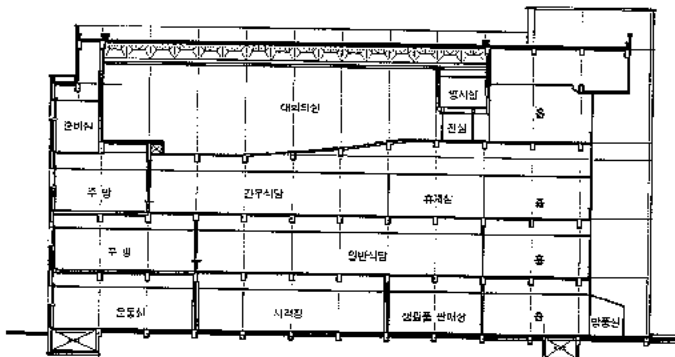
본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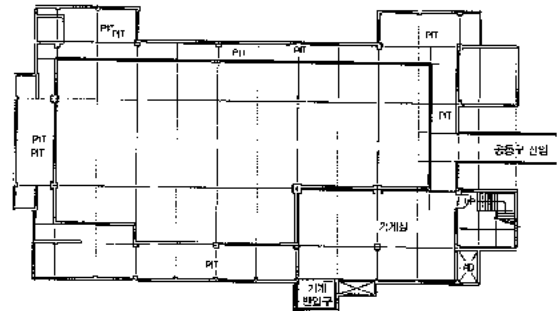
별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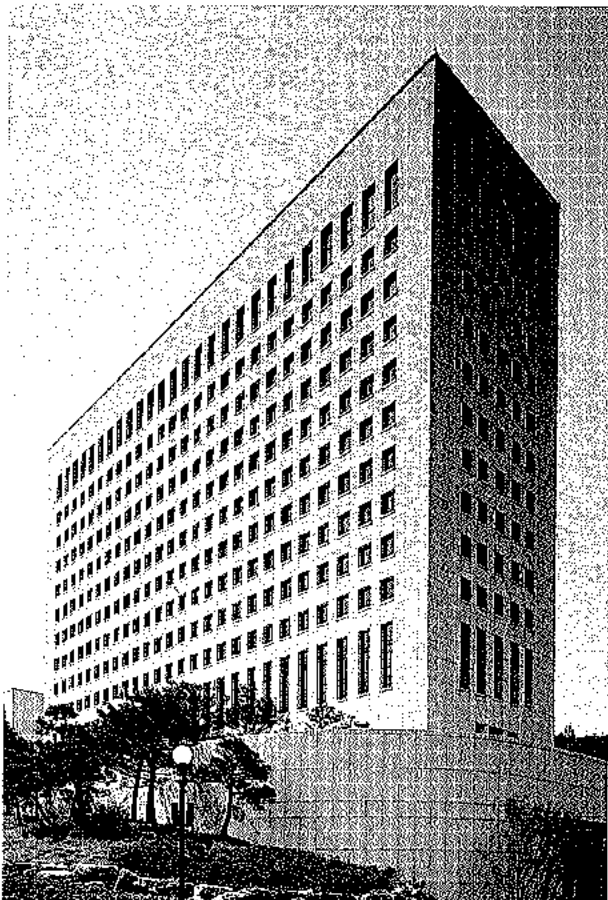
별관 1층 평면도



별관 횡단면도



별관 지하층 평면도



동측에서 본 본관 측면

기본개념

-기본개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법집행의 최고 행정기관 청사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위해야함은 물론 검찰 공무원에게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귀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검찰청사를 건립한다.

-계획방향

- 대지에 순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계획
- 검찰기능의 극대화에 따른 합리적인 실배치 및 조직중대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평면계획
- 법의 평등, 정의, 엄정성을 상징하는 입면계획
- 일반인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외관 및 출입구 계획

대지조건

-주위현황

동쪽으로 서울고등, 지방검찰청사와 서울고등, 지방법원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법원이 신축되어 법조 건물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지

동서로 좁고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서쪽이 해발표고 50m, 남동쪽이 해발표고 29m로 동서간 약 21m 고저차가 있다.

-배치계획

- 남향으로 배치하여 일조권 충족 및 쾌적성을 부여.
- 대지 북동쪽에 건물을 배치하여 정면(남쪽)의 전망을 확보하고 전면의 광장을 넓게 사용.
- 단지 입구에 반원형 열주 회랑을 두어 반포로에서의 건물 인지도를 높이고 대민과의 친밀성을 유도.
- 사무기능의 본관과 후생시설의 별관을 분리 배치.
- 대지 서쪽에 증축여유 공간을 할애.

-평면계획

- 관련기능에 부응하는 상호유기적인 평면배치(동선단축)
- 주요실을 남향으로 배치(쾌적성)
- 사무기능 Zone과 후생시설 Zone으로 분리배치(기능분리)



성체, 권위적 상징성과 그로 인한 도시적 단절이 의미하는 것은?

도시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Context로 여겨져야 할까?

근자에 준공된 대검찰청사는 10월말 대법원이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완성되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하나로서 서초동일대는 소위 법조인들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대법원을 위시하여 법조의 3륜기관이 다 모이게 되었다. 이곳에 늘어선 건축물

을 보면, 대법원청사, 대검찰청사,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법청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청사, 사법연수원 등이다. 이외에도 서초경찰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완성과 대검찰청사의 건축적인 의의

Completion of Seocho-dong Legal Town &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the Supreme Public Procurator's Office Buildings

李範宰 /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Peom-jae

이 서초동 법조타운중에서 이 4개의 건축물이 완공됨으로써 서초동일대의 도시적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곳은 원래 넓은 야산과 구릉이 자리잡아 있었고 서울시청이 이전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던 지역이다. 더욱이 현재도 서초경찰서 일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에는 많은 녹지공간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 대단위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또한 그것도 이른바 법조인들이 10년이래로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뒤섞이는 형상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개의 대규모 건축물 이외에 앞으로는 관계되는 건물들이 더욱 건설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지는 대법원 청사를 맨 남측을 하여 북측의 3개 단지에 동측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청사, 중앙에는 서울고등검찰청사, 서측에는 이번에 완공된 대검찰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이 세개의 건물은 각기 동측으로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왔으며, 그래서 도시적으로 보아도 점차 동측으로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세개의 건물은 남향을 하고 일자로 늘어세워져 있다.

거의 그 건축물들은 일자로 나란히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축물들은 서초동일대를 동서로 잘라내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넓은 옥외 조경면적과 여유있는 Open Space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건축적 연계성이 있다기 보다는 거의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축물들로 보여진다. 이러한 건물들 사이에는 거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일정한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된 단위의 건축물이면서 대개는 건축이 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또 중앙에 중앙현관을 가지고 있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고밀도의 건축적 밀집 현상에 익숙해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저밀도의 한가한 대지 활

용에 대해 의구성을 갖게 될 것이다.

서울이라는 도시적인 맥락으로 보아 이 건축물군들이 과연 서울에 어떤 도시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인가? 서울은 가로면에 위치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동서로 놓여져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조와 채광을 위한 남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아파트 군들이 강남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한강변은 동서로 이루어진 아파트건물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충분히 이러한 요소들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단지의 주 도로는 어느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청사인 경우는 남측의 도로가 서초로와는 한 블록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동측에 우면로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주 진입로는 우면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주 진입방향은 동측이 아니고 남측으로 되어있다. 건축물도 우면로에서 보면 측면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검찰청사는 서초로에서 중앙으로 따서 들어간 도로를 이용하여 서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역시 건축물의 측면을 보면서 진입하되 중앙 현관은 남측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서울고등법원청사와 같은 진입방법인 것이다. 서초로가 강남네거리를 지나서 동측으로 는 테헤란로와 연결되고 있으나, 교대네거리를 지나서 서측으로는 가다가 끊어진 도로와 같기 때문에 이 서초로를 주 진입로로 설정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초법조타운의 각개의 건축물들이 갖는 진입의 어색함은 거대한 규모의 건물에 대응하는 도로망의 합리적인 체계의 미비함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 검찰청사는 반포로의 동측에 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축물로 들어가는 주요 진입 방향은 역시 건축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반포로라는 주 도로에서 보면 이 건축물도 역시 측면을 보이고 면해있다. 대법원청사는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서초로라는 남측도로에 면해있고 이 건물의 주 진입구의 위치는 정면중앙 남측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면으로 진입한다면 건축물의 정면을 보고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단지의 조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더 명확한 진입과 내부순환도로망의 체계적인 연계 및 도로 시스템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 단지내에 건립된 건축물들은 주위 도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앞서의 측면을 보면서 진입하여야 된다는 것에 있다. 이는 건축물 자체는 권위적 상징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도 진입시의 이미지는 서툴게 처리된 것같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물 그 자체의 상징적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완결된 상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주고 있고 건축물에 진입하는 과정은 기능적으로만 처리하여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하나같이

상징적 이미지와 남쪽으로의 열린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도로망으로서 시민에게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포로, 우면로 등의 남북간 도로와 서초로라는 동서간의 기존 도로망에 대한 해석이 주도면밀하였다면 그 도로들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서울지방검찰청사와 대검찰청사사이에는 업무적 연계성이 강하게 성립된다고 한다면 두 건물사이에는 보다 적극적인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연결도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건물과 건물사이의 상호간의 연계성이 유추되지 않는 것은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 첫째의 요인은 건물과 건물의 이미지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 각기의 독립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다. 역지로 이야기 한다면, 아무런 건축적인 독특성이 없는 건조한 상태의 얼굴을 가진 것이 공통적이라고 할까 그외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규모의 건축물이 가져야하는 약간의 건축적 어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지역에 세워지는 어떠한 건축물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또하나의 것은 각기의 건축물들이 상호간에 아무런 공간적으로, 특히 외부공간이 공유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자체의 대지내에서 필요한 외부공간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완결되어지고 있다. 이는 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건축물사이에 옆의 건물, 또는 앞뒤의 건축물사이의 공간이 그대로 버려져 있고 서로 공유하려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앞의 건축물의 뒷면은 그대로 뒷면으로 버려져버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단지내의 건물들은 서울고등법원청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내에서 도로에 접한 배치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각기 정한 도로에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고층 건물이 가져야 하는 네가지 방향성에 대한 고려를 상실하여 버렸다는 의미이다. 도시의 지역내에 이곳은 북측부분은 녹지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고층으로 건축물이 세워질때 이 건축물은 자체의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체 도시의 주요한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면이 아닌 다른 부분의 표현이 도시에 어떠한 것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석하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이 단지내의 네가지 건물은 정면과 측면이 매우 명확하여 서울 한강이남의 의미있는 지역을 동서로 확일적으로 분할하여 그 북쪽의 시민의 삶과 남쪽의 시민의 삶을 절단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에서부터 시작된 도시절단행위는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계획에서도 정면을 너무 중요시 한 결과

삶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도 절단하게 되어 아쉽게 느껴진다. 이 단지의 남측에 위치한 지역들은 법조 관련 업무와 연관이 많은 건물들과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 바, 거대한 네 개의 성앞에 외글와글한 서민들의 집들이 들어차는 고대 중세도시와 같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지금부터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 단지내에 건립된 4개의 건물중 대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건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들은 결국 서초동 법조타운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검찰청사에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청사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건축물로서 그 위치나 건물의 크기 등으로 서울 강남에서의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강력하게 발산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두개의 동으로 분절되어 있고, 두개의 동이 각각, 6층과 20층에 연결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측에 있는 것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법형사부, 동측에 있는 것은 서울지법민사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수직의 세장된 선이 강조되어 있고, 저층부의 포디움 부분도 수직의 열주가 타워부분의 수직적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외부의 마감은 백색 외장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법원건축물이 설계 당시때까지 가지고 있던, 식재의 둔탁하고 장중하면서도, 소위 권위가 도처에 배어져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획기적인 선택을 하였다. 일전에 완공된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정한 형식의 인용이나 답습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건축이 갖는 독자적 성격을 평가하여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건축물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하였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벽으로부터 두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두개의 건축물사이에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숨통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상승하면서도 하늘을 거슬리지 않는 겸손함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 두개의 사이로 구름다리가 걸려있으므로 해서 시민에게 둔탁하고 엄숙한 분위기라고 인식된 일반대중의 인식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법검찰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는 짙은 갈색의 타일을 외벽의 주조로 하여 전반적으로 시대적인 감각성이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있던 바와 다르지 않다. 저층부에 포디움이 있고 상부는 타워 형식으로 되었다. 상부의 타워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권위적인 건물을 만들려고 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건축물의 창호

는 벽에서 사각형의 오프닝이 생기도록 하였는 바, 이는 바로 실내의 기능이 개개의 작은 단위의 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도 기능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근대건축의 원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한 것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Box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사드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의 차별성을 제시하는 것도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늘 있어 왔던 덩어리의 제약을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다.

포디움부분의 열주는 수직으로 세워진 것이 사람에게 권위를 상징한다거나, 관아 공공 건축은 다소간에 그 이미지에 있어서 장중하고 권위가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몇가지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니, 열주를 세워서 수직적요소로 강조하는 방법이나, 여의도의 국회의사당건물을 비롯하여 흔히 보는 관청, 공공 건축물이 이러한 것이다. 둘째는 대칭을 사용하여 좌우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동일하게 보임으로서 이를 권위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기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강렬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일전에 완공된 전쟁기념관이나, 천안의 독립기념관의 건축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수직적 요소와 좌우대칭의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욱 더 그러한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중요한 개념적 배경은 관공서 건축물은 권위적이고, 장중하고 엄숙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이 시작될 때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 서울고등검찰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이러한 개념이 과연 시대적으로 합당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 기념비성에 귀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체의 건축적 어휘가 생략되고 한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를 희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건축물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의 초점을 다시 환원한다면, 과연 그러면 이 건축물이 과연 권위적 기념성을 바로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다른 주위의 건축물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건축물에 강력한 인식성을 부여하는 차별성이 없는 것이 그 한 요인이고, 건축물의 중앙이나 또는 사람의 시선이 흔히 집중되는 가운데 부분에 인상적인 요소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한 요인이고, 건축물의 외곽을 이루는 양단부의 강력하지 못한 처리에 의해 주위의 환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는 것이 그 마지막 요인이라고 하겠다. 즉 이 건물은 권위적 기념성이라는 의미에서 건축적으로 그 개념을 명

확히 전달하는 데에도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가장 나중에 완공된 대법원청사는 Ⅱ형배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부에는 16층 높이의 주 타워가 세워져있고 양쪽에는 법원행정처와 법원도서관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윙이 설치되어 있다. 이 두개의 윙은 각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좌우대칭의 것으로서 중앙부에는 주 현관이 위치하고 11층에는 대법원장실이 있다. 전체가 흰색 화강암을 사용하여 이른바 돌집의 분위기가 엄숙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법원은 189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사법제도가 도입되어 1백년만에 새로운 시대를 여기에 다시 연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서소문 청사로부터 이전하게 되어 있다. 지역적 특색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사법 최고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정리하고 새로운 청사를 가지는 것이 단지 새롭고, 현대적이고 그속에 거주하는 사법인들을 위한 기능적인 공간만을 얻는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적어도 백년간 우리에게 있어왔던 대법원청사의 오래된 이미지가 담겨있는 건축적 요소들이 이번의 건축물에 어떠한 형식과 형태, 또는 이러한 추억이 담겨질 수 있는 이미지가 표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의 영육이 점철되어있던 구 청사의 타일마감과 아취 등의 건축적 어휘는 단지 그것이 84년이라는 오랜 옛날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현대적이라는 시대적 감각때문에 어느 한 구석도 취해지지 않고 다 버려진 것이 아쉽다. 서소문 청사는 1911년 구 한말의 대한제국 의정부청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대법원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역시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일조의 강박관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역시 우리의 건축이 가져야 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제약일 뿐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른바 공공 관청 건축의 사회적 욕구가 아니었나 싶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자치정부들이 위주가 되어 각기의 자치단체의 청사나 말단의 대민 행정기구에서는 국민과 같이 직접 접촉이 가능하고 의미를 주는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다. 동사무소나 경찰서, 파출소 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권위적이지 않고 현저하게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청사는 사회적 통념상 이러한 예를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상징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더 다양한 건축적인 어휘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건물을 바라보는 다른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일 수도 있다. 그것은 국회의 사당이나 정부청사와 같은 다른 국가중추기능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에 대등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의식이 건축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외국의 관공서 건축물도 이러한 범주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외양과 건물의 이미지가 다소간 현대적인 감각으로 마무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공간이라든가 공간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데에는 상당한 거리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이 건물은 기능의 집적으로만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대한 건축적인 해석을 종합하여 본다면, 우선 단지의 공통적인 이미지가 없어서 단지라는 용어가 선뜻 사용되지 않는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몇개의 건물이 인접하였다고 해서 단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가 각기 개발 계획으로만 추진되어온 것같이 생각된다. 실체는 어떻더라도 결국 도로망에 대한 마숙한 시스템과 진입 축의 어색함들이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도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결국 상징적 권위를 추구하기 위해 정면성을 강요한데에서 출발되었다. 건축물의 배치는 일률적으로 정해짐으로서 거대한 성벽을 가진 4개의 성채들이 들어선것과 같은 단절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찰청서가 위치한 대지는 법조타운의 가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동측에는 반포로가 남측에는 막힌도로를 경계로 하여 대법원청사와 인접하고 있다. 대지내에서의 배치를 보면, 남측면은 주차장, 옥외조경 등으로 확보를 하고 동측은 부출입구를 위하여 공지를 확보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출입과 상징적인 출입을 나누어서 건물의 정면성을 상징화하고 기능적인 출입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2원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물이 남향으로 위치하고 인접건축물인 서울지방검찰청사와 일렬로 세워지게 하였다. 반포로가 동측에 면해있고 이 도로가 대지에 가장 의미있는 것임에도 건축물이 동향으로 계획되지 않은 것은 앞서 이 건물이 속해져 있는 전체 타운의 강력한 사회통념상의 제약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나 다소 아쉬운 점이다.

만일 건축물이 반포로에 면한 부분에 정면이나, 주요한 이미지 전달의 배치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다른 건물과는 달리 건축물이 도시에 보다 풍부한 도시적 의미를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반포로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보다 이 건물이 일반 국민하고 접근하면서 친근감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가지는 반포로에 의미있는 건축물의 배치는 동서

로 절단된 도시의 맥을 최종적으로 서측 단부에서 달아 줌으로써 도시의 외부공간을 형성해 주어서 성체들의 나열이 아닌 도시공간의 형성에 배려로 기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건물이 지금 있는 그 대로의 크기로 동향을 했을 경우에 생각될 수 있는 장점을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건물은 두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다. 동측에 위치한 15층의 건물이 본관인 셈이고 서측의 4층건물은 별관으로서 식당, 회의실 등등이 들어가 있는 부속 건축물이다.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부속건물이 동등하게 같은 선상에 비치되어 있다. 보통은 부속 건축물답게(?) 후면이나 후미진 곳에 건립되는 것이나 배치에서의 이와 같은 의미 부여는 대체적으로는 호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만 본관과의 덩어리의 차이가 많이 만들어짐으로서 덩어리들간의 부조화가 생기게 된 것이 티라고 하겠다.

건축물 전체는 화강암을 PC로 만들어서 조립식 공법을 사용한 석재 건축물이다. 석재가 가지는 이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많은 예를 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상식적인 건축이미지 이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돌이 가지는 독특한 질감이나, 돌이 사용됨으로 해서 건축적인 차별성이 달라졌다고도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곳의 석재 마감은 어찌본다면, 우리 현실에서 마지못한 선택일 수도 있다. 달리 이만한 건축물규모에 선택될 여지가 많은 마감자재도 없고 사회적 통념으로 보아도 별 의의없이 동의할 수 있는 자재로 이해할 수 있다.

15층이라는 층수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가 의문이 되었으나 별다른 의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건물자체는 어떠한 특별한 덩어리자체의 미적인 스타디프가 거처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좀더 고층화 될 수도 있거나, 저층화되어 여러개의 덩어리를 가지는 군집형 저층형 건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반포로라는 생활의 주축과 어찌면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건물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역시 권위적 상징성이 더 중요하게 인식된 건축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외부정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얼굴을 이루고 있는 창문의 패턴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사의 사각형 창문패턴과 동일한 것이다. 3~5층과 14~15층의 창문은 서로 연결되어 수직적 비례를 세장하게 하여 다른 층과는 다르게 한것은 저층부와 최상층이 사람의 이미지에 주는 의미를 생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려나 역시 단조롭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의 입면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것은 평면의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측 즉 후면에 위치한 Core때문에 정면보다는 후면의 입면구성이 덜 조정된 것같이 보여진다.

대지자체는 동측에서 서측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이를 잘 이용하여 동측부분에 부출입구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입은 이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남측의 입구는 소위 정문인 경우이다. 평면은 편심코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복도이지만 한편이 띄어져 있어서 북측이지만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기분좋은 복도와 엘리베이터홀을 형성하고 있다. 북측은 마침 녹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전망이 있어서 더욱 좋은 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1층 현관홀은 대개의 건축물이 그렇듯이 2층까지 일부가 Open되어 있다. 그러나 Open된 2층부분이 투시되는 것이 아니라 벽체로 막혀져 있어서 넓이에 비해서 개방감이 시원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냥 뚫려져 있는 공간인 셈이다. 별관의 평면은 본관과 연결되는 연결 복도의 연결점부분은 홀로 되어있고 2, 3층은 각각 식당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도록 동선을 연결시켰으며 4층은 회의장점 강당으로 되어 있다. 직원용의 예식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기능상 유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식당의 남측과 북측은 배란대로 형성되어서 여유를 갖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다만 그곳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냥 비워져 있는 공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대검찰청의 기능으로 볼때는 아주 기능적으로 계획된 것이 이 건물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효한 공간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적 처리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 있지 않다면, 건축에서의 기본적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능만을 충족했다고 해서 건물이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져야 할 것으로서 기능이외의 것중에서 건축공간의 질에 대하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건축이 필요한 기능적인 것만을 담고 기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지고 필요한 부분만 조합하는데에 그친다면 콘테이너 Box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가을은 그렇게 부서져 내리며 오는가

An Autumn Flavor

朱秀一/주수일건축사사무소
by Joo Su-il

"투르게네프"의 책갈피 한구석
바람은 몇장의 낙엽같이
책장을 넘기며 찾아와 숨어버리네.
어두운 방(房)에서 눈을 뜨고
눈부신 창공에 비틀거리며
가을을 걷는다.
나는 코스모스 같이 온몸을 흔들며
가을과 겨울의 사이를 빠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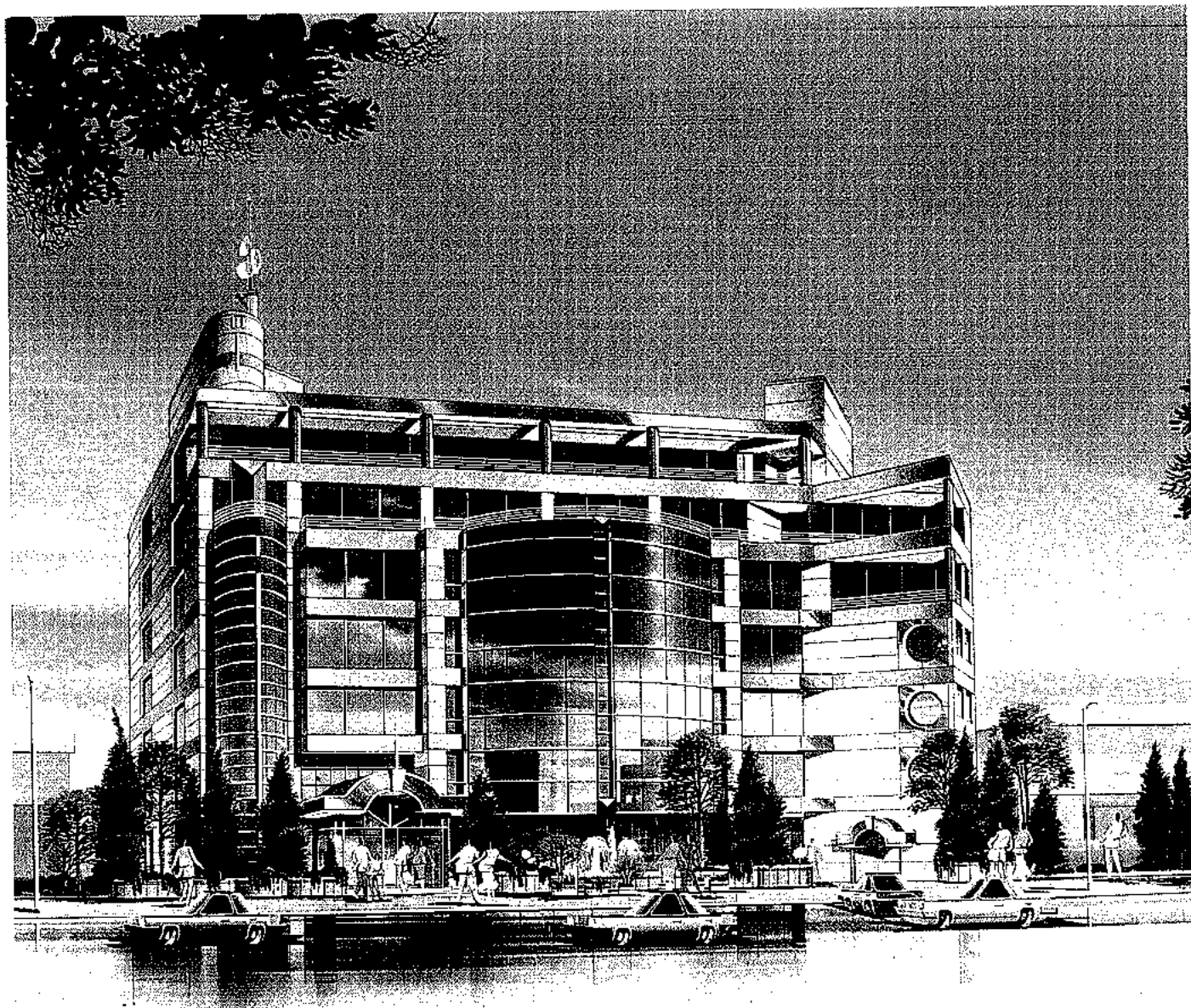
달빛과 바람은 서로 섞이지 않고
틈새로 다가와
창문 사이로 어른거린다.
감잎하나 떨어져 구르는
뜰에서 그림자가 된다.
파문되어 퍼지는 물결이 된다.

수확의 들판에 서면
무수한 겨울의 침입이 다가오고
혼자 가을을 지키려는 너,
"호밀밭의 파수꾼" 같이 두팔을 벌려 하늘을 본다.
푸른 잉크 방울 하나
떨어져 물빛 안개가 된다.
눈먼 계절의 방황이 되어
부서져 내리는 가을은 그렇게 낙엽이 된다.

언주빌딩

Eonju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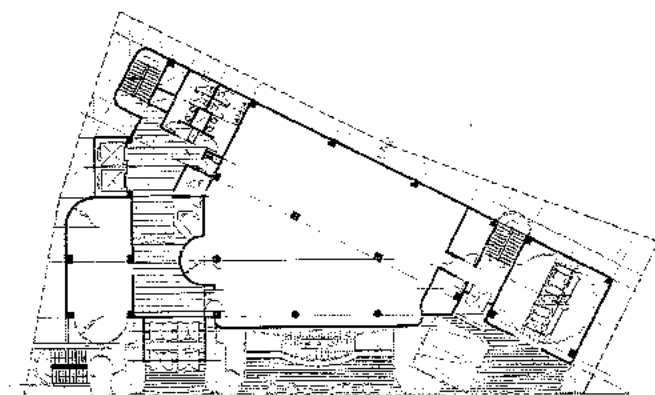
文聖雲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Designed by Moon Seon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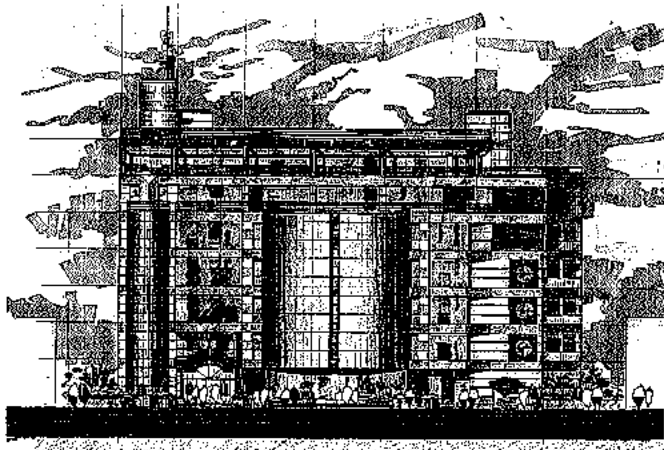
투시도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66호
대지면적 / 1,082.00㎡
건축면적 / 647.79㎡
연면적 / 5,513.28㎡
건폐율 / 59.87%
용적률 / 372.37%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설계 / 김영호, 이은경, 이종찬, 김남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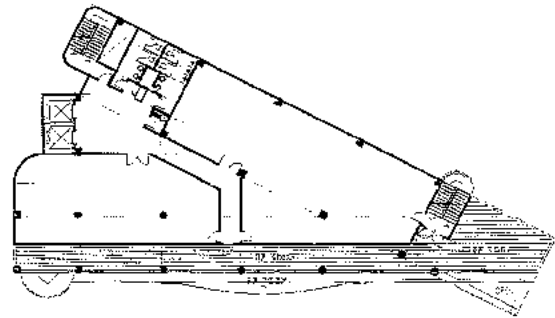
Location / 284-66, Seongsu-dong 2 ga,
Seongdong-gu, Seoul
Site Area / 1,082.00㎡
Bldg. Area / 647.79㎡
Gross Floor Area / 5,513.28㎡
Bldg. Coverage Ratio / 59.87%
Gross Floor Ratio / 372.37%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Project Team / Kim Young-Ho, Lee Eun-
Kyeong, Lee Jong-Chan, Kim
Nam-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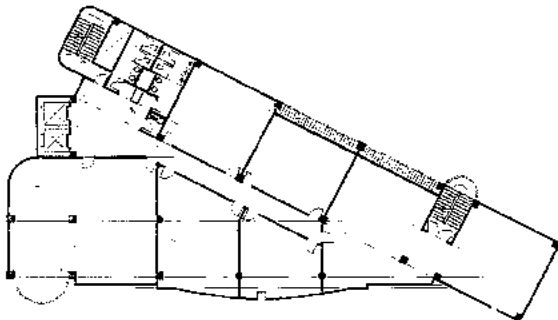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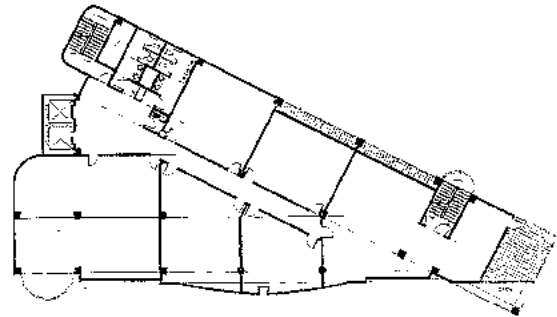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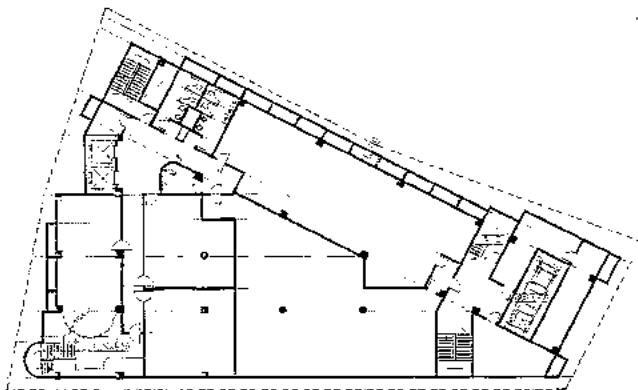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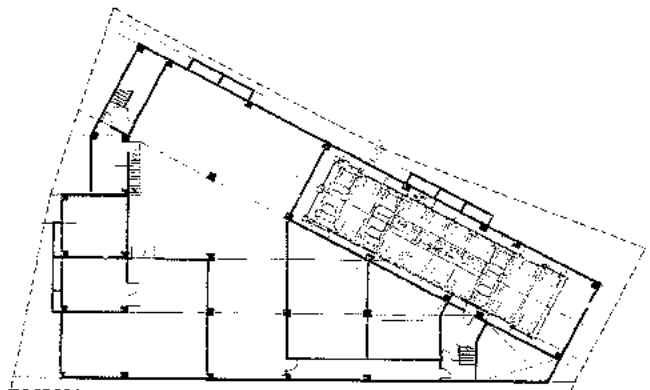
3·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현장을 바라보면 저층 중·소규모의 공장 지대가 어지럽게 분포되어 있다.

이곳에 20여년간 터를 잡고 살아왔던 건축주는 누구보다도 주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영세 공장들의 낙후된 설비와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사무실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목욕탕과 연금 매장을 설치하

고 기준 층은 업무 시설로 하였다.

준공업 지역이라 일조권의 영향은 고려 안해도 될 처지였으나 전면도로가 8m 밖에 되질 않아 사선 제한의 규정은 피할 수가 없었다.

나름대로는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녹지를 조성해 보고자 하였으나 건축주의 사업성과 맞물려 1층 전면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아쉬움을 달랠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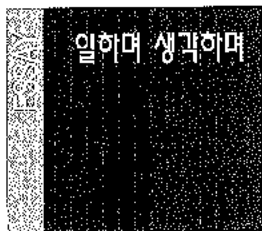
대신 사선 제한을 적용 받는 부분에서 각층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입주자의 활동성을 어느 정

도 해소시켜 줄려고 노력을 했다.

외관 디자인은 지나칠 정도의 회색 공간에서 약간은 포인트가 되어 주어야 하겠다는 관념에서 파스텔 계통의 핑크색 외장 AL 패널과 회강석 버너 마감을 사용하였다.

가급적 구조적 표현도 노출시켜서 무미건조한 주변 환경과 정면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나면 소규모 공장들의 업무 센터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을의 길목에서

In Autumn

文淑卿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문
by Moon Suk-Kyeong

이 가을의 여유로움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게 한다.

이 가을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한다.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이는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 모두 잠시 쉬었다 가자.

해마다 맞이하는 가을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련만 그 느낌이 사뭇 다른 건 훌쩍 가 버린 나이 탓만은 아닐까.

저 가슴 속 깊은 곳에 일렁이는 작은 분노와 회한은 어쩌면 나와 나의 것들에 대한 진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우린 왜 늘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야만 할까?

“빨리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 성실한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 세우고 한탕주의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소신 것 일하기보다는 책임 회피와 부사안일에 젖어서 공익보다는 사리사욕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

이렇듯 비 상식적인 행위가 오히려 상식이 되어 버린 우리의 생활은 도덕성 부재가 가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미덕이 되어 버렸다.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팽창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풍요는 마음의 풍요를 몰아내고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병들게 했다.

적당주의와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의 사회는 서로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이렇듯 여과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엄청난 인재의 부산물을 탄생시킴으로 우리 모두를 경악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이 사건들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건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수치심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건축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에 의문을 가

지고 사고하며 상상하는 창작 활동이라 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얼룩진 처참한 몰골이라면 건축의 미래는 참담하기만 한게 아닌가.

그렇다고 자기 항변마저 없는 건 아니다.

건축주의 몰 이해와 잘못된 관행, 일관성 없는 건축 행정 등 수 많은 고충 속에서 분노와 몇 차례의 좌절은 순수한 건축에 대한 감동을 퇴색시키고 또한 건축에 대한 애정과 의 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되돌아 오는 건 오히려 허망함 뿐이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기 보단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책임질 줄 아는 도덕심을 기대하자.

책임을 기피하고 과오를 감추려다 더 깊이 병들고 있는 것을 모르는 무지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브레이크 파열로 멈출 수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며 좌충우돌로 모두 함께 파멸하는 시행착오는 더 이상 겪지 말자.

우린 가끔 시공자와 설계로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워 상대방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더 많은 과오를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보다 나은 건축 문화를 위하여 우린 서로 얼마나 노력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쉽게 평안함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서정주님의 시구처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새 소쩍새는 울었다는데.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가슴 저미는 감동과 후손에 길이 남을 작품을 꿈꾸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지 않는가?

우린 타인의 잘못에 비판적인 의식보다는 자기 것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상실된 도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무주리조트를 다녀 왔다.

세미나 및 단합 대회라는 명분이긴 하였지만 일상에서의 탈출은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이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가을의 정취를 감상하기엔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 하루하루에 쫓기어 미처 계절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어쩔 수 없는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은 몇 해 동안 느끼지 못한 가을의 정취를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산에 펼쳐진 울긋불긋한 단풍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황금 벌판의 풍요로움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저 고운 빛깔의 단풍처럼 모두가 자기의 색깔에 충실하고 서로 어우러져 오색 찬란한 빛깔을 연출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맑고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을의 여유로움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게 한다.

이 가을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한다.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이는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 모두 잠시 쉬었다 가자.



건축사지 편집진으로 부터 '작품 NOTE' 란에 기고할 글을 부탁받았을 때 얼마전에 준공한 종합사회 복지관에 대한 글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고 애기거리가 별로 없어서 이 '작품노트' 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무실 개업초기에 재일교포 건축가와 같이 협동하여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작품에 대해 89년말경에 써 두었던 것을 끄집어 내어 보고자 한다.

남태령 마을의 돌집

Stone House in Namtaeryeong

趙顯君 / (주)존인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 Hyun-Goon

「을 10월말경에 이 건물의 준공파티에 참가하였을 때 여러가지의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이 건물 공사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본인이 36년간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1년반 동안 접하면서 갈등과 오해, 우정과 성취감을 동시에 맛보았던 것 같다. 건축가와 시공자, 시공자와 하도급업자, 한국인과 재일교포, 재일교포와 일본인, 한국인과 일본인 등 여러부류의 인간관

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이 이 조그만 60여평밖에 안되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단히 발생하였으니, 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마음 고생이 얼마나 컸음일런지…….

이 일의 시작은 198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전해 재일교포 현대미술작가인 박인식 선생의 아프리에 설계로 재일교포 건축가인 Itami Jun 선생을 만나게 된것이 인연이 되어, 방배동 남태령 마을의 바로 옆땅에 그 분의 건축설계 스튜디오를 짓기 위한 설계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일본에서 계획설계를 직접해오고, 한국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여 허가를 득하고 공사감리를 맡는 일이었다. 일본에서 가져온 5~6장의 계획도면을 가지고 1개월간의 보완작업을 하였는데, 기본 계획상의 개념을 살리면서 취락구조 개선지구의 지침사항에 맞추는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처음 건물의 판은 피라미트 형태의 사각뿔이 땅속에서 솟아오른 형태였으며 외벽 및 지붕재료는 전부 검정 전벽돌이었다(인접한 객선생 아뜨리에의 외벽 및 지붕 재료도 검정 전벽돌이었음). 시공자는 객선생 아뜨리에를 공사하던 사람을 지정하였고, 공사는 3월 말경에 착공하였는데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상의 준공 일지는 88년 9월 중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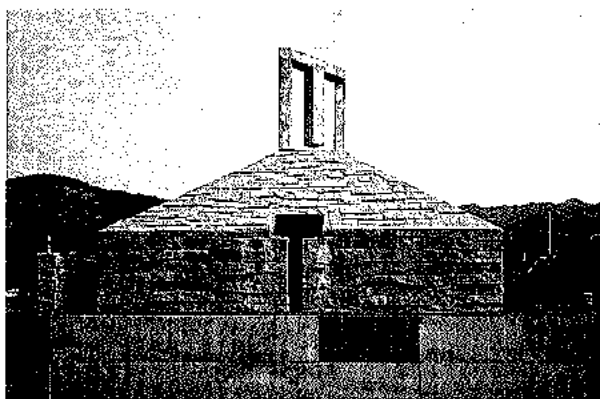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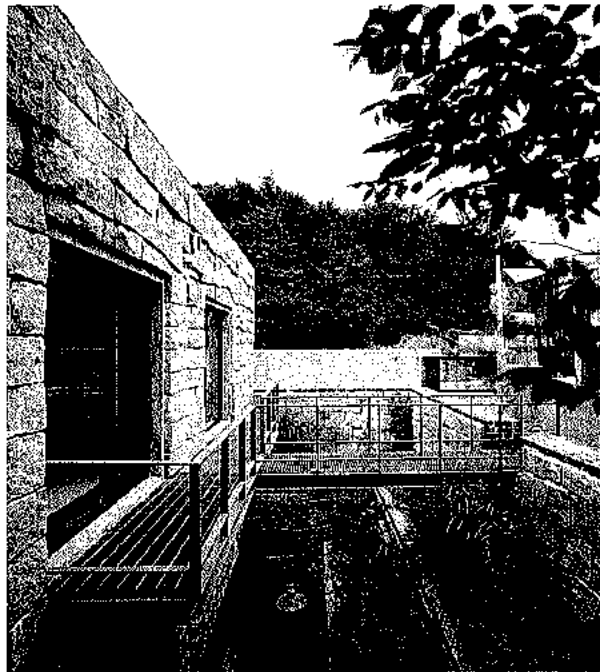
처음 2~3개월간은 진행이 잘 되다가, 외벽 및 지붕재료가 자연석(석재공장에서 가공후 남은 못쓰는 자투리 돌을 가리킴)으로 바뀜으로 해서 공정이 약간 지체되기 시작했다. 옆집에서 사용해본 전벽돌에서 하자요인이 많이 발생하였고, 돌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 건축개념을 살리는데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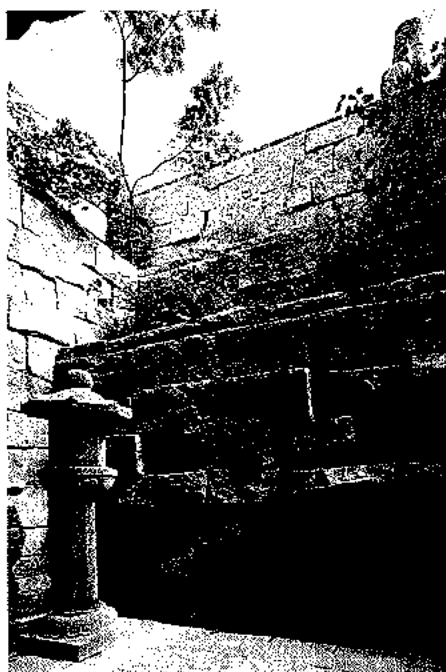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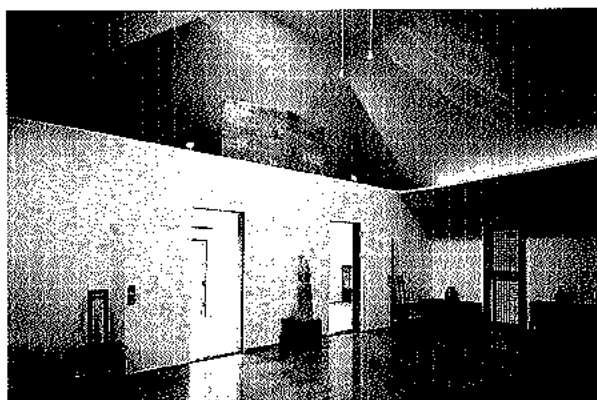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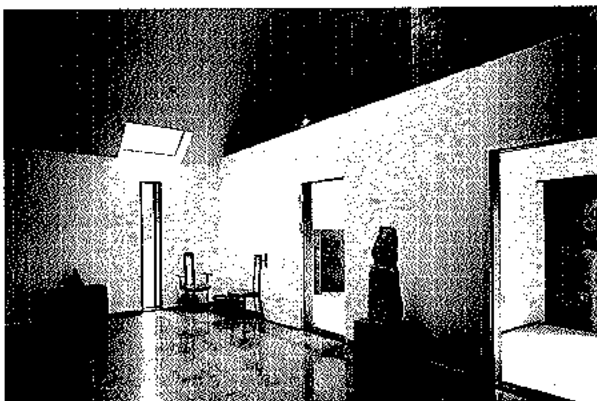
준공이 다 된 지금에야 설계변경을 잘했다는 생각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돌 시공 전문업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현장 소장과 업무상의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고, 그해 여름의 건축자재 품귀현상, 그리고 일부 변경사항과 그에 따른 정산문제로 공기가 뒤로 한정없이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여곡절끝에 88년 11월경에 거의 큰 공정은 마무리를 보았는데, 이때 우려하였던 외벽 방수에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방수공정은 기존 시공업자의 업무소관이었지만 돌 작업중 경사 지붕의 방수층이 손상되었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다.

그 방수층도 액체방수 2차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2~3회 칠한 정도였으며 그 위에서 보완조치없이 돌 붙이는 작업을 했으므로 시공자나 건축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었다. 몇 번의 가을비 후의 낭패를 겪고 난 뒤 결국은 방수 전문업자에게 별도 계약에 의하여 방수 보완작업을 시켰는데, 여러가지 방법중 외벽·지붕의 돌을 걷어낸 후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돌과 돌사이의 틈을 모두 방수처리 함으로써 어느정도 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시공업자는 마무리를 다 짓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고 나머지 잔여 작업은 뒤늦게 이 일에 뛰어든 건축주측의 한국인 Staff이 맡아하게 되었으며 10여개월이 더 흘러서야 공식적인 준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공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재일교포 건축가인 건축주가, 한국에 자기 설계사무소 건물을 작품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을 여러가지 이유로 시공자가 따라와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거기에서 일본과 한국의 소규모 건물에 대한 시공의 질의 차이, 공사비문제, 어느정도 예상된 설계변경 등 피치못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공자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벌어진 틈을 메꾸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 건설현장에서 늘 보아왔던 엄격한 시공기준에 비하여 너무 엉성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공사현장 상황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었고, 일반적인 건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던 시공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건축작품이 만들어 질려면 여러분야의 자문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서로간의 의사전달이 원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건축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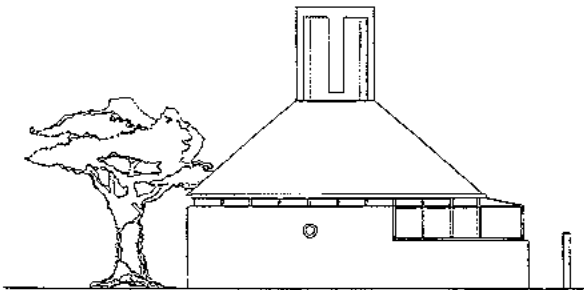
이 현장에도 기술적인 공사자문과 제 3자 입장에서의 조언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면서 때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때로는 엉뚱하게 일이 진행되곤 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 '건축가인 건축주'와 '평범한 시공자' 사이에서 중간 입장에 서야했던 본인으로서는 능력부족을 느끼며 낭패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한국측 건축가로서 서로 협력하여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전제조건에서, 사소한 문제까지 건축주측과 협의하여 그 결정 사항을 시공자에게 전달하면서 공사감리를 진행했지만, 방수문제를 위시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은 본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저런 연유로 준공전 마지막 몇 달간은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후임 현장 담당자를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건물은 지어졌다. 아직 방수, 결로 등 약간의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초기의 건축개념을 거의 살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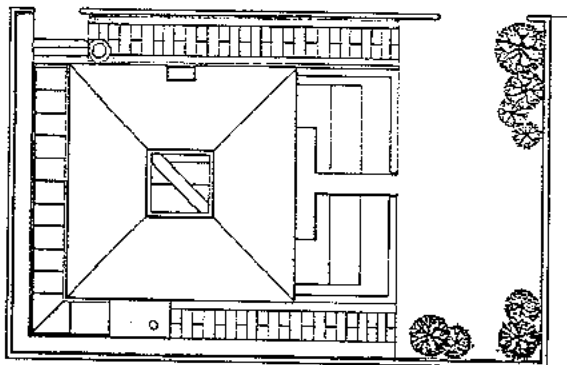
언젠가 Itami Jun 선생이 '어느것도 모방하지 않고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자기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독창적인 형태의 건물을 짓자' 던 얘기가 생각난다. 과연 그런 건물이 되었는지는 제 3자가 평가할 문제이지만, 평범하지 않고 개성이 강한 건물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여러 한국건축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건물의 상부에 놓여 있는 조각품처럼, 언젠가 우리의 건축활동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늘에 들리워 올라가는 손잡이(이 건물 상부에 일본의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 놓여 있는데, 그 형태는 흙속에 묻힌 피라미트가 하늘에 들리워 올라가는 손잡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함)의 역할까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몇자 적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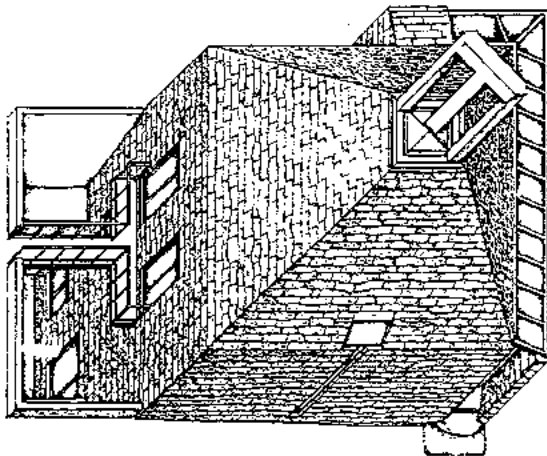
5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롭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현재 남태령마을의 '돌집'으로 알려져 있는 이 건물은 여러사람의 관리를 거쳐서 지금은 건축주의 친척되는 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라건대, 건축가를 위한 아뜰리에로 쓰고자 하는 건물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이 '돌집'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의 한국에서의 활발한 건축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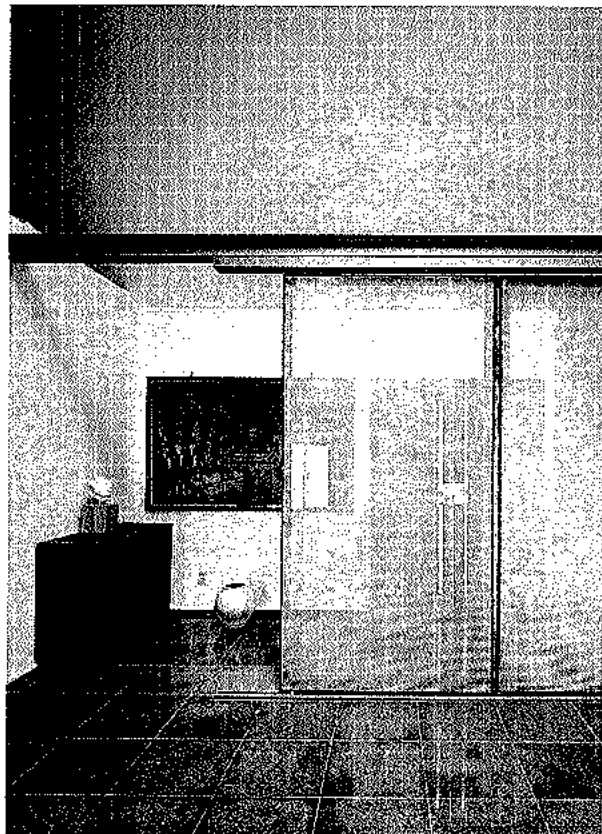
입면도



배치도



엑소노메트릭



■ 환희들의 고뇌

여러개 달린 손에 각양각색의 칼을 나눠 쥐고서 여자를 포옹하고 있는 정열을 과시하는 듯한 자세의 환희불,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엎드려 있는 사람의 발을 밟고 칼을 치켜 들고서 악귀같은 큰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악마상,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입을 한껏 벌리고 있는 공포스런 모습의 귀신상, 그 사이 사이에 무언가 생각에 잠긴듯이 고요히 앉아 있는 불(佛)과 보살들.

사방 벽면에 빈틈없이 그려져 있는 무서운 상들과 표정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부처들과 함께 어둠과 기름 냄새로서 객들을 맞이하는 이곳

몽골사원의 불당(佛堂)은 좁지만 높은 내부공간의 스케일(Scale)을 음미할 틈도 없이 다채로운 색상의 이질적이며 위압적인 상(尊像)들에 의한 충격으로 방문객들을 압도 하고 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는 사원 경내는 거의 폐허로 되어있는 건축물의 기초 자리만이 덩그러니 놓여져서 마치 만다라의 그것과 같은 정방형의 궤적을 중첩시키면서 고요함과 침묵으로서 방문객

을 맞이 할 뿐이다.

「언제 이렇게 사원이 파괴되었습니까?」

「대부분 혁명기간 중일 겁니다. 그후에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일부 건물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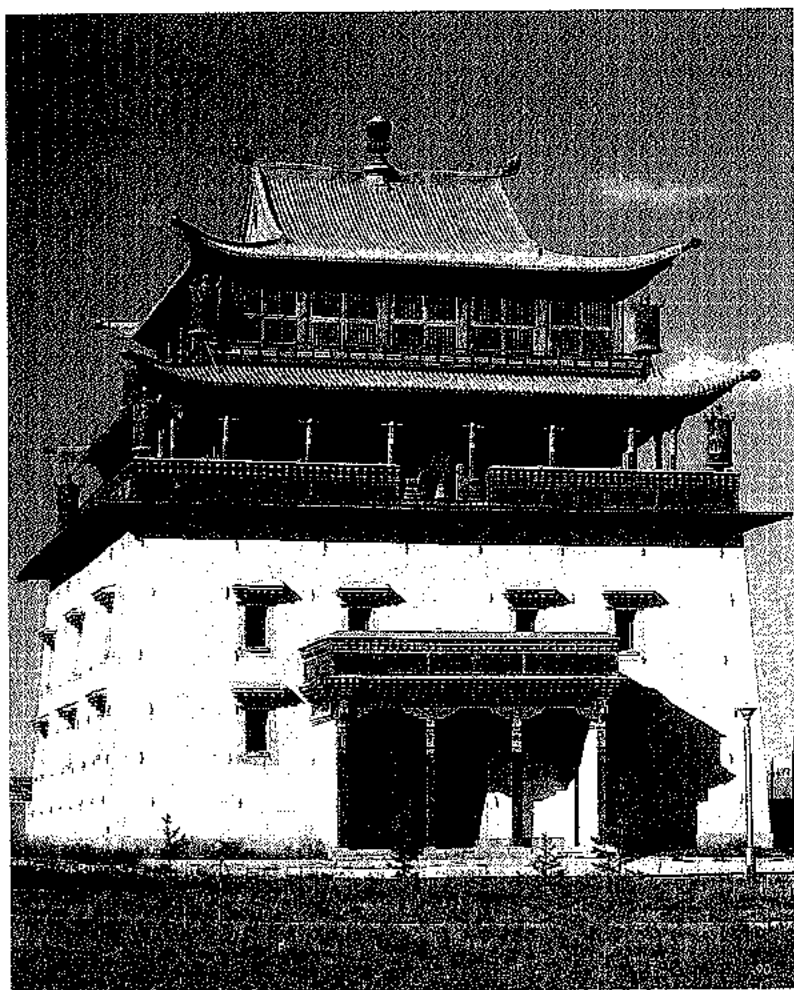
몽골건축을 찾아서(3)

In Research of the Mongolian Architecture

- 대초원의 성채, 라마교와 건축 -

朴舒弘 / (주)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1. 대초원의 비밀, 몽골리아
2. 대초원의 실존, 몽골 전통
주거의 허와 실
3. 대초원의 성채, 라마교와
건축
4. 대초원의 고뇌



잔라이 시그사 전경

「이곳 불당만은 꽤 오래된 흔적이 있는데요?」

「용하게 파괴되지 않은 것 중의 하나지요. 벽과 기와, 문 등을 보수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간단 대사원의 첫 인상은 중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라마교 사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미소짓는 불상들에 친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번의 황당함을 안겨준다.

「저것이 어떻게 불상인가?」

투덜거리며 정사각형의 내부를 돌아나오다 다시 마주친 정면에 위치한 알록달록한 옷을 걸치고 있는 커다란 눈을 가진 희미한 자태의 불상. 아무런 통일도 규칙도 없는 것 같은 장소이면서도 무엇인가 불가사의 하면서 위압감마저 느끼게 하는 신비스러운 공간(空間), 그 중심에 앉아서 고요히 우리들을 맞이하고 있는 고녀에 찬 눈빛의 대불(活佛).

아 저것이 바로 영원을 응시하는 모습이로구나.

■ 밀교와 라마교

몽골지역에 불교(佛敎)가 전래 된 것은 상당히 상대(上代)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원조(元朝)를 연 세조 쿠빌라이 칸이 티베트를 정복하여 그곳의 불교¹⁾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티베트불교, 달리말해 티베트밀교²⁾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여러나라로 전파되어진 밀교(密敎)와는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서 개화한 밀교는 대승불교의 마지막 전개라고 말하여지는 바와 같이 약간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만 배제할 것 같으면 인간의 근원적인 고녀의 구체라는 불(佛)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그러한 밀교가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내면이 우주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를 직접 파악하여 일체가 되고자하는 사고 방식 내지는 철학적의미의 사유 체계를 갖고 성파속(聖, 俗)의 일치를 실현코자하는 하나의 과정임과 동시에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선(禪)과 같은 방법이 아닌 인간의 감각

기관을 총동원하여 만다라(曼荼羅)나 진언, 인상(眞言, 印相)등을 활용하여 그 긴장도를 높여 감으로서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티베트 밀교, 즉 라마교는 8c 이후 인도에서 성립한 탄트리즘(Tantrism)의 전파와 함께 크게 유행한⁴⁾ 밀교가 그 원형이다. 그래서 내용의 난해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신비한 경지라고 할만한 성속일치(聖俗一致)를 체험하는 경지에 도달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필요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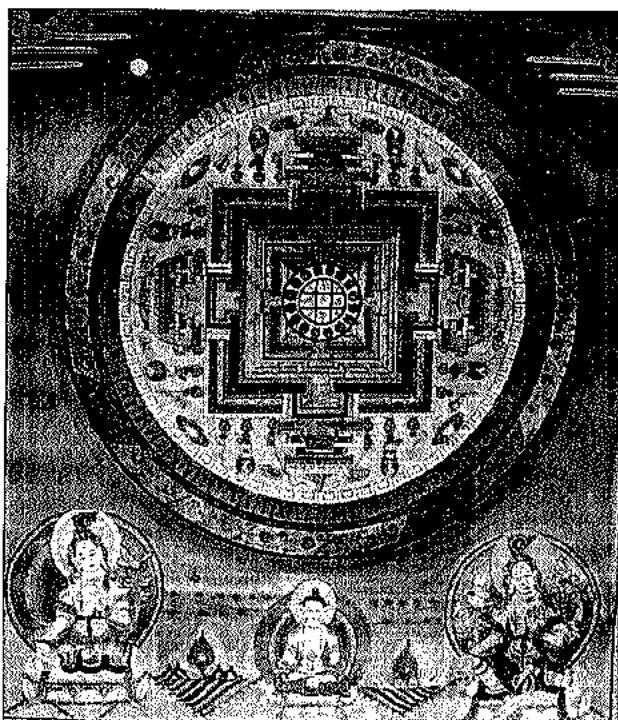
즉, 정신집중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 여성동반자를 필요로 하였고 성의(性) 집중력과 환희(歡喜)를 성스러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탄력으로 선택한 것이 생리적 호흡의 조절과 사념의 조절과 함께 성(性)적인 정액의 조절을 동등하게 취급한 생리적 행법(生理的行法)이었으니, 남여가 서로 포옹하고 있는 환희불(Yab Yum)의 상징성과 함께 각종 미신과 주술적 행위로서 정신적인 해탈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높고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반적인 대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있는 그림이나 도상을 시각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된 것이 만다라(曼荼羅)라고 할 수 있다.

■ 만다라의 세계

라마문화의 모든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다라는 밀교의 사상적 측면에서 볼것 같으면 상들의 성역공간(聖域空間)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그것은 단순히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 자기 자신을 몰입함으로써 성속일치의 경지를 직접 체험케하는 것이다.

즉 밀교신앙의 요체라는 것이 자기를 무시하고 절대자에게 귀의 하려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生)의 감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즉시 성속일치의 체험을 얻으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 앉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마음을 고양시켜서 그 극한에 이르는 일순간에 실재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색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시켜 이것을 상징형



만다라

태로 삼아, 감각을 통해서 실제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따라서 생명이 넘치는 총천연색의 세계를 의미하는 밀교(라마교)³⁾의 모든것을 만다라는 나 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다라는 거의 모두 원형구조의 내부에 사각형의 누각을 그리고 있다. 원형은 보통 화염륜, 금강지륜, 연화륜의 3중 구조로 이루어지며 외적을 물리치고 내부의 성성(聖性)을 보호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

상상은 누각내의 원형과 방형안에 작게 표현되는데 원래 라마교의 판테온(Pantheon)에는 성상의 수가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작게 표현되더라도 그 종류는 무척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 라마교의 성채와 건축

샤머니즘만이 정신문화의 지주였던 유목민족에게 불교라는 종교의 수용은 원시적 상태의 유목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다. 그리하여 그 중심에 자리하면서 몽골민족에게 융성과 쇄멸의 극단의 경험을 강요한 것이 라마종교라고 볼 수 있다. 한창 융성할 때는 몽골 전역에 700여개의 승원과 4000이 넘는 사원이 세워졌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특히 원(元)황실의 라마종교에 대한 배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승려(그중 특히 샤카파)를 중히여김은 물론 치외법권의 특권까지 부여할 정도였다.

결국 이러한 특정종교⁴⁾에 대한 황실의 보호와 후대는 막중한⁵⁾ 건설비와 인력란을 가져와서 종단을 퇴락시키게 되고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라마승의 횡포⁶⁾와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민심의 이반을 야기시켰고 원조(元)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는 제국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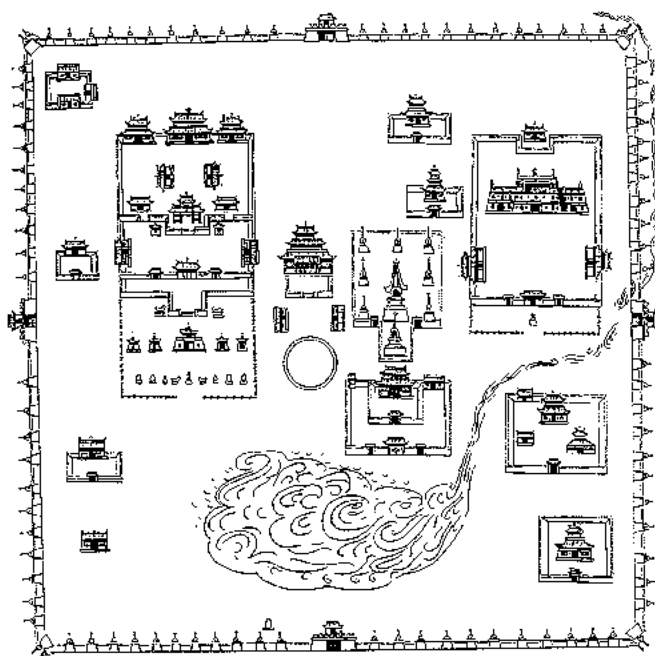
원제국시기의 몽골문화의 근저를 형성하는 것은 유목적 샤머니즘에다 라마종교가⁷⁾ 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라마교는 출가 중심의 소위 라마불교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구심점으로⁸⁾사원이 주체가 되는 것을 극히 당연시 하였다.

유목시기의 몽골의 촌락은 크게보아 행정 중심과 사원이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었지만, 그러나 그후 정착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원이 촌락이나 도시의 기능을 대신 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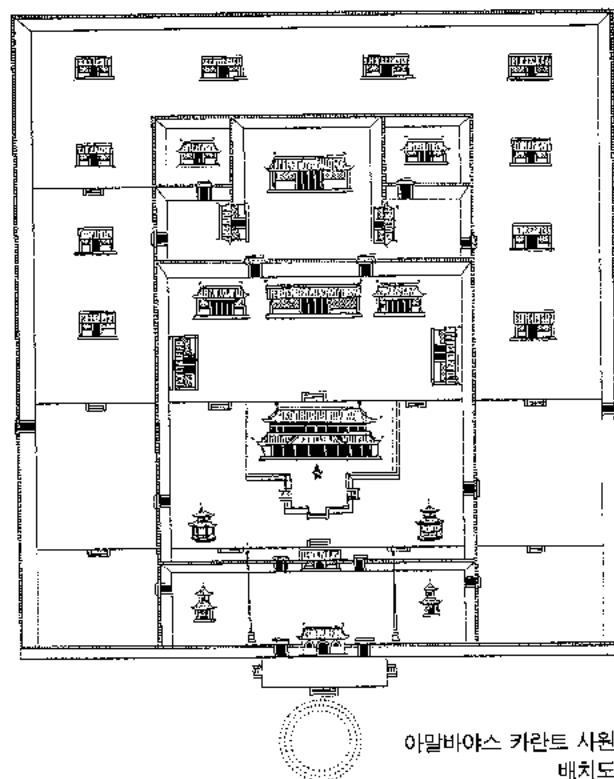
1924년의 기록에 의하면 전국에 113,000명의 라마승과 750개의 사원이 있었다하니 그 규모의 방대함과 함께 압도적으로 행사하였을 라마교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불교전래후의 초기 몽골에서의 종교 의식은 주로 펠트로 된 깔 안에서 행해졌는데 그중에서도 해체가 가능한 목조사원이 많이 이용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유목민과 함께 이동했던 사원은 19C가 되면서는 차츰 일정한 장소에 세워지게 되는 정착 형태를 갖게되면서 다양한 건축적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사원건축은 초기에는 네팔이나 티베트의 전통건축양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후기로가면서는 중국의 양식이 들어와서 몽골 전통종교건축의 기초를 이루게된다. 가장 유명한 사원은 최초의 라마사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불 한가이 현에 있는 엘테니 조 사원이다. 1586년 창립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모습은 1796년에 세워진 것으로 그후 오랜시간 동안 중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엘테니 조 사원 배치도



아말바야스 카란트 사원 배치도

나무, 벽돌과 돌이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중국식두공(斗拱)양식이 채용되면서 복잡한 지붕구조를 갖는 조형이 가능하게끔 되었다. 이포즈, 마룬즈, 존즈라는 세개의 절이 중심부를 구성하고있고 그 앞에는 사각형의 광장이 있어서 각종 라마교의식이 거행된다. 사원의 벽은 108개의 스투파(Stupa)와 4개의 출입구를 갖고 있는데 둘러쳐진 벽(200m×250m)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하여 방어적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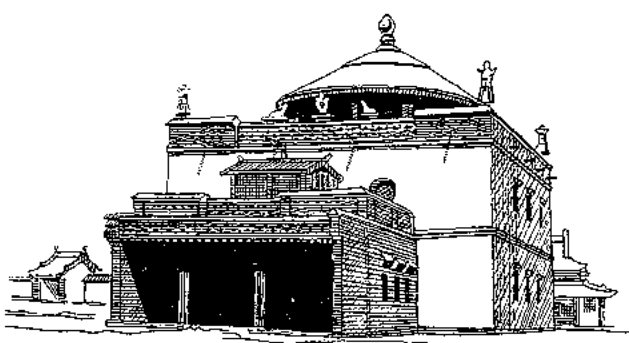
출구와 문들은 몽골 전통주거에서 고수하고 있는 남향이 아닌 동향으로 면해서 있고 모든 배치는 대칭의 원칙이 지켜졌다. 사원 건축에서 형태상으로 가장 강렬한 모티브를 나타내는 것은 스투파(스불간)인데 원형은 인도의 것이다. 고대인도에서는 10여종 이상의 스투파가 부다(佛陀)의 삶의 주요한 사건들을 기념해서 세워졌으며 각기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스투파는 불교의 교리에 따라 모든 불교국가에 세워졌으나 그 기능이나 형태는 조금씩 달랐다. 몽골 스투파는¹⁰⁾ 스불간 이라고 부르는데 성(聖)인들의 유골과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거의 티베트건축양식으로 세워졌다.

아말 바야스가란트 사원은 북쪽 브렌한 산 중턱에 있는 대규모의 사원이다. 1727년 운둘게젠의 사당으로 건립되었는데 그후 수많은 사원들이 주변에 세워졌다(맘바사, 마날사, 마이달사, 라브란사, 복트게젠 등). 사원의 중앙부는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고 개폐식 안뜰의 계단형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13c 카라코룸에 있었던 군(軍)대의 구조와 조각을 차용하였다고 전해진다.

남측 입구 전면에는 양쪽에 두개의 기둥이 있는 의

례용 문이 따로 붙어 있다. 입구의 마하라지 사원을 통해 바깥뜰로 들어가면 2층 건물인 초이진 사가 있고 그 양옆에 두개의 6각당이 있다. 초이진사 1층은 승려들이 독경하는 공간이고 2층은 사원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32m×32m 정방형의 평면에 내부기둥은 64개에 달하는 기와지붕을 한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 간단대사원은 초기에는 여러가지 목적을 갖는 사원 들로 구성되었는데 간단 테그친린사 다시초인홍사 바드마그사, 잔라이시그사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잔라이시그사는 건축적으로도 가장 주목할만한 건축물로서 알려지고 있다. 8대 복트게젠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건립된 건축물로서 의술의 신(神)인 아리야발을 받들고 있다. 정남향으로 배치된 정방형 평면을 갖고 있으며 높은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먼곳에서도 한눈에 띄이는 조형물이며, 티베트양식의 2층구조물 위에 덧붙여 건축된 2층구조의 합각 기와지붕을 갖는 목구조 양식의 건축물이다. 사원 건립 자금으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였다는 기록은 1912년의 건립연대가 의미 하는 바와같이 청(淸)의 속국으로서의 몽골족의 명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겨져 있으며, 몽골 지역에 세워진 마지막 불교 건축물이라는 또다른 의미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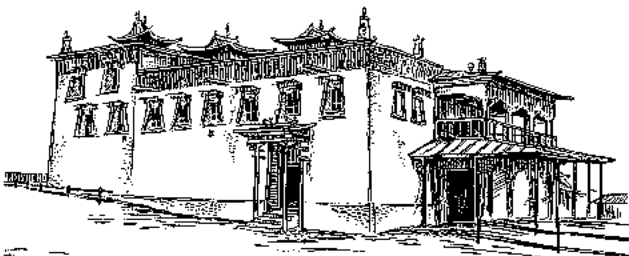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몽골의 종교건축은 그 형태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를 한 노력이었보인다. 그들의 전통적인 원(円)형의 요소를 고수할려고한 의지가 가장 돋보이긴 하나, 작지만 좁고 길다란 창을 갖는 티베트 전통양식의 정방형의 조형과 기와지붕으로 대표되는 중국 목구조건축 양식과의 통합을 이룬 형태는 당시에는 보편화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 실험이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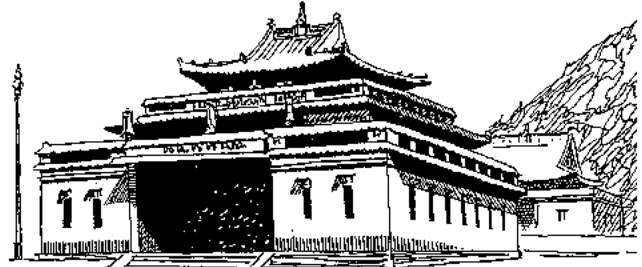
마이들 사원



엘데니 조 사원



베레벤 사원



자잉후레 사원

것으로 보여진다.

어설프지만 의미가 있는 디테일과 함께 쇠퇴기의 중국에서와 같은 과할 정도의 장식만은 피한 몽골사람들의 감각은 단순하지만은 풍부한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신(존상)의 거주공간으로서의 건물을 의미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간줄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과 함께 현관이나 지붕의 꼭대기에 부착되면서 구조물의 특징중 하나의 요소로서 강렬한 상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원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원형, 6각형 8각형, 혹은 두개이상의 합성된 형식 등 다양하다. 또 내외부의 층의 개념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잔라 이시그사의 아리아발상은 높이가 26.1m에 이르는 거대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4층건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지붕공간까지 하나로 되어진 구조로 되어있다.

고려시대 우리나라 다포(多包)양식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원제국 시기의 건축양식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터무니없이(?) 보이는 내부공간의 깊이에 대한 요구를 지혜롭게 수용한 당시 장인들의 공간에 대한 뛰어난 감각에 탄성어린 감탄만을 발할 뿐이다.

고대 유라기 시대 공룡 서식지에서 만난 서양관광객들은 무척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

가족인것같은 그룹도 보이고 취미그룹같은 단체도 보인다

「어디서 왔답니까」

「뉴질랜드에서 친구들 하고 같이 왔답니다.」

대학생같이 보이는 엷뎡 여자들 몇명과 얘기를 나누

면서 이정근 위원이 가까이 다가왔다.

「무엇을 보러 왔을까요」

「고대사에 관한 관심 인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이곳 공룡 서식지에 대한 발굴이 서양에 크게 소개되면서 많이 알려진것 같습니다」

하기야 서양관광객들의 호기심은 아시아권의 관광객들과는 관심사가 다른것이 사실이지만 이정도의 볼 거리에 이들의 지적(知) 호기심이 충족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돌아서는데 한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손으로는 담배를 들고 있는 남녀구분이 얼른 되지 않는 안경친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무슨 책입니까」

「몽골 역사책입니다」

「전공입니까」

「아니,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몽골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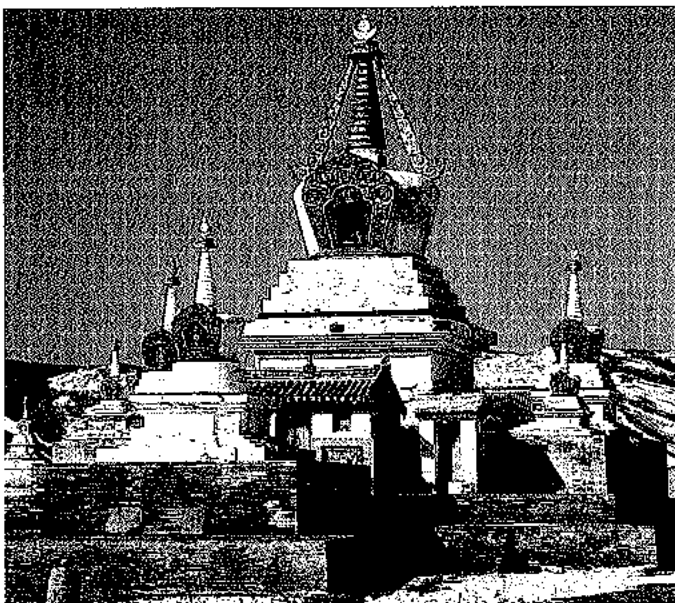
「아직, 여러곳을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다, 아니 여러곳을 다 둘러보다라도 모르는 것은 변함 없을게다. 보이는 것이 별로 없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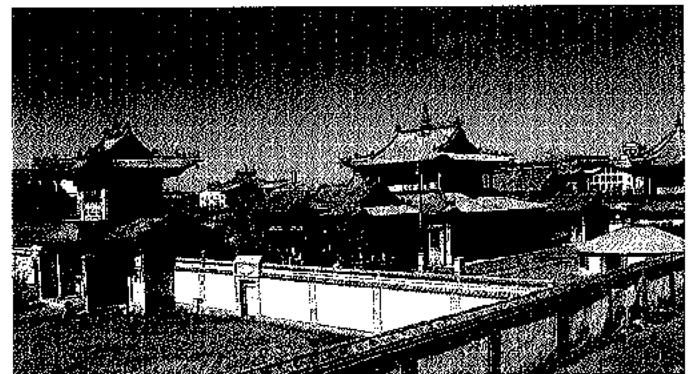
최근의 임마뉴엘 시리즈에서까지 보이는 바와 같이 서양사람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과거의 평면적이며 지엽적 수준에서 벗어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달라이라마로 대표되는 라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힌두교의 그것과 함께 식자층에 폭넓게 확산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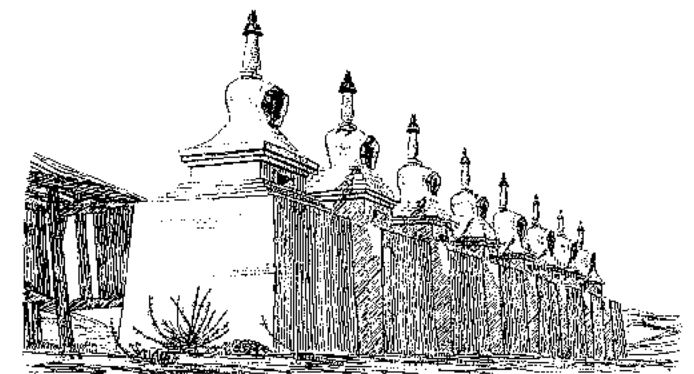
아울러 오늘의 인류사회가 안고있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처방으로 라마이즘이나 힌두이즘 등이 받아들여지면서는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변



스불간(1)



초아진 라마 사원(1942년부터 박물관으로 사용)



스불간(2)

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방황하고 고뇌하고 있는 서양건축사들에게 한가닥 빛과 같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비가시적(非可視的)인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의 근본 고뇌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서.

대초원을 배경으로 한 걸로 드러난 모든 것은 평화스럽고 안락해 보인다.

그리고 그와같은 고요한 환경속에 유일하게 강렬한 색조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 만이 홀로 우뚝서서 색다른 조화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고비(사막)나 거친 자연환경은

명상적이며 선(禪)적인 수묵화의 정적인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제 이 초원의 대지 아래 묻혀있는 몽골인들의 열정과 걱정과 포만감은 찾을길조차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과연 역사속으로 소멸되버린 대몽골족의 영광은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별이 있는 하늘은

돌고 있었다.

여러나라가 싸우고 있었다.

제자리에들 있지 못하고

서로 빼앗고 있었다.

흙이 있는 대지는

뒤집히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싸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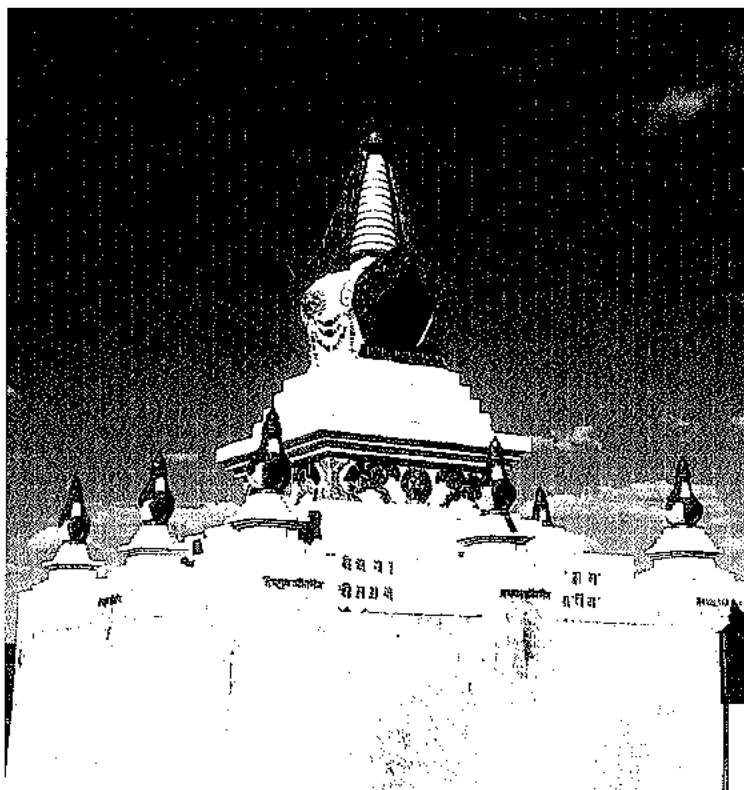
높은 고개넘어

넓은 강들을 건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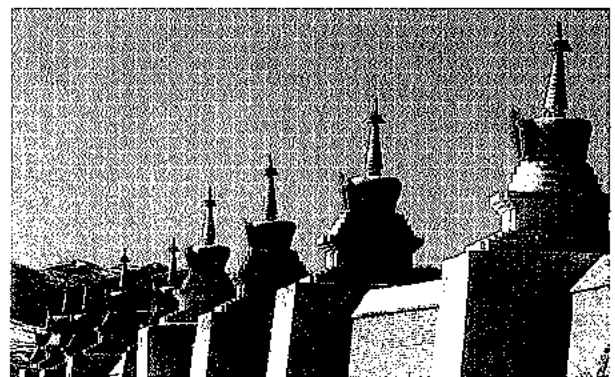
—몽골비사 제11권, 254장—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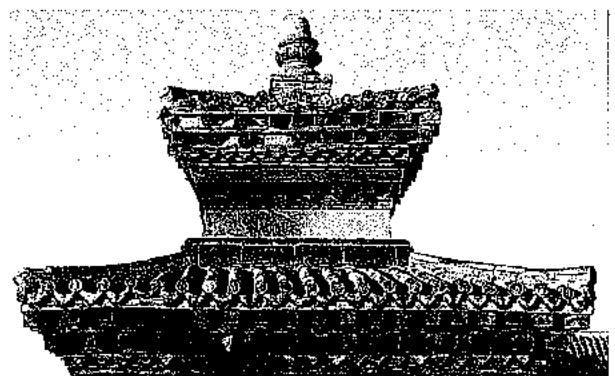
- 1) 티베트에 전래된 불교의 형태를 티베트 불교라고 구분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밀교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특별히 타 지역에 전파된 불교와는 구분하고 있다.
- 2) 티베트 밀교는 속칭 라마교(上人の 의미), 또는 탄트라 불교라고도 불리운다.
- 3) 우리나라의 경우 밀교의 영향은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폭넓게 정치, 사회 전반에 강력한 밀교 문화의 기층을 형성하였다. 특히 전통 건축의 경우 밀교적 특징이나 영향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을 정도의 근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가람배치에서부터 각종 의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 홍윤식, 동국대학교
- 4)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 전래된 밀교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후기밀교라고도 한다.
- 5) 라마승은 독신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몽골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편 일반국민들은 사원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된다.
- 6) 라마승들이 행사한 초야권은 비록 몽골에서만 국한 되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 인도, 에스키모, 아프리카, 유럽, 일본 등 광범위한 지역의 풍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제국 시대의 라마승 들은 사원에 머물지 않고 매지어 다니며 온갖 횡포를 다 부렸다. 아무집이나 들어가 남자를 내쫓고 여자들을 차지 했으며 노략질까지 하였다.
- 7) 무당(샤먼)의 무구나 복장 등이 라마교에 영향을 미치게 됨. 대표적인 것이 동경(청동거울)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8) 실제몽골에서는 사원의 종교적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명칭을 사용한다. 히드나 솜으로 불리워지며 사원의 집단군은 후레라고 구분하고 있다.
- 9)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된 석탑(石塔)의 형태로, 중국에서는 벽돌로 된 전탑의 형태로 각각 발전해 가게 된다.
- 10) 여러종류의 스불간 중에서 가운데 자리 하면서 다른 스불간 보다 크게 강조되어서 세워지는 것은 보디 스불간이다.



보디 스불간



스불간으로 구성된 벽



에르덴조 사원의 변화된 형태의 스불간(3)

1960년대는 한국건축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던 서구의 모더니즘이 60년대에 이르러 한국사회에 착근되면서, 그것의 성격이 많은 한국건축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서구의 모더니즘과 한국성(韓國性)의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케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건축개념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정체성에 대한 혼돈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의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온 몸으로 부딪치면서, 분열된 정체성을 새로운 이념형으로 창조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을 어느 정도 성공시킨 건축가는 매우 드물었다고 생각한다. 김수근 건축이 한국 현대건축사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60년대의 건축

적 활동을 통해 바로 이것을 이룩해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0년대 김수근의 건축은 서구의 모더니즘이 한국에 적용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분열현상들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한국적인 전통을 포괄하는 한국적 모더니즘으로의 승화과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김수근은 서구 모더니즘의 형식언어들을 차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끼워 맞추기도 하였고, 서구 모더니즘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와 테크놀러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 한국종합기술공사를

만들어 서울의 도시문제와 건축에서의 테크놀러지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지만, 그 결과는 그리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부여박 물관 건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왜색논쟁은 그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는다. 1960년대 말에 김수근에 의해 시도된 새로운 건축의 탐구는 바로 이것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결말은 한국전통건축과 서구의 모더니즘을 포괄하는 새로운 건축언어의 창조로 이어졌다. 따라서 1960년대 김수근 건축은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변신과 부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김수근의 건축활동을 본질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새로운 한국 건축의 이념형을 찾아서'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 (3)

Korean Architect, Kim Swoo-Geun

1960년대의 김수근 건축

鄭麟夏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Jung In-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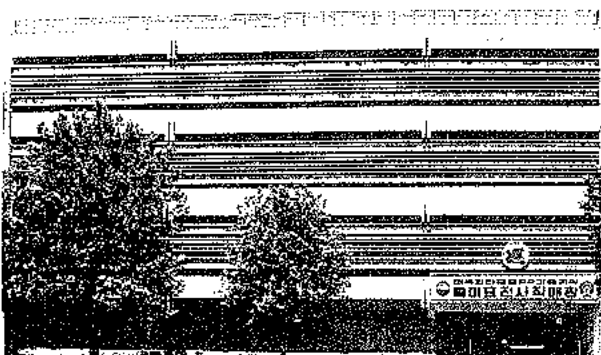
고려의대 부속병원

야말로 60년대의 김수근을 지배한 화두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그는 근대인으로서 자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해 나갔고, 그 대상은 조형성, 재료의 물성, 도시, 인간환경, 한국전통, 그리고 공간으로 바뀌어 갔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바로 시대정신을 관통할 수 있는 건축적 이념형을 창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0년대 김수근의 건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수근 건축연구소 시절(1961-1965)로 국회의사당의 설계가 중단된 이후, 개인 설계사무소를 열 건축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이다. 위커힐과 자유센터를 포함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서구의 건축언어와 재료의 물성을 빌려와 자신의 조형세계를 실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김수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로 코르뷔제와 단게 겐조로 대변되는 후기 근대건축이었다. 두번째는 한국기술개발공사 시절(1966-1969)로 주로 여의도 도시개발, 종로3가계획, 남대문개발과 같은 서울의 도시계획과 박람회 전시장, KIST본관건물, 문화방송사옥과 같은 공공건물이 건축활동의 주류를 이룬다. 이 때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문제와 건축에서의 테크놀로지였다. 또한 프로젝트 성격상 김수근 자신의 개성이 스며 들어가는 작품보다는 팀작업에 의한 익명적인 건축이 주로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간환경계획연구소 시절(1969-1972)로, 이 시기는 실제적인 건축활동보다는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이 주를 이룬다. 인간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최순우를 통한 한국전통공간의 개안(開眼),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건축언어의 탐구로 특징지워진다. 1970년대 이루어지게 될 건축세계를 예비하는 시기이다.

1. 김수근건축연구소

1961년 김수근은 종로구 송현동의 한 건물(현 백상기념관 자리)에 자신의 개인 사무소를 연다. 이 당시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김수근은 부인과 딸은 일본에 둔 채 혼자 귀국하여 건축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수근은 그의 일본인 부인(矢島道子) 사이에 자식을 모두 세명 두었는데, 그가 귀국할 당시 이미 장녀(里里)가



삼호공사 공장

태어났고, 나머지 두명은 부인이 한국에 귀국한 후에 태어났다. 이런 생활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져, 부인이 귀국하고 청파동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 때까지 계속되었다. 김수근이 입주한 송현동의 건물은 한국일보 창업주인 장기영씨가 소유한 것으로 우연히도 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건물이었다. 박길룡과 김수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으나, 김수근이 박길룡의 건축을 자신이 발생하는 '공간' 지에 특집으로 실은 것을 보아서, 그를 한국의 근대초기를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영과는 부친때부터 잘 아는 사이로, 일본에 체류할 당시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 그렇지만 5·16이후에 일거리가 없어서 사무실 운영에 상당히 고전했다고 한다. 1961년의 경우 윤승중의 소개로 맡은 길음시장 프로젝트와 인천송도호텔, 원자력연구소 등 몇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대부분 계획안으로 끝나고 만다¹⁾. 그 이후에도 팰리스호텔, 안양교도소, 남산음악당, 조선호텔, 부여호텔, 여수수족관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설계하나 모두 계획안으로 끝나고, 위커힐과 자유센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주로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다.

초기의 사무실은 5명 내외의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윤승중이 차프역할을 했다. 그 후 자유센터를 하면서 인원은 30명가량으로 늘어나는데, 윤승중을 정점으로 공일곤과 한성일이 디자인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드래프트맨 역할을 했다²⁾. 1965년에 김원이 들어왔을 때도 사무실 인원은 8명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65년까지의 김수근 건축연구소는 10명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 아틀리에 방식으로 사무소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건축은, 100명 이상의 실무자를 둔 대형 설계사무소로 운영된 1970의 그것과 비교하여, 김수근의 생각과 설계의지가 더욱 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후 김수근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경영을 맡으면서 김수근 설계사무소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건축부로 통합된다. 그렇지만 이 때에도 김수근은 자신의 사무소를 기존의 전체조직과 섞기 보다는 따로 분리시켜서 자신의 창작활동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서, 1960년대내 김수근 설계사무소는 여러 조직과 합쳐지거나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골격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1960년대 김수근의 건축세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상황을 사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의 나이가 30대라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 건축가에게 있어서 이 정도 나이는 습작기로 보아야 한다. 왕성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흡수하고, 자기 자신의 건축언어를 실험해 나가는 시기이다. 아직 자기세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길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현상에 참여하고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국회의사당 현상에서 당선되었고, 이후 김종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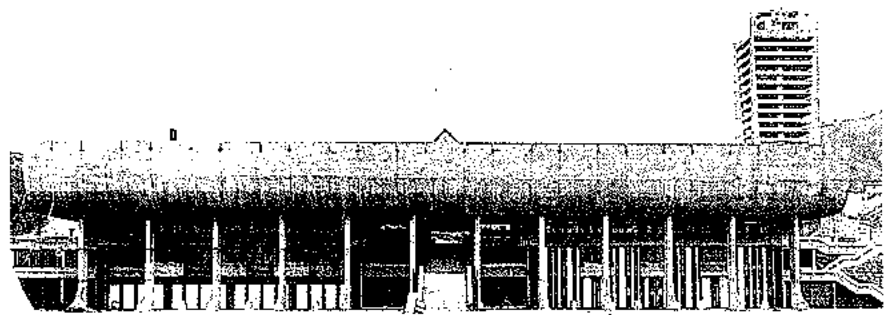
1) 길음시장은 윤승중의 외숙이 주문한 것으로 윤승중이 국회의사당 설계로 알게된 김수근에게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팀이 해체되면서 윤승중은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와 함께 김수근과 합류한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도 실현되지 못한다. (윤승중과의 인터뷰)

2) 윤승중과의 인터뷰.

연계되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다. 젊은 나이에 이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건축가로서 많은 자질을 가졌다는 점 외에도 당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건축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건축적인 수련을 쌓아야 하는데, 일본의 대학이나 서울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방후 좌우대립과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인 상황과 낙후된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기회를 놓쳐 버린다. 이런 상황은 김수근에게 일찍 데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만,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원정수가 “김수근이 사회적인 이목과 기대에 너무 지나친 의식을 가진 나머지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항상 놀라운만한 조형을 만들려고 정열을 기형적으로 소모하는 것 같다”³⁾라고 비판한 데서 이런 점은 잘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건축어휘를 채 가지기도 전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건축언어에 대한 탐구는 주로 다른 건축가들이 이미 사용한 건축적 모티프를 모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가 1960년대 초에 지은 성북동주택이나 회현동주택은 요시무라 준조의 주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고, 힐탑바는 리처드 노이트라 것을, 자유센터는 르 꼬르뷔제와 단테젠조의 것을, 남산시립도서관 계획안과 부산시민회관 계획안은 마에카와 쿠니오의 것을 많은 부분 모방하고 있다.⁴⁾ 그리고 그의 주요 도시계획개념도 단테젠조와 메타볼리스트들의 도시계획개념을 많은 부분 차용한 것이다. 물론 모방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세계를 갖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건축가가 자기의 언어로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소화해낼 경우 이것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없다. 앙리 시리아나도 훌륭한 건축가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멋진 건축어휘를 창조하는 건축가가 있고, 또다른 하나는 남의 건축어휘를 잘 이용하여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축가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⁵⁾. 그렇지만 외국의 최신정보에 대해 거의 고립되어 있었던 국내 건축상황을 악용하여 외국, 특히 일본에서의 최신 건축·도시개념을 자신의 생각인양 언론에 떠벌리고 다닌 점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상에서 볼 때, 김수근에게 1960년대의 시기는, 그가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축언어로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건축가들의 건축언어를 차용하여 작품활동을 했던 시기로 여겨진다. 작은 주택에서부터 국가적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건축언어들을 그들에 적용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고, 그리고 여의도와 종로 3가의 도시개발을 통해 건축을 포괄하는 시스템들과 건축이 가지는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런 초기의 경험을

발판으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언어실험이 이루어지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완전한 자기언어를 갖기 시작한다. 이것은 60년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또다른 사항은 1960년대 한국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다. 건축가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환경과 조우하면서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규정하는 사회적 여건과의 관계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수근은 여러모로 근대적 건축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충분히 성숙지 못했다. 군사정권에 의해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건축물의 건설은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기술환경은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철, 유리,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자재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고,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난립하여 시공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의 표현양식도 자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외국의 예를 도입하여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독창성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한국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행해지지만, 실제로 그것에 이르는 창조적인 방법 에까지 다다르지 못했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전통논쟁으로 이들은 왜곡되고 만다. 건축가들의 직분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거의 없었다고 보여진다. 1962년 행정 서사법이 공포될 때까지 건축가와 건축대사사는 공존했으며, 건축사법의 제정도 5.16이후 각 분야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건축가에 대한 저작권도 초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을 정도였다⁶⁾. 근대적인 건축을 요구하는 건축주들도 당시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 건축가가 독립적인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구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건물을 의뢰할 수 있는 중산계층이 존재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주로 관공서의 고위공무원과, 외국원조에 의해 설립된 주요 기업체의 사장들, 혹은 일부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건축가에게 일감을 줄만한 계층이 너무나도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는 국가였다. 당시 군사정권의 핵심세력과의 근원(近遠)여부는 건축수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센터

3) 원정수, 작가와 작품 김수근론, 공간, 1968년 4월.

4) 남의 작품에 대한 모방은 그의 건축이 완숙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가끔씩 드러난다. 가령 마산 양덕성당에서는 고르티트 뫼의 교회건축, 잠실 대운동장에서는 파리의 파르 드 프랑스(Parc de Prince)운동장과, 범원대청사에서는 단테젠조의 아부자(Abuja) 국회의사당과 유사한 모티프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Henri Ciriani, Eclecta Monitor, 1984,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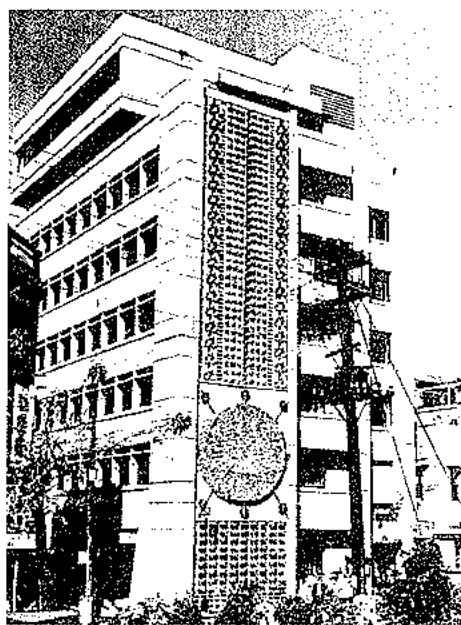
6) 송률, 「한국현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논문, 1993년.

60년대 김수근에게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상황은 그의 건축적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것이었다. 김종필을 통해 대규모 포도재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 한국 건축의 기술수준과 의식의 낙후성은 그의 건축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이 틀림없고, 김수근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창설에 관여하여 결국에는 이것의 경영을 떠맡은 것은 낙후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노출콘크리트와 조형의지

1960년대 김수근 건축을 특징짓는 것이 바로 노출콘크리트를 이용한 조형성의 강조이다. 그는 일반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에 이 재료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60년대 많은 서구의 많은 건축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김중업의 작품과, 이회태, 엄덕문, 김희춘 등의 작품에서 노출 콘크리트가 주요 외장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을 자세히 드러다 보면 건축의 미학적인 측면을 충분히 표출시킬만큼 충분히 이 재료에 대해서 익숙한 것같지 않다. 당시 지어진 대부분의 건물에서 콘크리트가 가지는 물성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서구의 경우 100년에 걸친 콘크리트의 물성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어졌지만, 당시 우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필요한 목재까지도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외국에서 공부한 일부의 건축가들이 그곳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고 한국에 다시 재현하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건축가들이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김수근과 김중업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명확히 나타난다. 그 이유는 두 건축가가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이라.

콘크리트가 건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된 것은 19세기 중반의 유럽에서였다. 조셉-루이 랑보(Joseph Louis Lambot)에 이어 조셉 모니에(Joseph Monnier)가 철과 시멘트를 혼합한 새로운 기술로 특허를 받은 이후,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자리를 잡는다. 1852년 건축가 라세(T. Lachez)가 생 드니에 지은 꾸와네 저택(Maison de Coignet)과 건축가 부왈로(L.A. Boileau)가 베시네에 지은 생트 마그리트(Sainte Marguerite)성당은 과거의 양식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된 채 지어졌다. 콘크리트가 가지는 기술적 측면 이외에 미적인 가치가 최초로 표현되고 있는



오양빌딩

것이다. 이런 초기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가 근대건축에 완전하게 자리잡기까지는 프랑수와 에네빅(Francois Hennebique)의 창의적인 재능을 기다려야 했다. 독학자인 그는 폭넓은 연구계획을 실행하여, 마침내 1882년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특허로 신청했다. “에네빅 이전의 철근 콘크리트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일체식 구조로 하기 위한 조인트 부분이였다. 에네빅은 등글게 구부러 질 수 있고, 함께 갈고리로 걸리는 원통형 단면의 철근을 이용하여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그의 방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강철근들이 크랭크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것, 국부응력에 저항하기 위해 늑근과 조인트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일체식 구조가 대성공을 거두어 1900년 만국박람회 이후 대중화되기 시작한다.”⁷⁾ 1900년 초기에 에네빅의 콘크리트 시공방법을 건축에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건축가는 바로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이다. 그가 1902년에 파리의 프랭크린 가(街)에 지은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로서는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이제 건축가들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어떤 형식의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노출 콘크리트가 새로운 미적 감각을 표출할 수 있는 재료로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르 꼬르뷔제가 큰 역할을 했다. 1908년 르 꼬르뷔제가 페레의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미 페레의 사무실은 콘크리트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고, 이것에 의해 많은 건물이 지어진다. 페레가 처음 르 꼬르뷔제를 보았을 때, 그에게 철근보강 시멘트로 건설된 아나톨 드 보도(Anatole de Baudouin)의 생장 드 몽마르트르(Saint Jean de Montmartre)를 방문하기를 권유한다⁸⁾. 페레 사무실에서 배운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르 꼬르뷔제는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한다. 1914-1915년에 발표한 도미노 이론이 바로 첫 시도이다. 그리고 이를 건축적으로 적용한 것이 1920년대 일련의 빌라들과 공공건물들이다. 그렇지만 그때까

지의 건물들에서 노출 콘크리트의 거친 텍스처가 집중적으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탈로 마감을 한 다음 백색도장을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노출 콘크리트는 1950년 이후 발표된 작품들, 마르세이유 집합주거, 라 푸레트 수도원, 그리고 상디갈의 여러 공공건물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요소로 등장한다. 김중업이 노출 콘크리트 기술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1952년 9월에서 1956년 3월까지 르 꼬르뷔제설계사무소에 머무르면서 상디갈의 공공건물과 파리대학촌의 브라질관의 설계에 참여하면서였다. 이들 건물에서 르 꼬르뷔제는 노출 콘크리트를 중요한 표현도구로 사용하는데, 김중업은 바로 여기서 콘크리트가 갖는

7)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정영철역, 세진사, 1987년, 63쪽.

8) William Curtis,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haidon, 1986년, 26쪽.

많은 잠재력을 깨닫게 된다. 이후 그는 1956년에 귀국하여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것을 건축에 실제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1960년 한국현대건축의 최대의 성과라고 불리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노출콘크리트로 지었다.

그렇다면 김수근은 어떤 경위를 통해 노출 콘크리트를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것은 일본을 통해서였다. 그가 일본에 유학할 당시 노출 콘크리트는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건축재료였다.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에서 풍미한 건축경향은 르 꼬르뷔제의 건축수법이었고, 그가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도 일본건축가들에 의해 보편적인 재료로서 채택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르 꼬르뷔제의 건축(엄격히 이야기하자면 근대건축양식)을 도입한 사람은 이미 소개한 바있는 안토닌 레이몬드였다. 1925년 그가 지은 자신의 집과 1934년에 지은 천기수지조(川崎守之助)주택은 명백히 르 꼬르뷔제의 건축어휘로 지어졌다. 이후 마에카와 구니오(前川國男)가 1928년 동경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르 꼬르뷔제 사무실로 들어가고, 사카쿠라 준조(坂倉準三) 역시 1931년부터 5년간 르 꼬르뷔제 사무실에 머무른다. 1938년에 동경대학교를 졸업한 단게젠조(丹下健三)의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것(Chateau d'Art)을 보면 르 꼬르뷔제의 스위스 학생회관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바로 이들은 초기부터 르 꼬르뷔제의 건축경향에 크게 경도되는데, 이들에 의해 일본에 르 꼬르뷔제식 노출 콘크리트가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0년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과 패전에 따른 전후 복구로 인해서 정상적인 건축활동이 거의 중단되기 때문에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50년 이후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단게젠조가 1950년대에 설계한 일련의 공공건물과 마에카와가 지은 세타가야(世田谷)구민회관(1959), 교토회관(1960)과 도쿄문화회관(1961)이다.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법이 바로 노출 콘크리트를 일본식의 목구조 양식으로 변환시킨 것이었다.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르 꼬르뷔제 건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거칠은 텍스처, 육중한 볼륨감, 빛과 그림자의 능숙한 처리라면, 일본건축에 사용된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 방식은 목구조양식처럼 기둥과 보 등 각 부재들이 명확히 드러나고, 콘크리트 표면이 비교적 매끈하게 처리되면서, 육중한 볼륨감은 여러개의 부재들로 분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는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느낌은 서양의 것과는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김수근이 받아들인 것은 르 꼬르뷔제가 사용한 방법을 일본식으로 한번 재해석한 노출 콘크리트 사용방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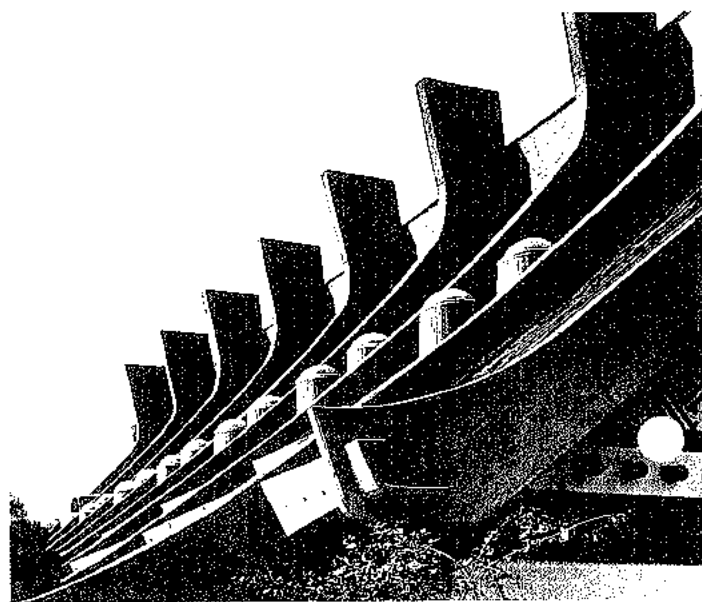
1960년대 김수근이 발표한 작품들 중에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가 당시에 사용하였던 건축어휘의 원전은 대부분 르 꼬르뷔제의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과 르 꼬르뷔제의 작품을 옆에 놓고 비교해 보면,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오히려 단게젠조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령 국회의사당 계획안은 단게가 설계한 가가와 시청사를, 삼호공업사공장과 수도의대 건물은 역시 단게의 구라시키 시청사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단게가 르 꼬르뷔제의 건축어휘를 차용하여 일본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김수근과 김종업이 사

용한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기법이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각기 다른 토양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수근은 일본이라는 또하나의 필터를 통해서 근대건축을 이해했던 것이다.

노출콘크리트에 의한 건축설계는 위에서 언급한 건물 외에도 1960년대의 모든 주요건물에 적용되는데, 오양빌딩, 남산맨션, 한국일보 사옥, 불광자동전화국, 문화방송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는 노출콘크리트 외에도 몇가지 재료들이 덧붙여져서 노출 콘크리트의 두박함을 상쇄시키고 건물에 풍부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가령 오양빌딩, 자유센터, 수도의대 부속건물에는 강한 텍스처의 테라코타나 타일 모자이크가 벽면의 장식으로 사용되었고, 남산맨션에서는 돌출된 둥근 나무막대가 발코니의 난간에 사용되었으며, 부여박물관에는 한식기와가 지붕에 사용되었다.

2.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1966-1969)

1960-1970년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의 사회변동에 있어서 가장 다이내믹한 시기로 여겨진다.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서, 도시화가 가속되었고, 이 시기에 이르러 전체적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는 절대수에 있어서 감소하는 반면 도시는 그 인구증가분을 모두 흡수하면서 팽창일로에 놓인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탈피하여 공업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 시기 서울의 인구는 연평균 8.5% 이상 증가하여, 1961년 인구 224만이던 서울이 1970년에 이르러 553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1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따라서 도시영역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대거 확장되게 된다. 1960년대가 서울의 도시계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때에 행해진 서울의 도시계획이 현재 서울의 도시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더이상 기존의 도시구조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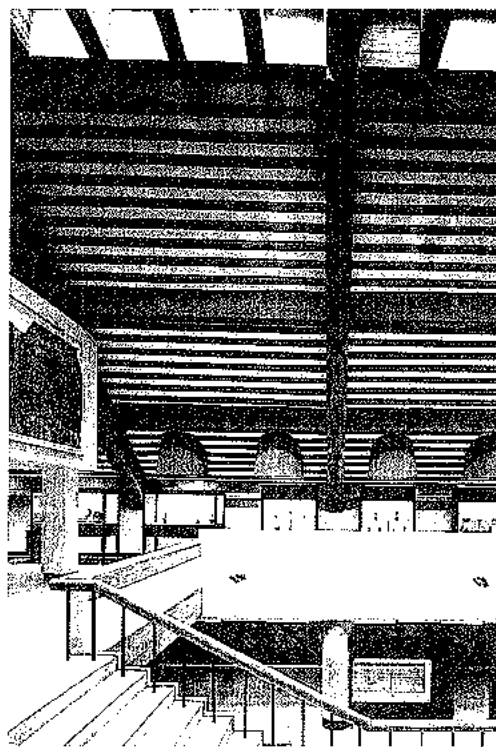


부여박물관

에 이르러 본격적인 서울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존의 도시구조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서울의 팽창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의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짜야만 했다. 1966년 인구 500만이 거주하는 현대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었다. 1967년에는 건설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안에 의거해서 여의도지역을 비롯하여 잠실지구, 영동지구를 포함한 대대적인 강남 도시개발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시기에 김수근은 서울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떠맡는데, 그것은 그가 당시 정권의 권력자들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런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용역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계획에 깊숙히 개입하게 되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서울의 도시계획

워커힐과 자유센터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김수근은 아뜰리에 방식이 아닌 보다 대규모의 조직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건축을 위해서 그보다 선행되는 도시의 문제와 테크놀러지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했고, 이런 생각은 당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국토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설계용역업체를 설립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발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1963년 3월 9일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60번지에서 '국제 산업기술단'이라는 상호로 출발했다. 대표이사는 서울공대 전 기공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재신이었고, 이사는 백만길, 강태욱, 김수근, 김창집, 공요준, 엄덕문 등이었으며 감사는 김석근이었다. 자본금 2백 50만원인 비교적 조출한 출발이었다. 1964년 4월 13일에는 상호가 '코리아 퍼시픽 컨설턴트'로 바뀌고 이사장이 김재신과 김수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뀐다."⁹⁾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부여박물관

몇 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국제 산업기술단'이 위치한 곳이 바로 김수근의 아뜰리에란 점이다. 뒤이어 옮긴 사옥도 김종필이 후원하고 김수근이 설계를 담당한 자유센터였다. 또한 김수근이 여러 사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핵심적인 위치를 계속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들로부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발족이 김수근에 의해 제안되거나, 혹은 이 회사 창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김종필에 의해 설립과 운영을 제안받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두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첫번째 가정을 한 이유는 김수근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한국의 기술적인 낙후성이 자신의 건축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판단하고, 전체적인 건축환경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점을 주장했다는 그의 측근들의 증언 때문이다.¹⁰⁾ 그렇지만 이보다는 두번째 가정이 더 타당해 보인다. 즉, 이 회사가 건축 용역 뿐만 아니라 토목, 화공, 조선, 기계 등 전 업종을 포괄하고 있어서, 경제개발을 제일의 국정목표로 내세운 제 3공화국의 개발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기구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어질 당시 한일회담에서 일본이 상업차관과 배상금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 예상되었고, 일본은 상업차관과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일본상품과 설계용역의 한국진출을 추진하였다.¹¹⁾ 따라서 일본의 기술용역업체가 한국에 진출하여 대규모 설계용역을 수주할 경우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형편이어서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설립이 시급한 형

편이었다. 또한 지속될 국토개발을 위해 이들의 규모와 특징을 결정짓고 공사를 설계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정부로서도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국종합기술공사를 정책적으로 대규모 종합기술용역업체로 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김종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김종필을 통해서 김수근이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기초단계로 1963년부터 김수근 아뜰리에에서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65년 5월 25일 '한국종합기술공사'가 태어나고 ¹²⁾ 다시 1966년 8월1일에는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담당한다는 취지에서 상호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바꾼다. 그리고 1966년 8월 25일 김수근 건축사무소를 흡수통합한다.

9) 앞의 책, 70쪽.

10) 윤승중에 따르면, 김수근은 한국종합기술공사 참여를 다음과 같이 말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년동안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다". 김원에 따르면 "그러나 이 시장에서 아스팔트를 뒤엎어 놓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김수근 아뜰리에 발아와 한국건축, 『공간』, 1986년 9-10월, 230호.

11) 특히 일본의 퍼시픽 컨설턴트 회사와 일본공영이 한국진출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고 한다. 『한국기술공사 30년사』.

12) 이것이 탄생하기까지 김종필의 역할이 매우 컸다. 1964년 10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성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외화 절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과 의논한다. 여기서 김종필은 김수근의 조언을 듣고 건설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김종필은 박정희와 의논한 다음, 그 내용을 석정선(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에게 설명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석정선은 합동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종합기술공사를 비롯하여 한국경제개발원, 한국해의기술공사 등을 발족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시킨다. 김종필과 이 공사와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0년대 초 정영부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당시 국무총리로 있던 김종필은 총리서서 공문(경부 342-22-314(73-0036))을 정부기관에 보내고 정부차원의 건설기술용역발주를 이 공사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1972년 8월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호'라는 대통령령을 통해 이 공사의 부채를 동결시켜 준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0년사』.

이때부터 1969년까지 김수근이 '한국종합기술공사'에 재직할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경부고속도로 기본계획, 소양강댐 기본계획, 포항제철 입지선정과 같은 대형 국토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남대문시장 도시계획, 세운상가 개발,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본관 설계 등과 같은 도시및 건축 프로젝트였다. 이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김수근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적인 제한으로 과거 이틀리에 시절만큼 실제작업에 개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도시 프로젝트들의 경우, 대체적인 계획방향이 관청에서 결정되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가 큰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세운상가와 여의도 종합개발과 같은 몇몇 도시계획 작품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김수근이 근대적인 도시계획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동경에대시절이었다. 그가 남긴 수업노트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세의 도시계획과 르네상스 시기의 도시계획, 그리고 르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이론에 대해서 적고있다. 그렇지만 그가 설계한 과제물에는 도시계획 프로젝트가 없다.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동경대학교 다카야마 연구실에서였다.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 울산도시계획 현상설계이 참여했으나, 이것의 계획안이 매우 도식적이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보아 당시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김수근의 도시계획 대한 사고가 깊어진 것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참여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다양한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시키면서, 그는 당시에 서구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새로운 도시계획의 개념을 받아 들여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김수근이 펼쳐 보이게 될 주요 도시계획 개념도 이 당시 유럽과 일본에서 대두되었던 도시계획 개념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당시 그의 주요 도시계획 개념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막고 입체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도입된 개념이 보행자전용의 인공테크이다. 인공테크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 분리하고 여기에 녹지공간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도로와 도로의 입체적 분리도 제시한다.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도로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것을 높이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그가 당시 참가하였던 모든 프로젝트, 즉 삼일고가도로와 여의도 도시계획, 남대문 재개발계획, 종로 3가 재개발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혼란스러운 도시의 기능과 형태를 단순화 하기 위해서 강한 축을 도시에 구축토록 하여 기계적인 질서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종로 3가 재개발과 여의도 도시계획에서 이 개념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세번째는 김수근이 건축에서 따온 개념으로 도시가 들어 설 대지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김수근은 한국건축이 가지는 '점지의 묘'를 일찍부터 터득한 건축가인데, 이런 그의 건축적 특징이 도시설계에서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9년의 보고서에 나타난 여의도 도시계획의 모형을 보면, 여의도가 한강에 떠있는 섬이라는 대지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어 건물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여의도 중앙의 코어 부분에 상업용 건물을 배치하고 한강주변에는 계단형의 아파트를 배치하여, 한강이라는 자연적 요소를 사용자들이 최대한 즐길 수 있게 하고, 한강에서 볼 때도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박람회전시관

몇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건축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박람회 건축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이것은 "그 목적으로 보아 다분히 선진적이어서 자국의 전통과 기술과 미래에 대한 상징으로써 기념성을 추구하였고, 따라서 어느 건축물의 분야보다도 그 기능, 예산, 표현방법 등에 구애받는 바가 적고, 또 앞날에 비전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 수있는 좋은 여건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기"¹³⁾ 때문이다. 또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최첨단의 경향들이 선보이게 되므로 거기에 참가한 건축가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기도 한다. 한국이 세계박람회에 전시관을 설치한 것은 1964년 뉴욕박람회부터였다. 이 때는 김중업이 전시관을 설계하였다. 그 이후에 열린 세번의 세계박람회 (몬트리올, 오사카, 스포칸)에서는 김수근이 그 전시장의 설계를 담당한다. 계속해서 박람회 전시관의 설계를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역량이 국가적으로 어느정도 인정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있으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을 계속 맡았던 것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김수근은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어서 이들 프로젝트의 진행에 그리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부분 운송중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남산맨션

13) 김원 '세계박람회 그 건축사를 위한 공간', 1966년 12월.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는 캐나다 국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렸다. 그 주제는 '인간과 그들의 세계'(Man and His World)로 되어 있다. 한국관은 대지 380평에 건평이 120평의 규모로 지어졌고, 전체 건축예산은 17만 달러 정도가 투입되었다. 당시 외환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값싼 비용으로 전시관의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시관은 한국의 목조건축의 디테일들을 현대적으로 적용시켜 보려는 설계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당시 이 건물설계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원은 설계의도를 설명하면서, "한국관의 설계에 있어서 문제되었던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통, 현존의 자산, 미래의 가능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¹⁴⁾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김수근은 전통양식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전시관에서는 비교적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한국고유의 목조건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식의 건물을 상정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아주 추상적인 건축을 생각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고, 건축을 요소로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그것을 연속적인 상태로 보여주고자 했다.¹⁵⁾ 그런데 어느날 김수근이 실무를 진행하고 있던 김원을 불러 안국동과 화신사이에 왼쪽에 2층 한옥집들을 지목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스캐치해보라고 지시한다. 그때 이후 건물설계의 방향은 한옥이 가지는 공간적이고 형태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규명해 나갔다고 한다. 그 때 논의된 것이 한옥이 가지는 공간의 개방성, 즉 기단과 지붕 사이에 열려진 공간구조를 전시장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구조하고 관계없이 소우주가 지붕으로 덮여있는, 그러면서 내부는 자유롭게 왔다갈 수 있는 것을 한국건축공간의 특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설계를 진행한다. 이 경우 기단은 음이고 지붕은 양인, 그리고 기둥은 중간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 때에도 건물의 지붕으로 한옥의 서까래와 지붕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서까래가 등장한 것은 캐나다에서 목재를 가장 구하기 쉬워서였고, 지붕이 높아진 것은 조형적으로 초기 안이 너무 납작해서 이것을 좀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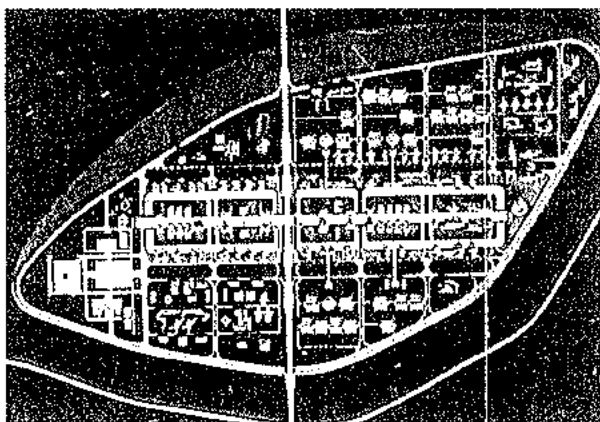
1970년 박람회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Progress and

Harmony for Mankind)'를 주제로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다. 단계겐조 연구실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은 전체 대지에 연속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식물의 줄기와 가지처럼 축을 이루는 시설을 두고 여기에 여러가지 전시관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정문과 페스타발 프라자를 포함하는 주축 공간은 거대한 스페이스 프레임 (108m-291.6m)으로 뒤덮혀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전시관들은 움직이는 보행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관은 바로 이 중심공간 옆에 세워지게 된다.

김수근이 오사카 박람회를 맡게 된 것은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70년 박람회의 대지를 조사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만 이 사이 3년이란 기간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발생했다. 특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60만 재일교포들이 일본의 엑스포에서 경회루를 본다면 얼마나 감격할까 하면서 경회루를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고 나서, 경회루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오면서 현대적인 엔지니어링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수근은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그 후 소관부처가 문공부에서 상공부의 무역진흥공사로 넘어 오면서 다시 관여를 하는데 이때 제시한 안은 매우 현대적인 것이었다.

당시 건물이 들어설 대지면적이 상당히 넓게 잡혀졌다. 몬트리올 박람회 때, 1000㎡ 정도 였으나 이번에는 4150㎡ 이상의 대지를 임대받는데, 이는 개최장소가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윤승중에 따르면, 전시될 내용에 비하면 대지가 넓어 디자인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시장 주위에 3미터 간격으로 3.75m 직경의 원형 샤프트를 북측에 8개, 남측에 7개를 각각 일렬로 배치하고, 그 위에 높이 4.24m 폭 35m의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덮어서 어떤 영역감을 부여하려고 했다. 또한 샤프트의 표면을 유리처럼 처리하여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의도를 한국전시관에 사용하게 된 계기는, 뒤에서 언급될 맥루현의 환경예술론의 영향에 따라 1964년 뉴욕박람회와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에서 해프닝적인 요소를 도입한 외국의 전시관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인기를 끈 체코판과 캐나다판은, 관람객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다차원 영화, 관람객들의 투표로서 극의 흐름을 바꾸는 영화를 상영하는데, 바로 이런 흐름을 한국관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공사과정에서 광택이 없는 군청색으로 바뀌어서 처음의 의도가 변경된다.

1970년 오사카 박람회 전시관은 그가 설계한 다른 전시관에 비해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전시관의 형태 뿐 아니라, 거기에 전시된 내용들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된 결과물이었다. 또한 그 당시 한국에서는 드물게 매우 하이테크적인 건축어휘를 사용한 것도 특이할만하다. 원형의 금속기둥과 철골 트러스 등이 주는 이미지가 당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서양의 하이테크건축



여의도 마스터플랜

14) 앞의 책.
15) 김원과의 인터뷰.

과 유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시 김수근의 작품 경향으로 볼 때 조금은 이탈된 면을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설계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데에는 김수근이 당시의 세계건축의 경향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것을 자신의 건축에 반영하려 한 점도 있었지만, 프로젝트의 전체를 통괄하고 있었던 윤승중의 생각이 설계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1960년대 김수근과 함께 작업하면서, 김수근의 직관적이고 조형적인 건축개념을 구체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가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 건축개념은 바로 이와같이 건축을 기계적인 이미지로 풀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그가 독립하여 원도시설계사무소를 차렸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볼 때, 전시관설계는 전시물의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어지는 것이었지만, 김수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조형언어를 실험하고 또 이것을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검증하는 장이 되었고, 최신 세계건축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창역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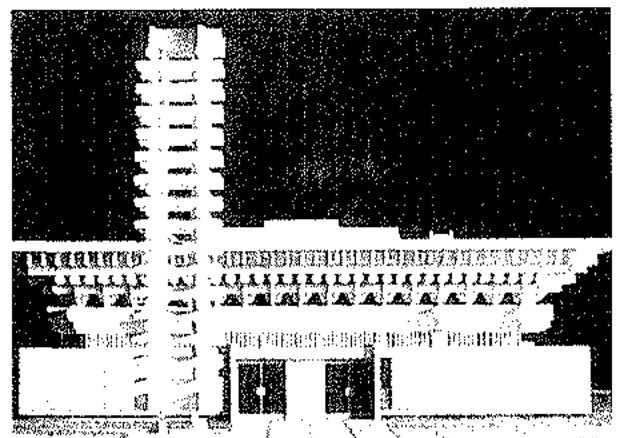
KIST본관 : 시스템으로서의 건축

김수근이 1960년대 후반에 지은 건축물 가운데 특이한 점을 보이는 몇가지 작품이 있다. 그것은 제천회관(현재는 해피 홀로 불림)과 원서동 구인화씨대, 신일학원 캠퍼스계획, 그리고 KIST본관으로서 이들은 모두 유결이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여기서 특이하다고 언급한 이유는 건축적인 이미지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조형적 작위성을 갖기 보다는 시스템적인 성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 김수근은 강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건축언어를 탐구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강한 이미지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킨 것이기 보다, 자신의 조형의지에다 구조적인 것들이 끼워 맞추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양자의 개념이 충분히 발전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보다는 분리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의 건축은 무언가 완결되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미지가 비슷한 르 꼬르뷔제와 단계건축의 건축을 그의 건축과 비교해 보면 이 점은 명확해진다. 가령 단계의 요요기(代代木) 실내체육관과 세인트 마리아 성당을 보면 건축조형과 구조가 일체가 되어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준다. 단계의 경우 그의 독창적인 제안을 소화해주는 구조 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였다. 같은 동경대학에 있었던 쓰보이 요시카스와 이노우에 우이찌 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물론 단계의 작업태도가 철저히 협동적인 면을 강조하여, 구조설계자와 설비기술자, 그리고 시공자가 팀워크를 이루어 서로의 잠재된 에너지를 표출시키게 한 것도 이런 좋은 디자인이 나오게 한 주요 이유일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김수근은 탁월한 감각을 가진 구조전문가를 가질 수 없었고, 또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협동적이기 보다는 혼자 조형을 만져 나가는 타입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설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잘 이

해된다. 즉 김수근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 대하면, 거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부여한 하나의 오브제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건축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사람들은 윤승중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의 몫이었다. 가령 남산음악당을 설계하면서, 김수근은 그의 상상력에 따라 복주머니형상을 가진 스케치를 윤승중에게 내미는데, 이것을 셀구조로 바꾸어서 건축화시킨 것은 바로 윤승중이었다.¹⁶⁾

KIST 설계는 한국최초의 연구단지건설이라는 의미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 프로젝트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500만불을 출자하여 추진되었다. 미국측에서는 주로 기획과 자문역할을 맡았는데, 주로 벡텔사가 이 일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진행을 맡았는데, 김수근이 속한 '기공'이 본관과 아파트를 맡고 무에건축연구소가 마스터 플랜과 연구동, 영빈관을 설계하였다. 설계는 연구동 쪽이 먼저 이루어지고 본관은 나중에 지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관설계는 연구동 건물의 배치에 기준이 되었던 마스터 플랜상의 조건들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도 설계팀은 시스템적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려고 하였다. 초기에 한 작업은 건축주 측에서 제시한 기능적인 요구들, 즉 연구활동을 지원하게될 컴퓨터실과 도서관, 연구소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하게될 강당과 식당, 그리고 사무실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라는 요구들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 이것을 구조적인 시스템과 연관 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초기의 안은 사무실영역과 서비스 스트럭처를 분리하여, 구조적 역할을 하는 내력벽을 만들고, 오피스는 그것에 의해서 분리된 공간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다. 위에서 언급한 두 프로젝트와 유사한 설계 프로세스를 밟아 나간 것이다. 그러나 설계팀은 이 단계에서 정부측의 또다른 요구에 봉착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형태를 두고 건축가와 정부측과의 심한 마찰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당시 공사를 총괄하였던 공병대령은 청와대측의 뜻을 강조하며, 본관건물에 한 옥지붕을 씌워서 연구소 본관으로서의 기념적인 성격을 표출하기를 요구하였다. 김수근은 여기에 반발하여 프로젝트를 강행하는데, 당시의 권위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EXPO '67 한국관

16) 윤승중과의 인터뷰.

보아 상당한 정치적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런 반응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초기의 계획안도 수정되는데, 시스템적인 성격에 기념비적이고 권위적인 면이 부가되어 지금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긴 열주들을 건물 전면으로 강하게 부각시키고, 이들 상부의 매스가 강하게 돌출되어서 본부건물로서의 기념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유결이 이야기한 보편타당한 시스템은 어떻게 표현된 것일까?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정의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모양으로 설계된 4개의 오피스 존을 중앙강당을 중심으로 바람개비의 모양으로 돌려서 배치한 것이다¹⁷⁾. 따라서 KIST본관은 4면이 어디서 보든 동일하게 보이도록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네 면이 동일한 평면으로 둘러싸인 중앙부분에 중앙강당이 설치되어 평면적으로는 매우 답답해 보인다. 건축가는 이 부분을 원래 아트리움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중앙공간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2층 정도가 채워져야 적절한 코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하였다. 강당위에 중정을 설치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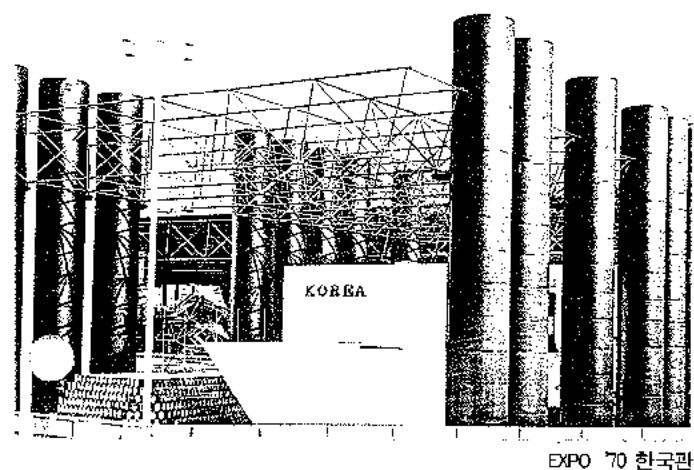
3.인간환경계획 연구소 (Human Environment Design Institute, 1969~1972)

1969년 김수근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대표이사직을 자신과 경기중학교 동기동창인 정명식에게 물려주고 사임한다. 직접적인 사임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당시 아킬레스근을 다쳐서 3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기회로 회사를 그만둔다. 김수근으로서는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거기서 하는 일들이 그의 본질적인 퍼스내러티브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가 수행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한 작가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보다는 주로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적인 것들이었고, 더욱이 관료들이 요구하는 계획 원칙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대치되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건축과 도시적인 프로젝트 외에 댐이나 상수도, 그리고 고가도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의 건설을 전부 통괄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프로젝트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 부어넣을 여력이 없었다. 1969년 7월 한국종합기술공사를 사임하고서부터 1972년 공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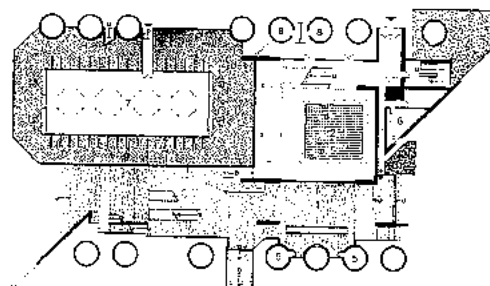
축연구소를 열 때까지 3년가량의 기간은 김수근에게 있어서 새로운 건축이념을 모색하는 시기이며, 건축전반에 걸친 이론적인 축적을 활발히 하던 시기였다. 최순우와 함께 전통건축을 답사하고 빈가를 실측하면서 그것들이 가지는 공간적이고 조형적인 면을 체득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인문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건축의 사회적인 측면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오사카 박람회에 들어갈 미래관과 풍파두센터 계획안을 설계하면서, 인간적 스케일의 단위공간과 매스들을 다양하게 중첩시키는 실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조형과 공간언어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김수근이 공간이란 개념을 자신의 건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김중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시대 건축가들이 건축적 형태에만 집중하여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반면, 김수근은 공간을 주요 건축테마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것은 한국 전통건축이 기초하고 있었던 그 근본 원리를 체득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런 점들을 비루어 볼 때, 김수근 생애에 있어서 이 시기만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실험적인 시기는 없을 것이다.

흔히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김수근 건축을 비교하면서, 60년대 시대를 노출콘크리트의 사용과 건축의 조형성이 강조된 시기라고 일컫고, 1970년대 이후의 시대를 벽돌의 사용과 휴먼 스케일의 공간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분류한다. 이런 구분이 그 의미를 가진다면, 그런 건축적 전환이 일어난 계기가 과연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가지 사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먼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사적인 변화를 들 수 있고, 두번째는 여기에 대응한 김수근 자신의 건축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와함께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건축적 휴식기는 김수근이 비교적 충실하게 자신의 건축을 탐구하면서 세계건축의 변화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다.

이 당시 김수근은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쳐 있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슬럼프라고 여겨진다. 먼저 자신의 건축에 대해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1960년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이후 의욕적으로 건축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들은 한국건축계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후 10여년이 지난 그때까지 자신의 건축세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의 건축언어를 소화하기에 급급했고, 그나마



EXPO '70 한국관



EXPO '70 한국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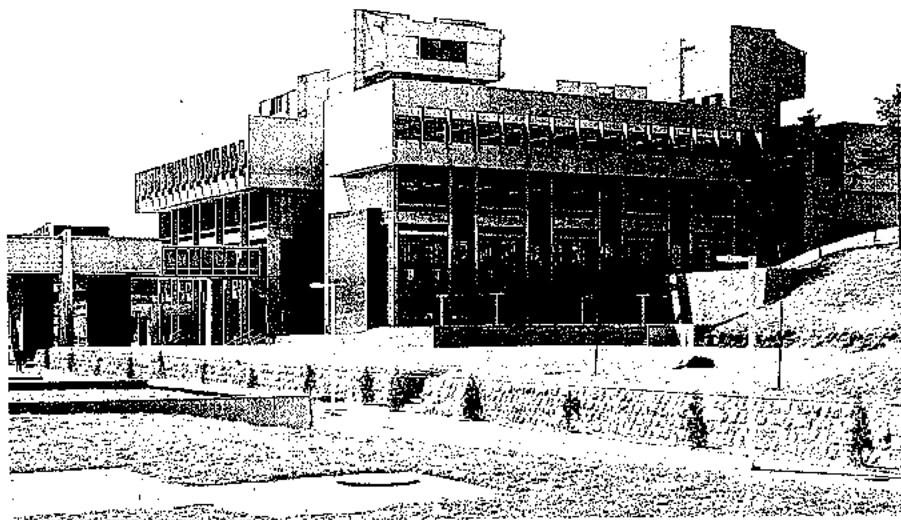
17) 유결과의 인터뷰.

자신의 건축언어로 시도한 건축이 왜색시비에 휘말려 버린다. 특히 부여박물관의 왜색논쟁은 건축가로서 그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자신이 기초하여야 할 건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되돌아 보게 하였다. 이 문제는 당시의 그로서는 매우 심각하고도 절실한 문제였다. 이것을 찾지 못하고서는 그의 건축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강렬한 내면에 대한 표출형식을 그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 르 꼬르뷔제적이고 단계적인 조형언어에 의지하여 자기 내면의 불길을 분출시켜 보았지만,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형식에다 자신의 내면을 끼워 맞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빚어진 조형외에는 그의 생각을 담을 것은 없었다. 이런 건축적인 딜레마에 간염과 아킬레스근의 부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는 더이상의 정력적인 활동을 방해하였다. 그는 37세의 나이로 '기공'이라는 대규모 조직의 경영을 맡았지만, 건강의 악화로 더이상 그는 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가 얼마나 바빴는지는 그 당시 여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2주에 한번씩 일본이나 외국으로 나간 출국도장이 찍혀있다. 그렇지만 1969년을 전후하여 이런 분주한 활동을 멈추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상황은 그가 걸어온 과거를 반추하며 자신의 건축관에 의문을 던지게 하였고, 내면적으로 자신을 추스리며 새로운 길을 모색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모방이 아닌 진짜 자기만의 소재, 자기만의 주제, 자기만의 표현을 찾아 해매게 한 것이다.

김수근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전반적인 세계건축 조류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당시 김수근은 잦은 해외여행을 통해, 이것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였다. 1960년대 당시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건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다. 1966년에 창간된 공간지를 제외하고는 건축잡지도 거의 없었으며, 외국서적이나 잡지도 미군부대를 통해서 몇 권이 간신히 들어올 뿐이었다.¹⁸⁾ 해외여행도 엄격히 제한되던 시절이어서 건축활동은 주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곳의 전문을 익히고 돌아 온 몇몇 건축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에서 고립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던 한국건축가들이 지은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 당시 세계적인 조류와는 상관없는 극단적인 기능주의 양식을 가진 건축물들이었다. 이에 비해, 김수근은 1960년대에도 계속해서 일본과 서구로 여행을 했고, 특히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에서 당시 세계건축의 변화를 상징하는 하브라켄의 새로운 집합주택유형과 오토 프라이의 막구조를 이용한 건축물을 접하면서, 세계건축의 변화를 실감하

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당시 한국의 현실과 서구건축의 흐름과는 약 한세대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했다고 여겨지고, 세계사적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자신의 건축에 반영한 김수근은 다른 한국의 건축가보다 그만큼 의식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었다. 한국현대사에서 개발연대로 통칭되는 1960년대와 1970년에 벌써 환경문제를 건축의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온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그가 이 때 이야기한 중심적인 개념들, 해프닝이 있는 공간, 일과 유희가 합일이 되는 공간 등은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려던 서구건축가들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김수근은 세계를 기계적인 모델로 바꾸어 보려던 근대건축의 이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건축적 '이념형'을 찾아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서구건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는 세계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공업기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들이 환경파괴와 비인간적인 기계주의 앞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틈을 인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생태계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문명의 진보가 이제라도 곧 끝날 것같은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다. 자원의 고갈, 공해, 기근, 질병 등은 인류가 효과적인 대항책을 취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이전 시대를 지배해온 서구 기술문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제 3세대 건축가들의 비난의 초점은 서구의 기술문명이 기초하고 있는 근대정신으로 향하게 된다. 이들에 의하면 당시의 많은 문제점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에 나타난 합리적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자연을 객관화하고, 이 새로운 정신구조가 인간을 한층 더 소외시킨다고 본 것이다. 즉 "새로운 전망이 낳은 정신적인 특질은 자연을 주체로부터 단절시킬 필요가 있었고, 르네상스는 자연과 주체와의 단절에 세계의 단계를 예시하고 있다. 즉 미적



과학기술연구원 본관

18) 김원, 오거수 인터뷰.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발견에서 비롯하여, 다음은 탐구 대상으로서의 자연, 마지막으로 이용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된다. 유기체, 생물체의 부지에서 등장한 것이 기계문명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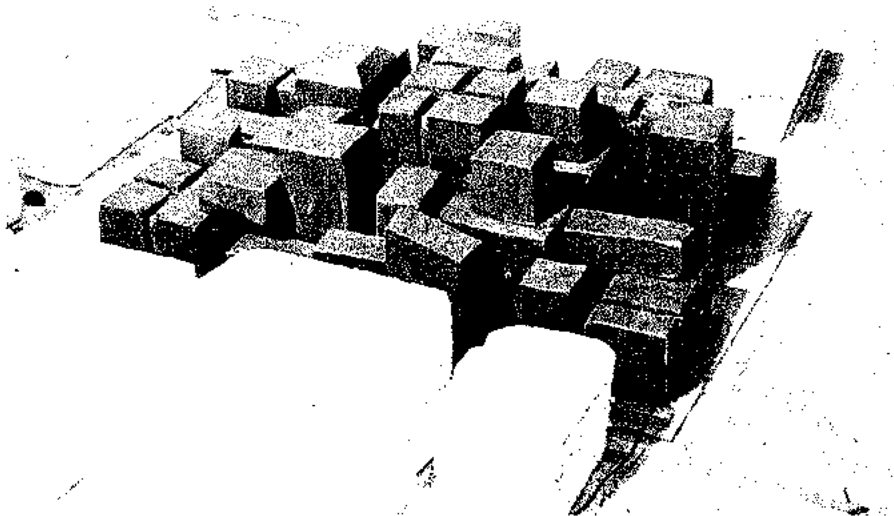
이런 기계문명을 건축으로 전환시킨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대건축가들이다. 그들은 산업사회에 알맞는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려고 하였다. CIAM에서 발표된 아테네 헌장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도시의 주된 기능적 요소와 동선을 분리하였고, 보행자와 자동차를, 노동과 주거를, 휴식공간을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현실이 가지는 다의성과 풍부함은 기계주의적 세계로 대체된다. 그렇지만, 기계문명의 한계가 노출된 이시기의 건축가들은 제 1세대 건축가들이 제시한 건축이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건축이란, 상호간 서로 어긋나는 일이 다원적인 측면으로서 서로 억제되지 않고 창조적인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했다.²⁰⁾ 제 1세대에 특징적이었던 환경질서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하학적 특징은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발생적 질서체계라는 유기적인 개념을 기하학과 수학에 결부시킨 새로운 혼성물로 대체하였다. 건물들 사이에 랜덤한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여 가능한 구속이 없는 혼돈을 포함시키고, 자연적 질서체계로부터 유추한 무의식적인 건축(unselfconscious architecture)을 창조하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 동양의 전통문명에도 눈길을 주기 시작하였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풍속건축에서 건축설계의 본질을 끄집어 내려고 했던 것이다. 김수근이 인간환경계획연구소에서 주의깊게 주시한 것은 바로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 건축가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과제, 즉 한국건축의 아이덴티티의 복원이라는 문제와 같은 맥락을 지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국건축의 본질적 성격내에는 제 3세대건축가들이 추구하려고 한 건축이념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수근은 자신이 앞으로 지향하게 될 건축설계의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김수근은 제 3세대건축가들의 건축이념을 깊이있게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가 쓴 ‘건축시의 제 3세대’²¹⁾라는 글을 살펴보면, 그는 이들 건축가들의 경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 자신도 제 3세대 건축가에 속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환경연구소에서 그가 한 작업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때 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문명비평가 마살 맥루한과 최순우였다. 그들의 영향은 김수근이 최초로 자신의 건축관을 발표한 것으로 여겨지는 ‘범태평양 건축상 수상강연’의 핵심적인 주제들에서 잘 나타난다.

풍피두센터 현상설계

1960년대 말부터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김수근은 이를 적용한 새로운 조형언어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풍피두센터 현상설계안은 이것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 낸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이 현상설계에서 나타난 김수근의 건축적 접근방법은 그의 건축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와함께 이 현상설계는 김수근건축 뿐아니라 현대건축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데, 1960년대 이상주의자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기술적, 형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현실화되는 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김수근이 참가하여, 한국 현대건축이 세계 건축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떤 시각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풍피두 센터가 들어 설 부지는 1930년대부터 헐려져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17~19세기에 지어지고 높이가 24~34미터에 이르는 석조건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현상설계의 주축에서 요구한 것은 이 건물이 파리와 그 외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각처의 정보를 취합하여 전문가 뿐 아니라 예술가나 보통사람들에게 제공하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속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융통성이 풍부한 평면을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당시의 스터디 모델사진들은 김수근이 이 현상설계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스터디 모델을 살펴보면, 여러개의 작은 상자들이 중첩되고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작은 상자들은



풍피두센터 스터디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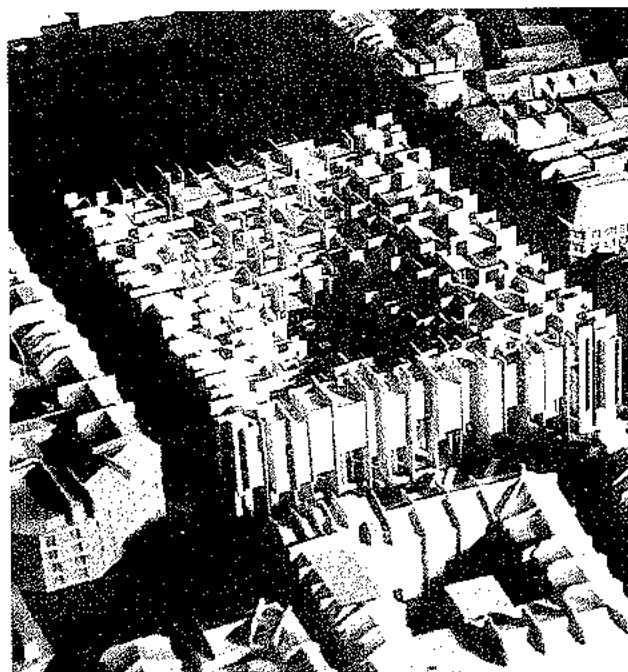
19) 빌립 드루, 건축의 제 삼세대, 최무학역, 기문당, 15쪽.

20) 앞의 책, 10쪽.

21) 이글은 문학사상 1973년 11월호에 실려있다.

그가 주장하는 휴먼 스케일, 즉 크기가 5m×5m 정도로 되는 것들이다. 이들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놀이처럼 자유로운 형태의 유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법은 김수근의 건축창작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전의 경우 조형에 대한 스테디가 대부분 종이에 프라헨드로 스케치되었고, 또한 조형의 중요성이 형태적인 완결성에 주어졌다. 따라서 접근방법이 부가적(aditive)이기 보다는 가소적(figurative)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1960년 말에 지은 해피홀의 경우도 풍피두센터와 비슷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지만 접근방법은 전혀 달랐다. 여기서 나타나는 형태는 매스(Mass)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의 결합방식에 의한 표현체계로 보여지고, +자형 구조물을 먼저 설치하고 빈공간을 벽돌로 채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²⁾.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김수근은 이런 조형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명확하게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 여러가지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초가를 실측하기 위해 촌락들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이들이 가지는 독특한 조형언어를 체득했을 가능성이다. 그가 당시에 그린 스케치를 보면, 멀리 초가들이 웅기중기 앉아 있는 촌락의 원경을 그린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서 휴먼 스케일을 가진 초가들이 작은 상자가 되고 촌락의 전체모습이 유기적인 건물조형으로 이끌어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런 생각은 김수근이 후기에 설계한 예술의 전당 계획안과 진주박물관의 모습을, 중첩된 기와지붕의 이미지에서 추출했음을 보여주는 여러장의 스케치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경우 명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김수근은 유기적인 것에 대해 매우 심취해 있었다. 그가 1970년대 초에 행한 이스라엘 여행에서, 높은 구릉 위에 겹겹이 중첩된 촌락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마음 속에서 그려보고 있었던 조형적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서구에서 유기적인 건축의 대기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 이면서,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라이트 초기작품에서 역시 작은 상자들을 여러개 오버랩시켜서 건축형태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²³⁾, 당시 라이트의 건축을 다시 보기 시작한 김수근에게 이런 접근방법이 포착되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다.

초기에 두개의 어터너티브



풍피두센터 국제설계경기용모안(1971)

가 제시되었다. 작은 상자 더미를 무작위하게 계속 쌓아 가는 것과, 회랑을 건물 주위로 돌리고, 그 중심에 남미의 고대 유적에서나 볼 수 있는 신전모양의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안에서 공통된 점은 건물주위를 폐쇄시켜서 중정을 형성시켜서, 거기에 무언가 오브제를 삽입하려고 한 점이다. 이 중에서 첫번째 것이 채택되어 계속 발전된다. 그 이유는 설명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글자글한 월 패턴이 통일성과 리듬을 가지고 주위 건물들과 조화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²⁴⁾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변화 많은 형태와 공간은 또한 치밀한 계획아래 의도된 그러나 의도를 초월하는 해프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현상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이 계획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공간의 융통성에 관한 것이다. 설명서에 보면, “월 패턴은 리지드한 박스 스타일이 아니므로 실의 크기를 프렉서블하게 정할 수 있고, 무버블 파티션 월을 사용하여 전시공간에 변화를 준다”고 하였으나, 단면을 보면 공간이 너무 잘게 분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최측에서 원하는 공간은, 특히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장 푸르베(Jean Prouvé)가 생각했던 것은 구조적인 고안에 의해 넓으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건축공간이 창조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또한 건물과 외부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스테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공간이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공간이 적절히 관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느낌이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전체적인 건축형태가 서구인들에게 별로 어필하지 못했다. 당시 파리에 지어진 주요건물들을 보면, 주위 건물과의 조화도 중요하였지만 이보다는 기술적인 진보를 상징화 할 수 있는 건물을 선호했기 때문이다²⁵⁾. 흔히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복잡한 건축재료가 유리로 덮히거나 노출되면서, 새로운 기술적인 메타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후 김수근은 풍피두센터 이외에도 두개의 국제현상설계에 더 참여한다. 여기서 사용한 건축어휘는 비슷하다. 작은 상자들을 계속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부 당선되지 못했다.

22) 윤승중, 김수근 어둠의 발아와 한국건축, 공간, 1988년 9-10월.

23) 187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개국백주년기념 박람회가 열렸을 때,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었던 라이트의 부모는 여기를 찾았다. 그곳에서 라이트의 어머니 안나는 프래벳에 만든 놀이기구를 발견하고 구암하여 라이트에게 사용토록 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입방체를 조합하는 것인데, 후에 그의 건축적 경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건축형태를 다양한 매스를 부가시켜서 만들어내는 데 익숙하게 되었다고 한다. 谷川龍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유영진 역, 산업도시 출판사, 12쪽.

24) Plateau Beaubourg Center 계획, 공간, 1971년 11월.

25) 여기에 속하는 건물로는 레 알과 라 빌레트 공원에 들어가는 과학관, 그리고 아랍 문화관 등을 들 수 있다.

건축 시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자재의 질적 향상과 그에 따른 시공기술이 향상된 분야는 수종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시멘트 공산품에서 요구되는 고강도화 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룸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재와 기타 시멘트 제품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아래 약술한 기술개발로 주택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온돌과 건축전반에 해당하는 벽체분야에서 시멘트 제품의 고강도화에 따라 그 구조와 형태가 개혁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온돌분야는 주된 기능인 난방이 용이하며, 내벽체도 그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고, 외벽체 마감재도 알루미늄 주물패널을 등용하여 현행 석재를 이용한 시공보다 월등히 미려할 뿐만 아니라 시공비도 절감되는 공법을 아래에 약술한다.

온돌과 벽체의 구조개혁 공법에 대하여

A New Construction Method

朴成圭 + 池健相 / 건축사사무소 합성건축
by Park Seong-Kyu & Chi Keon-Sang

온돌분야의 개혁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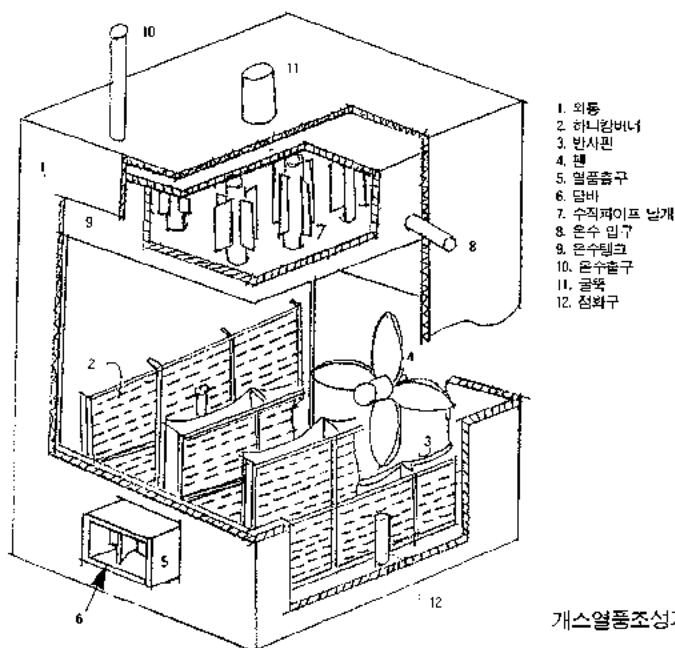
가. 온수식 온돌

한국은 대륙성 기후로 연중 6개월을 난방하는데 우리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온돌난방은 우리 주거문화의 고유한 양식이다.

주택건축에서 볼 때 현재의 온돌 시공법은 많은 변천을 거쳐 온수식 공법이 되었으나 고도화되어 가는 주택 건축에서 현행의 온돌 구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온돌층의 구성이 슬라브에 직접 부착되어 있어서 상층의 소음이 하층으로 전달되고 온돌층 두께의 차이로(구조제 시공상) 난방이 균일화되지 못하는 단점과 온돌층 구성은 아파트 건축에서 지역난방식(중앙공급식)으로 해서 온수공급을 제한적 시간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온수공급이 없을 때 축열층에 의지하는 난방이며 기타의 주택건축 분야에서도 이를 준하는 구조로 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수도권외의 신도시 개발의 주택 건설의 경우 열병합 발전소에서 항상 온수가 공급이 되고 있으며 기타의 주택 건축에 있어서도 가구당 자체보일러 시공으로 자체 난방 급탕을 하게 되어 주택 구조에 있어서 사실상 축열층이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현행의 건축물은 그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축열층을 공간층으로 하는 구



조로 할 때 자원 절약이 되고 상층과 하층이 방음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난방은 온돌층의 슬라브와 이 탈되는 패널을 구성하고, 이 패널 내부에 온수파이프가 순환하는 구조로서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건식공법으로 하는데 온수 파이프의 열전도성은 패널에 의해서 열전 도가 된다.

이러한 조립식 패널은 고강도 시멘트공산품으로, 규격 은 40cm 각으로 하고 상단면의 인장강도는 압축강도 450kg/m², 공간은 7cm 정도로 하여 이 공간으로 위생 용 파이프가 통과하게 되며 아래 제 "3" 항에 약속하는 벽체(간벽)개발의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전기배선, 배관 과 향후 주거문화의 향상에 따른 시설로 센서선의 배선 도 가능하려면 온돌 패널의 해체작업이 가능해야 하는 데 이러한 작업이 용이하고 또한 시공작업도 패널을 지 지하는 수평재(40cm간격)갈기로 숙련작업을 하며 동절 기에도 시공이 용이하다.

건설업체 대부분이 건물의 구조적 기능성보다는 공사 비와 관련하여 작업상의 인력관리와 공기 단축의 방법 으로 콘크리트 펌프기계를 사용하여 현행의 축열층 작 업으로 온수 배관 작업을 하는데, 이 공법을 총체적으로 볼 때 공기가 단축되고 시공비 면에서도 현행공법과 그 비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재인식이 필 요할 때이다. 또한 패널 상부에는 쾌적한 건강생활을 영 위하는데 있어서 현 공법에서 요구되는 원적외선이 복 사되는 처리를 하여 그 기능을 배가한다.

나. 열풍식 온돌

국내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법으로, 이 열풍식 온돌은 옛 온돌이 구들장 밑에서 화력의 연소가스가 통 과하는 것을 착안하여 이를 과학화한 것이다.

이 공법은 현행의 온수 난방식과 비교할 때 온수가 순 환하는 파이프와 보일러가 필요없고 구들장 밑으로 열 풍이 통과하는 구조로서 상기 "가" 항과 동일한 40cm각 의 패널로 만든 고강도 시멘트공산품인데, 가스 또는 유

류물 연소하여 두 종류의 열풍조성기에 의해서 300℃~ 500℃ 수준의 연소로 150℃ 수준의 열풍이 조성된 것 을 닥트분배(회로)에 의해서 각 온돌방에서는 30℃ 수 준으로 방열되는 구들장을 조립식으로 시공한다. 또한 이 구들장 밑을 열풍이 통과하므로 그 공간을 이용하여 상기 "가" 항에 기재한 위생용 파이프 및 기타의 배선, 배관이 가능하므로 '가' 항과 동일한 기능 작용을 한다.

이상의 열풍식 온돌은 현장작업이 용이하고 소요에너지의 절감과 시공비도 현행의 온수식보다 저렴하다. 또 한 패널 상부는 원적외선처리로 인체보전에 유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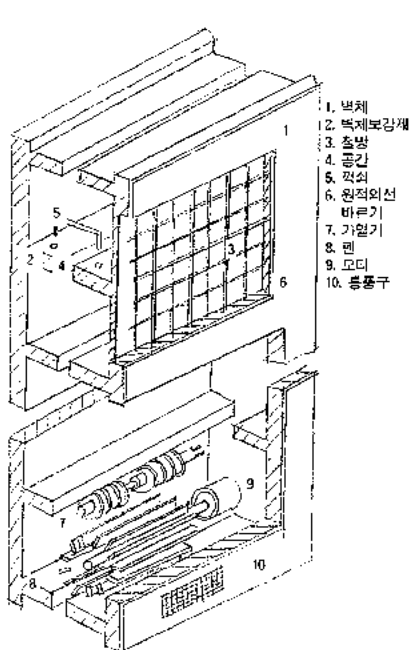
벽체와 외벽체

가. 간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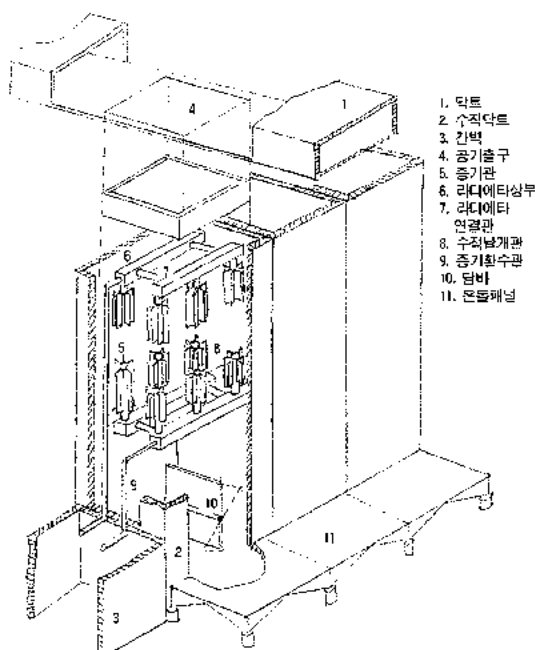
현재 아파트건축은 벽체 구조식 시공으로 주거인의 취 향에 따라 구조의 불편함 등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것 은 공지하는 바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종래의 벽체 구조 와는 달리 벽체에 하중이 걸리지 않는 조건의 간벽체로 서 이동도 가능하고 벽체의 방음성, 견고성, 내화성과 시공의 용이함이 효율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아파트 건축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축분야에서 요구된다.

이 기술개발은 고강도 시멘트공산품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이중(앞, 뒤)패널의 조립으로 세우는데 그 사 이에 공간이 구성되게 하고, 폭은 40cm, 길이 2.3m 정 도로 패널의 두께는 2.5cm 정도이며 안쪽으로는 보강 용으로 여러 단의 수평으로 돌출부가 있게 하고, 이중패 널의 두께는 15~20cm이며 이를 조립식으로 연속되는 벽체구조이다.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 사이의 공 간에 상기 "2항 가, 나"의 배관, 배선을 할 수 있으며, 냉 난방 설비시에 닥트분배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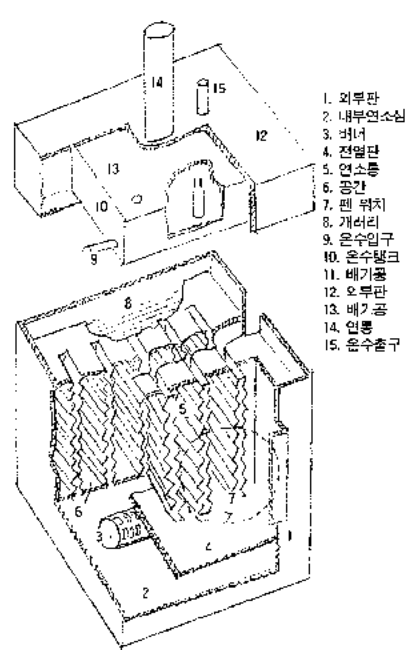
상기의 구조 여건은 건축물의 구조가 라—멘 구조일 때 시공이 가능하며 현행의 벽체 구조보다 월등히 시공 조건이 유리하고 공기단축 및 시공비도 저렴하다. 이 또



간벽체상세도



공조온돌(열풍식)



유류열풍조성기(유류사용시)

한 벽면에 원적외선 복사 처리를 한다.

나. 외벽체

현재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는 수종이 있으며 그 중 석재의 등용이 최상의 공법이 되어 있으며 소재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공비는 평당 3십만원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최상의 마감재이다.

국내 건축물 수준의 향상으로 일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어 석재 마감재로서의 최소가치가 떨어졌으며 석재는 대도시의 대기 중에 먼지가 많아서 석재의 표면이 쉽게 더러워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 개발재는 석재로 시공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형사 외관이 미려한 알루미늄 주물판재로서 기술 개발된다.

이 기술 개발재의 규격은 최대 2.5㎡ 정도로서 표면과 형상이 자유롭게 구성된다. 알루미늄 주물패널 안쪽으로는 고강도 시멘트 공산품이 패널과 합성해서 구성되고, 알루미늄 주물패널의 표면색깔과 보호처리는 화학 처리로 반영구적이다. 따라서 건축 외장재로서는 타재의 추종을 불허한 월등한 공법이라 할 수 있다.

공조식 냉난방 설비의 열풍 난방장치

현재의 공조식 냉난방 설비방식은 2종으로 각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황코일-유닛 방식은 건물의 창 안쪽으로 설치할 때에 벽면에서 돌출된다. 이것을 대형건물에서는 황코일-유닛 설치에 없는 부분까지 벽면에서 돌출을 돌리는 방식이 많은데, 이는 실내면적 점유에 따른 상당한 손실이 있으며 또한 간벽이 많은 건물에는 냉난방 기능이 고르지 못하다. 또한 실내면적이 넓을 때 천정갤러리에서 냉난방을 하고 있으나, 난방시 천정에서 온풍을 토출할 때 대형건물의 경우 온풍조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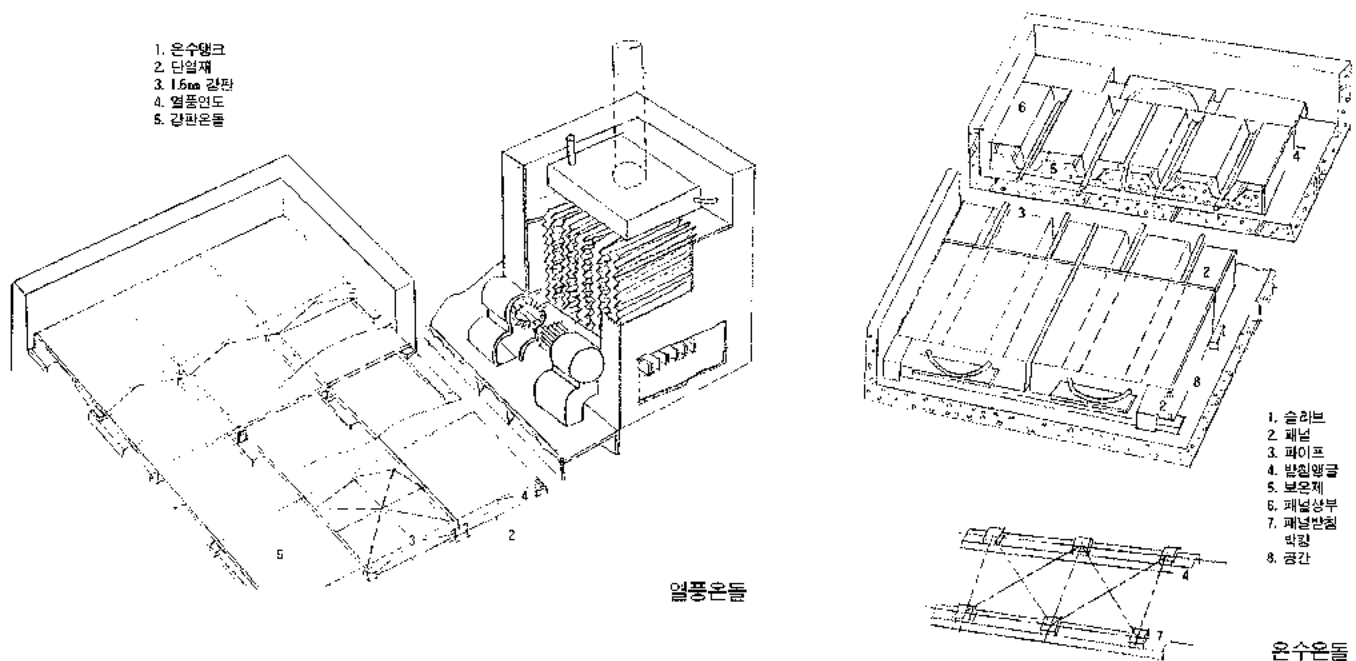
천정에서의 온풍의 방출은 실내 공기의 대류에 있어서 천정과 그 아래의 온도 차이로 효과적 난방이 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열풍온돌로 해야 복사식 난방이 효율적이 된다. 이 기술개발은 오피스텔, 호텔, 상가 건축물의 벽체 속에 상기 "3"항을 이용 수직 덕트를 설치하고 그 속에 증기 배관과 특수 방열 장치를 하여 천정 덕트와 연결해서 송풍되는 것을 상기 "2항 나"에 의한 열풍식 온돌 구들장 하부로 진입케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즉, 수직덕트 속에 증기의 방열량이 극대화하는 라지에타를 설치하여 증기 100℃ 이상의 방열 열풍을 조성하여 고강도 시멘트 공산품인 온돌패널 내부로 진입할 때는 50℃ 이상의 온풍이 되고 온돌 구들장은 30℃ 수준에서 방열되게 한다.

공조식 냉난방에서 냉방작동 기간 약 2개월과 난방작동 기간 약 6개월을 고려할 때 공조식 냉난방 설비에서 난방용으로 열풍식 온돌은 매우 효율적인 공법이다.

고강도 시멘트 공산품으로 거푸집 등용

현재 일본에서는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현행 거푸집 작업은 설치작업과 해체작업의 현장관리가 복잡하다. 그러나 고강도 시멘트 공산품으로 거푸집작업을 하면 해체작업이 없이 구조체와 거푸집이 일체가 되므로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 일대 개혁이 되는데, 거푸집의 두께는 약 6~8cm이고 구조체의 단면상 16~20mm를 더하게 되지만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 설계상의 검토 여하에 따라 시공상 효과적인 공법이다.

이상 각 분야에 사용되는 고강도 시멘트의 재질은 동양시멘트의 기술개발로 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오늘과 내일

The Future of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李亨在 / 동남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Hyeong-Chae

갑자기 발생하여 사상최대의 인명사고를 낸 삼풍사고는 유례없는 건축사고로써 국내·외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첨단기술이 존재하는데 왜 건축기술은 원시범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며 동종업계의 종사자로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망자와 그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다.

우리가 오늘의 사태를 당한 우리를 다시 심판이나 분석이나 조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후날 후배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자의 근원부실의 요인을 설계업계·학계·사회·시공업계·건축제조생산업계·건축주 등으로 분리하여 그 책임과 책임의 한계를 찾고자 돌이키기 싫은 책장을 넘겨짚어보고자 하며, 또 이는 기술인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성 내포된 와중에 양산된 동시기에 건립된 구조물 또는 건물은 특단의 관리로써 대응해야 하고, 차제에 생성되어 가는 모든 사회 조성기반 구조물들의 자문책임위를 인간적인 양심의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성되지 않게끔 책임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 문제점의 본론을 전개하여 본다.

건축공사와 관련되는 사회구조와 그 책임한계

(표 1)

감독 받는 곳	감 독	처 별	양 심
건축관련자			
㉠ 건축주	○		○
㉡ 학계 건설부			○
㉢ 건축사(설계자)	○	○	○
㉣ 공무원(허가자)	○	○	○
㉤ 건설자료생산자			○
㉥ 건설 회사	○	○	○
㉦ 기능공			○
㉧ 구조기술사			○
㉨ 공무원(준공자)	○	○	○
㉩ 공무원(사회간접자본관리자)			○
㉪ 건축사협회			○

(표1)과 같이 분리해 보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으나 문제 ㉠항부터 논제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건의안 및 본론의 순으로 논술하여 보겠다. 단 이 글은 어느 지방 어느 특정한 그룹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의 생각이면서 말없는 가운데에 후일을 위해 모든 관련자의 양심의 공감대만을 구성시키고자 함이다.

문 제

- 가.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는 왜 일어났는가?
- 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는 왜 일어났는가?
- 다. 왜 철근 콘크리트는 구조체 하자를 자꾸 일으키는가?
- 라. 행주대교 공사 중 붕괴와 남해창선교 붕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대형함몰의 예고이었는가?

●건축주

문제점) 모든 문제는 조급함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두른 탓에 생기는 문제이나 현대는 모든 일상생활이 속도전이 아닌가 하는 이해도 가나 기술자를 업신여긴 풍토가 빚은 참사라고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영속적인 부를 잃을까 봐 뒤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으며 상업배장과 재고창고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비상계단을 막을 수 없다. 삼풍은 차라리 지금도 계열회사에 건설회사가 없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학계+건설부

- 문1) 남산 외인APT 철거 등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외국기술을 사왔는데 구조물 해체공학을 기술이전한 사람이 있는가?
- 문2) 삼풍은 외인APT보다 더 절묘한 파괴공학이 일어났는데 이런 문제는 건축학회나 대학에서 규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 문3) 콘크리트 슬라브의 펀칭 전단력(Punching shear)에 의해 파괴되었다면 초기 파괴모습은 존치상태로 기록되었는가?
- 문4) 제1차로 슬라브가 수직변위를 일으켜 횡력을 작용시킨 첫 작용점을 찾았는가?
- 문5) 상식적인 철근 콘크리트에 파괴하중에 이른 전단 응력이 작용시 구조물 속의 철근이 전단 파괴되나? 인발되어 버리나?
- 문6) 포트랜드 시멘트 사용시 경화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날 경우 가수하여 계속 믹싱 후 콘크리트타설의 경우 그 시공물의 강도는 어떻게 변하나? 또한 콘크리트 조직은 어떻게 변하나?
- 문7) 만일 이런 경화시간이 지난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 또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 문8)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이 안전도를 3배로 보고 있는데 정상적인 시공이라면 단면의 성능 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인가?
- 문9) 왜 삼풍사고를 폭파물 사고라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가?
- 문10) 재료학 측면에서 시멘트 강도가 기준이하일 경우 그 보완대책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 문11) 전쟁이 많은 인명을 살상하지만 외술이나 토목, 기계, 건축부분을 한단계 성숙시켜야 땅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
- 문12) 기상천외한 파괴현상을 컴퓨터로 모델링하여 단면과 일치시켜 원인을 규명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 나라의 대학은 과연 무엇이든 곳인가?
- 문13) 콘크리트 단면을 줄이거나 철근을 빼먹는다는 관행은 이제는 없지 않는가?
- 문14) 포트랜드시멘트 사용규정을 고로시멘트 사용시에 적용해도 제작시공 콘크리트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건축사

- 문1) 시공도면이 먼저 나오고 허가도면이 나왔는가?
- 문2) 무량판 SLAB의 기본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

〈무량판 일본규준〉

- 1. 기둥의 굵기는 L/20, H/15, 30cm이상
- 2. 슬라브는 15cm 이상
- 3. 드롭패널은 T/2 이상
- 4. 캐피탈은 45°

- 문3) 익스펜션 조인트는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가?
- 문4) 시공감리와 법상(건축법) 감리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 문5) 삼풍사고는 과소 철근인가? 콘크리트 단면부족인가? 콘크리트 재료시공 성능 부족인가? 설마 기술자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 문6) 당초 구조계획은 누가 했는가?

●공무원

- 문1)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물 등 이상 내진설계(88년 8월19일) 및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과 날인을 관청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 문2)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학교수+구조기술사)구조심의를 받았던 건물이 아닌가?(특수구조)
- 문3) 과다설계에 대한 변상조치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가?
- 문4) 특수구조인데 왜 구조설계자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는가?

●건설자로 생산자

- 가) 모래구입이 힘든 지방에는 질 낮은 모래를 레미콘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좋은 모래는 약 20% 비싸니까 말이다.(조개피가 있는 바닷모래)
- 나) 교통대란으로 레미콘 회사에서 1시간 넘는 운행구간도 조달용 또는 민수용 레미콘을 현재도 계약하고 있는가.(최근에 1시간 30분으로 조정)
- 다) 외팔(모찌꼬미) 레미콘 자동차 차주와 레미콘 회사(레미콘 생산자)는 운송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 라) 구조용 콘크리트에 자갈입도가 24mm와 18mm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마) 운송시간이 너무 길면 현장비빔장비 설치는 고려하였는가.(이제야 건축현장 채택보도된 사실이 있음)
- 바) 웬 레미콘에 조개껍데기가 그리도 많은가. 시공 후 생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나?
- 사) 왜 요즘 콘크리트는 크랙이 많이 가나? 왜 질기지 못하나? 고로 시멘트 사용이 그 원인인가?
- 아) 과거 손비빔 콘크리트도 이처럼 험한 줄 아나? 모래 대신 물론 석분을 넣으면 압축강도는 올라간다.

●건설회사

- 가) 귀사에서 모든 현장을 직영하고 있나?

- 나) 직영이라면 기술진도 용병이고, 부분부분 전문건설업에 하도급 준 것이 아닌가?
- 다) 현장에 배치된 소장의 경력이 자격취득 후 3년 정도 되었나? 그리고 설계도면의 판독이 가능한가?
- 라) 콘크리트는 스미트햄머, 압축파괴시험 등에서 강도를 산정하여서 내고 있으나
- ㉠ 냉각과 가열이 번갈아 될때 콘크리트 양생시 조직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양생법을 알고 있나?
- ㉡ 응결시간이 지난 콘크리트는 흙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나?
- ㉢ 콘크리트는 소성물체이나 섬유질강도나 조직이탈 강도가 우선 체크되어야 한다. 압축강도만이 전부가 아니다.
- 마) 과연 여러분들이 설계와 시공을 겸할 수 있다고 보나?
- 바) EV제작 시공사는 A급 시공자와 C급 시공자에 시공 납품되는 값을 나르게 받고 있다. 수직시공에 대한 가이드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것이 아닌가?(기우뚱APT)

●기능공

- 가) 레미콘 운전자 여러분은 콘크리트의 경화시간을 알고 있는가?
- ㉠ 시간경과로 몇번이나 현장에서 타설반려 조치를 당해 버려본 적이 있는가?
- ㉡ 레미콘 운전자 여러분은 분당APT 현장레미콘 기사가 양심선언한 동료를 기억하나?
- 나) 콘크리트공 여러분은 콘크리트타설 작업시 이어붓기, 끊어치기, 나중치기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작업시 노후도를 생각하면 건설기술자로부터 시공에 따른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 다) 철근공은 철근의 피복 두께를 부위별로 알고 있는가?
- 라) 일제시대 때에 교량하중을 계산하고 지금까지 튼튼한 다리가 있다. 일제가 만든 그 다리는 이미 끊어져야 적합한 설계규정이 아니겠는가?(구 영도다리)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당초 과다설계에 속한다.
- 마) 좋은 콘크리트란
좋은 골재+좋은 시멘트+정확한 비빔시간+좋은 물+우수한 시공기술자+확실한 양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현재의 콘크리트는 몇점이나 될까?
- 바) 만일 그렇다면 질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은 누가 연구를 해야 하나?(고강도 콘크리트를 말하는 것이 아님)

●구조 기술사

- 가) 기술사도 자기가 계산한 구조물이 붕괴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나?
- 나) 특수 골조부분 시공에 시공감리자로 위촉된 적이 있는가?
- 다) 안전 검토시 토질역학, 생태학적 배려, 시공능력

검사, 재료능력에 대한 시료분석 등의 종합검토를 한 적이 있는가?

- 라) 현재 통용되는 레미콘의 품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구조계산을 하고 있는가?
- 마) 구조에 대한 전문가로 삼품참사의 인위적인 변위로 가상붕괴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는가?
- 바) 현재 콘크리트 계산규준이 너무 허용치가 많다고 생각치 않나?
- 사) 대기오염에 따라 산성화된 대기에 노출 철근콘크리트의 피복은 현재 규정이 적당한가?(최근 일부 변경)
- 아) 삼품백화점 코아에 중벌접속부에 슬라이딩 현치나 슬라이딩바이가 있는가?(방송내용 중 일부)
- 자) 콘크리트 건물은 AIA규정에 그 길이는 60m 이내인데 삼품백화점은 익스펜션을 구조 디자인시 설계하였는가?
- 차) 구조계산은 가정에 의해서 하지만 가정에 의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카) 골격은 H형강이며 슬라브는 콘크리트인 구조의 슬라브 크랙처짐변위는 우리나라 현행 구조물설계에 대입하고 있는가?(장기피로현상)
- 타) 콘크리트 피복의 중요성과 크랙이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구조 설계를 하고 있는가?

●공무원(준공)

- 가) 건물준공시 뒤편으로부터 신속처리 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가?
- 나) 특수구조계산서 기술사로부터 구조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 다)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 어디를 먼저 문책하는가?
- 라) 준공검사시 숙지하지 못한 건물 등에 준공을 위해 시공기술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 마) 법상 준공과 시공의 성능에 따른 준공을 구별하여 사용검사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공무원(사회안전 기본관리)

- 가) 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시행코자 노력한 적이 있는가?
- 나) 법상의 관리가 되었다면 무단용도변경, 증축, 절대하중변경, 임의 창고용도로 쓰는 코니탑 속에 창고 등이 있을 수가 있는가?
- 다) 이 건물도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동재산(사회간접자본)임을 알고 있나?
- 라) 옛 속담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집이 빨리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 마) 백화점 옥상 및 복도 비상계단 등의 모든 구조물은 해당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 바) 또한 모든 물건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건축사협회

- 가) 3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도 삼품 붕괴원인을 공식 추정하지 못하나?

- 나) 설계도면, 시공능력, 자료구득, 모든 부분에서 왜 공식적인 피해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지 못하나?
- 다) 20년 후 우리가 현재 설계한 건물은 모두 철거해야 되는가? 무슨 공청회라도 있어야 한다.
- 라) SRC구조는 차후 철거시 처리비가 2배 이상 드는 것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마) 삼봉백화점의 설계가 엉터리라면 홍보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분석할 기회는 없는가? 우리 회원 중에 구조설계기술자도 있고, 대학구조교수도 있지 않는가?
- 바) 구조계산은 콘크리트강도, 철근강도, 지질조사, 평판재하시험, 토질분석 등의 설계자가 제시한 수치에 대한 조건만족을 가정한 수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건설관계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 사) 시멘트의 강도부족 또는 중국산 시멘트 사용시 왜 제때 제때 건설교통부는 철근콘크리트 계산규준을 바꾸어 유동성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냐고 물어보지도 않는가? 레미콘 협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지 못하나?
- 아) 건축사는 엉터리 설계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부실자재를 사용한 시공자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저급 레미콘 또는 오버타임 레미콘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기꾼으로 고발하여 모든 물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결심을 건축사협회는 갖고 지금이라도 원초적인 범죄자를 찾아야 한다. 시멘트 생산공장, 레미콘공장, 건설현장 중에 있을 것이다. 그래야 오로지 속죄양을 변할 수 있다.

■ 결론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진을 보고 너희들이 지진에 대하

여 무엇을 아느냐고 비아냥대는 일본의 학계, 업계, 기술자들이 한신고속도로 지진 붕괴시 주각의 늑근이 작게 들어간 것을 부끄럽게 방영하는 일본 언론인의 자세, 국익의 차원이라면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어져야 되며 검찰이나 법원이 처리할 부분까지 언론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이번 사고는 비단 시공사나 기술사, 건축사 등의 몇몇 기술자의 손에 의하여 빚어진 사건이라기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콘크리트 공학의 학설 자체를 무너지게 해 버린 것으로 생각한다.

철근콘크리트는 인류가 발명한(구축물) 건설방법 중에 저렴하고 구득용이하고 경제적이며, 사용 간편한 아주 우수한 방법으로 백년이 못되는 역사에 이렇게 많이 들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에도 이 철근콘크리트는 계속 사용될 것이다.

콘크리트는 압축만 받을 수 없다. 복합구조는 어느 선까지는 인장력도 견뎌내야 한다. 고로 콘크리트 구성물질의 조직이탈 또는 탈착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학술적인 검토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말없이 튼튼하니까 마구잡이로 취급해 버린 사회와 기능공의 양심기술자의 대응능력 부족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을 모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때 사고없는 사회가 될 것이며, 무지와 용감이 판치는 사회구도가 바뀔 것으로 생각되니 건설업에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은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법은 멀리 있지만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혹시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걸리는 수도 있다.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 안내

우리 협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한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 기관으로서, 1987년 본 사업 추진 이래 다년간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기술축적을 이룩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보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을 추진중에 있사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진단비용 절감
- 체계적인 업무수행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에 대한 봉사(30일 이내 완료)
- 의뢰일로부터 2일 이내 현장 출장, 진단의 필요성 유무 조사, 판단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건축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 토지 이용도에 따른 경제성 효율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부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내의 주택

★ 문의 : 기술부(02)581-5711~4, FAX. 586-8823

대한건축사협회 재건축위원회

하나의 생활공간 문제

얼마전 새로이 대형주택에 입주하게 된 친지가 내게 상의할 것이 있다며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인즉 아무리 고민해봐도 안방과 자녀방의 위치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음...

“이 시대의 사용자 가운데에도 주거 공간 구조에 관하여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의외의 질문에 약간의 당혹감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반 사용자로서 흔치 않게 수준높은 고민을 하는 그를 보며 대견(?)스러운 생각이 들어 평소의 지론대로 기꺼이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었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What Problem? Whose Wrong?

尹汝郁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우선 방위로 본 불합리……

밝은 남쪽에 응당 주간사용도가 높은 자녀의 공부방이 차지해야 하며, 이미 주거양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안방의 주기능은 침실이므로 그 방위가 북쪽에 위치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거의 하루종일 자연의 빛을 받는 남쪽의 방을 낮시간 내내 빈방(안방)으로 비워두는 것은 당신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얻게된 단위면적의 일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또, 절대공간으로서의 안방은 이미 그 대부분의 역할을 거실에 넘겨 주었고 앞으로는 접대행위의 일백퍼센트가 거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가지 더,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주변의 밝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 환경을 생각해볼 때 태양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한 모든 우주질서의 환경은 학문적으로 환경생태건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밝은 환경은 마음도 밝게 만들지만 어두운 환경은 자칫 그 사용자의 마음에도 그림자를 지게 할 수 있다. …… 등등등.”

여기까지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던 그는 뭔가 결심을 한듯한 표정으로 일어선다. 조곤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눈길을 주면서 다음에 저녁약속을 제의하며 악수를 청한다. 종종걸음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야릇한 감상에 사로잡혀 본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와 함께 저녁식탁에 마주앉게 되었다. 어색한 표정으로 피식 웃으며 그가 던진 얘기는 이런 것이었다.

“먼저 말씀하신 점이 어쩔 제생각과도 일치하여 안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1백평에 가까운 큰 집에 남쪽, 거실과 거의 같은 크기로 뚝 잘라놓은 안방을 과감하게 큰아들 공부방으로 내어주고 저희 부부는 북쪽 작은 방에다 침실을 꾸몄지요. 우여곡절 끝에 저질러 놓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와서 보시곤 팔짝 뛰시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른이 안방을 써야지 아이를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마구 나무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들은대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합당함을 설명드렸지만 막 무가내 이었어요. 그래, 공부방이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건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집에서 제일 큰 방을 애한테 주고 어른들은 반도 안되는 작은 방으로 밀려난단 말이나?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 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안방과 작은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만 비슷하면 그런대로 넘어 가겠는데 워낙 차이가 나서…

그날 혼 좀 났습니다. 허허허.

그리고 그 다음 날 집들이 한다고 친구들이 몰려왔는데 뭐라고들 하는지 들어보시겠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아서라 아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로 마마보이가 되는 거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최고인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자라면 곤란한 거 아냐?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있던 친구들은 내탁 그 친구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는데 그때 다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아냐야, 아냐! 그건 네가 아직도 갑오경장 때 구습에서 해매고 있기 때문이야! 난 과격적 의식전환을 도모한 이 친구가 존경스럽기까지 하네! 뭔가 획기적으로 좋은 일을 할 땐 항상 그 시작이 주변의 반대로 시끄럽기 마련 아닌가.

뭔가 반대의 의견이 나올듯한 분위기였는데 워낙 입심 좋은 친구가 얘기한 터라 모두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그날은 그 입심 센 친구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셨다 간 후에 부모님과 장모님한테서 거의 매일 그 문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꼭 안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에미야, 그래 방은 옮겼냐? 하는 식으로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안사람이 이제는 제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한번 정한 절 뒤집을 순 없고……

요즘 살아선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소장님 어디 남쪽에 자녀방 주욱 있고 북쪽에 안방 달린 집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허허허.”

이상이 그때 그가 했던 얘기의 전부이다.

그와 헤어진 후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분명히 이것이 맞다 하고 그에게 말해줬는데 그로 인해 그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지론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인가?

남쪽에는 거실과 안방, 북쪽에는 잘게 쪼갠 자녀방, 획일화된 설계계획의 문제인가?

혹은 획일화된 계획에 길들여져(세뇌되어) 남쪽에 당연히, 반드시 안방이란 방정식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념(Paradigm) 때문인가?

과연 현 우리 사회에서 안방은 침실인가, 아닌가?

안방이 침실이 아니고 접대와 주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면 거실은 뭘 하는 곳인가?

한국식 서구주택은 거실이 두 개가 존재하는가?

끝없이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케 한다.

다시 한번 묻는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또 다른 생활공간 문제와 프라이버시

몇 개월 후 북쪽으로 6m 도로 간격을 두고 대지가 약 일층 정도 높은 곳에 이층 주택집이 없어지고 사층 연립주택(약 20평 정도 12세대)이 신축되었다.

친지는 내게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안방과 자녀방의 위치를 다시 바꾸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이유인즉 북쪽

에 연립주택도 역시 거실과 안방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안방으로 쳐다보이고 소리도 떠들썩하여 부부생활의 심리적 안정감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다.

그 후, 나는 그 현장에 가보았다.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무미건조한 피몰이 나타난 것이다. 이미 그것은 건축의 시각적 다의성이 없는 구조물로 세워졌다. 오래전부터 Box형이 탈피되고 있지만 존재되고 있다. 시각적 형태는 자해로운 표정만으로 문혀버리고 다의성이 없는 상업경제적인(Anonymous적인) 이름으로 마음대로 지었다.

전면에 발코니가 하나도 없는 근생발딩처럼 오로지 주택의 실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아무런 건축적 미학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 감정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무 했다. 그는 긴 시간을 두고 참아왔지만 부부생활에 너무 피해가 크다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써 동질성을 잊고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부부생활의 프라이버시 피해의 관심으로 여류이면 더욱이 발가벗은 모습들로 그리고 성에 대한 수치심은 역시 남자보다 여자의 위치에 더욱 그러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북쪽에 둔 안방은 발코니가 붙어 있었다. 창문이 문으로 되어 개방감이 있어 보였다. 문은 열린 공간과 시각성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는 주장의 이론도 있지만 감추여지는 맛도 있다. 발코니에 붙어있는 반사 이중문 안방 벽에 붙어 있는 외부의 이중문 내부의 목제문을 달고 있는 문에 기능들은 외부로부터의 심한 프라이버시는 조금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커튼도 달고 선풍도 하고 조명도 끄고 그리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 때마다 도저히 신경이 쓰여 안되겠다고 한다.

나는 속으로 역시 “프라이버시” 힘은 대단하구나 생각했다.

주거공간 계획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능은 과거나 현재나 중요시되고 큰 뜻으로는 문화적으로 형성되며 미래의 주거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 하겠다.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상호에너지의 조정관계이다. 시끄럽고, 조용하고, 영역에 충돌이 바뀌면서 전환의 질서 법칙이며 분리의 분명함과 프라이버시로 규정짓고 독립현상과 통합현상으로 나타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효과적인 제어방법은 없을까?

내·외 프라이버시의 매개공간의 발코니는 무용지불인가? 도시형 주택에서 부부의 영역과 자녀의 영역기능 공간도 구분 못하는 무지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실들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환경 상황에 따라 항상 새로운 과학적 체계방법으로 분석하고 제시해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후, 그는 안방과 자녀방을 옮겼다. 아들 녀석 혼자 쓰기에 너무 썰렁해. …… 중얼거리면서

이제 우리의 주거공간문화도 인테리전트화 되어지고 인공지능 개발의 미래형 주거문화를 향해 초첨단 기계미학과 어울려지고 있다. 각실에 활기와 생동감을 주기 위한 성공적인 연출은 더욱 고조될 수 있는 것이며 또다른 문제로 옮기는 것이다. 아득한 온신처로써 동네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자연성과 인간성을 찾아 통합된 생활공간이 더욱 그리워진다.



1. 개요

소개하고자 하는 생 마르탱 뒤 까니구(Saint-Martin-du-Canigou) 수도원은 11세기에 스페인과 프랑스와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피레네 산맥의 까니구산 속에 해발 1,094m인 깎아지른 바위위에 건립된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을 가기 위해서는 파리에서 프랑스 중부지방인 리용(Lyon)을 거치고 남부의 교통중심지인 나르본(Narbonne)을 지나 페르피냥(Perpignan)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곳에서 피레네산맥 까니구산 밑까지는 승용차로 약 2시간거리이고 이곳에서 수도원까지는 도

보로 약 40분이 소요된다. 올라가는 오솔길 주변에는 유달리 밤나무가 많아 한국의 산을 연상케하며 또한 가을에는 등산하면서 밤을 줍는 여행객도 많이 눈에 띈다.

그동안 이곳 수도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방치되어 있었으나 1902년에서 1932년까지 페르피냥(Perpignan)의 주교 까르살라드 뒤퐁(Carsalade du Pont)의 의해 복원되었고 1952년에서 1974년까지 수십 차례 복원되고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 건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깊이 있게 연구, 분석되어야 할 중요한 건축물이라 판단된다.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7)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 Saint-Martin-du-Canigou 수도원 -

朴孝洵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2. 수도원의 기원 및 역사

2-1 수도원의 기원

까니구(Cabigou)산에 있는 생 마르탱 뒤 까니구(Saint-Martin-du-Canigou) 수도원은 세르다뉴(Cerdagne)와 콩플랑(Conflent)의 백작 기프레 까브르타(Guifred Cabrta)가 생 미셸 드 퀵사(Saint-Michel-de-Cuxa)의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신부이며 1027년에 있었던 영주사이의 휴전조약(주: 11세기 교회의 명령으로 영주와 영주 사이에 수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휴전을 했었음)의 발기인이었던 그의 동생 올리바(Oliba)와 협력하여 1005년 건립했다.



수도원 전경

빌 프랑슈 드 콩플랑(Villefranch-de-Conflent)의 공정인회에 보관되어 있는 양피지에는 백작 기프레의 선언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영원히 섬기기 위하여 브누아(Benoit)성인의 규율 아래 군인들이 소속해 있는 이곳에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마르탱 성인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수도원을 건립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쥘 마르탱 뒤 까니구 수도원이 건립되었던 이유는 하느님에게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더 정확하게는 베네딕트회 특유의 사명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09년 11월 13일 엘느(Elne)의 주교가 성당의 첫번째 부분을 봉헌하러 왔으며 이때 기프레 백작과 그 지방의 모든 귀족들이 새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평원의 비옥한 토지와 산과 숲을 기증하였다. 1026년에는 성당의 두번째 부분을 축성하였다. 첫번째 부인 기슬라(Guisla)와 결혼하여 다섯 자녀를 둔 기프레 백작은 그의 부인과 사별한 7년 뒤 엘리자벳(Elisabeth)과 재혼을 하여 두 자녀를 두었다. 그의 일곱 자녀들이 성장하여 모두 결혼을 한 후 1035년 기프레 백작은 수도자가 되어 쥘 마르탱 수도원의 신부가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15년간 열심히 살았으며 매우 단단한 화강암 산속에 그 자신과 그의 두 부인의 무덤을 마련하였다. 그의 두번째 부인 엘리자벳 역시 수도자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1049년 7월 30일 기프레 백작이 생을 마쳤을 때 까니구의 수도원장은 유럽의 전 수도원에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죽음을 알렸다. “우리 조국의 유명한 왕자였던 기프레 백작의 영혼을 위해 주님의 관대함을 청해주십시오. 그가 누구였는지 이 세상에서 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당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 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재산과 명예를 즐기는 대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수도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토지를 기증하여 수도원에 수도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들 가운데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우리들의 보호자였었고, 노인들의 후원자였으며 젊은이들에게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쥘 마르탱 뒤까니구 수도원은

수도원을 명예롭게 한 성인들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의 무덤은 1332년 까스떼이(Castell) 성당 속에서 옮겨졌으나 무덤을 장식했던 저부조 작품들과 묘비들을 그후 다시 찾아내어 수도원 경내회랑의 기둥에 놓았다. 기슬라의 무덤은 14세기 초에 발견되었으며 잘 보존되었던 시신은 쥘 마르탱 뒤 까니구 성당 속에 안치되었다. 불행하게도 프랑스 대혁명 때 그들의 무덤은 훼손되었으며 시신도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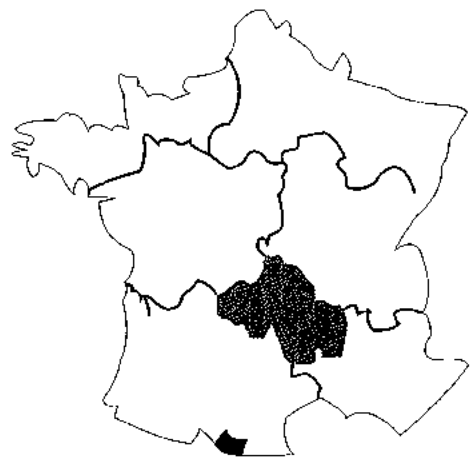
2-2 수도원의 역사

1) 1050년에서 1783년까지의 역사

12세기 초인 1114년에 형편없는 음모에 의해 세르다뉴의 백작 베르나르 기욤(Bernard Guillaume)은 오드(Aude) 지방에 있는 라그라스(Lagrasse)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장처럼 까니구의 수도사들을 힘으로 위압했다. 그후 조금씩 이 무자격 취임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저항을 하던 쥘 마르탱 뒤 까니구의 수도사들은 1159년 쥘프 마리 드 리폴(Sainte-Marie-de-Ripoll) 수도원의 한 수도사를 수도원장으로 선출했다. 라그라스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강한 반발에 나르본느(Narbonne)의 대주교는 이 선거를 무효로 하였다. 그러나 까탈랑(1) 사람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바르셀로나(Barcelona)의 백작과 그 지역의 여러 주교들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여 결국은 수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마르탱 뒤 까니구 수도사들의 강한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외부에서 용병들을 보내었다. 한 수도사가 죽었고 나머지는 부상을 당했으며 몇몇 사람은 산속으로 도주하는데 성공을 했다. 수도원은 약탈을 당했고 약탈자들은 많은 노획물을 갖고 철수했다. 생존자들은 폐허화된 수도원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200년 동안 수도원은 창립자들이 기증하고 개발한 소유지 덕분에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이 개발의 흔적은 수도원 주변과 까니구 산허리에서 지금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4세기 새로운 시련들이 다시 수도원에 불어 닥쳐 거의 50년 동안 수도



성당과 종루



원은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아라곤(Aragon)왕과 마조르크(Majorque)왕자의 군대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었다. 두 상대 병영의 전투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은 까니구의 수도사들은 모든 검열과 약탈 그리고 보복을 받았다. 질서와 평화를 되찾았을 무렵에는 강진이 전지역을 강타하여 수도원 벽의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이때가 1428년이었는데 엄청난 시련과 수많은 불행을 겪은 후 여서인지 이와같은 불행은 오히려 운명으로 여겨졌다. 마을과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지진을 걱정하고 이주를 할 때 수도원장 돔 에르케르(Dom Erquerd)는 폐허를 재건하도록 수도사들을 독려했다. 1779년 이 지역의 통치자는 마을에서 수도원까지 이르는 길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카스페이의 주민들에게 강요했다. 이것은 그 당시 공권력이 영신적인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라 하겠다.

2) 1783년에서 1902년까지의 역사

그러면 수도사들이 언제 어떻게 수도원을 포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좋은 참고자료로 1779년 9월 4일 돔 마리 그뤼메트 몽프레(Dom Marie Grumet de Montpre:Dom은 베네딕트회나 트라피스트회에서 성직자를 부르는 칭호임)가 참석한 가운데 쥘 마르탱 드 까니구에서 열린 교회 참사회회의 보고서를 들 수 있다. 결론을 보면 “우리들의 소유지는 감소하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으며 대부분 병약한 다섯 명의 수도회원으로 줄어들었고 만일 한두 수도사가 서거할 경우 재단의 규율을 지키고 미사를 집전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수도원 안에서 곧 중단되게 될 것이다. 생존자들은 더 이상 서로 도울 수 없게 될 것이며 강도들에게 약탈당하거나 살해당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염려와 우리들의 나이로는 건디기 어려운 혹독한 겨울날씨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다른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 비관적인 예견은 4년 뒤인 1783년 12월 7일 즉 프랑스 대혁명

이 일어나기 6년 전에 적중했다. 용감한 군인들이 힘이 닿는대까지 성벽을 점령하였으므로 쥘 마르탱 드 까니구의 수도사들은 가장 귀중한 그들의 재산인 800년 동안 모은 장서와 고문서들을 가지고 프랑스 남부의 평원으로 다시 내려가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이 수도사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귀중한 보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버려진 집들은 폐허가 되고 약탈당하는 크나큰 불행이 시작되었다. 풀은 폐허 위에 무성하게 자랐고 약천후의 영향으로 지붕과 벽들은 훼손되고 붕괴되었다. 게다가 그 고장의 주민들이나 통행인들은 기념이 될만한 것들을 가져갔다. 이러한 결과로 수도원 건물의 원주와 함께 수도원 경내회랑의 기둥 머리돌과 조각된 초석들이 완전히 없어졌다.

2-3 수도원의 복원

1) 1902년에서 1932년까지의 복원공사

폐허가 된 수도원을 복원하려 한 사람은 까팔랑 지방의 위대한 시인이자 바르셀로나에서의 문학 경기대회(L'Arcademie des Jeux Floraux) 수상작인 'Atlantide et le Canigou'의 작가이자 사제인 자생토 베르다귀에(Jacinto Verdaguier)였다. 그는 까니구 수도원의 지난날의 영화를 너무나 잘 표현하여 학식있고 교양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오슈(Auch) 본당 신부였으며 제르(Gers)의 역사학과 고고학 고문서관의 창립자였던 까르살라드 뒤 폰(Carsalade du Pont) 신부가 그 예였다. 그는 자생토 베르다귀에의 작품 “까니구(le Canigou)”를 읽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 1895년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는 동안 그는 시인을 만났다. 바르살라드의 한 서점에서 시인과 만났던 까르살라드 신부는 이렇게 회고했다.

“자생토 베르다귀에가 어떻게 까니구의 시를 쓸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산, 수도원과 성당의 폐허, 그리고 아직도 우뚝 서있는 종루의 거대한 탑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동안 무엇이랄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도 불가사이한 힘이 나를 엄습했다. 우리가 헤어질



수도원 입구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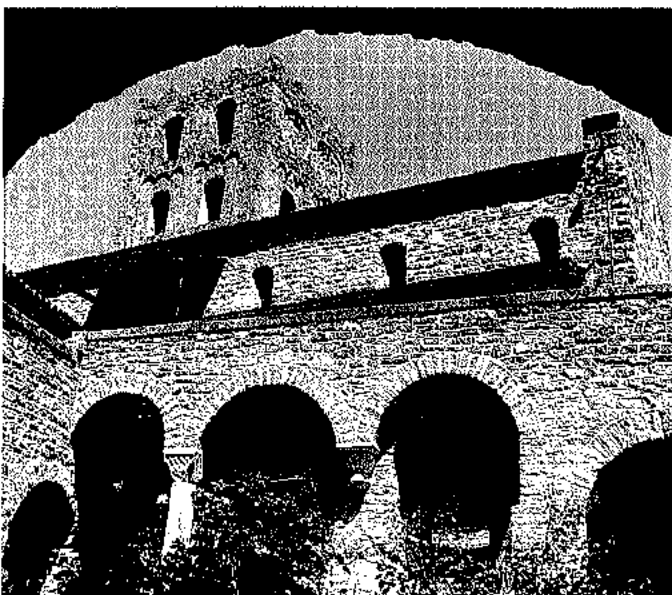
때, 우리는 영원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같은 이상과 감정에 일치하고 있었다.” 그후 5년뒤, 까르살라드 신부는 페르피냥(Perpignan)의 주교가 되었다. 교구를 맡자마자 그는 쥘 마르탱 뒤 까니구의 복원사업을 하도록 까탈로니아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편지를 썼다.

“우리는 이 참담한 폐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년 이상 수도원에서는 미사를 드리지 못했으며 어떠한 기도도 산 위에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프레 백작과 그의 동생 올리바 신부가 까니구의 요새 위에 어렵게 건립했던 성당은 영원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까탈로니아의 심장으로 유명한 이 산위에서 브누아 성인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늘을 향한 기도가 밤낮으로 바쳐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1902년 초에 한 이 감동적인 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같은 해 11월 11일 쥘 마르탱 뒤 까니구 수도원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사에 가는 까르살라드 주교를 프랑스 남부지방과 스페인에서 온 약 2천 명의 사람들이 수도원까지 수행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1903년 시작되어 1914년에서 192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1928년까지 계속되었다. 까르살라드 주교는 하느님의 집인 성당부터 복원했다.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종들이 있었던 종루를 복원했다. 수도원의 두 건물과 공용건물, 테라스를 재건축한 후 그는 모든 고장에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 분산된 수도원 경내회랑의 원주들과 기둥머리들을 다시 찾아 옛날 상태로 2층을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일층에 놓았다. 그의 의도는 브누아 성인과 기프레 백작이 소망했던 대로 쥘 마르탱 뒤 까니구 수도원에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이 다시 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까르살라드 주교는 33년간 임무를 잘 마친 후 1932년 12월 29일 생을 마쳤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까탈로니아 지방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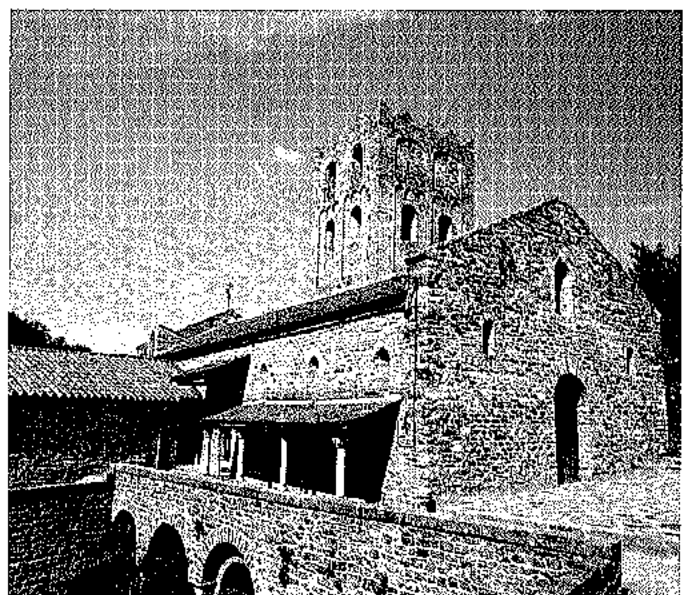
2) 1952년에서 1974년까지의 복원공사

앙칼까(Encalcat)수도원의 베네딕트회 수도사인 베르나르 드 샤바네스(Bernard de Chabannes)신부는 쥘

마르탱 뒤 까니구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까르살라드 주교가 시간이 없어 복원하지 못했던 마지막 폐허들을 재건했다. 여러 건축가들과 부지런한 일꾼들의 도움으로 옛날 토대를 사용하고 특이한 지형으로 인해 les Monuments Hostroiques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3층으로 조금씩 건립했다. 재건축이 끝났을 때 베르나르 드 샤바네스 신부는 종루의 테라스, 성당과 수도원의 지붕, 수도원 경내회랑과 모든 테라스의 편암포석을 새롭게 하였다. 수도원을 좀더 위생적으로 하고 채소밭과 과수원 그리고 많은 꽃밭의 관개에 사용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꼭지와 1Km에 달하는 급수관을 완전히 다시 고쳤다.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자재를 까디(Cady) 계곡 아래에서부터 여러 공사장까지 몇 분 동안에 운반했던 공중 케이블 카 덕이었다. 공중 케이블 카에 의해 모든 자재는 직접 제 위치에 도달했다. 또다른 수단으로는 심하게 구불구불한 좁은 도로 위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지프차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젊은이들의 그룹이 무보수로 일손을 거들기도 하였다. 산악지방의 주민들이 비를 피하고 밤을 새우거나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든 것처럼 이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32개의 침대가 있는 공동침실들과 부엌 하나가 딸려있는 허름한 집을 재건축했다. 1971년에서 1972년까지 관광객들과 수도원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수도사들을 위해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만들었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피크닉에 필요한 용품을 구할 수 있고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큰 홀을 건축했다. 이 홀은 엄격히 말하자면 레스토랑이나 호텔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원을 가는 도중의 까스페이(Casteil), 베르네(Vernet)와 빌프랑슈(Villefranche)에는 미식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명한 호텔이 있다.



수도원 안마당



수도원의 성당

3. 성당건축

3-1 성당내부

생 마르탱 뒤 까니구 성당은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매우 복합적이며 견고한 건축물로 2층으로 되어있다. 수도사들이 순례자들을 위한 건물을 건립하기 전에 먼저 성당을 건축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땅 밑의 성모마리아"에게 봉헌된 아래쪽 성당은 10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육중한 기둥을 중심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지하 분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정면쪽의 부분은 폭 3m 10의 중앙회중석과 2m 폭의 측랑으로 되어있으며 동쪽부분은 같은 폭의 세 회중석으로 되어있다. 소시리가 원주의 중간에 점착되어 있다. 동쪽에 있는 세 트라베(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는 작은 후진과 서쪽에서 네번째 트라베를 이루고 있는 성당 정문 안의 현관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작은 성당을 만들고 있다. 지하성당의 이 부분은 수도사들이 오기 전 10세기 말부터 있었던 건물로 추정되며 서쪽 부분은 확장 공사를 하여 1009년 축성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성당의 윗층을 건축할 때 지하묘소 동쪽부분의 지주를 강화시켜야만 했다. 그리하여 웅벽 속에 두 원주를 넣었다. 성당의 윗층은 회중석이 셋 있으며 평행한 반원형 궁륭으로 되어 있다. 이 회중석은 십자형의 기둥에 의해 세 트라베씩 두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윗층의 동쪽부분은 아랫층보다 크고 서쪽부분은 아랫층보다 적다.

가운데가 불룩한 한 개의 돌로 된 원주 위에 입체적인 기둥머리가 있고 그 위로 아치가 늘어져 완전한 반원형 궁륭을 이루고 있다. 이 건축방법은 로마네스크 양식에 술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리폴(Ripoll) 성당의 측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스듬하게 조각된 거친 기둥머리들과 아케이드는 매우 인상적이다. 고데릭(Gauderique) 성인의 입상은 수도원이 까탈랑(Catalan) 농부들의 대집회 장소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기둥머리는 둘 혹은 세 편의 부채꼴 모양으로 장식되었다. 또한 선으로 새겨놓은 짐승의 옆모습, 사자, 늑대, 거대한 머리와 작은 체구를 가진 인물 등도 볼 수 있다.

많은 기둥머리 중 옛날 수도원 경내 회랑에서 나온 기둥머리 하나는 주제단의 주춧돌로 재사용되었다. 문과 창문은 중심이 어긋난 홍예의 외호가 있는 반면 후진을 리폴(Ripoll) 성당의 후진과 마찬가지로 홍예문 모양의 장식배내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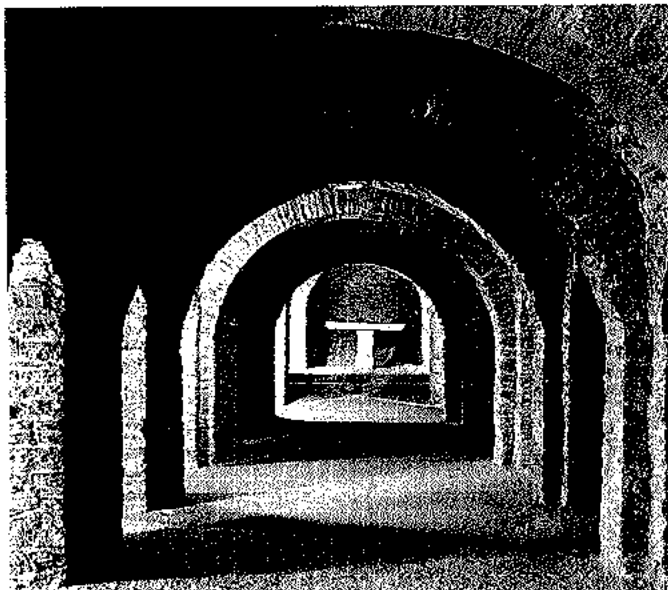
이 양식은 뿌이유 지방(이탈리아의 아드리아해와 뻬한 최남단 지방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장화모양의 뿔쪽 부분)과 토스칸 지방(피렌체를 중심으로 코르시카섬과 마주 보고 있는 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성당의 윗층은 1026년 축성되었다. 후진 가까이 북쪽에 건립되어 있는 종루는 문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 윗쪽 부분은 1428년의 지진 이후 재건축되었다. 종루 내부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채색된 장식의 희미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내진 북쪽 위에는 옥상이 크레노(툽니의 가장자리 모양으로 처리된 것)로 마무리된 조루가 건립되어 있고 성당 부근에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 둘 있는데 이것은 수도원 창립자였던 세르다뉴(Cerdagne: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방)의 백작 기프레(Guifred)와 그의 부인의 무덤이다.

수도원의 복원을 담당하였던 페르피냥(Perpignan)의 주교 까르살라드 뒤 폰(Carsalade du Pont)은 그의 흉상이 있는 아래에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나 그의 사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도사를 찾지 못하여 그의 시신은 페르피냥 대성당의 지하 분묘에 안치되어 있다.

3-2 종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포기하고 하산을 할 때 스페인의 까탈로니아 지방 사람들이 오로(Olot)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 달기 위해 "라 마르틴느(la Marine)"라는 이름의 이 종을 샀다. 그때가 1786년이였다. 1932년 스페인의 까탈로니아 지방 사람들은 폐허가 된 수도원을 복원하는 까르살라드 주교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종을 돌려



지하분묘



경내회랑의 겨울 풍경

주었다. 이것은 1902년부터 1932년까지 복원사업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크나큰 결실이었다. 수도원의 첫 번째 복원공사때 여러 기부자들이 까르살라드 주교에게 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4개의 대형종을 기증했다. 1961년 샤바네스 신부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전기시설을 했다. 이리하여 아침, 정오, 저녁에 바치는 삼종기도로 인간의 영혼을 하느님께 향하도록 했다.

3-3 지하묘소

성당과 수도원의 토대에서 첫 번째 부분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많은 고고학자들은 8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4점의 기둥머리와 짧은 기둥 속에 원주가 묻힌 것은 11세기에 건립된 성당 상층부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카롤링 왕조 때 마르탱 성인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카롤링 왕조 때 마르탱 성인을 기리기 위한 첫 번째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6세기초 브누아 성인이 별거벗은 거지에게 자기 외투의 반을 잘라 나누어 준, 전 유럽에서는 서민들에게 친밀했던 위대한 마르탱 성인을 기리기 위해 이탈리아의 까쟁(Cassin) 산에 작은 예배소를 건립했기 때문이다. 1977년 루시용(Roussin; 프랑스 남동부 지방) 지역의 les Monument Historique의 건축가인 베르네(Vernet)와 협의하여 4점의 기둥머리와 원주를 없앴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아주 노련한 석공에 의해 공사가 끝났으며 1982년 지하묘소의 양식과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 제단을 없애고 화강암과 이 지방의 붉은 대리석으로 제작한 새 제단으로 대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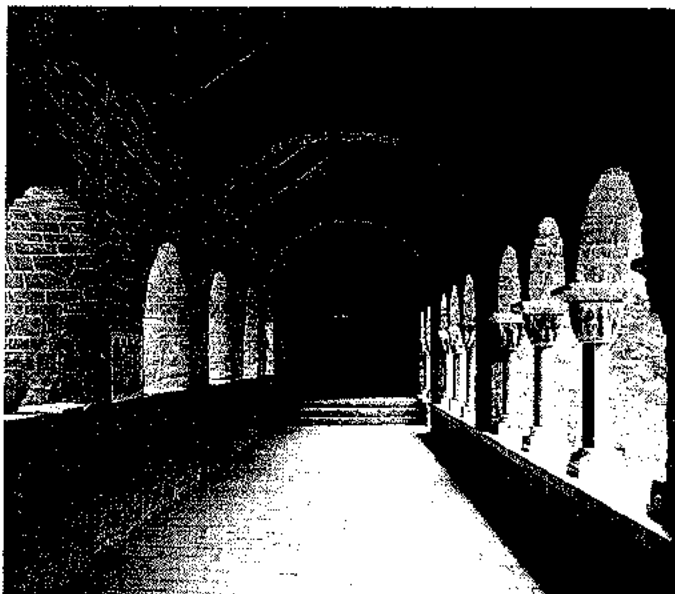
4. 수도원 경내회랑

4-1 경내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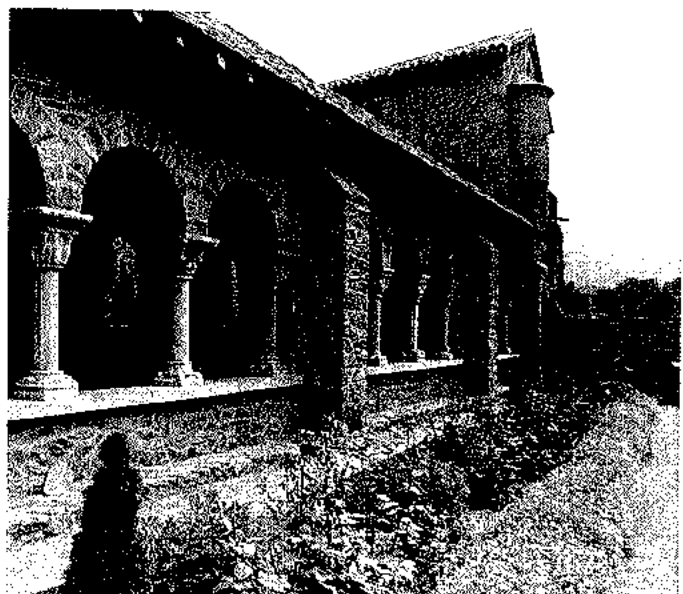
일층이 반원형 궁륭인 11세기의 수도원 경내회랑은 조각이 없는 육중한 기둥 사이로 트여있는 공간이 되도록

록 안뜰과 연결되게 하였다. 그후 궁륭형 경내회랑에 조각된 기둥머리가 있는 경내회랑을 건립한 것은 12세기부터이며 이 기둥머리들은 현재 이층에 다시 놓았다.

페르피냥의 주교 까르살라드가 추진한 복원사업으로 옛수도원 경내회랑의 모습을 상상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경내회랑은 종루 윗층이 붕괴되는 지진이 발생한 1428년 피해를 입었다. 또한 1783년 수도원이 약탈당하면서 기둥머리들은 사방으로 분산되었고 그후 갈르살라드 주교가 1902년부터 기둥머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사방으로 분산된 조각품을 제자리에 놓고 폐허가 된 건축물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다시 찾은 13점의 기둥머리들은 경내회랑 아랫부분의 남쪽주랑에 마주어 놓도록 하였다. 회수된 조각품들과 새로운 대리석 작품들을 섞어 경내회랑을 복원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지만 매우 훼손된 두 점의 기둥머리는 성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보호하는 기둥의 지주로 다시 사용했다. 다른 두점의 기둥머리를 현재 생 미셀 드 쿡사(Saint-Michel de Cuxa)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고 또다른 두 점은 몽뻬리에(Montpellier)에서 최근 발견되었다. 복원공사를 하기 얼마 전 Puiggari의 연구를 Masso-Torrents이 발표를 했고 낡은 사진 몇 장은 조각품들과 건축물의 이전 상태를 보여주었다. 좁고 기복이 심한 공간에 의해 제약을 받은 건물전체처럼 경내회랑도 기복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을 탈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북쪽과 남쪽의 길이는 14m, 그리고 서쪽은 10m로 불규칙한 사변형이었으나 Puiggari는 직사각형으로 설계를 했다. 경내회랑은 두 층으로 되어있으며 각 층은 서로 다른 시기에 건립되었다. 육중한 돌 홍예문이 있는 아랫층은 11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견고하고 두박한 홍예문들은 까팔로니아 지방의 초기 경내회랑들을 상기시킨다. 그후 리폴(Ripoll)과 엘느(Elne) 성당에서처럼 대리석으로 된 원주와 기둥머리가 있는 위층 회랑이 건립되었다. 북쪽회랑은 성당과 접해있고 서쪽회랑은 교회 참사회의실을 막고있는 건물과 접해 있다. 간호인 숙소의 아랫쪽에 건립된 남쪽회랑은 안마당 전체에 햇빛이 들도록 협곡과 면해 있다. 원주와 기둥 그리고



경내회랑 내부



경내회랑의 여름 풍경

기둥머리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회랑은 퀴사 수도원의 경내회랑처럼 궁륭형이 아니었고 벽에 비스듬히 덧붙인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 복원공사를 하기 전에 수도원장 관사의 벽에서 골조의 장귀들을 놓았던 구멍들을 볼 수 있었다. 20세기 초까지는 만원형의 마멸된 홍예문들이 있는 주랑이 셋 남아 있었으나 계곡 쪽에 있는 남쪽 주랑은 윗층을 제거할 때 나온 대리석 기둥머리들을 재사용하여 복원할 당시 재건축되었다.

4-2 경내회랑의 묘석

프랑스 대혁명을 모면한 세 묘석은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 까르살라드 주교가 수도원 경내회랑의 굽은 기둥 3주 속에 삽입했다. 이 묘석들은 1280년에서 1334년 사이 수도원장을 지냈던 성직자들의 것이다. 기포레 백작과 백작부인 엘리자베트의 머리를 조각한 것으로 라틴어 모비명이 적혀있는 작품들 역시 수도원 경내회랑의 다른 두 기둥에 삽입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수도원의 창립자가 그이 생애 마지막 15년 동안 수도사로 지냈으며 그의 두번째 부인은 수도사들을 위해 헌신한 사실들을 상기시켜준다.

4-3 기둥머리

1) 기둥머리의 개요

기둥머리들은 12세기와 13세기에 제작되었으며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머리들이 그렇듯이 대부분 매우 비종교적인 장식으로 짐승, 새, 파충류 그리고 인간들의 춤과 비열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벌을 표현하고 있다. 단 하나의 기둥머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수도원장을 나타내고 있다. 벌거벗은 거지에게 주기 위해 그의 외투를 나누고 있는 투르(Tours)의 마르탱 성인을 표현한 저부조 작품이 수도원 경내회랑의 첫 번째 기둥에 놓여있다.

Masso-Torrents은 수도원의 폐허 속에서 흔적을 찾지 못했으므로 지붕은 홍예문을 거치지 않고 기둥머리

위에 직접 올려졌다고 추정했다. 1783년 수도원을 교회 관할에서 분리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다섯명의 높고 병약한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난 후 성기들, 장식품, 책과 제단 뒤의 장식그림 등이 여러 성당으로 분산되었으며 수도원 건물과 성당은 부근의 주민들에게 채석장처럼 이용되었다. 기둥머리들은 까스페이(Casteil)와 베르네 레 뱅(Vernet-les-Bains)으로 옮겨져 성당의 종루나 개인의 집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 Masso-Torrents은 1888년 기둥머리 21점, 주칸 8점과 주춧돌 13점 등 가장 기본적인 건축자재를 발견하여 묘사했고 그후 까르살라드 주교가 수도우녀에 다시 놓았다. 기둥머리와 주춧돌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두 그룹 즉, 한 그룹은 로마네스크 양식을 말하며 또다른 한 그룹은 그 이후의 양식을 뜻한다. 초기의 기둥머리들은 동양적인 전설의 짐승이나 양식화한 잎사귀를 나타내었으며 발레스 피르(Vallespir)산의 푸른 돌결이 있는 흰색 대리석을 사용하여 조각하였다.

2) 기둥머리 조각의 내용

(1) 사자모양의 기둥머리

기둥머리들을 자세히 보면 와형장식 아래 모퉁이에 머리가 있는 사자의 모습이 있다. 뒷다리 사이로 비죽 나온 꼬리는 묵직한 배 위에서 퍼져있다. 크게 벌린 입은 거친 이빨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자의 갈기는 두 갈래로 떨어져 있다. 사자 발의 마디가 있는 부분은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놓았다. 쇠시리선은 밧줄모양으로 장식을 했으며 기둥머리 밑은 세라본(Serrabone) 아틀리에의 특징인 약한 부조를 넣은 대각선 줄무늬로 장식했다. 네 모난 받침 아래에 있는 판대배가 튀어나고 턱이 길며 뺨은 머리를 한 긴 얼굴들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

(2) 새 모양의 기둥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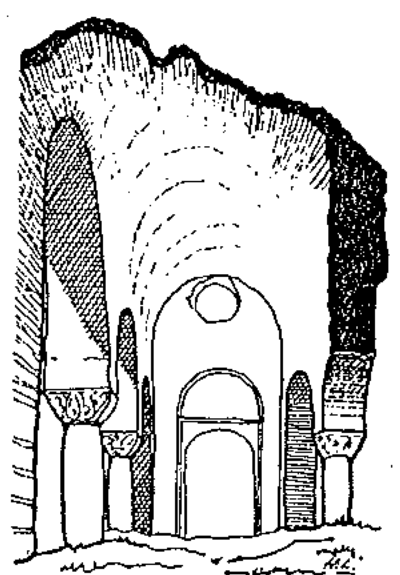
경내회랑의 마지막 기둥머리의 새모습은 같은 대리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기둥머리의 모퉁이에서 새들의 머리가 마주치는 작품이다. 새들의 날개는 평행한 줄무늬



종교행렬 기둥머리



기도하는 수도사들의 기둥머리



수도원 내부

로 조각하여 좁고 거친 꼬리로 끝을 마무리 지었다. 새의 발은 형태가 없으며 가운데 있는 인물의 머리는 매우 크고 그의 옷은 균형잡힌 주름으로 처리를 했다.

(3) 잎사귀 모양의 귀동머리

경내회랑의 끝에서 두번째 기둥머리는 분홍 대리석으로 와형장식 아래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큰 잎사귀는 가운데를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 잎맥을 나타냈다. 거칠고 두터운 아칸더스 잎사귀로 세라본 수도원의 남쪽 회랑에도 이런 기둥머리가 있다. 잎사귀 사이에는 거의 직사각형이며 무표정한 얼굴들이 있고 잎사귀 사이에 꼬인 줄기가 있으며 그 위에 구슬로 장식된 꽃장식이 있다.

(4) 공룡모양의 기둥머리

모퉁이의 와형장식 아래 머리가 사자모양인 날개달린 공룡이 있으나 인근에 있는 세라본(Serrabone) 수도원이나 킱사(Cuxa) 수도원의 환상적인 동물들과 유사하지는 않다. 길고 넓은 귀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입까지 내려가 있다. 이빨은 지그재그로 약하고 규칙적인 선으로 표현했으며 우스꽝스럽게 작은 몸은 보잘 것 없이 축소된 발을 압도하고 있다. 근육과 발톱은 확실치 않은 줄로 어렴풋이 처리했다. 그러나 몸위에 있는 꼬리는 꽃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날개는 중앙의 얼굴턱과 연결되어 입을 둘러싸고 있다. 인물의 두꺼운 입술은 납작한 코와 평평한 머리전체가 이상스럽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와형장식은 네모난 밑받침과 괴물의 머리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모퉁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도식화한 것은 점점 더 거칠어져서 루시용(Roussillon) 지역의 로마네스크 양식 아틀리에의 기질이 없어진 것 같이 보인다.

(5) 차양용의 기둥머리

성당 윗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윗쪽에서 차양건축에 사용된 것으로 훼손되어 있는 기둥머리는 세라본과 킱사 수도원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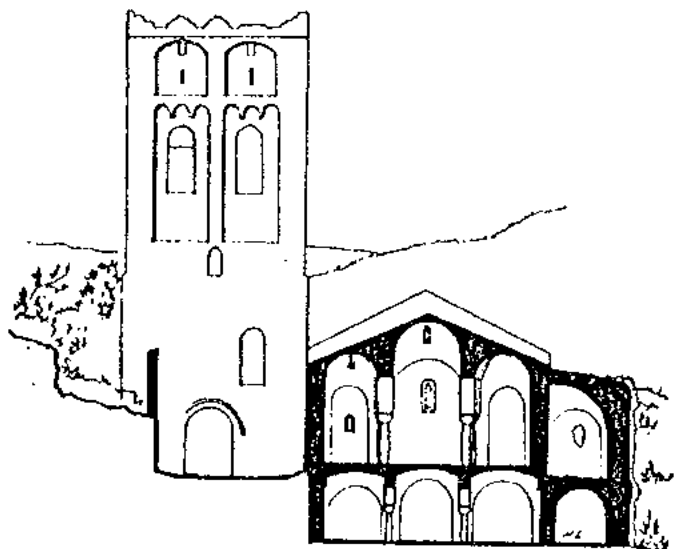
주둥이를 발 위에 대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다. 이 기둥머리의 제작솜씨는 앞의 기둥머리들에 비해 매우 뛰어나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6) 비둘기와 서양장기 모습의 기둥머리

다른 기둥머리들은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들로 조각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그룹의 단일성은 네모난 밑받침의 중앙에 이중의 문장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양장기판이다. 이것은 수도원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은인이었던 수도원장 올리바(Oliva)와 기프레 백작을 상징한다. 올리브 나뭇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는 올리바 까브레타(Oliva Cabreta)의 아들이며 브잘뤼(Besalu)와 세르다뉴(Cerdagne)의 백작이었고 쥘 미셀 드 킱사(Saint-Mihel-de-Cuxa)와 리벨의 수도원장, 비쉬(Vich)의 주교, 몽제라(Montserrat)의 창립자, 그리고 1014년까지 쥘 마르탱 뒤 까니구의 수도원장으로 1009년 성당의 봉헌미사를 집전했으며 그의 일생동안 수도원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졌던 위대한 올리바(Oliva)를 상기시킨다. 서양장기판 모양의 문장은 기프레 백작의 문장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올리바와 형제지간으로 수도원을 건립하고 아낌없이 기부를 했으며 브누아(Benoit) 성인의 뒤를 따른 수도자로 그의 생을 마감한 기프레 백작은 그의 손으로 바위에 마련한 자신의 무덤을 오늘날에도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7) 염소와 들쥐 모습의 기둥머리

또 다른 그룹의 기둥머리들은 쥘 미셀 드 킱사의 기둥머리들을 모방한 것으로 각 모퉁이에서 등을 맞대고 있는 짐승들로 야생염소와 들쥐가 그것이다. 모퉁이의 와형장식은 없어졌으며 짐승들의 몸은 부조로 표현되었고 짐승의 털을 나타낸 부분에서는 섬세한 맛이 없다. 기둥머리에 표현된 주제는 오래된 동화 속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중세기 작가의 천재성을 나타내기도 했고 순박한 동물로 환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수도원 단면도



올란함을 표현한 기둥머리

(8) 수도원장의 기둥머리

주교관을 쓴 한 수도원장이 탐욕스런 눈길로 음험한 미소를 띤 표정을 하고 있다. 그의 모습은 어깨까지는 수도원장이며 사지는 짐승의 형태이다. 빈정거림이나 추잡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고 관용적인 정열을 표현했다고 하겠다. 이것은 까니구 수도원에 그들의 법을 강요했던 라그라스(La Grasse)의 세력있는 수도원장들 중의 한 사람을 상기시키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굉장한 혀를 내밀고있는 개, 뱀, 거대한 귀를 가진 괴물들이 이 수도원장이 받는 영원한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 옆의 기둥머리에는 뱀이 쳐다보는 가운데 개가 한 발을 사람(혹은 원숭이)에게 내밀고 있다.

(9) 어릿광대들의 기둥머리

꼬마 도깨비들이 살았던 까니구산의 깊은 계곡 속에서 특별히 알려졌던 전설로는, 악마들이 나쁜 마법의 기술을 터득하던 늑 주위의 낮으막한 언덕에서 플롯과 북을 연주하는 동안 꼬마 도깨비들은 샘물 속에서 나와 샘 주위에서 사르단춤(la sardane; 까딸로니아 무용)을 추는 것이 있다. 한 기둥머리에서는 손에 칼을 들고 춤을 추는 살로메를 볼 수 있는데 허리까지 내린 옷으로 가슴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슴은 남으로 상감을 하여 음탕함을 표현했다. 그러나 왜소한 신체에 비해 너무나 큰 머리를 지니고 있는 모퉁이의 인물들은 신체의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들은 이 외딴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했던 어릿광대나 난장이들로 추정되며 그들의 인간성을 대리석 속에 영구 불멸화시킨 것이라 판단된다. 곡예사, 재주꾼과 무희들은 일반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당과 경내회랑 속에서 그들을 표현한 조각작품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까딸로니아 지방에서 Sant Cugat del Valles의 기둥머리와 Bohi의 벽화 속에서 곡예사나 어릿광대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의 한 기둥머리에는 서민들의 축제를 후세까지 전하기 위해 비올라를 든 어릿광대를 조각해 놓았다. 중세의 사람들에게 괴물들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불가사의한 힘의 세계에 속했다. 예술가들은 신체적 조화

에 근거를 둔 일반적 기준을 벗어난 장식적 기하로 괴물들을 표현했다. 즉 가느다랗고 병약한 다리와 몸 전체의 길이 만큼이나 긴 팔을 가진 이상한 모습으로 묘사했다. 외형장식의 윗쪽에 까지 괴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어릿광대짓, 미소, 빈정거림과 폭소는 신앙과 종교의식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0) 종교행렬의 기둥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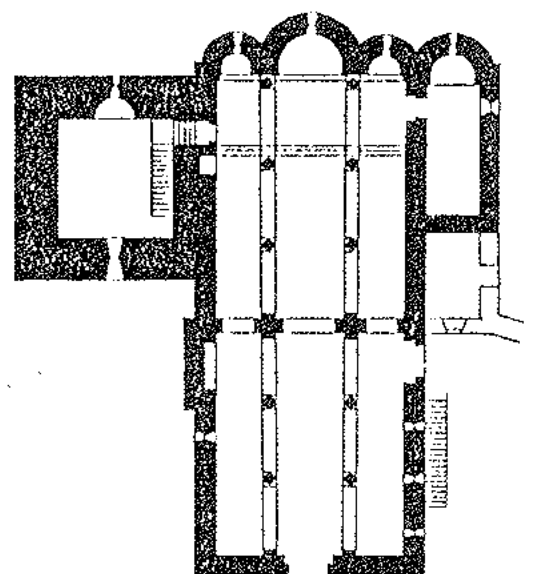
주랑의 기둥머리 중의 하나에는 수도사들이 종교행렬을 하는 장면이 있다. 한 수도사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수도사는 주교의 홀장을 들었으며 주교관을 쓰지 않은 수도원장은 문장을 넣은 주교의 무릎덮개를 든 두 수도사를 동반하고 있다. 같은 장면의 기둥머리에는 생 제니데 폰텐(Saint-Genis-des-Fontaines)의 경내회랑의 한 기둥머리에서도 볼 수 있으며 13세기의 이 작품은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1) 수호성인의 기둥머리

현재 성당과 제단을 받치고 있는 한 기둥머리에서는 수도원의 유명한 수호성인의 전설을 볼 수 있다. 까르살라드 주교가 폐허가 된 경내회랑의 복구 작업을 시켰을 때 안마당과 계곡 사이인 옛날의 남쪽 주랑 윗쪽에서 이 기둥머리를 발견했다. 이 작품은 보통의 기둥머리보다 훨씬 크고 삼각형의 세 변으로 되어있다. 한 면에는 말을 탄 마르탱 성인이 거지에게 반을 주기 위해 외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또다른 한 면에는 전설의 두번째 에피소드가 표현되어 있다. 마르탱 성인은 농부들이 숭배를 하던 소나무를 자르게 하였다. 우상숭배를 하던 농부들은 성인이 나무 아래로 뛰어내려 하느님의 전능을 나타내 보이는 조건으로 그것에 동의하였다. 성인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소나무가 기울어지는 순간 나무를 밟았으며 성호를 그었을 때 기울어진 나무는 다시 서면서 우상숭배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쪽으로 쓰러졌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본 모든 구경꾼들은 전원이 참된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 이 기둥머리에는 나무가 꺾이면서 그것을 자르던 우상숭배자 쪽으로 쓰러



무희와 악사들의 기둥머리



수도원 평면도

지는 순간이 나타나 있다.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조각과 수사본으로도 많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나 여기서는 작품을 다른 솜씨가 형편없어 예술작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물들 만큼이나 큰 비둘기와 두 서양장기판으로 기둥머리가 나뉘어져 있다.

외투를 나누는 장면은 현재 안마당 모퉁이의 첫번째 기둥 속에도 저부조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 작품의 처리 솜씨는 기둥머리와 마찬가지로 졸렬하기는 하지만 이 수도원에 속한 작품은 아니다. 이 작품은 까르살라드 주교의 눈에 띄어 19세기 초 페르피냥의 도미니크회 수도원에서 튀르(Thuir) 가까운 Mas Vesian으로 옮겨왔다.

(12) 인어모습의 기둥머리

마지막 세 기둥머리들에는 물 속에 있는 인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13) 기둥머리의 조각의 특성

장식 모티브와 조각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쥘 마르팽 뒤 까니구의 기둥머리를 두 그룹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2세기의 루시용(Roussillon) 지역의 아틀리에와 관계가 깊으며 나머지는 13세기와 14세기까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살로메 뢰쪽에 있는 고딕 아치의 구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다. 세 번 모양의 이 고딕 아치는 옛날 14세기 초에 생을 마친 쥘 마르팽의 세 수도원장의 유골이 든 실을 봉했던 것으로 주랑의 벽 속에 끼워넣은 대리석으로 된 묘석을 보아도 이를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받침돌에 대한 조각은 기둥머리에 대한 여러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여 준다. 12세기의 일반적 형태인 반원 쇠시리에 의해 나누어지는 큰 구슬선이 있는 받침돌들은 큰 구슬선 사이의 수직 부분과 기둥의 주춧돌이 크게 발전한 것이며 받침돌에는 쇠시리가 복잡하고 짐승들과, 조각된 모티브, 거대한 머리와 열을 지어 있는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새 기둥머리

5. 맺음말

10세기 후반 북이탈리아에서 카탈로니아(스페인 동북부 지방) 지방에 이르기까지 초기 로마네스크라는 새로운 건축양식이 나타났는데 이 건축양식은 망치로 조그마하게 깎은 돌을 소박하게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부분적으로 이 양식은 좌우익랑이 없는 바실리카식 설계도에 따라 건립된 라베나(이탈리아의 도시)의 초기 그리스도교 대 건축물과 롬바르디아(이탈리아의 지방)의 몇몇 모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양식에서는 대부분 하나뿐인 중앙회중석은 골조로 덮였고 사분궁륭으로 후진을 마무리하였고 지주 사이의 궁륭형 공간(une travée voûtée) 이나 중앙회중석보다 낮은 높이로 건립된 좌우익랑(faux transept)이 동쪽으로 향한 후진과 세부분의 중앙회중석을 연결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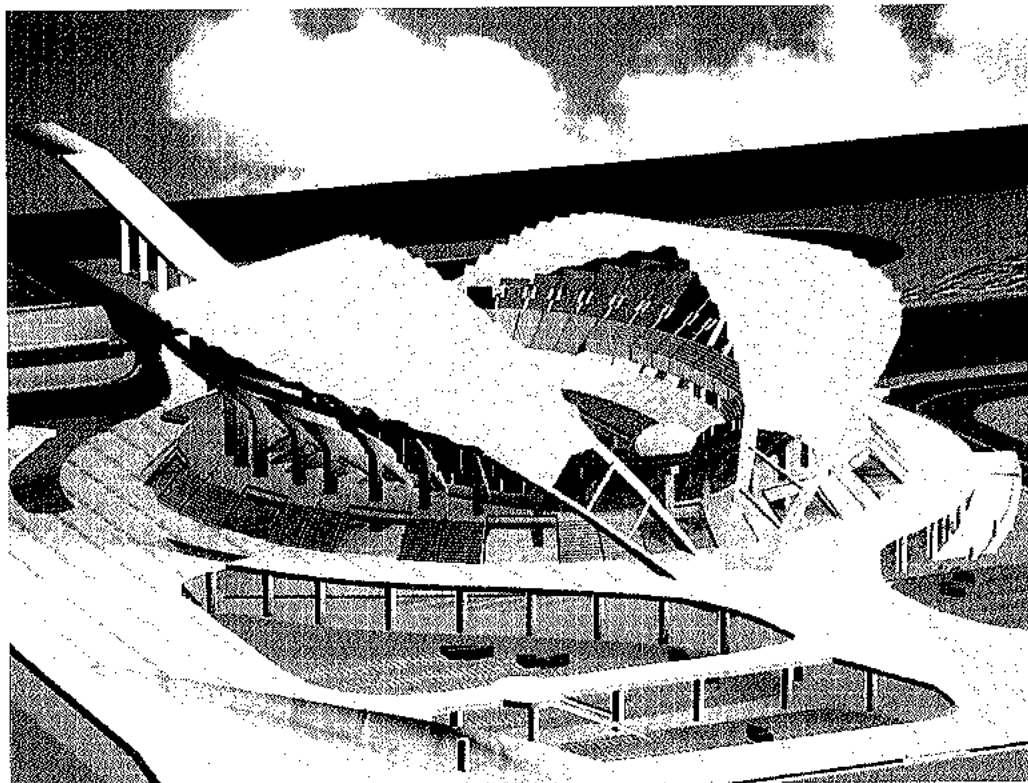
위에서 소개한 1005년에 건립된 까니구의 수도원 역시 상기의 여러가지 특징외에 지하묘소의 경우 완전히 원주와 연결된 교차궁륭으로 건립되었고 성당의 중앙회중석은 연속적 반원형 궁륭(voute en berceau continu)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도원이 건립된 시기인 1000년경에는 성유골의 숭배가 중요하게 취급되어 넓은 공간의 지하묘소가 많이 건립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하분묘와 환형복도를 연결하는 후진 주위 회랑과 방사상층이 작은 제단이 있는 대형 지하 성당이 생기게 되었고 지하묘소 건축에서 발달된 기법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궁륭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까니구 수도원은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기법이 적용된 대표적 수도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문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수도원이라 판단된다.

주)

- (1)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피레네산맥의 동부지방 사람들로 지방색이 매우 강하여 같은 나라안에서도 외지 사람들을 배척하는 정도가 심하다. 지금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옛날에는 스페인 동북부와 합쳐져 카탈로니아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



수도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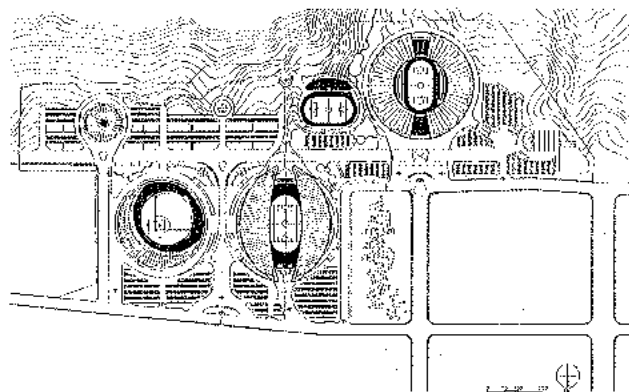


조감도

대구축구전용구장

Taegu Soccer Stadium

대구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에 대비함은 물론 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코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이상건축(강철희)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7월 19일 발표했다. 총 5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엠앤디건축(이각표)안이, 가작으로는 유신건축(김지덕)안과 한국종합건축(표상권)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배치도

당 선 작

이상건축(강철희)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원동 대구 대공원 내

건축면적 / 42,361㎡

연면적 / 99,354㎡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 • Stand : P.C

• Stand 하부 : R.C

• 지붕 : 철골트러스 위 Velaflon 시트

수용인원 / 7만7백28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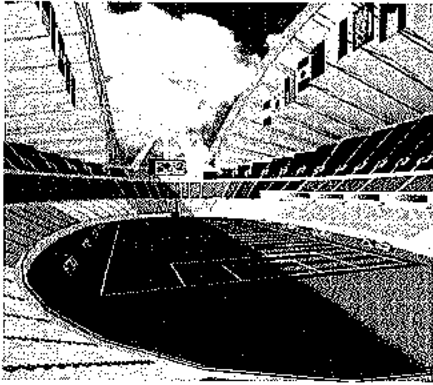
이 경기장은 대구도심의 남동측 10km권내 대구대공원내(계획중)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산간 25번 국도가 부지인근을 통과하고 있으며, 약 6km 권내에 경부고속도로를 동대구 IC가 위치하고 있고, 8km권내에 동대구역이 있어 경부간 주요 간선교통과 연계되어 있다.

현재 계획지에 인접하여 신설 김해 고속도로 및 70m, 5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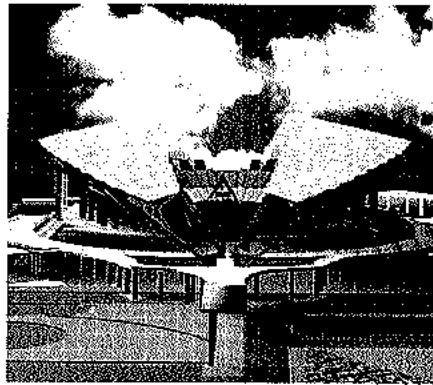
이 계획경기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외수영장과 의 중심역할로서 축구전용구장(국제규격 : FIFA 규정)의 종합 Master Plan 계획으로서 해외에

서도 드문 규모의 경기장으로(수용인원 : 7만명) 대공원내에 대덕산을 비롯한 쌍고지가 대지의 남측에 접하여 위치해 있고 반대 남측은 광활한 평지조건에 따라 경기장들은 배후 쌍고지에서 비롯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형태로 거대 인공구조물에 의해 자연이 압도됨으로 야기되는 시각적 공포감을 해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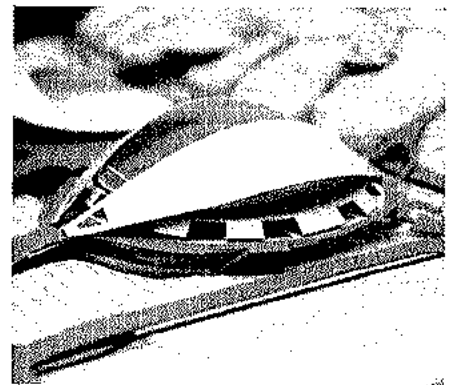
대지내의 공간구조 패턴은 자연선과 인공의 선이 교우하여 조화되도록 하여 인공과 자연의 결합을 표출하였고, 자연에서 비롯된 집중력의 집적으로 긴장감이 발현하여 축선을 형성, 배치의 틀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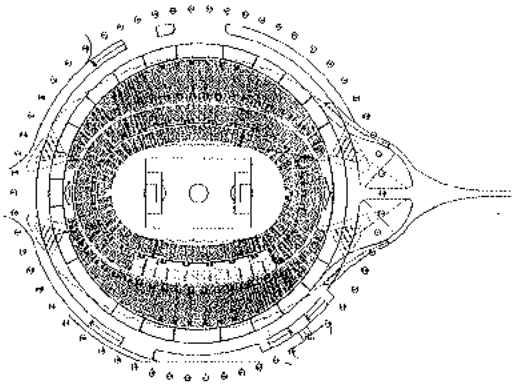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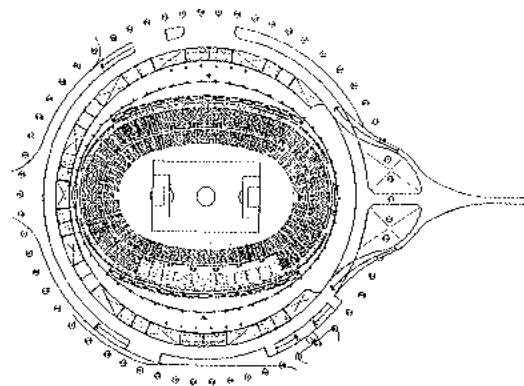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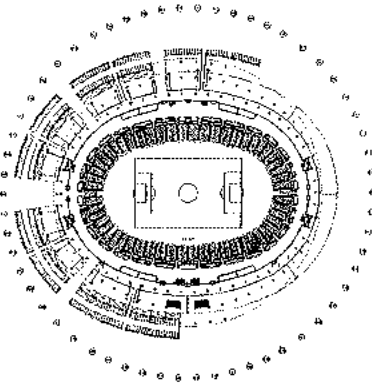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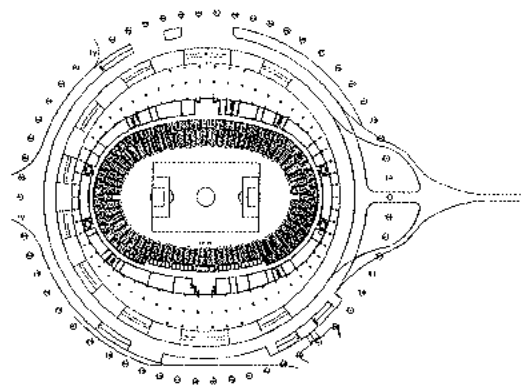
Level +120.3 평면도



Level+87.7 평면도



Level+74.5 평면도



Level+80.5 평면도

이 대지기능의 성격이 일시적 불특정 다수가 만나고 모이고, 참여 회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간이 요구되며 이의 복합 활용을 위한 기능의 입체적 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7만728명의 수용인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람석은 2개의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스탠드는 2개의 단으로 구분하였다.

또 귀빈석과 보도석은 경기장 서측 정면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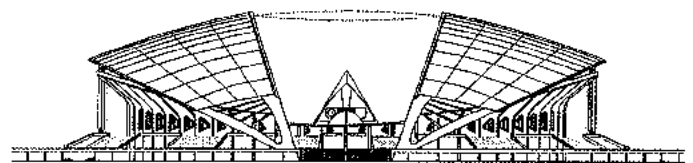
좌석수는 전체 좌석 중 관람객 하부스탠드 36,652석, 상부스탠드 30,872석으로 총 67,524석

이며, 이외에 귀빈석 964석, 보도석 2,008석, 장애인석 232석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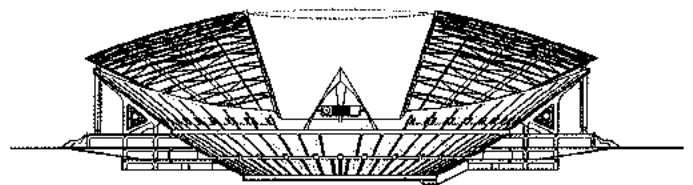
좌석의 구성은 관람효율을 고려하여 동서측면에 집중 배치하였다.

서측 스탠드 중앙에 기자석 1,464석을 확보하고, TV·Radio 중계를 위한 공간은 중앙 부 남측에 3석 1조로 180조 540석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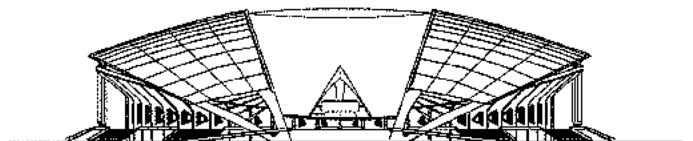
보도진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방송, 보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공간확보, 기능적 동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북측 입면도



형단면도



동측 입면도



부분루시도

수원시립 화장장

Suwon Crematory

수원시에서는 기존 시립화장장의 시설규모가 협소함은 물론 시설이 낙후되어 기존 시설을 도심외곽으로 이전 시설규모를 확장하고 초현대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원시립 화장장 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5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결과 진우건축(대표 김동훈)안을 최우수작으로, 예일건축(대표 김의성)안을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 지난 9월 26일 발표했다. 당선작을 게재한다.

당선 작

진우건축(김동훈)

위치 / 수원시 팔달구 하동 25번지외 26필지

대지면적 / 56,612㎡

건축면적 / 4,868.62㎡

연면적 / 7,056.57㎡

— 화장장 : 1,537㎡

— 장례식장 : 3,124㎡

— 남골당 : 2,393㎡

건폐율 /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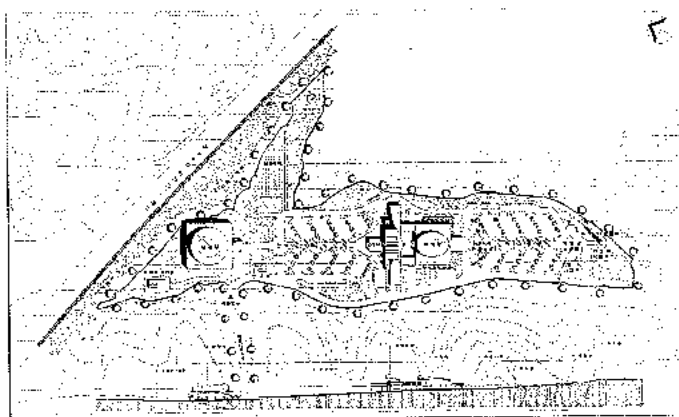
용적률 / 10.26%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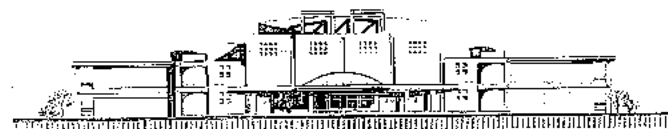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물갈기, 바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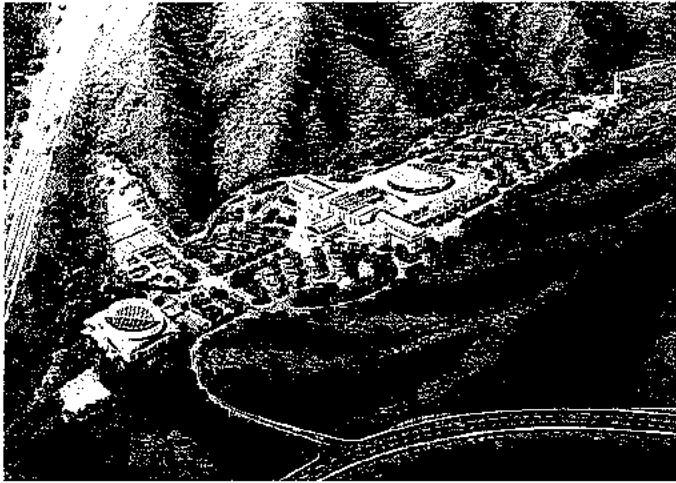
설계 / 김동훈+지영호+권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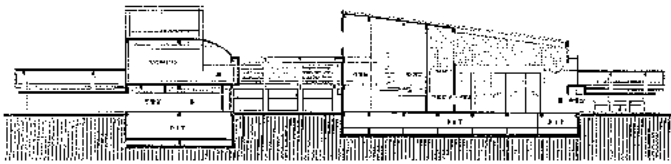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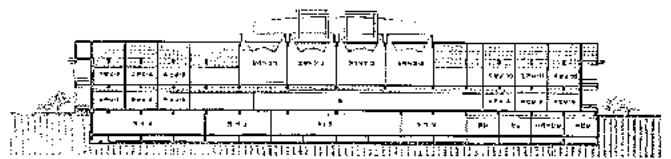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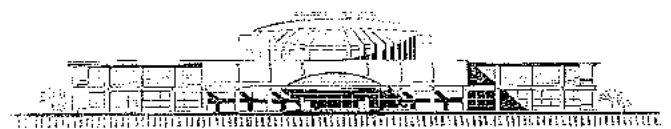
조감도



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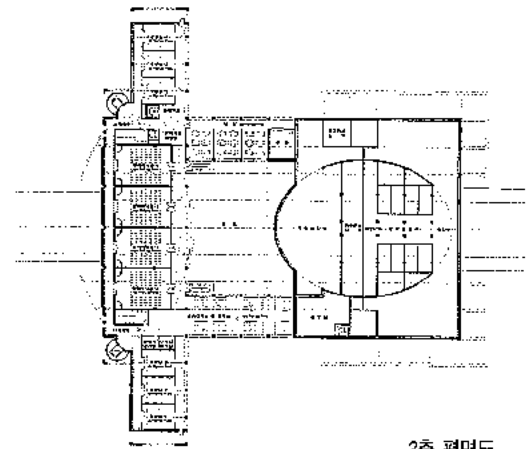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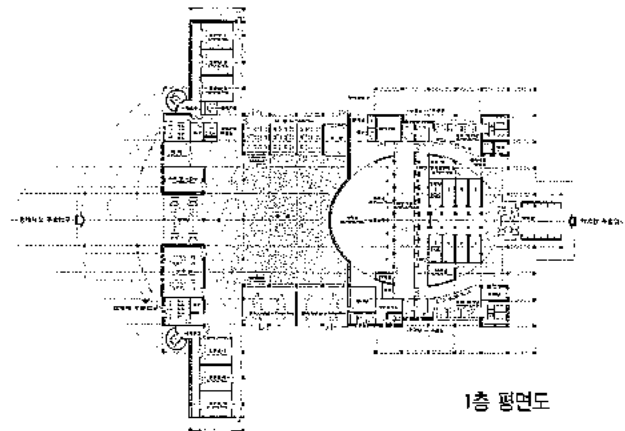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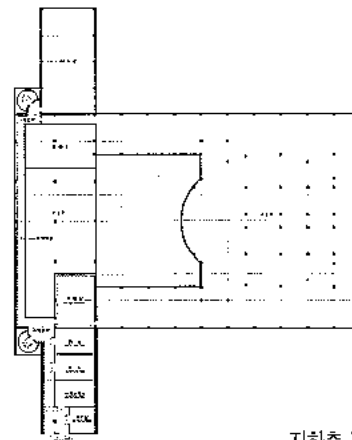
좌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평면계획

- 중정을 중심으로 각 기능의 적절한 분리와 연결을 유도
-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된 편의시설에 의한 장례식장의 엄숙하고 정돈된 분위기와 쾌적한 공간과의 조화를 유도, 다양한 종교의식의 효율성 유도
- 화장장: 기능에 따른 각 실의 원형구성에 의해 생명의 원점인 모태공간의 상징성 유도, 우리나라 북향재배 관습에 따른 화장로 북향 배치

- 장례식장: 각각의 의식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평면 구성, 빈소의 북향재배에 따른 북향 배치, 외부에서 운구되어 사체 보관실에 보관(냉장보관)된 사체는 엄을 한 후 빈소로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체 전용 통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그 공간을 배려 (우리나라는 일본과 장례 관습이 틀림)
- 납골당: 추후 수직 증축을 고려하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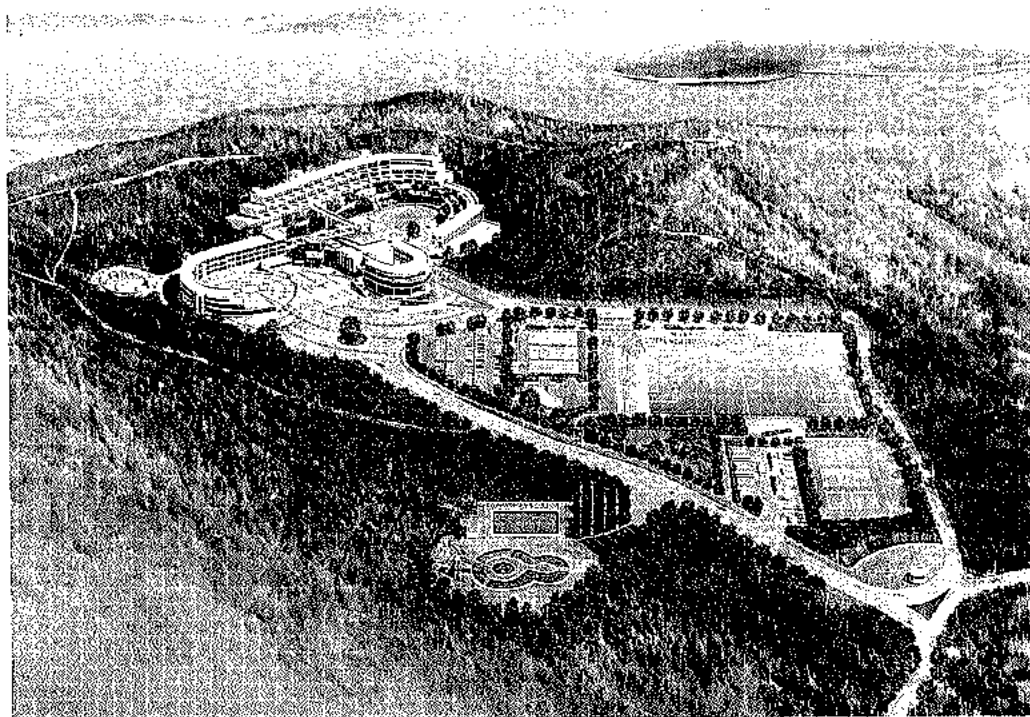
입면계획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 공사비 절감효과 및 자연지형에 순응한 스카이라인 형성, 상승된 공간감과 분절된 Mass를 통한 절제된 조형성 부여, 수평선을 강조하여 평화로운 느낌과 장제장의 엄숙하고 정돈된 분위기 유도, 납골당의 상징적 조형과 광선량을 조절하는 루버창을 설치하여 신비감 부여 및 추후 증축을 고려한 계획, 수원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곡면 옹벽과 성곽의 총안을 의미

- 하는 창문설치 및 방패연을 연상하는 곡면 지붕계획

단면계획

-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Level 차이를 부여, 천창에 의한 자연 채광으로 밝고 쾌적한 실내분위기 고조, 천창에 스며드는 조질에 따른 신비롭고 다양한 실내공간 연출 납골당의 경우 장차 수직 증축 등을 고려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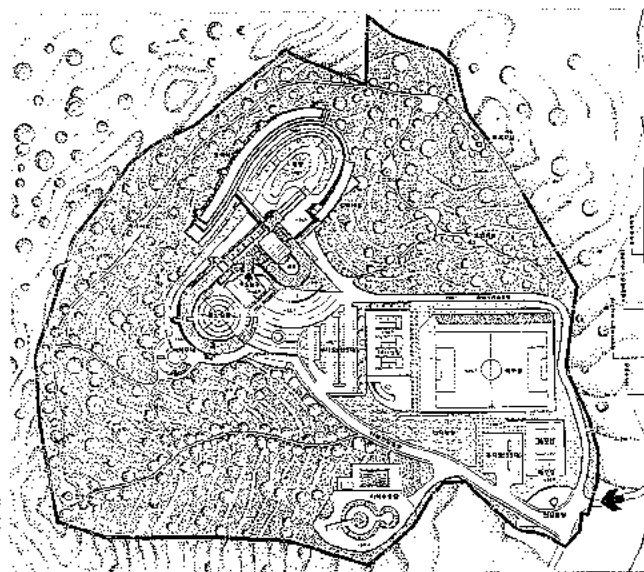


조감도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Kyeonggi Public Servant Training Center

경기도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위한 세미나와 의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심신수련장과 주말 및 휴가철에는 가족과 함께 휴양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연중 운영코자 공무원수련원 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진우건축(대표 김동훈)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9월 20일 발표했다. 총 5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에서 우수작은 태건축(김태영)+극동건축(신훈)안과 대건건축(곽은영)안 2 작품이 선정됐다. 당선작을 게재한다.



배치도

당선작

진우건축(김동훈)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선감리 산120-1
번지외 6필지
지역 · 지구 / 중도시지역 내 시설용지지구
대지면적 / 약 148,500㎡
건축면적 / 3,761.09㎡
연면적 / 7,264.64㎡
건폐율 / 2.53%, 용적률 / 4.18%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일부 철골조
주요외장재료 / 화강석 배수이, 16mm
컬러복층유리, 자연석 쌓기
설계 / 김동훈+지영호+권오정+원병숙

계획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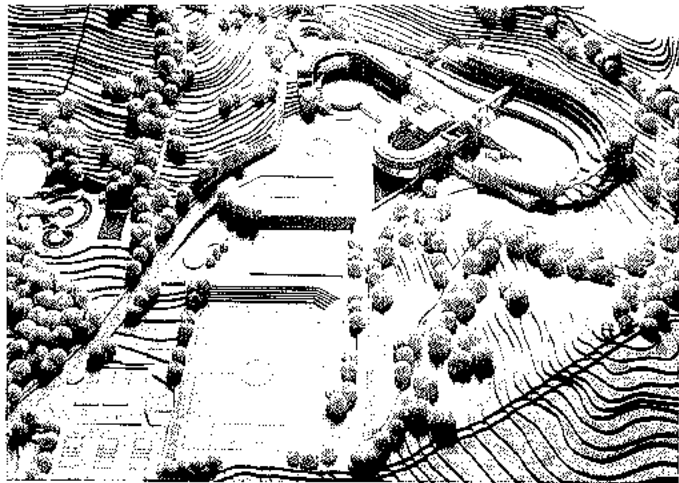
반복되는 업무 및 일상의 도시생활을 떠나 자연을 매개체로 하여 수련과 화합 및 인간적인 친밀감과 자연에 순응 포용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인간심리를 충족시키는 자율적인 성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휴식을 통한 정신의 개방 뿐 아니라 가족들의 참여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의 형성을 통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상을 창출하는데 수련원 계획의 모티브로 하였다.

건축계획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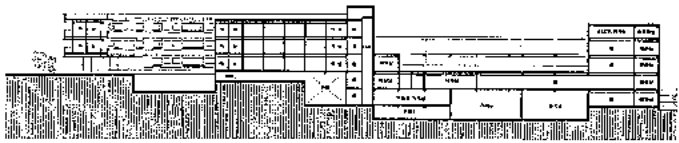
- 대지축 및 자연지형에 동화하는 배치
- 지형에 따른 Mass의 형태, 남향위주 배치
- 장래증축을 고려한 연속적 배치
- 옥외 체육시설의 집중적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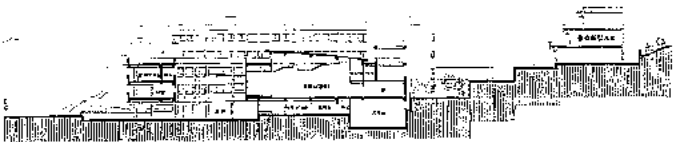
모형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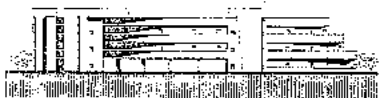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계획

- 각 기능의 독립성과 통합성 유지
- 주 건물기능에 중점을 도입 활력적, 정서적 공간 부여
- 기능에 따른 각 동간의 연결통로(Bridge 형성)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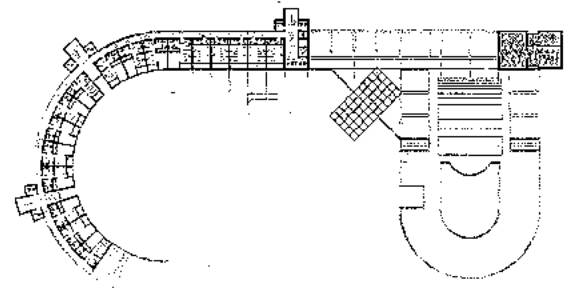
- 수평, 수직분절을 통한 다양한 공간감 연출
- 연수원 진입부분을 따라 드러마

턱한 입면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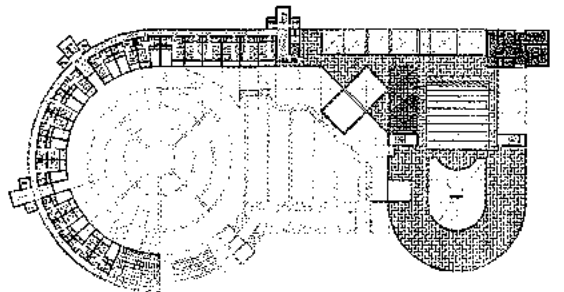
- 장래 증축을 위한 연속적 형태의 부드러운 조형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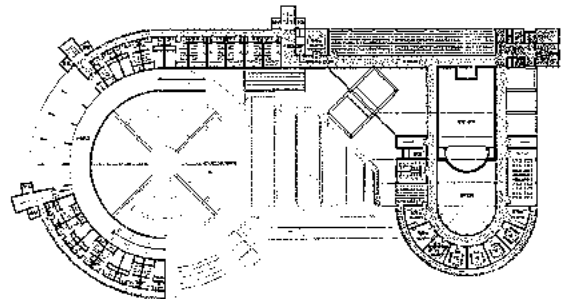
- 조망 욕구에 적합한 건축 Zone 설정
- 접근 욕구에 적합한 상징성 부각
- 자연지형을 이용, 공사비 절약 및 에너지 절감효과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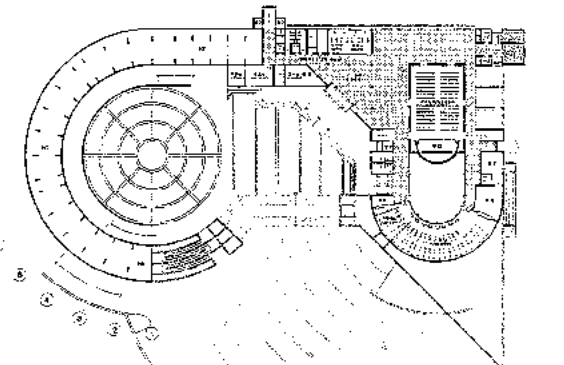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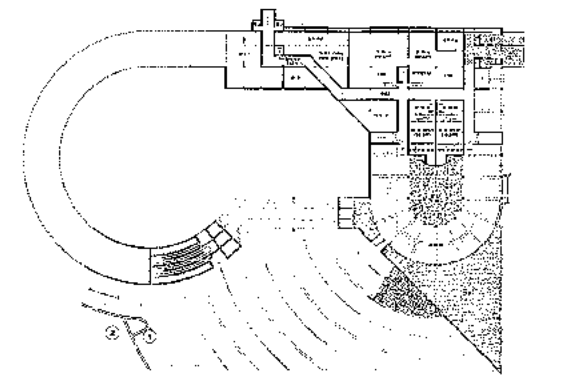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 14,759호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1995. 1. 5. 법률 제 491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사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0조)
나.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설계도서를 신

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함(영 제21조)

다. 단독건축사무소와 종합건축사무소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사무소의 종별에 따른 등록기준·업무범위·책임범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영 제23조)

라. 건축사협회에 건축사신고의 수리,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건축분야의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 제2항)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4조제3항"을 "건축법 제19조 단서"로, "서울특별시, 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또는"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조제3항에 의한"을 "건축법 제19조 단서에서"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또는 인정하거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관련된 군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14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을 "건축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1호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1급 자격증서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서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경력증명서

제5조제1항중 "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2(면허취소 등)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

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광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기초·기둥·보·벽·바닥·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기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건축설계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인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경력증명서
3. 학력증명서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 가. 건축법규
 - 나. 건축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 가. 건축구조
 - 나. 건축시공
 - 다. 건축계획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합격기준)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건축법규 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적으로 한다.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적으로 한다.

제11조중 "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으로 한다.

제12조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13조중 "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중 "시험"을 각각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제15조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건축허가신청전"을 "건축허가신청후 7일 이내에"로,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건축사협회"로 하고, 동항 단서중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방위산업시설인 경우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협회"를 "건축사협회"로, "당해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업무수행) 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이하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라 한다)가 건축사사무소개설

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등록신청) 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한한다)

제2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나 등록갱신신청"으로 "본인에게 등록증을"을 "등록증을"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축사사무소 등록갱신신청)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 및 건축사보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및 제29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청문절차) ① 법 제28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에정일 7일전까
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청문사유 및 일시·장
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
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
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
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
다.

제29조의 3(등록말소사유) 법 제29
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취소
한 때를 말한다.

제30조의 제목 "(건축사 보수교육)"
을 "(건축사 등의 연수교육)"으로 하
고, 동조제1항중 "건축사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31조중 "협회"를 "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협회"를 "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4조 제1항중 "법 제41조 제2항"
을 "법 제41조 제3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건
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3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
사항변경신고의 수리

〈별표3〉

위반행위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41조제1항 제1호	100만원이하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41조제1항 제1호	100만원이하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41조제1항 제2호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4. 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생년월일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3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5.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50만원이하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40만원이하 50만원이하
7.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및 등
록말소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의 부과·징수(법 제11조 제3항의 규
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
과·징수를 제외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보신고의 수리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비시험의 관리

3.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업무수행신
고의 수리

③ 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
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수탁기간의 장의
보고)"를 "(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수교
육"을 "연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종합공사감리관의 방
법란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
으로 하고, 동표 제2호 상주공사감리
관의 대상란중 "건축법 제6조제3항"
을 "건축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

부칙 제2항중 “법 제1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7조·제7조의

2·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2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의2(건축사보)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고등기술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6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제3조(표준설계도서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1.~2.(생략)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⑥(생략)	제3조(표준설계도서등)① 건축법 제19조 단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②건축법 제19조 단서에서 1.~2.(현행과 같음) ③.....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또는 인정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다만, 군사기밀에 관련된 군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제4조(건축사면허신청 등)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14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로서 동조제1호의 규정에	제4조(건축사면허신청 등)①.....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현 행	개 정
와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된등록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생략) 2. 신원증명서 3. 학력증명서 4. (생략)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4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한 경우에 당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사면허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6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건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상변동 신고서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본적 2. ~5. (생략) ② (생략) 제6조의2(면허증 등의 갱신)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갱신하며, 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 및 면허수첩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면허증 및 면허수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내에 갱신을 받지 아니한 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1급자격증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법 제14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건축사면허 등)① ②~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삭제〉 2.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면허취소 등)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 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 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기초·기둥·보·벽·바닥·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현행	개정
<u>허증 및 면허수첩은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u> 제7조(시험방법 등)①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 시험으로 실시하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신설〉 〈신설〉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건축설계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주민등록표초본 2.경력증명서 3.학력증명서
제8조(시험과목 등)①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차시험과목 가.건축과목 나.건축시공 다.건축법규 라.건축사 2.제2차시험과목 가.건축계획 나.건축설계 ②~③생략	제8조(시험과목)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건축법규 나.건축설계 2.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건축구조 나.건축시공 다.건축계획 ②~③(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과목의 면제)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및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법규이외의 과목 및 제2차시험과목중 건축설계 이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시공분야의 기술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시공과목을 면제	제9조(시험방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현 행	개 정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구조과목을 면제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시공 및 건축법규과목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기준)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평균성적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 까지 판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제13조(건축사위원회)시험과 건축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생략)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④(생략) 제1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10조(합격기준)①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건축법규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②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제13조(건축사위원회)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15조(기능)..... 1.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3.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 등)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신청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③(생략) 〈신설〉 제22조(등록신청)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5. 시설보유증명서 6. 사무소안내도 7.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등록기준)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에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③(생략)	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 등) ①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건축사협회 방위산업시설인 경우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건축사협회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의 업무수행)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라 한다)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신청)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한한다) 제23조(등록기준) 〈삭제〉 ②~③(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24조(등록증의 교부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4조(등록증의 교부 등)①.....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나 등록갱신신청을 등록증을 ②(현행과 같음)
제25조(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등)①단독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는 10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②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수 이상의 건축사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책임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규모가 10층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1인이상 2.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인이상 3.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3인이상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건축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에 사용하는 조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조사 및 검사를 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건축사사무소 등록갱신신청)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사의 연대 책임)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책임건축사를 정한 경우에는 책임건축사)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범위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당해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련된 건축관계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이행으로 한다.	<삭제>
제29조(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소속 건축사)이 당해 개설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건설교통부장	제29조(등록사항 등의 변경 신고)①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 및 건축사보를 말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현행	개정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청문절차)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30조(건축사보수교육)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일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보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협회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생략) 제32조(사업)협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회원의 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3조(보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등록말소사유)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취소한 때를 말한다. 제30조(건축사 등의 연수교육) 연수교육 ① 연수교육 ②(현행과 같음)..... ③ 연수교육 연수교육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 1~11(현행과 같음) 〈삭제〉 제33조(보고)건축사협회

현행	개정
제34조(과태료의 부과)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③(생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①법 제41조제3항 ②~③(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2.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3.법 제23조·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및 건축사사무소의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 5.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 6.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 7.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신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삭제〉 1. 신고의수리 2.법 제23조 및 법 제27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및 등록말소 4. 검사 〈삭제〉 5. 부과·징수 부과·징수를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수리 2.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수리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④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 등 명령 또는 처분등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6조(수탁기관의 장의 보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연수교육 연수교육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10. 17, 건설교통부령 제35호

개정이유

건축사법(1995.1.5.법률 제4918호) 및 동법시행령(1995.9.2. 대통령령 제1475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설계도서의 범위에 토질의 조사 및 시험 등 지질조사 관계서류와 사용자재의 내역·명세서 등 건축자제품질관계 서류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3조)

나.외국의 건축사면허취득자도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를 정함(영 제12조의2)

다.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을 정함(영 별표2)

라.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함(영 별표 3)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본문 중 “(영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한다)”를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건축사협회”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4호의2서식의”를 “제4호의2서식에 의한”으로,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공사비계산서·공사비명세서 등 공사비계산 관계서류
3. 토질의 조사 및 시험 등 지질조사 관계서류
4. 사용자재의 내역·명세서 등 건축자제품질 관계서류
5.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의 제목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4조제1항”으로, “면허신청서 및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 응시원서”를 “및 면허신청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각각 “면허증·면허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

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의 경우: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재교부의 경우: 2천원

4. 법 제23조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갱신의 경우: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2천원

7.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2천원

③ 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격)증 사본
2.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 제목“(용역업자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을“(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3조제8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 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

요한 기계실·발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 등 부속건축물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제17조제1항중 “용역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날부터”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1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켓·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 제목중 “보수교육계획”을 “연수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보수교육결과보고서”를 “연수교육결과보고서”로, “보수교육계획서”를 “연수교육계획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보수교육계획서”를 “연수교육계획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수교육결과보고서”를 “연수교육결과보고서”로 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7호의3서식]·[별지 제17호의5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2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의2·제6조·제12조의2·[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제8조관련)

1. 건축사자격시험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두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실기

2. 건축사예비시험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가론 건축설비 건축사	

(별표 2) 경력의 인정기준(제9조관련)

경력산정 등 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중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 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기관·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80퍼센트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퍼센트

※ 비고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별표 3)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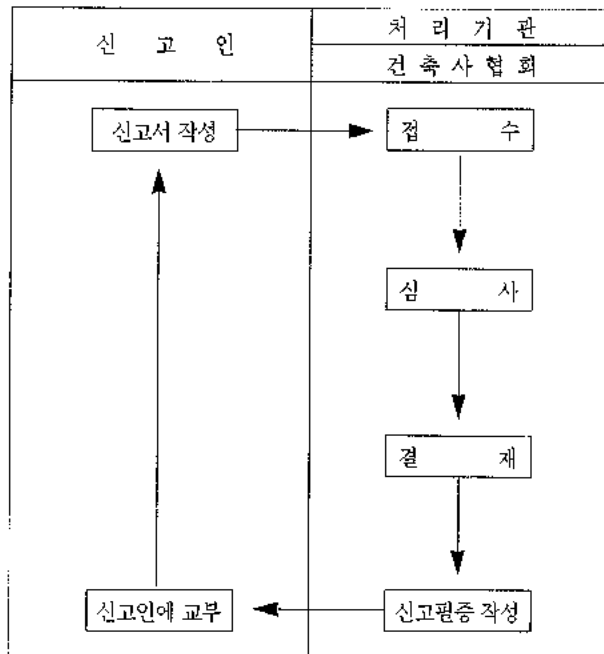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등록취소	업무정지 12월
2.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12월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등록취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등록취소	
5.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을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	등록취소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다만,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나. 건축물을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하거나 공사감리를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다.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등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때		
가. 보수기준의 상한을 50퍼센트이상 초과한 때	업무정지 3월	
나. 보수기준의 상한을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초과한 때	업무정지 2월	
다. 보수기준의 상한을 20퍼센트미만 초과한 때	업무정지 1월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업무정지 5월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업무정지 1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업무정지 5월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10.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0조 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다.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건축물의 붕괴등 구조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월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3) (1) 및 (2)외의 경우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라.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10월	업무정지 5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마.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아.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자.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차.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 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10월	업무정지 5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타.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 (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파.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하.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거.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때		
(1) 위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월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하여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된 때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3)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위반사항	처분 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을 소홀히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1) 설계도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2월	
(2) 설계도서 기타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다.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업무정지 2월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한 때	제1호 내지 제10호의 기준중 유사한 경우에 준한다.	제1호 내지 제10호의 기준중 유사한 경우에 준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판례

건축사행정처분취소에 관한 건

전남 여수 소재 대전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주 소장은 전남 도지사가 내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에 대해 광주고등 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95. 9. 7 광주고 등법원 제1특별부(재판장 : 맹천호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이라 고만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의 면허를 받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9.2.11 여 수시 문수동 2의 18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치고 건축사의 업무를 하여오던 중 1994. 6.27부터 같은 해 9.26 까지 3개월간 건축사사무소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정지기간중에 소외 주식회사 대성환경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탁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등 모두 8건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탁하여 그 업을 영위하였다는 이 유로 1995. 2. 6 법 제5조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위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 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중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8건의 공사감리업무는 위 업무정지기간전에 수탁 하여 이를 계속하여 수행(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라 할지 라도 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한 것이지 위 와 같이 업무정지기간중에 새로 수탁하여 이를 수행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3, 4, 5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위 업무정지 명령이후 다시 1994.11.1부터 같은 해 12.14까지 1개월 15일간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10.29 피고에게 그 처분전에 계 약을 체결한 수탁업무현황보고를 하면서 수탁업무현황표, 설계 및 감리계약서사본, 설계 및 감리수급대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감리(일반감리)수탁업무현황표, 감리계약서사본 및 감리수 급대장에 원고가 위 업무정지기간중에 위와 같이 8건의 공사감 리업무를 수탁하여 감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업무정지기간중에 위 8건의 공사감 리업무를 새로 수탁한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4호중, 강제8호중의 1, 2, 강제9, 10호중의 각 1 내지 8, 을제6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기증현, 김동혁, 노현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무정지기간 전에 위 8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탁하면서 그 공 사감리업무도 함께 수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수탁당시 건 축주들과의 사이에서 설계계약서만을 작성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1994. 11. 1. 부터 1개월 15일간 업무정지명령을 받자 그 명령전에 계약을 체결한 수탁업무현황보고를 하려고 원고의 피 용인인 소외 노현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위 노현주는 이를 작성하면서 당시 설계가 끝나 건축허가를 받 은 위 8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 건축허가일에 감리계약을 한 것처럼 감리(일반감리) 수탁업무현황표, 감리계약서사본 및 감 리수급대장을 작성한 사실(위 8건의 건축물 이외의 다른 건축 물도 대부분 그 건축허가일에 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작성 하였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 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업무정지 기간중에 새로 위 8건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탁하고 감리를 수행하여 그 업을 영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업무정지기간중에 새로운 업무를 수탁하 는 등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판결한다.

1995년도 9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 9백8십5만3천4백74㎡보다 52.6%(5백1십8만5천19㎡) 감소한 4백6십6만8천4백55㎡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9월 누계 1억6백9십7만2천9백73㎡보다 14.7%(1천

5백6십9만2천5백91㎡) 감소한 9천1백2십8만3백82㎡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8월분 1천5십3만2천5백40㎡보다 55.7%(5백8십6만4천85㎡) 감소한 4백6십6만8천4백55㎡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광 주	138,661	193,418	54,757	39.5
	제 주	19,407	38,085	18,678	96.2
감소지역	서 울	2,048,401	934,040	(1,114,361)	-54.4
	부 산	696,248	586,108	(110,140)	-15.8
	대 구	379,051	197,667	(181,384)	-47.9
	인 천	352,316	347,342	(4,974)	-1.4
	대 전	480,092	65,838	(414,254)	-86.3
	경 기	2,389,909	796,735	(1,593,174)	-66.7
	강 원	391,788	109,139	(282,649)	-72.1
	충 북	268,891	146,416	(122,475)	-45.5
	충 남	430,948	177,086	(253,862)	-58.9
	전 북	534,105	207,823	(326,282)	-61.1
	전 남	216,289	112,823	(103,466)	-47.8
	경 북	629,753	324,426	(305,327)	-48.5
	경 남	877,615	431,509	(446,106)	-50.8
합 계		9,853,474	4,668,455	(5,185,019)	-52.6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8월분	9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982,237	578,728	(403,509)	-41.1
다 세 대 주 택		321,434	163,973	(157,461)	-49.0
연 립 주 택		176,269	70,986	(105,283)	-59.7
아 파 트		4,265,380	1,524,258	(2,741,122)	-64.3
근린생활시설		1,591,120	874,630	(716,490)	-45.0
종 교 시 설		87,189	35,695	(51,494)	-59.1
의 료 시 설		74,346	18,493	(55,853)	-75.1
교육연구시설		281,352	91,195	(190,157)	-67.6
업 무 시 설		269,564	101,680	(167,884)	-62.3
숙 박 시 설		188,419	95,146	(93,273)	-49.5
공 장		1,309,755	734,675	(575,080)	-43.9
기 타		985,475	378,996	(606,479)	-61.5
계		10,532,540	4,668,455	(5,864,085)	-55.7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 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3,068	3,133	675,416	2,550	2,595	578,728	(518)	(538)	(96,688)	-14.3	
다 세 대 주 택	632	674	306,512	411	434	163,973	(221)	(240)	(142,539)	-46.5	
연 립 주 택	107	119	217,336	45	45	70,986	(62)	(74)	(146,350)	-67.3	
아 파 트	211	537	4,263,198	93	242	1,524,258	(118)	(295)	(2,738,940)	-64.2	
근린생활지역	2,820	2,921	1,158,630	2,309	2,400	874,630	(511)	(521)	(284,000)	-24.5	
종 교 시 설	81	100	65,299	51	54	35,695	(30)	(46)	(29,604)	-45.3	
의 료 시 설	25	27	50,381	17	17	18,493	(8)	(10)	(31,888)	-63.3	
교육연구시설	158	176	380,949	73	83	91,195	(85)	(93)	(289,754)	-76.1	
업 무 시 설	120	137	342,441	68	75	101,680	(52)	(62)	(240,761)	-70.3	
숙 박 시 설	127	146	124,923	83	94	95,146	(44)	(52)	(29,777)	-23.8	
공 장	736	1,072	1,080,100	509	674	734,675	(227)	(398)	(345,425)	-32.0	
기 타	1,203	1,480	1,188,289	641	756	378,996	(562)	(724)	(809,293)	-68.1	
합 계	9,288	10,522	9,853,474	6,850	7,469	4,668,455	(2,438)	(3,053)	(5,185,019)	-52.6	0=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9월분)

구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5,642	36,324	8,433,355	33,726	34,319	8,632,615	(1,916)	(2,005)	199,260	2.4	
다 세 대 주 택	6,332	6,823	3,194,760	6,460	7,338	3,144,157	128	515	(50,603)	-1.6	
연 립 주 택	875	1,098	1,651,772	956	1,009	1,391,357	81	(89)	(260,415)	-15.8	
아 파 트	1,677	6,715	39,921,190	1,411	4,839	32,515,001	(266)	(1,876)	(7,406,189)	-18.6	
근린생활시설	34,675	35,701	15,730,896	30,276	31,242	13,982,856	(4,399)	(4,459)	(1,748,040)	-11.1	
종 교 시 설	1,125	1,305	991,358	962	1,100	731,878	(163)	(205)	(259,480)	-26.2	
의 료 시 설	188	217	509,834	217	229	725,754	29	12	215,920	42.4	
교육연구시설	1,198	1,395	3,267,017	1,035	1,196	2,627,460	(163)	(199)	(639,557)	-19.6	
업 무 시 설	1,012	1,090	3,274,631	978	1,022	4,614,510	(34)	(68)	1,339,879	40.9	
숙 박 시 설	1,598	1,689	2,043,141	1,111	1,209	1,570,577	(487)	(480)	(472,564)	-23.1	
공 장	7,661	11,382	11,852,024	7,280	10,112	10,982,446	(381)	(1,270)	(869,578)	-7.3	
기 타	11,258	14,210	16,102,995	8,858	10,732	10,361,771	(2,400)	(3,478)	(5,741,224)	-35.7	
합 계	103,241	117,949	106,972,973	93,270	104,347	91,280,382	(9,971)	(13,602)	(15,692,591)	-14.7	0=미아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1,045	1,070	2,048,401	674	678	934,040	(371)	(392)	(1,114,361)	-54.4	
부 산	835	917	696,248	744	806	586,108	(91)	(111)	(110,140)	-15.8	
대 구	1,162	1,201	379,051	927	934	197,667	(235)	(267)	(181,384)	-47.9	
인 천	372	377	352,316	245	289	347,342	(127)	(88)	(4,974)	-1.4	
광 주	267	271	138,661	198	247	193,418	(69)	(24)	54,757	38.5	
대 전	250	304	480,092	187	190	65,838	(63)	(114)	(414,254)	-86.3	
경 기	1,725	2,054	2,389,909	1,059	1,157	796,735	(666)	(897)	(1,593,174)	-66.7	
강 원	489	579	391,788	373	396	109,139	(116)	(183)	(282,649)	-72.1	
충 북	491	571	268,891	352	366	146,416	(139)	(205)	(122,475)	-45.5	
충 남	398	418	430,948	299	304	177,086	(99)	(114)	(253,862)	-58.9	
전 북	331	425	534,105	197	239	207,823	(134)	(186)	(326,282)	-61.1	
전 남	353	421	216,289	254	310	112,823	(99)	(111)	(103,466)	-47.8	
경 북	606	800	629,753	438	553	324,426	(168)	(247)	(305,327)	-48.5	
경 남	868	1,017	877,615	787	880	431,509	(81)	(137)	(446,106)	-50.8	
제 주	96	97	19,407	116	120	38,085	20	23	18,678	96.2	
합 계	9,288	10,522	9,853,474	6,850	7,469	4,668,455	(2,438)	(3,053)	(5,185,019)	-52.6	0=미아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9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3,767	14,226	15,573,612	13,799	13,867	15,499,064	32	(359)	(74,548)	-0.5	
부 산	8,266	9,361	7,151,269	7,864	9,192	5,927,921	(402)	(169)	(1,223,348)	-17.1	
대 구	12,101	12,827	5,825,873	10,797	11,194	6,071,562	(1,304)	(1,633)	245,689	4.2	
인 천	4,135	4,281	5,297,330	3,427	3,635	4,611,583	(708)	(646)	(685,747)	-12.9	
광 주	3,263	3,888	4,233,279	2,442	3,211	3,439,893	(821)	(677)	(793,386)	-18.7	
대 전	3,491	3,709	2,827,418	2,289	2,463	2,489,923	(1,202)	(1,246)	(337,495)	-11.9	
경 기	17,358	21,110	24,861,887	17,289	19,465	19,392,339	(69)	(1,645)	(5,469,548)	-22.0	
강 원	4,820	5,541	3,156,457	5,021	5,892	3,807,438	201	351	650,981	20.6	
충 북	5,373	6,371	3,801,980	4,499	5,085	3,461,280	(874)	(1,286)	(340,700)	-9.0	
충 남	4,497	4,778	9,660,858	3,818	4,102	5,628,145	(679)	(676)	(4,032,713)	-41.7	
전 북	3,215	3,855	4,301,341	2,415	2,741	3,556,239	(800)	(1,114)	(745,102)	-17.3	
전 남	4,375	5,304	2,861,914	3,439	4,099	2,739,112	(936)	(1,205)	(122,802)	-4.3	
경 북	6,662	8,896	7,854,134	5,627	7,382	5,745,629	(1,035)	(1,514)	(2,108,505)	-26.8	
경 남	9,497	11,234	8,566,335	8,728	10,104	8,116,100	(769)	(1,130)	(450,235)	-5.3	
제 주	2,421	2,568	999,286	1,816	1,915	794,154	(605)	(653)	(205,132)	-20.5	
합 계	103,241	117,949	106,972,973	93,270	104,347	91,280,382	(9,971)	(13,602)	(15,692,591)	-14.7	0=미아스

창립 30주년기념식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3일(월) 오후 6시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창립30주년기념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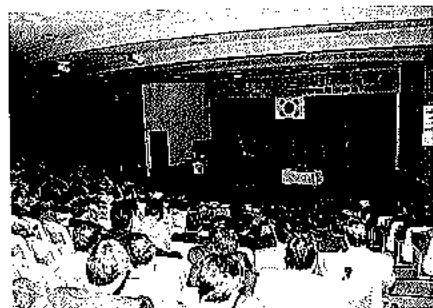
지난 1965년 10월 23일 건축사법에 의해 협회가 설립된 지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각계인사와 대의원, 협회 임·직원 등 6백여명이 참석하였다. 내빈 및 연혁소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김규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방이후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황량한 이땅에 오늘과 같은 여유있는 국민생활 공간을 창조, 제공해온 것을 우리 건축인의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건축인들이 앞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건축,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건축문화 창달에 직업적 소명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은 홍 철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에서 『협회가 창립된 이래 3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 경제 발전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수고해 온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정부는 건축설계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합리적인 건축제도·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조진형 의원은 『창립된 지 30년만에 5천여 회원을 포용하는 건축계의 대표적 직능단체로 발전한 건축사협회의 위상과 성장에 치하드린다』며, 『이번 30주년 행사를 통하여 건축사들의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고, 권익이 크게 신장됨은 물론 건축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또한 이 자리에는 협회3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 송두호 국회의원, 류근장 한국주택협회장, 한규봉 한국건설감리협회장, 윤승중 한국건축가협회장, 김기삼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각계 초청인사를 비롯하여 사와다 마츠프사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장, 곰보 미야구마르 몽골건축사협회장 등 해외 축하사절단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고 기념식이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협회30년을 기념하는 기념품이 각각 전달되었다.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 협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4일(화) 오전 10시부터 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 의원 491명중 37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건축사 현장 낭독순으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규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고해 볼때, 우리 협회는 격변하는 현대사의 가파른 격랑속에서 실로 많은 변화와 괄목한 성장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전회원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 우리 건축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회로 성장 발전하였다』고 회상하고 『아직도 우리 앞에는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난제들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되며, 특히 대형건설회사들의 건축설계업 겸업 주장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후세에 물려줄 건축문화 창출은 반드시 우리 건축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30성상의 나이를 맞은 우리 협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역사적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우리 건축계에 내재된 모순과 가치의 혼란을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구심적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은 손화래 건축기획관이 대독한 치사에서 『협회가 탄생한지 30년을 맞이하여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 건축문화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계는 바야흐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시장개방에 따라 무역전쟁, 정보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이제 양적 성장보다 질적성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건축사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제도의 개선은 물론 일선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로회원 및 모범·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수여와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95년도 임시총회(제1회, 제2회)회의록 승인에 이어 부의안전상정

에 들어가 조정상(서울)대의원의 건축계 당면 과제에 대한 대책결의 및 대책위원회 구성 승인의 안건을 제1호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1호의 안에서 7호의 안까지 일괄 상정해서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의안: 건축계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결의 및 대책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정부의 감리 왜곡정책 및 건설업자의 분별없는 종합건설업 면허제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우리 건축사들은 절대로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대기업위주의 외형과 규모의 논리에 의한 건축정책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의 건축계 당면문제에 대한 인식을 결의하고 서울시 지역건축사회 회장 5인, 시·도회장 15인, 본협회 이사 2인, 본협회 감사 1인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예비비 사용을 승인함.
- 제2호 의안: 96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96년도 특별회계 『입회비 관리회계, 건축사 시험회계, 제건축진단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4호 의안: 전국 공통운영회비 산출기준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윤리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윤리규약 제7조, 제8조, 제10조는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건축사의 자유로운 수주활동 및 건축설계·감리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의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윤리규약 제7조는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와 위촉자간에 계약이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 본인에게 그 업무를 위촉하도록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하고 제8조 및 제9조는 삭제하기로 하는 원안을 승인함.
- 제6호 의안: 건축사 연금정산 승인의 건
-95년 10월 31일 연금기금 최종만기금 가결산 추정치 금액인 7백60억원을 제2회 임시총회('95.6.22)에서 결정된 개인별 연금정산배당금 산정방식에 따라 개인별 연금정산 배당금을 95년 11월 1일부터 지급기로 하고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정산배당금 지급 지정은행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송금요청 통장에 무통장

입금처리로 하고 둘째, 연금대상자(회원 및 폐업후 연금 미수령자)중 법원에 의해 건축사연금이 채권 가압류된 회원은 처분청 및 채권자의 채무해소 확인후 정산처리(단, 채권 압류효력은 '95. 10. 31 18:00까지 접수된 시효분에 한함) 하며, 셋째 정산결의 후 정산 배당금이 우선 지급된 사망자는 잔여액만 추가 지급하는 건축사연금정산(안)을 승인함.

- 제7호 의안: 임원개선의 건

-우리 협회 이종만, 김택성, 이종관, 김규태, 이준현 이사 및 오인준 감사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13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이사(2년 임기)-7인, 이사(1년 임기)-4인(당연직 이사포함), 감사(2년 임기)-1인의 임원개선에 들어갔으나 의결 정족수인 2백57명에 미달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11월 3일 오후 2시에 속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속개회의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출을 전임회장 및 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됨에 따라 감사에는 송양석(광주)대의원을 선출하고 신임이사는 전국대의원들에게 서면통보하기로 하고 폐회되었으며, 선출된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신임 임원



權泰政 理事(2년임기)
1940년생
본 협회 이사 역임
대한건축사사무소 대표



安吉元 理事(2년임기)
1944년생
한국건설감리협회 이사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咸在喆 理事(1년임기)
1945년생
경기도 안양지역건축사회 회장 역임
건축사사무소 은성 대표



金光郁 理事(2년임기)
1943년생
본 협회 이사 역임
(주)동양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尹錫祐 理事(2년임기)
1944년생
본 협회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역임
(주)종합건축 대표



李鍾寬 理事(유임, 1년임기)
1943년생
본 협회 에너지분과위원장 역임
본 협회 이사
건축사사무소 한국 대표



金武彦 理事(2년임기)
1943년생
본 협회 이사 역임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대표



李寬永 理事(2년임기)
1944년생
본 협회 전통건축분과위원 역임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李義求 理事(당연직)
1941년생
본 협회 이사 역임
서울건축사회 회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대표



柳根冽 理事(1년임기)
1936년생
충남건축사회 회장 역임
본 협회 감사 역임
중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李起範 理事(2년임기)
1936년생
서울건축사회 감리분과위원 역임
(주)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宋良浙 監事((2년임기)
1938년생
광주건축사회 회장 역임
본 협회 이사 역임
한미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임·유임·당연직 이사, 감사 順)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의 주요당면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회장 주재로 지난 10월 11일(제17회)과 10월 19일(제18회)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7회

- 건축사보 관리 규정(안) 승인의 건
 - "건축사보 관리규칙"으로 수정하고, 또한 건축사보 월중 정기보고서 양식을 일부 수정하되,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정하여 승인함.
-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좀 더 보완하여 명년총회에 제출토록 하고 유보함.
- 건축사무 및 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안) 승인의 건
 - 건축3단체 부회장 및 국제위원장 간담회에서 결의된 건축사무 및 교육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안)·발주처를 대한건축학회 및 한국건축가협회와 좀 더 협의하기로 하고 유보함.
-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연장 추인의 건
 - 본 협회 김유후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5년 6월부터 95년 12월까지 위촉기간 연장을 원안대로 추진함.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도서관쇄비로 2백8십만4천6백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중국과의 교류에 따라 건축사시험 관찰원자격 방문비로 7백만원과 중국인 내한시 비용 5백만원 등 1천2백만원을 국제사업비로 예비비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결의함.
- 회원 등록 취소 전의 승인의 건
 - 대구건축사회에서 대구건축사회 박상문 회원(대림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회원등록취소 건의내용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후 가부를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취소를 건의하기로 결의함.
- 표준계약서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사감리 업무 지침 및 요령(안) 승인의 건
 - 설계·감리위원장, 법제위원장, 김규태 이사에게 위임함.
- 설계도서의 신고사무취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서신고서류 및 제출된 도서의 보관을

보관장소의 여건미비와 향후 보관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면도·평면도·배치도·주단면도를 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고도록 하여 신고된 서류에 "도서신고필" 인장을 날인, 회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설계도서신고" 및 "설계도서신고대장"을 기록·유지보관하도록 하는 「설계도서의 신고사무취급규정 개정(안)」 중 제3조 제1항의 내용중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로 정리하고, 제4조 제4항의 "운영회비"를 "회비"로 수정하여 승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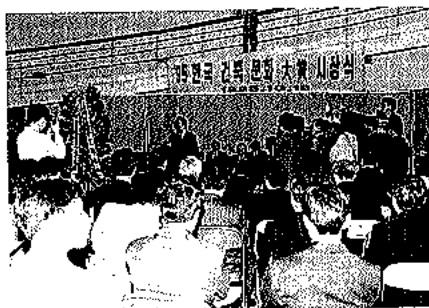
●제18회

-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

우리 건축계 현안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오찬 간담회가 지난 10월 25일 정오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호라이즌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건설교통부 김건호 건설지원실장, 손학래 건축기획관, 이재욱 건축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협회에서는 김규태 회장과 박경환 부회장, 이종만 법제위원장, 임인혁 설계위원장, 각 시·도 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우리 협회는 건설업종합면허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감리와 건축사법의 별착판결, 건설자재(레미콘 품질저하 방지방안) 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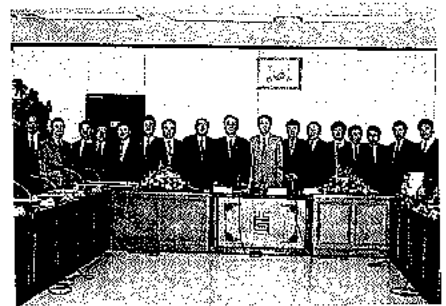
'9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95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이 지난 10월 16일(월)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과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장 등 건축계 관련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국내 많은 보도진들의 열띤 취재속에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준공건축물 부문의 영예의 대상은 간접건축이 출품한 포스코센터가 수상하였으며, 이어 본상 4점, 우수상 3점, 입선 17점에 대한 시상이었다. 또한 신인부문 16점, 학생부문 179점이 출품된 계획건축물 부문에서는 Live Showwindow를 출품한 류상보, 한상범(ECTO 건축), 동사무소를 출품한 한선정(서울대 건축학과)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어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47개 작품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특히 올해의 공로상은 금년으로 창립50주년을 맞이한 건축학회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수상작 70여작품에 대한 전시회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려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관계자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인,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열려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성료되었다.

한·몽 상호협력을 위한 활동계획서 조인식 체결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26일 협회중회의실에서 몽골건축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활동계획서('95~'96) 조인식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한·몽 상호협력을 위한 활동계획서는 지난 7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몽건축사협회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에 따른 구체적 실현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서에서 양 협회는 양국의 설계를 비롯 전문단체와의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지원하며, 전문단체간의 협력형태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양 협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양 협회에서 보내온 전시품을 상호 전시회로 개최하며 양국의 건축학과 교수 및 학생의 교류 및 건축과 도시분야의 문제점을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에서 주최하는 건축설계경기에 상

호 건축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우리 협회는 몽고 건축사협회에 건축설계에 실무경험이 많은 건축사 및 건축실무에 관한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건설회사의 설계허용방침, 본 협회를 비롯 건축계 “강력반발”

건설교통부가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들에게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건축계 전반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건설제도 개선시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현재 설계·시공·감리 등으로 나뉘어진 건설산업을 종합화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앞으로는 건설회사도 업체책임아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개선안 확정을 위해 지난 10월 23일과 25일, 26일 등 3차례에 걸쳐 제도개선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 협회는 강력한 반대 의견 개진을 통해 건교부의 개선안 내용에 불합리성과 폐해를 지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정기총회 석상에서도 전국 대의원들은 “한국 건축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며 “시공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가 설계까지 겸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협회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렸던 '건설·환경 행정쇄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개진을 통해 협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경기건축사회, 회원 체육대회 개최

경기건축사회(회장 최재남)는 지난 10월 13일(금) 수원 농민회관에서 경기도 회원 2백66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95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체육대회는 그간 건축사의 바쁜 일상 업무속에서 잠시 피로를 잊고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 상호간 친선도모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충북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개설

충북건축사회(회장 최호진)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터 충북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95년도 제 1기 시민건축대학을 개설하여 강좌를 실시했다. 일반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내주 1백 50여명이 참가하여 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건축을 하고자 하거나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건축과 관련된 기본상식과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전전한 건축문화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전남건축사회, '95건축사 보수교육 실시



전남건축사회(회장 노상익)는 지난 10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광역시 관내 추진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남도내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축사보 1백2명을 대상으로 '95건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95년도 사업계획 및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 건설화대책 추진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건축사 보수교육에는 건축사업무 추진요령,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감리요령, 일본 집합주택의 동향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5년이상 장기근속한 모범 건축사보 4명에 대해 표창패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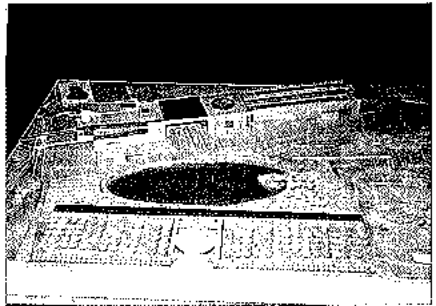
대한건축학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10월 20일 창립50주년을 맞은 대한건축학회(회장 이명호)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2천년대의 건축비전-범세계적 환경건축

(Green and Global Architecture)의 추구”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창립 기념식을 5백여명의 회원과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학회는 또 학회창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추계학술 발표대회와 건축도서, 문헌, 사진 전시회 등도 개최했다. 영·미를 비롯한 세계 8개국에서 12편의 논문과 국내 8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지상주의와 근대주의 건축을 비판하고 자연에 대한 비친화적 양상을 보였던 개발주의와 개인주의를 비판했다. 주제 발표자들은 대부분 이런 비판에 대한 21세기의 새로운 건축적 대안으로서 ‘건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했으며, ‘환경건축’을 통한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건축인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심사결과 발표



국내 건축사상 처음으로 국제건축가연맹(UIA) 공인아래 국제설계경기 방식으로 실시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설계경기의 최종심사 결과가 지난 10월 20일(금)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발표되었다. 문화체육부가 지난해 12월 전세계 건축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국제설계경기에는 세계 46개국 3백41점이 응모하여 1단계 아이디어 공모, 2단계 기본계획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0점중 5점이 최종 심사에 올라 그중 정립건축(김창일)안을 당선작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김창일 회원의 설계작품은 장대한 성벽을 연상시키는 긴 선형구조로 용산 가축공원과 남산 등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한 공간배치, 다양한 관람동선 제공 등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잘 보존하여 전시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선작에게는 신축 박물관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이 주어지고 상금 10만달러가 수여되었다. 이번 설계경기의 2등은 크리스티안 드 포르잠박(프랑스)과 김병년, 신재순(한국)의 공동작품, 3등은 김현철, 김용미, 김상식, 김석

를, 김홍식(한국)의 공동작품이 각각 선정됐으며, 이번 설계경기 심사위원장으로는 독일의 세계적 건축가 빌헬름 쿨커, 부위원장은 이광노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으로는 가에·아우렌티(이탈리아), 란달 보소벡(미국), 앙리 시리아니(프랑스) 등 세계적인 건축가와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희준 박물관 건립사무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새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96년 7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97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97년 하반기에 착공, 2천 년초에 준공 예정이다.

서울건축학교, 1995 워크숍 4 수강생 모집

서울건축학교의 정규과정 시행에 앞서 일련의 실험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건축학교 워크숍 4가 오는 12월 1일(금)부터 12월 15일(금)까지 양재동 서울건축학교에서 실시된다. '정보사회의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하에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김인철(인제건축), 김병운(메타건축)건축사가 코디네이터로 참가하며 모집인원은 25명이다. 또한 초청건축가로는 톰메인(미국), 토요이토(일본)씨가 참가할 예정인데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재학생 및 졸업자는 자기소개서, 포트 폴리오,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건축학교(T. 02-529-3044)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자재정보 CD 발표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지난 10월 24일(화) 오후 2시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정보센터에서 국내최초로 건설자재정보를 CD로 제작하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건설자재정보 CD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5천3백여 품목에 대한 용도와 제품개요, 품질인정 등 자재일반사항과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와 제품사진, 시공도면, 사용예 등이 수록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시공시 최적의 자재를 최단시간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건설자재정보집에 비해 20배 이상의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보관 및 활용이 용이하다. 한편 건설기술연구원은 총 5천3백58개 품목이 담긴 이 CD를 '95건설기자재 정보요람' 책자와 함께 판매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정보센터(T. 02-5708-823)로 문의하면 된다.

'95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발간

농어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20여종의 다양한 평면유형과 자재를 비롯한 설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가 발간됐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발간한 '95년도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어민이 손쉽게 경제적으로 설계도서를 구입하여 건축할 수 있고 시공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미래변화와 농어촌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농어촌 문화주택 모델로 주택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부품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이를 위해 93년 농촌마을 및 주택 현상설계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난해 전국을 순회하며 의견수렴을 걸쳐 학계와 농어촌연구소, 건축전문가 등 16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여종의 우수한 표준설계도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설계도는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2일 인정 공고됨으로써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건축을 할 수 있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1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및 '95 건축가 축제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제1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및 '95 건축가축제를 개최한다.

초대작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제1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은 11월 8일 작품마감 및 12월 공개심사를 통해 14일부터 전시를 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95 건축가 축제에는 올해 건축가협회 상전시회와 특별기획전시회, 건설 및 자재업체 전시회 등이 같이 진행된다.

제17회 한국건축가 협회상 선정

지난해 완공된 우수건축물의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주는 제17회 한국건축가협회상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으로는 총 7작품으로 (주)원도시 건축의 「조선일보 평촌사옥」, (주)아키프렌건축의 「한화그룹종합연구소」, (주)범건축의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백문기(인·토건축)의 「시화빌딩」, 차운기(○폴건축)의 「택형이네집」, (주)정림건축의 「예담교회」, (주)아키프렌건축의 「명보프라자」가 각각 선정되었다.

제1회 건축사진전 개최

건축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진 작가들의 제1회 건축사진전이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삼성 포도갤러리 제2관(섬유센터내)에서 열렸다.

점, 선, 면 그리고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1회 사진전시회에는 김용관, 김재경, 김태오, 김철현, 박영채, 임정의, 정정웅씨가 참여했으며, 사진전시회와 함께 세미나도 열렸다.

제4회 서울시 조경상 발표

서울 시내 우수조경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4회 서울시 조경상이 발표되었다.

서울 시내 설계·시공된 조경작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올해 조경상에는 금상 수상작 없이 6점의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은상 / 삼성연립주택(동작구 상도동), 쌍용타워(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은행강남지점(강남구 역삼동)

동상 / 독립문 삼호아파트(서대문구 영천동), 성북 길음삼지마당(성북구 길음동), 증권 9개사 공동 녹도(영등포구 여의도동)

'95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최종합격자 발표가 지난 10월 28일(토) 오전 10시 본부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일제히 공고되었다. 지난 9월 3일(일)에 실시된 올해 건축사자격2차시험에는 총 2천6백83명이 응시하여 이중 총 1천3백87명(특별전형 1명 포함)이 최종 합격되어 합격률 51.7%를 기록했으며, 최고 득점자는 평균성적 84.2점을 얻은 김영민(40세, 중앙대 건축미술과 졸)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령자는 이현철(50세, 청주대 건축과 졸)이며, 전체 합격자중 여성합격자는 75명으로 지난해 합격자 17명에 비해 여성의 건축분야 전문직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협회는 이들 최종합격자에 대한 건축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오는 12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동안 협회 대강당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1. 일반전형

00002 김명수	00006 박용훈	00011 김용희	00012 고진국	00015 조종석	00017 이집수	00018 주형국	00020 이해은	00028 김진규	00031 박주일
00035 한유섭	00040 김복환	00047 이영민	00049 박청운	00057 장택환	00061 김두오	00065 조종일	00066 명성현	00067 한상용	00068 김용문
00075 임재관	00086 김무진	00096 이진석	00098 고석형	00100 김천행	00103 김완성	00105 박석봉	00111 황무연	00121 김경배	00126 권영호
00128 차문송	00140 김재수	00145 고성호	00151 박민철	00155 김기석	00164 한상일	00171 손유희	00176 이상우	00181 이영일	00189 박재한
00193 김종팔	00200 이성걸	00210 이서원	00214 민정엽	00227 정구배	00231 송민철	00233 김동수	00234 성시훈	00236 오정환	00237 김정래
00241 안장식	00242 박창홍	00245 강명수	00247 변종오	00258 장진이	00261 손지수	00272 이은우	00274 조강희	00277 여규재	00278 진종환
00279 신혜정	00282 김선우	00286 오병돈	00290 손영익	00292 박광일	00295 김명기	00300 문정옥	00306 이선우	00311 김경강	00312 이운재
00313 차영식	00317 박경용	00320 배호진	00323 송 철	00329 한진석	00336 박원형	00337 최진욱	00340 박종조	00342 박재현	00346 장영덕
00347 태경훈	00349 김진규	00350 안용환	00352 이주형	00353 이종호	00362 김만희	00369 문현곤	00372 최원목	00376 문용근	00378 심재봉
00381 송현규	00387 정주찬	00393 박찬규	00394 김진구	00395 김상연	00399 오기석	00401 박상원	00405 강두희	00411 안창수	00414 장구욱
00416 김관주	00417 김병용	00419 임철홍	00421 유재훈	00422 이병수	00439 황영준	00444 박동범	00465 전영일	00472 이창호	00474 김진목
00475 정영경	00484 채한배	00485 조성오	00492 김복수	00496 신창식	00505 홍준화	00507 손창호	00522 김성용	00526 이봉우	00527 송경호
00530 박양호	00533 안재현	00535 한종안	00540 김영환	00545 김중철	00546 이동완	00550 이정철	00555 채희운	00571 신종복	00585 김창희
00600 김광식	00602 윤영기	00603 김경희	00620 박범연	00621 최재호	00628 김종선	00629 김진용	00633 김경학	00643 강 종	00648 김용한
00656 이성배	00657 정창식	00664 배동환	00668 이기만	00672 방귀철	00673 고충교	00674 이명희	00678 이종재	00687 유익성	00692 김영현
00696 이규태	00702 이명동	00711 강동홍	00713 이재구	00715 김경식	00717 김상수	00720 최영문	00734 최석봉	00740 양성준	00742 박병희
00747 차재욱	00752 이민구	00767 김웅진	00768 이남신	00770 배상진	00771 유용상	00773 류시중	00779 이동훈	00783 김홍식	00789 이기수
00790 변동찬	00792 김시형	00802 서범석	00803 우순곤	00807 정병술	00816 이인구	00824 최병주	00829 구정모	00832 최방은	00838 성순백
00840 김희범	00846 이상호	00852 오방욱	00854 손영태	00862 이기환	00864 강현석	00870 김태경	00872 장병호	00878 김무섭	00888 전병길
00892 김동욱	00896 홍석일	00898 김남수	00903 이석기	00907 한상진	00908 홍종의	00918 박남규	00923 함희준	00925 이현배	00930 강종오
00932 채 훈	00933 김영진	00934 김성인	00940 이기학	00943 이규민	00951 김시현	00954 손병철	00961 이종철	00964 배학규	00965 김영덕
00969 정정만	00971 양문성	00974 김동철	00976 이진규	00978 김용주	00982 정은기	00990 박병규	01001 황경상	01002 이신규	01006 임종래
01017 이재동	01030 백종남	01033 정순근	01040 하영수	01045 최안식	01048 윤승훈	01059 류종근	01065 박병진	01066 김제학	01070 김병금
01076 최승룡	01082 김학일	01083 정상선	01087 노종석	01093 이신수	01094 박동호	01095 김경섭	01096 박형민	01101 김원철	01105 최근호
01107 전권식	01108 전재식	01114 이상광	01120 권영환	01127 정용호	01130 장성우	01133 박영규	01135 조영학	01139 이원철	01155 이인수
01167 이동인	01168 김운찬	01171 이형렬	01173 신창영	01174 이찬기	01176 박인회	01178 박남규	01184 박종현	01188 이승우	01198 현호창
01200 고상수	01201 김성중	01217 장병길	01224 최강열	01227 유 준	01231 김제식	01232 박현호	01235 남희식	01248 유기천	01256 김성재
01264 이영수	01265 김위순	01269 오순학	01275 김만수	01277 장치암	01282 송기선	01283 최종춘	01298 정기권	01299 정연국	01300 김병노
01302 이종대	01304 김기성	01305 최홍범	01306 이명환	01308 이창희	01310 이명원	01311 박문수	01314 박순남	01317 김철조	01320 박무귀
01324 서계현	01331 주경민	01332 장문철	01333 정성현	01360 김형진	01361 박창화	01364 이민수	01368 신규용	01373 이찬수	01380 김영관
01394 권지현	01401 권대순	01402 박영기	01404 박영우	01409 최희곤	01415 전영일	01419 이원희	01423 김광희	01427 장춘택	01434 신희영
01435 이윤태	01442 태대민	01449 임미숙	01451 진상운	01473 류근목	01480 배상석	01482 백진현	01484 박명호	01491 김주연	01496 윤기석
01499 방상순	01502 이희수	01510 이동승	01512 조익환	01516 최창동	01518 김효성	01521 박석규	01523 김진필	01525 이원현	01527 이덕홍
01529 최현조	01533 최종환	01534 손천익	01537 정구영	01540 배광호	01546 황석용	01547 김태식	01550 차은영	01557 박형일	01564 이진규
01565 강인식	01568 김신환	01572 이은경	01577 김용목	01582 김종관	01584 김동구	01589 임상관	01591 주찬형	01592 손호성	01600 이태은
01614 이 원	01621 박재근	01624 구자명	01630 김의중	01631 이동민	01635 김영주	01645 이상래	01650 강운동	01653 오상욱	01655 임병식
01673 박광열	01680 홍인화	01694 손은재	01698 윤창근	01701 이영철	01706 홍홍석	01714 정주용	01715 이창후	01716 장성현	01718 김환식
01729 이항복	01730 이용재	01732 김호준	01733 장용문	01734 박명진	01735 노상철	01738 최삼남	01739 김인섭	01742 황정용	01743 김태련
01747 공문석	01756 노철우	01759 이상직	01760 김동수	01762 구무길	01764 이충순	01773 이현철	01776 오세영	01788 우동환	01790 김덕길
01791 김현수	01794 이명래	01808 김완수	01809 태남룡	01811 연동익	01824 정달수	01828 윤석기	01829 박재국	01830 김무환	01833 안익준
01845 어의구	01852 권광태	01857 박성환	01869 최덕환	01883 김두진	01886 오금열	01892 이정호	01896 양 건	01897 이남준	01902 박진성
01907 이종철	01908 윤희열	01909 윤현호	01912 김경태	01913 안병선	01921 박경배	01923 이현태	01924 남궁동현	01940 김만용	01944 임현택
01950 강희훈	01951 주환철	01957 김태홍	01958 윤해상	01959 김정두	01961 정재진	01971 김재학	01975 김성희	01977 서상은	01980 허남득
01981 어인용	01987 최영규	01988 임정필	01995 정 준	02001 박석환	02010 박상학	02011 박동조	02016 최석운	02033 이인규	02037 조현경
02041 장수업	02044 박봉관	02050 강준규	02055 김중근	02062 김호태	02080 나은균	02082 장기봉	02094 김은철	02099 이태중	02100 이경주
02101 정연배	02103 박강래	02112 정필문	02116 이창근	02117 최유안	02133 박승희	02134 박용수	02146 김태대	02151 정영학	02156 김세구
02163 남택춘	02170 문남영	02171 정성현	02173 황금정	02177 박형근	02179 이기오	02183 황찬현	02185 송준태	02189 박평호	02194 윤경경
02209 이명준	02211 김재웅	02223 정의재	02224 김병기	02227 이강분	02230 이종만	02238 김재진	02241 박태수	02252 박용규	02253 박순진
02258 권상기	02260 김희진	02264 배도정	02266 이선일	02270 김춘구	02271 양천규	02275 장병규	02279 윤종무	02294 장명학	02295 김상호
02296 김화성	02307 배용범	02308 홍사원	02311 장기호	02336 강제숙	02343 김종형	02344 김병재	02346 이동훈	02358 황성열	02362 조인철
02364 천선종	02366 차장록	02369 임재동	02370 손진락	02381 한혜수	02385 김종배	02421 김주식	02424 한기욱	02426 이주섭	02427 박선규
02429 정재호	02435 김용근	02436 권혁례	02445 정무수	02448 윤형수	02451 박성만	02461 박영민	02463 김영철	02471 장은식	02492 김도현
02507 조두현	02509 이종훈	02511 김대영	02519 이종형	02524 원인백	02527 구민서	02532 이병열	02541 김순태	02544 이순미	02546 이 민
02550 오덕영	02561 황용운	02563 김성배	02569 김근성	02571 강병영	02576 손영만	02579 조연준	02580 김 호	02585 이한우	02592 노태광
02594 차태권	02596 한재희	02597 황영범	02603 김찬용	02604 조장성	02606 윤재선	02617 김용해	02621 강영표	02623 임근범	02628 김갑태
02630 이재철	02631 정상열	02637 이영규	02638 박재현	02641 정재환	02653 원송환	02654 강오승	02661 주남규	02667 김윤관	02694 박재득
02695 김 선	02697 조현일	02714 정상일	02721 위현철	02730 이승훈	02731 한성식	02739 박순천	02742 오금열	02745 김영찬	02756 이희재
02761 신영수	02762 유동걸	02763 박동관	02766 심재룡	02779 박신식	02780 이병근	02782 전용수	02784 신현홍	02788 심상준	02794 김종태
02800 이상길	02801 임덕규	02808 류명옥	02818 류상형	02822 양인규	02824 이재익	02825 이호형	02826 이석희	02828 정충무	02829 이용관
02830 김준석	02833 주상조	02846 이재준	02852 임성수	02855 최영국	02857 조기영	02862 정희상	02870 권일수	02872 박항준	02875 조창호
02898 이창희	02906 박종원	02910 문병만	02912 박충렬	02917 양병배	02921 천봉기	02934 박인권	02943 이낙우	02948 노경래	02958 이종열
02959 김재영	02962 하권수	02963 남우택	02966 이민철	02969 김근우	02974 한병호	02981 김영민	02984 김용우	02987 이기민	02994 안승순
03002 손동진	03004 백남용	03008 남궁환	03010 윤종열	03011 김재규	03014 김종필	03015 김진걸	03016 손동준	03018 최선용	03022 성병민
03025 김삼수	03030 김익태	03046 강지수	03049 백성운	03054 한종희	03057 윤민경	03066 이철균	03068 임세기	03069 이우찬	03082 윤대형
03089 이병필	03090 임희철	03091 황적수	03095 이형근	03098 박병하	03102 김갑중	03108 이재인	03109 양광권	03113 김광수	03118 김성용

03123 최동성	03125 이응화	03127 강형식	03128 이재백	03139 주영규	03156 이재호	03160 배철홍	03177 장진희	03180 박현실	03184 장운익
03200 박환수	03203 박재열	03208 이정호	03216 민백기	03228 이용승	03249 권혁균	03254 박규호	03255 안창도	03277 이영종	03278 박봉규
03279 최광우	03281 이상현	03288 김형수	03294 이광일	03295 양재준	03297 허경원	03303 임주식	03304 이원석	03309 강면규	03339 권영철
03351 손은상	03355 박동만	03359 여경주	03363 김태현	03372 김구환	03374 한만철	03375 김정규	03379 김동진	03381 김여원	03382 락명근
03390 전진수	03397 이환철	03402 오미현	03403 박호창	03407 김선희	03412 황영만	03421 최준시	03431 유병열	03433 장석규	03436 김병찬
03438 공만석	03442 남상은	03446 조병은	03447 조현광	03449 김영호	03450 이영구	03451 김국현	03455 이철호	03457 이운필	03458 김배숙
03466 지경택	03468 차정렬	03469 정홍열	03471 남호일	03472 천상섭	03474 오영철	03476 이은범	03486 지영주	03495 원상희	03508 박승용
03513 권기욱	03516 정성목	03529 황재성	03530 지성근	03544 유광상	03546 정재형	03556 최태성	03558 이재복	03570 정주모	03576 정병범
03583 이진섭	03584 김용각	03585 양정희	03590 유용우	03598 김봉운	03604 최순운	03615 이관용	03621 김선중	03623 송용호	03625 박기용
03628 송재호	03629 정재원	03636 김영도	03641 임채방	03645 이순길	03660 김운태	03661 권종규	03663 이윤경	03666 윤주일	03670 권상식
03672 김영환	03677 유건상	03683 황현찬	03684 차재욱	03685 임동환	03687 설승열	03690 최행옥	03692 최성환	03694 조제호	03696 이배원
03698 최재근	03703 오경수	03704 박명준	03711 고준배	03713 김태호	03717 이성호	03728 박태원	03729 우재식	03730 이병윤	03734 홍영준
03739 김종오	03740 박태훈	03743 오옥진	03779 박병재	03785 김기철	03803 이경선	03811 김태형	03813 조영경	03819 이영식	03820 조성계
03824 박흥선	03827 박기덕	03838 심창희	03848 김승필	03849 도재삼	03870 이상훈	03878 박병학	03879 오창영	03880 천상호	03881 여인창
03883 김종인	03888 김찬주	03890 유봉상	03882 이용안	03893 이광호	03895 구분창	03898 이준배	03899 김 황	03905 김주성	03916 김형주
03923 박춘원	03924 전계식	03925 임은영	03928 이효태	03930 송민용	03937 장영선	03939 대원상	03943 김재진	03945 류영규	03947 류성태
03952 한경섭	03958 전성종	03960 박춘호	03962 김수미	03963 이상희	03968 고훈범	03978 정상중	03979 김상능	03981 권덕칠	03983 이은수
04010 박연배	04024 박명협	04032 정영태	04033 손병숙	04046 이경형	04049 김순은	04057 김동철	04062 박태환	04072 이관희	04075 이기환
04091 강철이	04096 강현철	04104 김동관	04105 현상일	04116 이상호	04118 조성호	04129 양정식	04132 장상식	04137 맹종규	04138 하현주
04146 정이훈	04153 배기환	04157 표재용	04171 이호균	04183 이동범	04185 유병규	04191 백종만	04192 권일혁	04198 구본규	04202 임병태
04204 조재광	04213 박영배	04217 이은규	04220 이영희	04221 양정모	04222 김상수	04225 우성숙	04235 박찬택	04236 한운규	04251 이현표
04253 서지영	04254 정순학	04259 유성호	04261 신현열	04274 조형석	04275 손광선	04281 이세찬	04294 김태중	04296 이상득	04326 최형길
04329 유영유	04330 이종규	04348 유중범	04352 김병욱	04374 김정숙	04375 이시우	04377 송병두	04379 이규익	04386 송상우	04395 박봉준
04400 안병준	04407 최태용	04412 홍순전	04413 김명조	04415 석한수	04416 정은영	04433 박찬익	04450 정찬경	04451 차대용	04460 이주현
04473 박동진	04482 유은미	04488 라경수	04502 이상삼	04505 고강국	04508 주병조	04514 이형석	04530 안철수	04533 이진형	04539 김병두
04540 이부선	04541 이용규	04545 김자룡	04552 허성행	04555 이영국	04580 권무식	04591 황홍철	04593 김정환	04595 김대성	04597 이승현
04601 신용배	04603 유재선	04609 조택재	04623 박치영	04628 문 홍	04630 김경오	04633 서종우	04635 김충현	04643 공준기	04650 조성진
04660 이재홍	04664 오상	04665 정효준	04666 이한호	04670 박성근	04672 김대명	04680 이종석	04681 김재창	04685 배복진	04689 조현정
04696 오형운	04697 이종훈	04722 윤대현	04735 김영준	04737 배재홍	04743 신창현	04746 이재하	04748 허유강	04752 김혜완	04755 김문열
04760 전성룡	04765 김경권	04768 정제권	04773 손용호	04779 김삼복	04781 강순옥	04786 박성민	04802 이석주	04820 이동준	04841 배종철
04852 유상식	04859 이경희	04863 조종근	04866 박인식	04891 이홍주	04892 정수홍	04894 김재형	04896 조상윤	04912 박명동	04917 남미영
04919 박동철	04921 최종우	04929 김갑동	04935 김홍수	04942 김민지	04946 김상철	04948 김규동	04960 김수필	04961 정구진	04963 장현달
04967 강창호	04975 윤정환	04981 안운모	04987 신담호	04995 이갑수	05013 서정재	05019 김종길	05025 조상현	05032 박구진	05033 신병우
05040 박우식	05043 이환영	05047 이현진	05049 김남중	05064 권용식	05091 김영호	05093 최연섭	05098 박주상	05099 이영두	05100 권순욱
05112 남기영	05116 김홍근	05121 김은범	05134 이준근	05137 김규진	05142 신태영	05147 이태운	05154 김세종	05167 김남태	05174 이재석
05176 권순재	05177 이시영	05186 이길환	05187 김익근	05190 박각수	05191 방일석	05194 임동민	05208 황용길	05221 최원종	05229 조환영
05236 최대영	05243 이수철	05248 김원종	05256 서동구	05259 박길성	05262 박진영	05263 이창진	05285 김경렬	05287 김재훈	05289 이은주
05322 김갑수	05324 윤영현	05332 김성철	05334 민영진	05336 이웅현	05350 박창호	05360 김상규	05365 이동현	05381 정상철	05387 심재부
05389 최유영	05390 안기문	05403 정창교	05412 최석민	05424 양주영	05426 정효경	05427 오윤근	05429 조관희	05438 이원규	05445 박덕수
05446 두한균	05451 최일권	05459 김학초	05460 주성국	05462 성도호	05476 안홍탁	05484 양인모	05487 고재훈	05500 김병업	05517 김상호
05520 장연국	05523 김기영	05525 김형노	05526 김영실	05530 조형철	05531 김봉진	05536 한충현	05539 권용용	05543 김종선	05552 이승희
05555 김원효	05563 권순엽	05572 강남규	05579 김창로	05580 김기주	05611 홍기안	05625 이윤하	05637 백형덕	05640 이윤현	05645 고석진
05655 정광영	05659 고경렬	05670 최정민	05679 김연임	05684 이상현	05686 한순구	05690 김성배	05692 오영섭	05698 김재철	05719 윤미선
05736 김경철	05737 김근식	05749 김두영	05753 손병환	05759 김성태	05762 아우용	05773 이행근	05774 윤성현	05791 윤덕원	05793 홍성현
05801 방철인	05805 문제욱	05807 신동습	05811 박현주	05816 유창도	05819 최주태	05822 김경숙	05833 윤형식	05839 정대락	05841 윤현복
05845 장병정	05850 오세욱	05855 고임순	05868 은철영	05872 박규석	05887 전 울	05890 채성주	05893 김덕현	05895 최태석	05912 이기철
05914 추교화	05941 산상우	05942 오성도	05944 윤보은	05957 용상이	05987 이석련	05992 박보경	05994 이억재	06001 윤규연	06003 최광규
06006 김 용	06008 김종록	06032 김운재	06041 권병국	06042 박운덕	06070 강정원	06171 김병국	06094 지이현	06132 심보선	06136 양이직
06097 유병열	06099 임희수	06107 정관호	06109 이현식	06111 홍갑석	06119 문종섭	06130 김중식	06132 심보선	06134 홍종우	06136 양이직
06153 박정서	06155 김태안	06163 이상문	06164 도명규	06167 오세규	06169 정재학	06171 허남걸	06186 조형장	06188 안선홍	06194 이민호
06196 김기수	06210 이자연	06221 김제만	06235 최재필	06241 김민정	06242 이태주	06252 이 엄	06254 상기택	06256 박봉근	06263 배경섭
06264 최영우	06278 임종호	06285 김윤옥	06288 정재기	06291 강석훈	06293 이철수	06299 황정환	06300 남재일	06327 김추연	06331 함인성
06332 이선대	06344 진재학	06355 송호섭	06363 이용구	06366 임주용	06369 김진용	06370 김태훈	06372 우화중	06373 김동환	06376 이길동
06380 김영국	06386 김중철	06387 김경태	06389 전대영	06391 임창우	06396 강병수	06425 최홍구	06449 김성철	06452 신우식	06554 혁영찬
06456 하성훈	06471 서동갑	06489 김쌍용	06506 배희수	06507 권순진	06526 김송준	06552 노광근	06554 김창호	06563 이승희	06575 안득수
06580 채미향	06587 김보원	06591 오석구	06592 김광조	06598 이윤구	06604 박인광	06606 양상하	06611 전병갑	06616 이상택	06617 이효정
06623 오정은	06624 주정호	06635 박용목	06638 김성희	06645 김상덕	06648 봉문진	06658 김선체	06661 김미정	06665 김의호	06671 이학용
06686 전유향	06693 서운구	06699 김관옥	06713 김찬희	06747 강경오	06766 장혜진	06770 권오준	06779 박영훈	06782 안정웅	06794 이영찬
06806 김영수	06807 김웅기	06816 김희옥	06834 윤영채	06840 서의교	06847 김호준	06850 서경숙	06860 남희진	06863 박경순	06869 김영환
06880 유충기	06883 이득훈	06887 오병수	06896 이진우	06899 류성하	06901 김영훈	06902 황경섭	06907 김양희	06915 강성동	06918 조성훈
06924 자석현	06929 이현주	06946 박현진	06947 안동필	06957 진영제	06967 김태현	07072 김희곤	06978 이민환	06981 전재일	06992 이수한
07016 조병섭	07023 이용우	07032 정일권	07033 서정영	07040 노경윤	07049 박순오	07062 최충철	07088 홍석승	07096 이승훈	07100 김대진
07112 박광범	07118 채봉주	07149 이성태	07152 서병식	07160 조만형	07165 송동환	07168 신시영	07174 김성범	07176 안영성	07178 장진환
07189 변계성	07191 양운호	07192 안창훈	07194 김수경	07210 서동명	07215 정창교	07231 최영식	07246 안승출	07258 윤정노	07267 장상진
07332 연경홍	07337 조상훈	07338 오경진	07345 이상진	07352 정현식	07356 유호남	07365 유선길	07370 송주덕	07371 주희식	07373 최요명
07396 장우진	07397 김광호	07405 이민호	07406 김홍국	07416 정보영	07419 천상욱	07428 이상현	07435 홍준모	07443 이윤삼	07446 정용수
07447 윤재필	07450 임신경	07456 박정근	07462 유종만	07464 손정길	07466 김상일	07472 최재유	07476 이광희	07493 박준성	07494 최현곤
07499 임창수	07501 오세룡	07503 류만현	07525 이승희	07535 양상현	07545 김진종	07547 유영봉	07573 김안두	07600 김태원	07609 이관용
07613 조남호	07627 전근수	07634 김원중	07650 조성학	07656 김홍식	07661 정현미	07678 허영두	07681 김광배	07682 장성수	07691 서태석
07692 정진호	07697 윤주호	07699 황봉규	07701 박희철	07706 이광우	07716 황재운	07720 박근민	07721 한홍섭	07725 오창근	07727 구송학
07730 조원준	07731 최진호	07750 이지훈	07751 이대열	07754 송영국	07760 용길중	07775 윤종현	07779 황규신	07782 유제상	07783 홍철의
07789 최인석	07800 유재영	07805 김형찬	07832 박승학	07835 최광호	07840 이찬수	07841 장재훈	07843 박진준	07847 이정석	07854 김성우
07877 박내연	07884 권태일	07899 이성목	07900 남상영	07923 백수일	07944 안덕근	07948 진길만	07949 정한성	07957 박종복	07962 홍희철
07967 하기권	07976 심인섭	07981 나승준	07989 김미진	07999 홍성현	08534 우종환				

2. 특별전형
023 김정태 이상 1.387명